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 - 15 - 0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f Strategies for Promoting Public Welfare Activitie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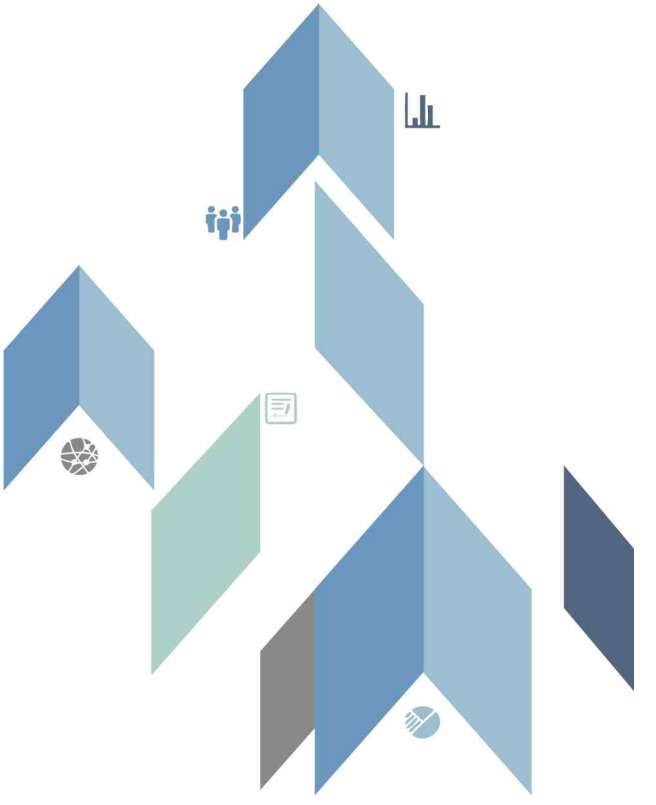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3-15-01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고경환, 박영선, 이연희, 김태완, 남기철, 손명구, 김원득, 박선미, 오영수, 정복교, 홍성태, 김성진, 천미경, 조용찬		
주관 연구기관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고경환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이연희 책임전문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남기철 교수(동덕여자대학교) 손명구 박사(前글로벌지역발전정책연구원) 김원득 교수(중부대학교)	천미경 전문연구원 조용찬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박영선 연구위원	박선미 대표이사(사회자본연구소) 오영수 부대표(자원봉사이음) 정복교 교수(Kean University) 홍성태 강사(고려대학교) 김성진 연구위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국문요약

사회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대개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노력인 사회공익활동이 필요하다. 이들 활동은 자원봉사, 시민사회운동, 지역 풀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을 도모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익활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지속성이 낮아지고 있다. 바로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익활동에 대한 과소평가이다. 이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의 공론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체계와 다양성과 소통성을 갖춘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활동가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적 보상과 지원, 그리고 활성화 할 플랫폼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공익활동가(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인정 욕구 조사 결과, 자원봉사자들은 공공서비스 할인이나 공공시설 우선 사용권 등의 '경제적 예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존중' 순이었다. 비영리단체나 마을공동체는 공익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보상 또는 인정하는 '직업적 인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순이었다. 따라서 공익활동 분야별로 기본 특성과 배경이 다른 만큼 인정방향은 자원봉사활동은 사회적 예우, 실비보상 및 간접예우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적 예우에 경제적, 직업적 인정 중심으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5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 그리고 35개 개별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개별과제에 대해 두 그룹, 즉 자원봉사활동과 마을공동체·NPO를 분리하여 제안하였고, 기존제도와 신규제안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마을공동체와 NPO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역사가 짧은 만큼 대부분 신규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현행 공익활동 플랫폼의 내·외부적 환경맥락을 SWOT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강점위협전략(ST)과 약점위협전략(WT)을 적용한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강점위협전략은 공식적 인증 기능을 탑재한 새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현행 플랫폼의 전면 개편을, 약점위협전략은 기존의 각 온라인 체계에서 개별 플랫폼의 기능(소통·공유, 활동이력관리, 정보 통합검색 등)을 보강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등이 도입되어 활동가의 효능감과 자긍심을 제고하고 공동체성의 회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

키워드 : 사회공익활동,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 플랫폼

Abstract

A Study of Strategies for Promoting Public Welfare Activities

Social problems are difficult to solve at the individual level, and often require social participation and such communal efforts as public welfare activities. These activities take place in various fields, such as volunteering, civic movements, and community-based grassroots efforts, all intended to enhance social values and promote social integration.

However, in recent years, the socioeconomic status and sustainability of public welfare activities have been declining, as in the current societal atmosphere, dedication and sacrifice are often taken for granted and the value of public welfare activities is underestimated. In response, there is a growing public discourse revolving around the social recognition of public welfare activities, and some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to promote public welfare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strategies for building a social recognition system and a platform with diversity and communication capabilities to promote public welfare activities. To this end, this study suggests taking social compensation and support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social activists, and presents platform strategies for putting them into practice.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ocial recognition needs of 4,000 public activists (volunteer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mmunity groups). Among volunteers, “economic benefits”, such as discounts on public services or priority use of public facilities, were most frequently cited as needed, followed by "social respect." Non-profit organizations and community groups most often cited the need for “professional recognition”, meaning their public welfare activities should be recognized as an economic value and rewarded as such, followed by “economic benefits.” Therefore, different recognition strategies were proposed for public services with varying features and backgrounds. For volunteer activities, the focus of the proposed recognition strategies was on social benefits, cost reimbursement, and fringe benefits. For community group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e emphasis was placed more on social benefits with eco

nomic and professional recognition. Our proposals for social recognition of public welfare activities were organized into five strategies, 13 task areas, and 35 individual programs. The individual programs, in particular, were proposed separately for the two groups, namely

volunteers and community groups/NPOs, with existing programs distinguished from new proposals. As the history of social recognition for community groups and NPOs is relatively short, most of the proposed solutions are new.

Next, we analy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current public service platform using the SWOT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method, and proposed a platform development approach that applies the Strengths–Threats (ST) and Weaknesses–Threats (WT) strategies. The ST strategy suggests building a new platform with an official certification function or a complete overhaul of the current platform, while the direction of the WT strategy is to strengthen the functions of individual platforms in each online system, such as communication and sharing, activity history management, and integrated information access.

I hope that in the future, a social recognition system for public welfare activities will be introduced to enhance the efficacy and self-esteem of volunteers and to serve as the foundation for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and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Keyword : public welfare activities, social recognition of public welfare activities, public service platform

정책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 제안은 공익활동 활성화와 플랫폼 구축의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 한다.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가. ((가칭)공익활동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조성 마련을 위해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하다. (가칭)기본법에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은 시민교육과 홍보의 강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교육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4.0%(매우 필요하다 56.0% + 약간 필요하다 3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실천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의 필요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변화사례, 국가 차원의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언론과 SNS를 활용한 교육 병행을 제안 한다.

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교육)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식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실천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의 필요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변화사례, 국가 차원의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언론과 SNS를 활용한 교육 병행을 제안 한다.

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공익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예우는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에 기여한 시간과 재능, 역량에 대한 존중이자,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제4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에서도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활동 시간의 인증과 경제적 보상의 문화를 사회적 인정의 문화로 전환하기로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예우 외에 공익활동에 참여한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그 경험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사회 도서관, 자원봉사센터나 공익활동 센터 등 시민참여의 거점 공간에 전시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공익활동 전업가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 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의 경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인정 방법이나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비전업 활동가의 경력 인정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공식 직업군은 전업 공익활동가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해 국가통계, 각종 보험 등에서 정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종 사회 제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사회안전망을 제공받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각종 사회교육, 특히 청소년 및 청년 대상의 미래직업교육에 공익활동가를 정식 직업으로 포함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진출할 만한 직업으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 분류체계의 세분류에서 소분류로의 위치 이동의 제안이다.

라. (공적활동단체에게 지원대상 요건 개선과 유용자원 지원) 현재 공적 지원 대상의 요건 완화를 제안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모임 자격 등이 그 예이다. 일부 역량이 미흡한 단체를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우려 될 수도 있지만 이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 규모를 함께 낮추는 등 보완적인 절차와 지원방안 등의 제도설계를 통해 해결을 경험 하였다. 또한 공익활동에 유용한 자원을 공익활동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공적 자금,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활용 권한 등 공익활동에 선순환 구조로의 투입을 제안한다.

2.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공익활동 플랫폼을 개선할 때 기능의 정도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의 신설 혹은 기존 플랫폼의 보완이 결정된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때, 기존의 관련된 포털이나 플랫폼, 혹은 그 운영체계와의 관계 설정에서의 갈등 우려(기존 자원봉사 영역의 인증 플랫폼과의 관계 설정)도 있으며, 개별 민간의 선행체계들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야 한다. 합의기구에는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주체와 중간지원조직, 기존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적 주체(공공과 민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공익활동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의 탑재) 공익활동 플랫폼에 필요한 필수 기능들로는 공익활동을 연계하고 검색하는 일반적 정보 제공, 공익활동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의 기능,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공간, 공익활동의 이력 취합과 인증기능, 정책 제언과 피드백 기능 등이다.

다. (민간 중심의 공익활동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플랫폼이 공익활동 현장의 욕구에 친화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축은 공공이, 운영과 관리는 민간이해야 한다.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공공과 시민사회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플랫폼 운영요원에 대해 적극적 활용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소수 담당 직원의 편성을 넘어 서울시NPO지원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큐레이터나 아키비스트를 정규인력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적 플랫폼은 전국 단위에서 기능하도록 하고 활동 인증 기능의 활성화와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전국 단위 대표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구도도 고안해야 할 것이다.

라. (정보검색과 소통 지원기능의 보강)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정보 검색과 신청 경로 구현이 필요하다. 정보검색에서 해시태그나 챗봇 등의 검색지원 기능의 첨가, 정보의 깊이보다도 넓은 포괄성에 기초한 매핑과 아카이빙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대중 대상의 정보와 공익활동 핵심 활동가 및 조직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도구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마.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의 구축) '(가칭)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같은 공식적 체계가 구축되어 개인이나 조직의 공익활동 여부와 활동량, 이력이 등록·집계되면, 이를 기초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에 의해서 인증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칫 공익활동의 인증이 관변단체 속성의 양상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공공통제의 기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증주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익활동 주체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같은 구조가 필요 하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는 현재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력 인증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활동 이력을 인증하는 경우 두 가지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개

인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 혹은 조직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투입이나 과정의 노력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 결과와 성과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이다. 활동가 개인 단위의 정보취합과 인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시간 이력인증의 논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직 단위의 정보취합은 단체의 성격과 활동이력의 정보가 취합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8

제 I 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개념과 현황

제2장 공익활동의 개념과 사회적 인정의 쟁점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 ····· 15

제2절 공공의 이익과 시민 공익활동 ····· 19

제3절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 ····· 24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국제 비교론적 함의 ····· 30

제5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 39

제3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자원봉사 ····· 45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 80

제3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마을공동체 ····· 114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국제 비교론적 준거 및 해외 사례 ····· 143

CONTENTS

제II부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운영현황

제4장 공익활동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제1절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 165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가치와 역할 ····· 169

제5장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제1절 국내외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 175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및 사례 시사점 ····· 214

제III부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제6장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 일반 현황 분석

제1절 조사개요 ····· 223

제2절 주요 내용 분석 ····· 229

제7장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 주요 특성별 분석

제1절 공익활동의 참여와 가치관 ····· 255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 261

제3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 270

제4절 시사점 ····· 291

제Ⅳ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8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과 정책과제

제1절 사회적 인정 방안 관련 주요 쟁점 ····· 301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과 정책 과제 ····· 312

제3절 사회적 인정 대상별 과제 ····· 328

제9장 공익활동의 플랫폼 구축 방안과 정책과제

제1절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 ····· 333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 339

제10장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 353

제2절 정책제언 ····· 368

■ **참고문헌** ····· 375

■ **부록** ····· 391

1.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분석 ····· 391

2.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설문지) ····· 409

표 차례

〈표 2-1〉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분류체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28
〈표 2-2〉 비영리조직 관리에 있어서 네 가지 추동력 ····· 34
〈표 3-1〉 자원봉사 개념의 변화 ····· 47
〈표 3-2〉 자원봉사 인정·보상 및 유사개념 정리 ····· 52
〈표 3-3〉 연구자에 따른 인정 유형 ····· 53
〈표 3-4〉 자원봉사 참여 동기 충족을 위한 인정 방안 ····· 55
〈표 3-5〉 자원봉사 인정 유형 ····· 56
〈표 3-6〉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인정 제도 유형 ····· 58
〈표 3-7〉 자원봉사 인정제도 수립 과정 ····· 59
〈표 3-8〉 자원봉사 인정과 관련한 법 조항 ····· 60
〈표 3-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5개년 국가기본계획 중 인정에 관한 정책 과제 ····· 64
〈표 3-10〉 주요 기관의 자원봉사 시간 인증시스템 현황 ····· 67
〈표 3-11〉 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준 ····· 68
〈표 3-12〉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개요 ····· 73
〈표 3-13〉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 82
〈표 3-14〉 비영리민간단체 직간접적 지원 현황 ····· 84
〈표 3-15〉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전략 목표와 추진 과제 ···· 88
〈표 3-16〉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 ····· 92
〈표 3-17〉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 ····· 94
〈표 3-18〉 지역별 조례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반영 여부 ····· 95
〈표 3-19〉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 100
〈표 3-20〉 캐나다의 비영리 조직 공공자금 지원 사례 ····· 110
〈표 3-21〉 서울시 찾동 마을계획 수립 과정 ····· 120
〈표 3-22〉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마을계획 지원 전략 ····· 122
〈표 3-23〉 영국 지역주권법의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내용 ····· 125
〈표 3-24〉 마을활동가의 유형 분류 ····· 126
〈표 3-25〉 마을공동체 활동 형태 분류 ····· 127
〈표 3-26〉 서울시 마을활동가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처우 비교 ····· 128
〈표 3-27〉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및 교육 이수 내역 관리 기준 ····· 131
〈표 3-28〉 경기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전략 ····· 132

〈표 3-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 133
〈표 3-30〉 마을공동체 정책 관계자들의 주민자원에 대한 인식 ····· 135
〈표 3-3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대분류 ····· 135
〈표 3-3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세분류별 인정 동의율 ····· 136
〈표 3-33〉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가치 환산 기준(안) ····· 137
〈표 3-34〉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가치 환산 결과 ····· 138
〈표 5-1〉 서울NPO지원센터의 3가지 플랫폼 운영방식 ····· 201
〈표 6-1〉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 225
〈표 6-2〉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조사 항목 ····· 226
〈표 6-3〉 응답자의 일반 특성 ····· 229
〈표 6-4〉 응답자의 공익활동 시작연령, 공익활동 기간, 수입 및 참여 빈도 ····· 231
〈표 6-5〉 응답자의 공익활동 기간, 활동분야 및 참여형태 ····· 232
〈표 6-6〉 귀하의 삶에서 느끼는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연령별 현황 ····· 233
〈표 6-7〉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 234
〈표 6-8〉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이유(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 235
〈표 6-9〉 연령대별 공익활동 시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 235
〈표 6-10〉 활동참여 형태별 공익활동 시 '공익활동에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 236
〈표 6-11〉 공익활동 통해 경험한 주된 사회성과에 대한 공익활동 영역별 분포 ····· 236
〈표 6-12〉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여부 ····· 237
〈표 6-13〉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 정도 ····· 238
〈표 6-14〉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 242
〈표 6-1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 243
〈표 6-16〉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별 이용 빈도 ····· 244
〈표 6-17〉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별 도움 정도 ····· 245
〈표 6-18〉 활동영역별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에 대한 도움 정도 ····· 245
〈표 6-19〉 공익활동을 위해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수집처의 제공 기능 사용현황 ····· 247
〈표 6-20〉 공익활동 정보수집처의 제공 정보에 대한 충분 정도 ····· 247
〈표 6-21〉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49
〈표 6-22〉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 251
〈표 7-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평균 시작연령 ····· 255
〈표 7-2〉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에 투입한 연평균 시간 ····· 256
〈표 7-3〉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활동분야 현황 ····· 257
〈표 7-4〉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 259

CONTENTS

〈표 7-5〉 활동지속기간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 259
〈표 7-6〉 활동영역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 260
〈표 7-7〉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 261
〈표 7-8〉 공익활동 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 262
〈표 7-9〉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1 ····· 263
〈표 7-10〉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2 ····· 264
〈표 7-11〉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 265
〈표 7-12〉 합리적 보상방식과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 266
〈표 7-13〉 공익활동 지속기간·활동영역·연령계층별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 ····· 267
〈표 7-14〉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불필요 이유 ····· 268
〈표 7-1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불필요 이유 ····· 269
〈표 7-16〉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 270
〈표 7-17〉 연령계층별·공익활동지속기간별·활동영역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경험 ····· 271
〈표 7-18〉 활동 지속기간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경험 ····· 271
〈표 7-19〉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 빈도 ····· 272
〈표 7-20〉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현황 ····· 274
〈표 7-21〉 활동영역별 '1365자원봉사포털'에 대한 도움 정도 ····· 274
〈표 7-22〉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정보 수집처 현황 ····· 275
〈표 7-23〉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주요 정보 수집처 현황 ····· 276
〈표 7-24〉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주요 정보 수집처 기능 사용현황 ····· 276
〈표 7-25〉 활동영역별 정보수집처 제공 정보의 충분 정도 ····· 278
〈표 7-26〉 활동참여 형태별 정보수집처 제공 정보의 충분 정도 ····· 279
〈표 7-27〉 정보수집처별 제공 정보에 대한 충분 정도 ····· 280
〈표 7-28〉 정보수집처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 품질 만족도 ····· 281
〈표 7-29〉 활동영역별·연령별·활동지속기간별·참여형태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 품질 만족도 ····· 282
〈표 7-30〉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83
〈표 7-3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85
〈표 7-32〉 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85
〈표 7-33〉 지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86
〈표 7-34〉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 288
〈표 7-3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 289
〈표 7-36〉 지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 290
〈표 8-1〉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과 정책과제 ····· 326

〈표 9-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맥락 ····· 334
〈표 10-1〉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자원봉사 ····· 355
〈표 10-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 356
〈표 10-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마을공동체 ····· 356
〈표 10-4〉 공익활동가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57
〈표 10-5〉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58
〈표 10-6〉 활동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59
〈표 10-7〉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추진 전략과 과제 ····· 361
〈부표 1〉 FGI 진행 ····· 392

그림 차례

[그림 2-1] 사회복지 및 섹터의 혼합 모형 ····· 30
[그림 2-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섹터 간 혼성/혼합모형 ····· 36
[그림 2-3] 공익활동 참여의 사회적 인정체계 ····· 40
[그림 3-1]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화면 ····· 66
[그림 3-2]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절차 ····· 74
[그림 3-3] 자원봉사주간 캠페인 영상화면 ····· 74
[그림 3-4]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미션체계도 ····· 93
[그림 3-5] 신뢰·호혜·연대 기반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 구축도 ····· 102
[그림 3-6]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플랫폼 모델 ····· 106
[그림 3-7] 사회자본 축적 과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형성 전략 ····· 118
[그림 3-8]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절차 ····· 119
[그림 3-9]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 129
[그림 3-10] 서울시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방안 ····· 129
[그림 3-11] 서울시간은행 이용 방법 ····· 140
[그림 4-1] 플랫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의 관계 ····· 166
[그림 4-2] 공공플랫폼과 민간플랫폼의 특성 ····· 166
[그림 4-3] 공공 데이터 플랫폼 ····· 167
[그림 5-1] 시민통통의 개요 ····· 175
[그림 5-2] 시민통통의 홍보와 활동 공간 제공 ····· 176
[그림 5-3] 온국민소통, 구 광화문 1번가(행정안전부) ····· 177
[그림 5-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의 특성 ····· 181
[그림 5-5] 페이스북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 181
[그림 5-6] 전라남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 182
[그림 5-7]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유플랫폼 ····· 184
[그림 5-8]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 185
[그림 5-9] 1365자원봉사포털 ····· 186
[그림 5-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체계 ····· 188
[그림 5-11] VolunteerMatch의 자원봉사 연계 플랫폼 ····· 189
[그림 5-12]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 ····· 190
[그림 5-13] 미국의 아메리콥스 홈페이지 ····· 192

[그림 5-14] 영국의 NCVO ····· 194
[그림 5-15] 한국가이드스타 ····· 195
[그림 5-16] Candid의 정보제공체계 ····· 196
[그림 5-17]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 198
[그림 5-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199
[그림 5-19] 서울시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 200
[그림 5-20] NGO-IDEAS ····· 203
[그림 5-21] PNGK의 도구모음 ····· 204
[그림 5-22] Collaboration Superpowers ····· 205
[그림 5-23] 타임뱅크코리아의 타임뱅크 플랫폼 ····· 206
[그림 5-24] 미국의 타임뱅크와 community weaver 3.0 ····· 207
[그림 5-25] 타임뱅크 웹 플랫폼 체계 ····· 208
[그림 5-26] 아카이브의 구성과 내용 ····· 209
[그림 5-27]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아카이브 ····· 210
[그림 5-28]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의 공익활동 연계 내용 ····· 212
[그림 5-29]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 213
[그림 6-1] 일본 NPO 개념 구성도 ····· 224
[그림 6-2]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활동분야 ····· 232
[그림 6-3]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여부 ····· 237
[그림 6-4]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 238
[그림 6-5]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해 항목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 239
[그림 6-6] 공익활동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 ····· 240
[그림 6-7]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유 ····· 240
[그림 6-8] 공익활동 관련 사이트 이용 경험 ····· 241
[그림 6-9]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정보 수집처 ····· 246
[그림 6-10] 기존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만족도 ····· 248
[그림 6-11]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중요도 생각 ····· 249
[그림 7-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시작연령 및 연평균 활동소요시간 ····· 256
[그림 7-2]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활동분야 ····· 258
[그림 7-3]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이유 ····· 262
[그림 7-4]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 265
[그림 7-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 빈도 ····· 273
[그림 7-6] 활동영역별 정보수집처 제공정보의 충분 정도 ····· 278
[그림 7-7]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 284

CONTENTS

[그림 7-8]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 288
[그림 9-1]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활동 인증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 방향 ····· 337
[그림 9-2]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의 필수 기능 ····· 339
[그림 9-3] 호주의 ACNC 포털 ····· 344
[그림 9-4] 플랫폼에서의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인증 기능 ····· 345
[그림 10-1] 공익활동 참여의 사회적 인정체계 유형 ····· 357
[그림 10-2] 공익활동가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58
[그림 10-3]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59
[그림 10-4] 활동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 욕구 ····· 360
[그림 10-5]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방향 ····· 360
[그림 10-6] 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정방향 ····· 361
[그림 10-7]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맥락 ····· 366
[그림 10-8]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활동 인증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 방향 ····· 367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빈곤, 환경문제, 인권침해, 성차별, 소수자차별 등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며, 대개 사회적 참여와 공동체적 노력인 사회공익활동이 필요하다. 교육활동, 문화 활동,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회공익단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속 가능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익활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 시민사회운동, 지역 풀뿌리 활동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활동 방식도 단순 노력 봉사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적 역량에 바탕을 둔 자원 활동 등 다채롭다.

사회공익활동은 참여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익을 가져 준다.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봉사정신을 실천하며,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봉사활동을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복지사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보충할 수 있다. 즉 사회공익활동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사회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수 백 여개의 활동들이 있다. 2022년 현황으로 볼 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은 대체로 7가지[1] 유형이, 자원봉사활동은 크게 14가지[2]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들은 개인과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 또한 이들 의식과 책임감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공익활동을 통해 알려진 성과들도 다양하다. 사회공익활동은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먼저 공익활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 장애인 지원, 환경 보호, 동물 보호 등은 노인차별, 장애인차별, 환경문제, 그리고 동물학대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1)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행정안전부, 2022a).
2)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2. 지역사회개발·발전,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4.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공익활동촉진기본법육성·보호, 5.교육 및 상담,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7.범죄예방 및 선도,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10.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12. 공명선거,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14. 공공행정사무지원(행정안전부. 2022b, p. 125-128).

기여한다. 다음으로 공익활동은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지원, 저소득층 지원, 재해 지역 지원 등의 공익활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더욱 통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공익활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돕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성평등, 인종차별, 교통 안전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공익활동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환성 외(2021)는 시민사회와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총 31개의 이행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중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 및 개선,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인정체계 확립,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털 및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병국 외(2020)와 정무성 외(2017)는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인정체계를 제안하였다. 김병국 외(2020)는 자원봉사실적인증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시간인증' 방식으로 인해 자원봉사의 진정한 가치훼손, 봉사자 간 비생산적인 경쟁, 자원봉사의 질적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제기를 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기존 시간인증 절차(ex. 현장 즉시 자기입력) 개선, 2020년에 도입된 활동인증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인트제도 도입의 정책적 방향성 검토를 제안하였다. 정무성 외(2017)은 나눔관련 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나눔활동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나눔실천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인정, 포상)의 제공을 제안하였다. 사회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활동가의 공익활동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매개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람이 모이고, 특정 분야의 정보가 교류되고, 정보를 기반으로 가치가 교환된다. 온라인 공간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교류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던 공익활동이 최근 팬데믹과 같은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으로 넘어오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동영역이 변하고, 공익활동가들의 욕구도 이전과는 다른 형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기존 포털들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이 플랫폼에 모임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관계를 넓히고, 자기계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지극히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모임과 정보 교류가 활발한 플랫폼은 계속해서 사람의 유입을 불러오고, 그 안에서 자원이 만들어진다. 플랫폼은 다양한 자원이 자유롭게 참여해 거래,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특히 공익활동 플랫폼도 다양한 주체가 직접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나와 비슷한 사회문제, 공익활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나, 공익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직접적인 자원을 얻을 수 있거나, 지역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공익활동 플랫폼은 지역의

자원과 연결될 수 있는 곳, 나아가 공익활동 생태계의 기반을 만드는 곳이어야 한다(안영삼, 2023)

앞으로 플랫폼은 비공식적인 봉사활동, 자율적인 소규모의 사회참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 정책참여 활동,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활동, 현대인의 생활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활동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가능한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사회공익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단체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고, 비영리단체와 정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동 규정 제5조 및 13조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에는 시·도지사가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 체계의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표준조례 제16조의 4항).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분야 국정과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기부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으로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비자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단체 등으로 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공익활동 수행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으로 △공익활동 이력제, △공익활동 마일리지제도, △공익활동정보시스템 구축, △타임뱅크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해오고 있기도 하며, 해외에서 매우 활발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플랫폼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계획법과 기본계획이 정착되기 전에 규정이 폐지되게 되었다. 아쉽게도 2022년 10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이 폐지되었다. 폐지령에는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방안에는 모든 개인이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여자'로서 상호작용하며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사회기여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2022.7, 관계부처 합동).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교육과 홍보 강화, △일감정보 제공 강화와 발굴, △사회적 예우와 활동관리,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기존 사회공익활동을 사회기여활동으로 정책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활성화 방안 내용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공익(기여) 활동을 발전시키고 지속하는데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공익활동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전개[3]되고 있으며, 조직되지 않은 자율적 시민들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새로운 공익 주체들이 등장하는 등 영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활동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회공익 활동의 주체는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NGO), 개인 등이 있다. 정부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한다. 또한, 정부 주도의 봉사활동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시민의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NGO(비정부기구)는 정부나 국제기구와 함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문제나 환경 문제 등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한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봉사하거나 개인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발휘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익활동의 범위는 기부나 자원봉사, 환경보호, 사회복지, 문화체육활동, 마을공동체사업 등 넓고 다양하다.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은 돈이나 물품 또는 시간이나 노력을 기부하여 봉사하는 활동이다. 사회복지관, 병원, 어린이집, 노인센터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환경보호 활동은 지구 환경 보호와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예방, 환경 정화, 캠페인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 활동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활동이다. 소득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돕는 사업이나 행사, 자선단체 활동 등이 있다. 문화체육활동은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즐거움을 제공하며 문화예술을 보급하는 활동이다. 공연, 전시회, 스포츠 대회 등이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익활동이 있다.

본 연구에서 공익활동의 주체는 정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NPO), 개인 등으로 포괄하되, 공익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정책연구기관과 공익활동 실행기관 간 협동연구로 정책을 활성화 하는 기반연구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이들의 활동 결과인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국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시민단체 중심의 자조모임 공익활동이 활발

3) 다양한 영역으로는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참여, 자율적인 소규모의 사회참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활동, 정책참여 활동, 온라인 기반 활동, 비공식적인 봉사활동 등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 중심 공익활동 참여에 따른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회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에게는 동기부여나 참여율 제고에 지장을 주고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해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나은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경우, 이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체계를 도입하고, 다양성, 접근성, 소통성을 갖춘 공익활동포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공익활동의 유형과 성과는 협동연구로 살펴보고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 방향과 내용을, 사회활동가(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욕구조사(4,000명 목표)를 통해 활동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선할 사회적 보상과 지원, 그리고 활성화 할 '소통형 플랫폼'의 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내용으로는 먼저 국내외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 체계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조사표를 개발하고 결과분석의 해석 자료로 그리고 방안도출에 활용한다.

둘째, 사회공익활동가와 자원봉사자의 활동 욕구 조사와 분석이다.

(조사개요)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과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조사영역) 공익활동의 참여와 지속요인,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 방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등 각각의 영역에 대한 공익활동가 욕구 파악

(조사대상)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가, 자원봉사자 약 4,000명

(조사방법) 조사기관(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시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 한국사회복지협의회(VMS),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에 소속된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설문조사 실시

셋째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자원봉사 중심 인정체계에서 NPO, 마을공동체, 비인정 자원봉사,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로의 확대, 전환을 위한 제도화 쟁점 및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살펴 본다. 세부적으로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예우(감사표시, 상장 부여 등) 확대와 경력인정 등 도입 방안, '공익활동 이력제' 및 '공익활동 마일리지(Basic Public Mileage)' 도입방안, 그리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제도 확립 방안 등이다.

넷째, 현행 자원봉사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본다. 자원봉사 관련 유사 정보제공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사회조직,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참여와 사회공헌 정보에 관한 사례 조사 및 기능과 활용도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변화를 반영한 '소통형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다섯째, 공익활동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익활동 종합정보 포탈 구축 기본 방안, 시민의 온라인 참여 확대에 따른 소통형 플랫폼 구축 방안, 공공 및 민간 공익활동 정보 연계 방안,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익활동 인정 및 보상, 이력관리체계 구축 방안,

현 자원봉사포탈 등 유사 플랫폼의 단계적 통합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본다.

여섯째, 자원봉사활동 관련 행정데이터 분석이다. 연구계획 당시 자원봉사활동의 행정데이터를 한국자원봉사센터 등으로부터 협조 받아 실증분석을 계획하였으나 개인정보가 수록된 데이터 공유의 한계로 분석할 수 없었다. 대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원봉사 활동가를 대상으로 욕구 및 실태 분석으로 보완하였다.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이다. 관련 국내외 유사 사례·연구·저서·논문, 시민사회 관련 연구·주창 기관 생산 자료, 주요국가 관련 정책자료 등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련 공익활동 인정 및 보상체계,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탈 등에 관한 사례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과 플랫폼 욕구 관련 조사표 개발과 조사의 실시이다. 조사표 개발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공익활동 관련 기관·단체(NPO,마을공동체,자원봉사,사회복지,사회적경제,도시재생 등) 관계자와 공익활동 종합정보포탈에 대한 수요자의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를 통해 조사표를 개발한다. 조사대상은 공익활동가를 대상(자원봉사자,으로 실시한다. 조사내용은 공익활동의 참여와 지속요인,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 방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등이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약 2주(`22.11.14~`22.11.30) 실시하였다.

셋째, 자문회의 개최이다. 연구 초기에는 연구방향과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를 실시하고, 연구 후기에는 조사분석 결과의 시사점 도출 및 향후 활용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실시한다. 넷째, 정기적 포럼의 운영이다.

(명　　칭)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포럼”
(운영기간) ‘22년 6월~’23. 2월(9개월)
(위　　원) 중앙 공무원, 학계·연구계, 실무계 중심의 10여명
(회의개최) 5회 실시(포럼주제에 따라 회의 횟수 변동 가능)

본 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 기관의 구성 체계는 아래와 같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 마련과 소통형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사회발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개념과 현황

02

공익활동의 개념과 사회적 인정의 쟁점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

기후 재앙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공동체적 연대에 기반을 둔 시민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의 역량 개발과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을 도모하며, 시민의 삶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시민의 사회 참여 및 공익활동은 전통적인 자원봉사에서부터 시민사회운동, 지역 풀뿌리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활동 방식도 단순 노력 봉사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적 역량에 바탕을 둔 자원 활동 등 다채롭다.

그러나 시민 공익활동이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전개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 공익활동의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참여 정책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정책이 도입되며 공공영역에서도 사회적 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 공익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 공익활동 생태계 변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게 된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익활동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공익활동 생태계에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단체, 전문적인 공익활동 조직과는 다른 특성을 띤 주체가 등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공적인 문제에 개입하지만, 그 활동 방식은 기존의 공식적인 조직 중심으로 활동했던 주체와는 매우 다르다. 가장 큰 특징은 집단적 정체성이 약하여 공식적 조직을 활동 기반으로 삼지 않으며, 개인의 의미실현에 큰 가치를 두고, '스스로를 조직'하며 유연하게 활동한다. 조직을 구성하는 때도 느슨한 네트워크, 대표 없는 운동, 수평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한다(박영선·정병순, 2019).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다양해졌다. 기존의 시민사회조직을 넘어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서 다채로운 공익활동이 시도되었으며, 온라인 공간도 활성화되었다. 시민사회운동과 당사자성이 결합하며 공익의 새로운 차원이 형성되었으며, 영리와 비영리경계가 희미해지고 행정과 시민

사회의 결합으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 전통적인 시민운동과 노동운동의 위상이 축소된 반면, 민관협치 및 사회적 경제 등 시민사회, 정부, 시장의 접경지대가 확장된 것이다(신진욱·정보영, 2022). 그 결과 한국의 공익활동 생태계는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이와 같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변화에 조응하여 공익활동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요청되는 시점에서 공익활동을 확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의 하나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가 수면으로 부상했다.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변화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며, 공익활동 행위자들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인정 논의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된 것이다. 시민사회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반응이 시민사회 활성화의 주요한 요소라는 점에서(이영숙·박영선·박소은 외, 2022, pp. 28-29),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통해 공익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이하 욕구조사)' 결과[4]에서도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꼽았다.

2.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조건 악화

공익활동의 조건이 악화하여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현실도 중요한 배경으로 꼽을 수 있다.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이를 매개로 한 행정과 시장 부문의 융합적 활동 모색,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의 부상과 활동 방식의 다양화로 공익활동 생태계가 한층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공익활동 생태계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시민사회의 기반인 시민의 자원활동[5]과 사회결사체 참여 정도[6]는 미약하며(1365자원봉사포털; 한국행정연구원, 2022), 시민사회단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가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2019년 공익활동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조사응답자의 25%는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

4)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마을공동체,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비롯하여 공익활동 참여와 지속 요인,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2주간((2022.11.14.-11.30.) 실시했다.

5)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1년 성인 인구대비 자원봉사 참여율은 3.0%이다. 전년도보다 6.5%p 하락했다.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8 에서 2022.12.20. 인출

6) 사회통합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시민의 사회단체(정당, 노동조합·사업자단체·직업조합, 종교단체, 동호회, 시민단체, 지역사회 공공모임, 동창회·향우회, 자원봉사·기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정도는 높지 않다. 동창회·향우회와 같은 사적 성격의 단체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28.8%), 시민단체 참여율은 6.5%로 가장 낮다.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 결과를 떼어 살펴보면, 더욱 낮다. 시민단체는 1.4%, 지역사회 공공모임은 1.4%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기부단체도 1.5%로 높지 않은 실정이다. 사회단체 중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종교단체(4.8%)이다. 다만 시민단체 참여율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며 2020년 2.3%에 비해 높아졌으며, 지역사회모임 참여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월평균 25만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진, 2019). 2020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7.4%가 250만 원 미만의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주 평균 노동시간은 매우 길어 4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는 64%에 달했다(이형진 외, 2020).

한국 시민사회가 몇 차례의 변곡점을 거쳐 꾸준히 성장하고 공익활동이 활성화된 이면에는 활동가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작용했다. 특히 전업활동가에 대해 '활동가들이 들인 노고와 시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사고가 만연'하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공익활동 현장에서도 젊은 활동가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동에 의존하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구조가 문제라는 비판적 의식이 있다(신진욱, 2022).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의 보조금 사업이나 민관협치 사업에서 전업 공익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간주해 사업수행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리 영역이나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경력 인정과 보상체계에서 공익활동의 전문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FGI[7]에서도 공익활동가들은 독자적인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자원봉사자, 정치지망생 혹은 사회복지사로 호명되고 있다며, 활동가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행정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여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정이 상대적으로 과소하다는 문제의식도 팽배하다. 특히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 등 다른 직업군과 비교했을 때 공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정란아, 2019b).

이와 같은 공익활동 현장의 문제적 현실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정책적 욕구가 높아진 중요한 배경 중 하나이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에서 응답자의 95.4%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결과도 공익활동 현장의 열악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의식과 대안 모색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가 부상하게 된 세 번째 배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의 내부적 노력이다. 시민사회 현장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이어온 것은 마을공동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2012년 마을공동체 정책 초기부터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이래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 역량, 보상체계 등 사회적 인정에 대한 논의와 실천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그 결과 공모사업에서 공익활동에

7)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공익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총 6회의 FGI를 실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FGI결과 분석 참고.

참여하는 주민자원에 대한 사회적 인정 도입의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이후에는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보상체계 차원을 넘는 정책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한편 시민사회 전 영역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가 확대되었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전략의 하나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괜찮은 직업군으로서 공익활동가에 대한 자리매김과 그 조건 등에 관한 주제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실태조사와 참여소득, 타임뱅크, 자격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관한 제도화 방안이 시민사회의 주요한 정책 의제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마을공동체 영역을 위시하여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정책 대화가 이루어진 결과, 서울시에서 2020년부터 '시민 및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보상 마련' 의제가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과제에 포함된 이래 충남, 충북 등의 지자체에서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사회적 인정 방안이 포함되는 진전이 있었다. 또한, 정부에서도 현재 실행 중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중 하나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아직 실질적인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편, 다양한 차원에서 정책 기반이 마련되고,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문제의식과 혁신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내부적 노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공공의 이익과 시민 공익활동

1. 공익활동의 개념

과연 공익활동이란 무엇인가? 공익활동을 가장 단순하게 풀이하자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공익활동'은 목적으로서의 공익과 수단으로서의 활동이 단조롭게 결합된 광의의 개념처럼 인식된다. 그래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창하거나 평가되는—자발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동기와 (비)일상적이며 (비)공식적인 참여를 포괄하는—모든 형태의 개인적·조직적 행위들이 공익활동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구성되는 공익활동의 담론과 현실세계에서 제도적·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공익활동의 양태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공익활동에 대한 단조로운 이해와 접근을 재고하게 만든다. 공익활동의 이론적 개념화가 일차적으로 공익의 의미를 정의하는 데 무게를 둔다면, 현실세계에서 인정되는 공익활동의 정형은 행위(자)의 동기와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측면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공익활동이 지향하는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행위양식이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쟁점이라는 사실에 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익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해당 사회의 문화적·제도적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르게 해석되며, 심지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반공익적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장 흔한 예로, 환경운동가들의 급진적인 직접행동이나 장애인들의 출근길 시위, 쓰레기 처리장 및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님비저항, 감염병 확산시기에 분출한 대규모 기후위기 저항행동 등은 이해관계와 이념적 가치판단에 따라 그들의 집합행동을 지지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반공익적 행위로 비치기 일쑤다.

게다가 현대사회에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의 구조적 복잡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행위(자)도 지속적인 분화와 재편의 기로를 경험한다. 공익활동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도구적 수단을 가리키지만 실천의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현되며, 공익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공공의 이익은 단일한 목표로 설정되지만 '공적인 것'의 규모와 범위, 무엇보다 이해관계의 집합적 연결망에 따라 상대적인 속성을 보인다. 공익활동에 내포된 이러한 공익의 추상성과 상대성, 행위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공익활동의 실천적 현상과 이론적 관념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어렵다.

한편, 행정이 정의하는 제도화된 공익활동의 협애한 범주도 이론과 현실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특히, 예산지원과 인증관리, 법률과 조례 등에 근거해 국가중심적으로 정형화된 제도영역의 공익활동은 다원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시민사회에서 자활력을 가진 다양한 공익적 행위들을 더 이상 넓게 사유하지 못하도록 제약하고 길들이는 외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행정권력에 의해 포획될 경우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규범은 국가가 민간에 위탁하는 외주화된 국가공익사업의 성격을 갖게 된다. 결국,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국가관리의 대상으로 변질되고 경직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익활동을 정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난맥상을 포착할 수 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과정의 결핍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및 인정의 규범을 문화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로 요약된다. 모두가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로서 공익'의 의미는 사회적·학문적 합의가 필요한 논쟁영역으로 남아 있다.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확한 표준을 개발하고 공익 실현의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인 공론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다(Long, 1991; Feintuck, 2004; King, Chilton, and Roberts, 2010; Bezemek and Dumbrovsky, 2020). 이런 점에서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왜 공익활동인가'에 대한 근본적이고 성찰적인 문제제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이미 간파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랜 기간에 걸쳐 '공익'의 중요성이 다양한 차원에서 강조되어 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인간존중의 도덕법칙을 중요한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을 수단이기보다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오늘날, 그러한 원칙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영역은 국가나 시장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내접한 공동체들이라는 점이 사회학적 관찰을 통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Etzioni, 2000, p. 12). 여기서 공익활동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라는 권리와 사회적 책임이 공동체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잠재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맥락에서 공익활동은 시민사회의 문화적 연대와 공동체적 결속을 추동하는 '공공의 힘'으로 발산한다. 특히 사회나 공동체가 재난 상황과 같은 경제적·문화적 위험에 처했을 때 정상적인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 일종의 회복탄력성을 불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적 자원을 공공의 (집합적) 힘으로 변형시키는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을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쟁점들이 공익활동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을 명징하게 해석하는 데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 따라서 공익활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이 요청된다.

2. 공공의 이익과 시민 공익활동의 이해

학문적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을 이해하는 여러 갈래의 접근방법과 해석틀이 있다. 대표적으로 철학에서는 주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상의 계보에 따라 공익의 본질에 대한 관념을 발전시켰고, 법학은 도덕적 규범이나 법·제도를 준거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공익이 아닌 것들에 대한 규정력을 넓혀왔다. 여기에 정치학은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행정학은 효과적인 공공정책을 위한 제도적 규제 장치의 적합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공익의 규범과 기준을 탐구했다. 아울러 경제학은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구조화된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익과 사익이 합리적 긴장 또는 균형을 이루는 법칙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사회학은 공공성에 기여하는 공동체, 사회자본, 신뢰, 시민참여 등의 조건과 맥락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공익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익은 사익의 정반대 개념으로 단순하게 설정되거나 공공성 또는 공동선 같이 더 모호하고 추상적인 관념에 투영돼 명료하게 정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공익은 '-적'이라는 접미사로 확장된 광범위한 맥락을 형성해갔다. 특히 '공익적'을 강조하며 구현된 다양한 활동과 제도적 실험들이 사적 영역의 공공화를 촉진하며 '공익적=비영리적'이라는 가치의 등가관계를 강화했다. 결국, 이 같은 모호성과 추상성에 기인하여 혼란스러운 개념이 된 '공익'은 조작적 정의나 선택적 수용을 선행하지 않고선 이데올로기의 도구적 언어로 번역되기 쉬운, 특정 가치나 이념을 정당화하는 데 동원되는 일종의 프레임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공익은 사회적 공존을 위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최상의 가치이자 행위의 질서를 공동체 지향적으로 유인하는 가장 이상적인 동기로 간주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익은 자기완결성을 갖지 않는다. 즉 독자적인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현실에 바탕을 둔 공공의 이익이란 저마다 가치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구체적인 실천과도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공익인가(가치의 성격), 누구에 의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공익인가(주체와 대상), 어떻게 구현되는가(활동의 양식)의 문제가 구체적인 쟁점에서 동원된 다양한 공익들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드러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민 공익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들을 차분하게 때론 논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민 공익활동의 이상형을 시민이 추구

하는 공공의 이익을 시민 스스로 성취해가는 노력에서 찾더라도, 그것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양태는 다양하며 언제나 첨예한 쟁점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들 스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 사회적 활동들이 도처에서 다방면으로 펼쳐진다. 이른바 '시민 공익활동'의 사례들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모금활동, 각종 재난상황에서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인간의 파괴적 이기심에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고자 하는 환경활동, 자본의 욕망에 잠식되어 가는 삶의 터전을 주체적으로 방어하려는 공동체 활동, 행정권력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빚어내는 폐해들을 막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감시활동 등이 있다. 이러한 시민 공익활동은 공익을 지향하는 또는 반공익적 상태를 극복하려는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들을 포괄한다. 그리고 이들 공익활동에는 공동선(common good)이라는—다분히 공화주의적인 이상을 함축한—최소한의 가치가 암묵적으로 내장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논의에서 공익의 개념과 동의어로 취급하는 '공동선' 역시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대단히 모호한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민주주의를 둘러싸고 각축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정당성 논리에 제각기 공동선이라는 같은 언어가 자리한다. 이데올로기에 동원되는 공동선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과 악'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명확한 답안을 제공하며, 정치세력은 공동선이라는 절대적 대의를 구심으로 일반의지 또는 인민의 의지를 조직하고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공동선이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Schumpeter, 2011, p. 451).[8]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조건에서 공동선이나 공익의 아이디어는 지배집단의 이익과 다수자들의 이해를 대표하기 쉽기 때문에 흔히 '배제와 침묵의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도사리고 있다(Young, 2020, pp. 61-62).[9] 그렇다고 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고 때로는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이해관계와 '좋은 것'들을 공익 또는 공동선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처럼 시민들이 추구하는 공익 또는 공동선은 사회 내에서 고유하게 작동하는 절대적이고

8) 슘페터는 인민들이 공동선 이외의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공동선이 서로 다른 의미로 구체화된다는 점에서 유일한 공동선의 존재를 거부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평가에 관한 공리주의자의 편협한 견해"가 자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공리주의자의 경제적 만족의 극대화와 같은 충분할 정도로 확정적인 공공선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개별 쟁점들에 대한 동등하게 확정적인 대답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록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원하지만 '예방접종'과 '정관수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예시를 들었다(Schumpeter, 2011, p. 452).

9) 영은 이견 없음이 단일한 공동선이라고 치부하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태도가 오히려 "공동선을 보존하기 위해 어려운 이슈를 기피함을 두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갈등과 불일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민주적 실천의 하나로 여기며 의연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Young, 2020, p. 64). 그런 점에서 영은 공동선보다 차이를 노정시키는 환경에서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개방된 공적 대화를 통해 공동선과 공익에 호소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선한 규범의 이미지로 환원하거나 축소될 수 없다.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공익은 현실에서 경합(contention)의 정치를 통해 구성되며 지지와 동의의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은 시민사회의 규범체계가 헤게모니적으로 재구성되는 정치과정의 동역학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공동선과 공익의 관념이 서로 또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나 겪게 되는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쟁점을 이론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어야 한다.

제3절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

1.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개념

대부분의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인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합목적성과 참여의 동기를 공공의 이익이라는 의미에서 찾는다. 다시 말해, 공익의 차원에서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들여가며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기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공익은 보통 '나눔', '연대', '포용' 등의 공동체적 협력에 기반을 둔 이타적인 '선량함' 혹은 선한 시민성(good citizenship)으로 다뤄진다. 실제로 공익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지평에는 시민의 도덕적 순수성이 '선량함'의 실천으로 발현되는 하나의 이상형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시민들의 공익활동은 선량한 의지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겪게 되는 방법론적 오류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 특히 외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그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도 도덕성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10]

그러나 공익활동 그 자체를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공익활동은 '사회적 인정'을 통해 그 의미와 가치를 구현한다. 그래서 시민들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의 보편적 이익과 결부되지 않는다고 부정될 경우, 그들의 '공익'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접합되어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균열지점이 되거나 특수이익을 옹호하는 정치적 구호처럼 폄훼되기 쉽다. 반면, 시민 공익활동이 모두를 위해,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것'으로 널리 인정될 때, 그것은 호혜성이 강한 사회적 연대와 사회통합을 견인하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공익활동은 사회적 인정의 지평에서 특수성이 아닌 보편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배타성을 호혜성으로 전화하는 사회적 기술로, 사회갈등의 요인에서 사회적 연대를 견인하는 실질적인 힘으로 그 가치를 계속해서 입증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10) 이런 점에서 공익을 추구하려는 시민들의 활동, 특히 시민운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중한 잣대가 적용되기도 한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 공익활동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 자원운용의 투명성, 참여동기의 도덕성, 무엇보다 정치행위의 중립성까지 요구된다. 이러한 시민 공익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요구의 근저에는 공익의 내용과 그것을 추구하는 형식에 대해 양심에 기초한 도덕적 순수성과 보편윤리의 문제로 접근하려는 인식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있다. 첫째, '가치의 보편성' 측면에서 공익활동이 추구하는 이익이나 혜택의 효용범위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거나 그러한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한다. 이는 공익의 상대성을 최소화하면서 보편성을 최대화하는 것으로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익(公益, public interest)과 구성원들 간의 공통된 이익을 가리키는 공익(共益, common interest)의 가치질서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에 토대를 둔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다양한 정체성이나 지역적, 정치적, 상황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좁은 범위의 작은 공익들이 폭넓게 합의된 사회 전체의 넓은 공익과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에서 '민주적 공익성'의 규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이 쇠락한다면, 공익활동은 국가나 행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하여 공익활동은 '자율성 없는 시민사회'로 외주화되어 실행되는 일종의 관변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되며, 결국에는 국가와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종속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공익의 질서로 불러들이면서 가치의 보편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공익성의 규준을 자율적으로 확립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치적 역량의 토대 위에서 공익활동의 폭넓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인정의 조건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해서는 '관계의 호혜성' 측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촉진하고 재생산하는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폭넓게 인정되는 공익활동은 언제나 공동체적 신뢰를 추동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양식으로 다뤄진다. 기부활동이나 자원봉사에 나선 개인들, 마을공동체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기여에 동참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에 가입한 회원들 모두가—비록 호혜성의 지향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공익활동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적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로부터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결속을 이끌어내며, 미시적으로는 양질의 사회자본을 증대시켜 구성원들 간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을 촉매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익활동처럼 성원들 간의 공동체적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노력들이 갈수록 위축해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신뢰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신뢰와 사회자본이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암울한 진단과 연동된 것이며, 그 구조적 요인으로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와 불평등에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자본의 압력과 신뢰를 잃은 제도정치 사이에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제한된 운신의 폭을 넓히면서 공동체적 신뢰를 복원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셋째, ‘행위의 연대성’ 측면에서 계급, 이념, 젠더, 세대, 지역 등 (비)가시적으로 구획된 행위(자)의 경계를 허무는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 여기서 연대는 사회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정의된 행동규범에 바탕을 둔 자원의 규모와 범위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 따라서 도덕적 연대는 시민사회에서 개인들에게 내면화된 성찰과 공감을 전략적인 행위의 레퍼토리로 모아내 표출하게 만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더 많고 다양한 도덕 자원들이 공익활동의 네트워크로 동원될 때 활성화된다. 앞서 살펴본 공익활동의 입체적인 다면체를 구성하는 여러 인정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정의된 행동규범을 함께하거나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협력의 과정, 즉 도덕적 연대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도덕적 연대의 이상형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일은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 도덕적 연대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와 범위가 ‘사회적 올바름(social correctness)’[11]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공존의 원칙에 바탕을 둔다고 할 때, 최근 들어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개인화와 탈사회화의 경향이 사회적 올바름의 규정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 따른 공정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사회적 공존의 원칙을 승패에 따른 계급적 위계의 틀에 가두는 신자유주의적 개인화는 도덕적 연대를 추동하는 호혜적 상호작용을 가로막는다. 또한, 공동체로부터 자의적으로 이탈하거나 구조적으로 밀려난 개인들이 사회적 무관심의 영역으로 깊숙이 숨어들게 하는 탈사회화의 경향도 호혜적 상호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만들어 도덕적 연대의 가능성을 위축시킨다. 여기에 돌봄, 주거, 교육을 중심으로 한 복지담론마저 계층적·정치적 양극화의 질서로 빠르게 편입됨에 따라 공존을 위한 사회적 원칙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조건에서 시민사회의 도덕적 연대는 재난 희생자나 극한의 생존위기에 몰린 빈곤층을 겨냥한 최소한의 구호활동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요컨대, 공익활동은 가치의 보편성, 관계의 호혜성, 행위의 연대성 측면에서 도출된 ‘민주적 공익성’, ‘공동체적 신뢰’, ‘도덕적 연대’를 구현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의 필요조건을 구성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규준이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야 하는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데 함의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세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왜 난맥상을 이룰 수밖에 없는지 그 주요한 쟁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

11) 이 연구에서 사회적 올바름(SC: Social Correctness)은 진보주의의 역사적 궤적에서 논쟁적인 의미로 변형된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의 개념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갖는 서술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오늘날 정치적 올바름은 주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향한 차별적인 언어와 행동에 반대해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운동 혹은 표현, 가치, 정체성의 문화정치를 의미한다(Fairclouch, 2003; 이종일, 2016; 강준만, 2022). 이러한 정치적 올바름이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논쟁을 수반하는 사회변동 혹은 구조변화의 방향성과 결부된 개념이라면, 사회적 올바름은 공동체로서의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호혜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선 혹은 공익을 이루고자 하는 공존의 원칙을 의미한다.

2. 공익활동의 제도화와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을 정의하는 가장 일차원적이며 공식적인 방법은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공익활동은 국가공공성의 결핍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측면이 강하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은 제도와 정책으로 구현되는 국가공공성이 권위주의적으로 과잉 정치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저항적 공익활동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위로부터의 국가중심적인 관료적·보수적 공익관이 더 많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익활동을 관변적 공익활동으로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공익활동은 크게 기능주의적 시각과 갈등론적 시각,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국가중심적 관점과 시민사회의 관점 등에서 각기 다른 이상형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을 정의하는 접근법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서 노정된 공익을 공동의 목표로 한 상호작용의 영역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공익활동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규준을 제공하며,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규명하는 데 이롭다.

국가의 관점에서 공익활동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공익활동의 제도적 유형과 내용을 규정한다.[12] 이는 반대로 정부의 인정범위 바깥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익활동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정부지원 공익활동'과 '시민자율 공익활동'으로 구분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적 준거를 제공한다. 특히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국가의 관점에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유형과 내용을 규정하는 일종의 분류체계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어 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인정 범위를 가늠하는 데 유용하다.

12) 물론 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는데,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의 절차와 기능이 없이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표 2-1〉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분류체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익사업 유형	공익활동 내용	주요 대상 및 범위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 개선 • 다문화.탈북자 생활적응 지원, 노인층 스마트 교육 • 지역공동체 및 민생경제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약자 고용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일용직 고용안정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
사회복지	• 여성.노인.아동.장애인.다문화 등 사회적 복지 증진 • 치매 예방교육 지원, 고령자.느린학습자 학습 지원 • 소외계층 복지.인권 증진 • 자원봉사(의료, 재능, 사회봉사 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외계층
시민사회	• 여성 등 사회참여 확대, 청렴.공정사회 조성 •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민주시민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 전통문화 계승발전, 융.복합형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여성, 청소년, 활동가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 나무 식재, 일회용품 생산 저감 및 재활용 활성화 활동, 탄소중립.온실가스 감축 관련 교육 및 캠페인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 •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 •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 에너지.자원절약 생활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줄이기	국가적-지구적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 국가안보, 국방, 국가보훈, 국토보전 • 평화통일 기반 구축, 세계평화 증진 활동 • 국경일 의미 알리기, 나라사랑 활동	국가적
사회안전	• 재해.재난 예방 및 구조.구호활동 • 안전사고 예방, 생명존중 확산 •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 • 지역사회의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	국가적
국제교류협력	• 국제연대 협력, 재외동포 및 해외 교류 • 국제적 문화.체육.여성.청소년 교류 활동 • 글로벌 이슈 공동대응	지구적

자료: 행정안전부(2022a).

〈표 2-1〉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제도적 분류체계로 재해석하면서 공익활동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한 것이다. 공익활동의 제도적 분류체계에서 공익사업 유형은 해마다 혹은 정부마다 용어와 항목이 조금씩 변경되지만, 2022년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대체로 '사회통합', '사회복지', '시민사회',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

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이 공익사업 유형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고 있다. 사회통합과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의 내용은 주로 사회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여성, 청소년[13], 활동가를 중심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나머지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평화증진 및 국가안보, 사회안전, 국제교류협력의 차원에서는 특정 계층이나 집단 및 세대를 공익활동의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가적-지구적 수준에서 공익활동 범주를 설정하여 보다 확대된 공익의 보편성을 공익활동의 세부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국가공공성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수행해야 할 다양한 내용의 공익사업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에 위탁되는 형식을 띤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통합, 사회복지, 국가안보, 사회안전 등 국가의 공적 역할에 해당하는 부분이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으로 충당되고 있다. 둘째, 대내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 내용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선별적이고 때로는 시혜적인 성격의 공익성이 강조되는 경향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내용이 국가에 의해 주어진 공익활동의 환경과 대상에 종속되어 사회경제적 영역을 벗어나 확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지원을 통한 인정'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이 위로부터 제도화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제도화는 프로그램화된 환경에서 수행 주체들의 자율성을 잠식해 활동반경이 제한되거나 관료적 전문가주의의 위험을 낳을 수도 있다.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 시민사회에 체화된 문화와 규범의 공익적 속성을 중요한 가치로 평가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를 함축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의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이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명목으로 시민사회의 자율적 공익활동에 미칠 부작용을 경계하면서 공익활동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함께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다양성과 혼종성을 더해가고 있는 공익활동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범위가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적 자원을 공공의 힘으로 변형시키는 적극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노력과 부합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과 합의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3) 청소년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정(recognition)체계는 4개 차원, 즉 "개인수준", "가정수준", "학교수준", 그리고 "단체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국제 비교론적 함의

1. 복지혼합 모형을 통해 본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국가별로 크고 작은 차이를 나타내는 시민사회와 제3섹터의 사회구성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의 다양한 유형을 위치시키기 위해 섹터 간 구분과 혼합 영역을 제시하는 페스토프(Pestoff)의 이론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는 공익활동이 어느 영역에서 형성되고 위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시민사회 및 제3섹터를 연구하는 유럽의 학자들은 복지혼합에 초점을 둔 복지삼각모형을 제시했다. 그 가운데 드포니와 페스토크(Defourny and Pestoff, 2008)는 국가, 시장, 커뮤니티의 3자 축에 근거한 삼각형 모형을 제시하면서 유럽의 제3섹터를 특징지었다. 본 모델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혼합형 조직의 유형과 위치를 보여주는데, 사회적 기업 및사회적 경제 내의 다양한 조직, 행위자, 커뮤니티를 표시하는 데 유용하게 인용되고 있다(Defourny & Pestoff, 2008).

[그림 2-1] 사회복지 및 섹터의 혼합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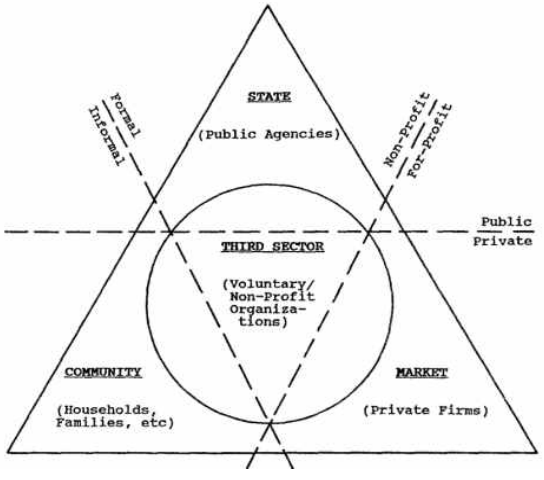

자료: Pestoff (1988 & 2005); Defourny & Pestoff(2008)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복지혼합 모형은 사회 운영에 관계되는 커뮤니티, 시장, 국가 및 결사체라는 네 가지 주요 사회 제도들의 다양성을 드러낸다(Streeck & Schmitter, 1995). 물론 이러한 제도적 구분과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모형에는 세 개의 구분선이 존재하는데,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에 각국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변화가 생기기도 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관계 또한 거시경제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경험적 수준에서 복지혼합 모형은 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영역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들 역할이 시간의 추이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조명하는데 유용하다(Evers, 1993). 원안에 표시된 행위자들은 공적·사적, 비영리·영리, 공식·비공식성의 정도의 기준에 따라 구성된 제3섹터의 구성원으로 위치하게 된다(Van Der Meer, Te Grotenhuis, & Scheelers, 2009). 여기서 제3섹터 조직들이 다른 사회의 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3섹터 조직들은 혼성성(hybridity)을 보이며, 제3섹터 조직이 다른 제도와 중첩되는 영역에 놓일 경우 이러한 혼성성은 보다 증대된다. 제3섹터 조직과 국가 사이의 중첩 관계에 있는 조직의 예로,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 혹은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3섹터 협약을 들 수 있다. 제3섹터 조직과 시장 사이에 중첩된 영역의 경우, 제3섹터 기업이 시장에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자본주의 기업의 전형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음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주주들이 자본수익의 일부만을 받게 되거나, 의사결정권이 구성원 일인당 한 표라는 민주적 운영규칙에 기반해 나누어지게 되기도 한다.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조직이 이러한 유형을 보여준다(Pestoff, 1991, p. 2014). 그렇다면 복지혼합 모형 내지는 조직간 혼성성에 관한 모델이 어떻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라는 논의와 연결되는가?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recognition)'하고 '보상(reward)'한다는 개념이 지닌 혼성성 및 중첩성의 측면에 주목한다. 공익활동은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공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이들 활동은 커뮤니티의 영역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이들 공적 활동은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경제적 보상에 준하는 비물질적·사회적 인정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적인 경계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취지는 이들 영역 간의 중첩성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마을공동체는 커뮤니티와 상호 호혜성(mutual reciprocity)에 기반해 형성되고 운영되지만, 이를 운영하는 로직은 마을단위 준화폐 및 크레딧의 유통 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공식적 수준의 로직이 함께 결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모델을 형성·유지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사회적 기업들의 경우, 상당수의 비영리 조직들이 기존의 자선에 기반한 모델을 넘어서서 수입모델을 개발해 운영하거나 시장가치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활용하여 보다 혁신적인 비영리 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러한 혼성성을 잘 보여준다. 또 다른 일례로, 자원

봉사자 관리를 전통적인 자선과 선의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공식적인 인증 체계와 결합하거나 금전적, 비금전적 보상과 연계하는 것 또한 본 삼각 모형에서 공공성과 커뮤니티의 가치를 위해 행해지는 개인차원의 자원봉사 행위에 공식성·시장성이라는 기제가 추가됨을 뜻하고, 이는 중첩적 혼성성을 이루게 됨을 의미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로 다루고 있는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의 세부 주제들이 공익활동과 맞닿는 지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 복지혼합 모형의 혼성성 또는 중첩성은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2. 공익활동과 비영리 부문의 주요 추동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서 제3섹터 및 비영리 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추동력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기본적으로 비영리 부문의 구조와 동학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부문에 관한 비교연구로 잘 알려진 레스터 살라몬(Salamon, 2012)은 비영리 섹터의 변화와 진화를 이끄는 추동력을 네 가지로 짚는다. 자원봉사자주의(voluntarism),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 시민활동가주의(civic activism), 상업주의(commercialism)가 그것이다. 이는 공익활동의 내용구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살라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분류가 되었다. 첫째, 비영리조직의 주요 역할과 목적. 이를 통해 비영리조직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비영리조직의 주요 전략. 이는 비영리조직이 자원을 활용해 어떻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지 파악한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관리 스타일. 비영리조직의 행정관리상의 특징과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에 대해 파악한다. 넷째, 비영리조직의 준거집단. 비영리조직이 이해관계자 중에 주로 참고하고 고려하는 대상을 일컫는다. 다섯째, 자원기반. 비영리조직의 독특한 지향성과 관리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 및 자원의 출처와 흐름을 일컫는다.

우선, 자원봉사자주의는 개인 수준에서 존재하는 가치의 부족분을 극복하고 채우고, 개인 스스로를 변화시켜가며, 개인·사회 수준에 존재하는 상처와 고통을 줄이려는 개인 차원의 기여를 의미한다. 자원봉사자주의에서 쓰는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치를 배양하고 키우고,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며, 개인이 스스로 거듭나도록 돕거나, 스스로 돕도록 한다. 특정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주의는 규범적(normative)이고, 온정주의적(paternalistic)으로 돌보는 스타일이며, 의도와 관심에 맞게 특화하거나(particularistic) 혹은 총체적(holistic)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주요 근거그룹으로는 기부자, 자원봉사자 회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직의 구조는 유동적(fluid)이거나 과제에 맞추어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관리스타일은 비공식적, 자원봉사자 위주이다. 자원의 기반은 자원봉사인력, 개인 단위의 기부이다.

둘째, 전문가주의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리적, 교육적, 정신적인 부족분을 충족하고 극복하며, 전문화된 치료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쓰인다. 의료적 접근, 서비스 제공, 서비스를 권리로 간주, 특화되고 전문화된 지원 제공 등이다. 스타일은 프로그램 위주이고, 기술 중심이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보편적으로 접근하고, 비종교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근거 그룹으로는 직원, 전문가, 클라이언트 등 전문서비스와 인력에 기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직구조로는 수직적이고 위계에 기반하거나, 전문 분야에 따라 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리 형태는 관료제에 기반하고, 공식적이며, 규칙 중심이다. 자원의 기반은 정부지원, 서비스 요금, 기관 후원자 등이다.

셋째, 시민활동가주의의 경우 권력구조를 바꾸고, 근본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 등을 목표로 한다. 전략으로는 자산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조직이 지닌 강점을 살려 시민운동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옹호자 및 주창자(advocacy)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며, 시민 개개인을 조직화하거나 리더십을 배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미디어나 엘리트와의 네트워크 연계를 활용하는 전략을 쓴다. 참여주의적, 대항적, 혹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근거 그룹으로는 시민들, 커뮤니티의 자산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직 구조로는 기능 단위에 기반해 구성되며(modular), 연합된 집단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자원기반에는 자선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원 등이 해당된다.

넷째, 상업주의의 경우 시장 수단을 활용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효율적으로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략으로는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고, 시장의 틈새를 찾아내어 공략하며, 지속가능한 수입 구조를 만들고, 결과를 측정해 조직관리 및 목표달성에 활용한다. 기업가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성을 중시하고 이윤추구형이며, 결과 측정을 중시한다. 주요 근거 그룹에는 기업 후원자, 고객, 기업가 등이 있다. 조직의 구조는 결과물 산출 중심이고, 네트워크형 등 유연성을 갖춘 구조이다. 관리 스타일은 대응성이 높고, 이윤에 초점을 두며, 규율 중심으로 관리된다. 자원 기반으로는 벤처 필란트로피, 판매수입, 바우처 등이 있다.

〈표 2-2〉 비영리조직 관리에 있어서 네 가지 추동력

주요 특징	자원봉사자주의 Voluntarism	전문가주의 Professionalism	시민활동가주의 Civic activism	상업주의 Commercialism
역할/목표 Role/ Objectives	가치상실 부채 문제 극복 (Overcome value deficits) 개인을 변화시키기 (Transform individuals) 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Relieve suffering)	물리적, 교육적, 심리적 부족 극복 (Overcome physical, educational, or psychological deficits) 전문치료 제공 (Offer treatments)	권력구조의 변화 (Change structures of power) 기초정책변화 (Change basic policies)	사회적목적을 위한 시장수단 활용 (Use market means for social ends) 효율적으로 사회적 필요 충족(Efficiently address social needs)
전략 Strategy	가치를 가르침 (Inculcate values) 개인상담 (Counseling) 개인의 갱신 (Personal renewal) 자조 (Self-help) 일시적 물적 지원 (Temporary material assistance)	의료적 모델 (Medical model) 서비스 전달 (Deliver services) 권리로서 서비스제공 확립 (Establish services as rights) 특화된 전문보조 (Specialized professional assistance)	자산모형 (Asset model) 옹호전략 (Advocacy strategy) 시민조직화 (Organize citizens) 리더십쌓기 (build leadership) 미디어 및 엘리트 접근전략 (Access media elites)	사회적기업가 육성(Promote social entrepreneurs) 시장틈새전략(Locate market niches) 지속가능수입추구(Pursue self-sustaining income) 결과측정 (Measure results)
스타일 Style	영적/정신적/목회적 (Pastoral) 규범적 (Normative) 온정주의적 (Paternalism) 특정적(Particularistic) 총체적/전인적 (Holistic)	계획적 (Programmatic) 전문가적 (Technocratic) 처방적 (Therapeutic) 보편적 (Universalistic) 현실적 (Secular)	참여적(Participatory) 대항주의적(Confrontational) 비판적(Critical)	기업가형 (Entrepreneurial) 효율성지향 (Efficiency oriented) 영리중심 (Profit focused) 결과측정지향 (Measurement driven)
조직구조 Organizational structure	유동적 (Fluid) 임시방편적 (Ad hoc)	위계적 (Hierarchical) 구획화 (Segmented)	기능단위형 (Modular) 연합형 (Federated Alliances)	산출물 중심 (Product focused) 네트워크형 (Networked) 유연화 (Flexible)
관리스타일 Management Style	비공식적 (Informal) 자원봉사자 우위적 (Volunteer dominant) 정신적 (Spiritual)	관료제적 (Bureaucratic) 공식적 (Formal) 규칙기반 (Rule-bound)	합의형(Consensual) 협력형(Collaborative) 참여형(Participatory)	대응형 (Responsive) 기초수익중심 (Bottom-line focused) 규율적(Disciplined)
주요준거 집단 Principal Reference Group(s)	기부자 (Donors) 자원봉사자 (volunteers) 회원 (Members)	직원(Staff) 전문직종 (Profession) 클라이언트(Clients)	시민(Citizens) 지역사회 자산(Community assets)	기업기부 (Corporate donors) 고객 (Customers) 기업가 (Entrepreneurs)
자원기반 Resource Base	자원봉사인력 (Voluntarism) 개인단위 기부 (Individual philanthropy)	정부지원 (Government) 사용료 (Fees) 기관기부(Institutional philanthropy)	자선기부 (Philanthropy) 자원봉사자원 (Voluntarism) 정부지원 (Government)	벤처 필란트로피(Venture philanthropy) 판매수입(Sales) 바우처(Vouchers)

자료: Salamon(2012)

이러한 네 가지 추동력은 비영리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힘으로서, 이를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보상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제도적 요인들을 선별할 수 있다. 가령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관련된 수단을 효과적으로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이 하나의 추동력이 아니라 복수의 추동력으로 연계될 경우 이를 어떻게 결합하고 조합할지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데 시사점을 줄 것이다.

3. 시사점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사회 각 영역의 논리들이 결합하고 중첩되는 혼성성 혹은 혼합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마을공동체는 상호호혜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이며,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공익활동을 마을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과정은 비공식적인 행위가 마을공동체 범주를 넘어서서 전체 사회적으로 공식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마을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화폐에 기반해 이루어지게 하여 거래비용을 줄이고, 자본성의 관점에서 확장을 도모하는 경우로도 이해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비영리조직의 경우 법제상 등록 여부 및 임의성 여부에 따라 공식 및 비공식성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편 공식성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 조직은 비영리성이라는 특징을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여기서 비영리성이란, 조직 활동을 통한 수익이 조직의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수입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이윤의 배분금지 제약이라는 측면을 뜻한다(Hansmann, 1980). 비영리조직 관리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과 연결 지을 경우, 비영리단체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구조화하고, 자본 및 수익 측면의 자료를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인정을 시장에 준하는 기제를 통해 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활동 및 기여를 공공성의 확장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장려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공익활동 인정은 비영리조직의 공공성 및 시장성 확장을 통해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기여를 더 촉진하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은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공식화된 제도 및 정책에서 인정하고 이를 금전적 혹은 비금전적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과정이다. 본 과정을 세 영역의 논리의 혼합이라는 차원에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이 경우 자원봉사의 기여를 공공성의 시각에서 공식화하여 이를 사회제도적 수준에서 인정하는 것이 그 하나의 측면이다.

다른 측면은 자원봉사자의 비금전적 기여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자원봉사자에게 자본적 이익 혹은 이에 준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자원봉사자가 기여한 시간에 비례하여 크레딧을 적립하여 이를 화폐 내지는 경력에 준하여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자본의 축적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섹터 간 혼성/혼합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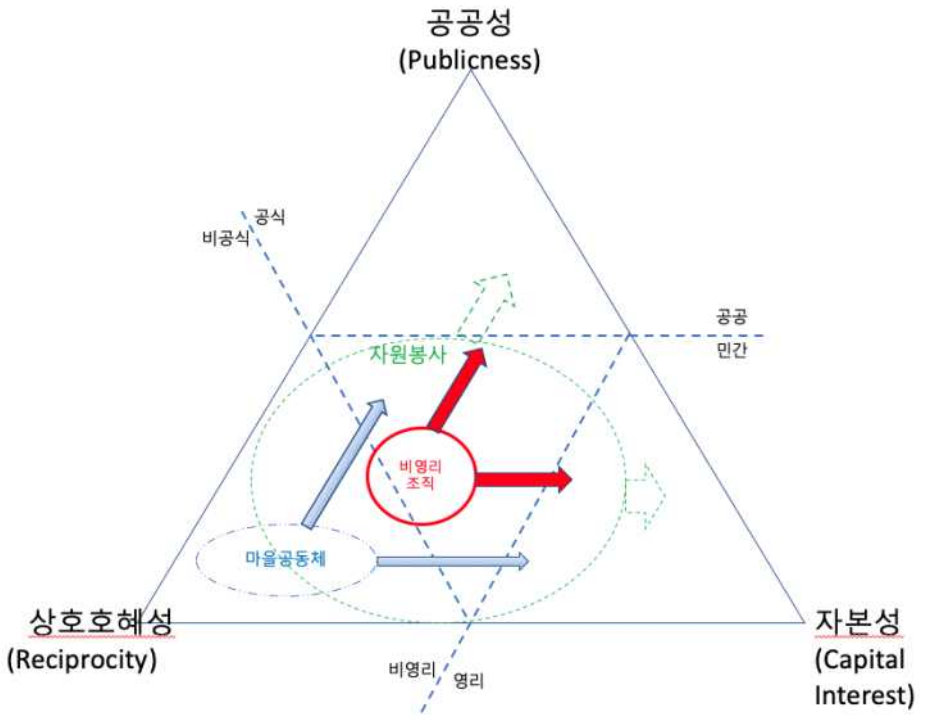

자료: Pestoff(1988 & 2005)의 이론틀을 적용하여 저자 작성

사회추동력 이론에서 검토하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이들 네 가지 추동력과 모두 일정 부분 연결되지만, 이중 전문가주의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 전문가주의는 인적자원과 행정 능력이 세분화되고 강화되는 것을 목적 및 전략으로 하는 관리주의를 의미한다. 전문가주의는 비영리 섹터 및 시민사회 분야의 제도화를 촉진하고, 법제 및 정책을 통해 관리 과정을 구조화 내지는 공식화한다. 전문가주의에서 고려되는 주요 이해관계자에는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 전문 종사자, 전문가 협회, 전문가 사회 및 길드 조직의 형성, 인증 관련 조직의 등장,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전문 지식을 지닌 클라이언트, 성과 기준을 결정하는 산업 내 주요 그룹, 정부 내 자금 지원 조직, 기관 기부자 등이다.

전문가주의가 사회의 공익활동 보상을 공식화하고 이를 법제화하려는 취지와 보다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유는 그것이 지향하는 전문성 가치가 공익활동의 표준화된 측정과 인정이라는 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여분에 대해 사회적 수준에서 계량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 사항과 과정이 비영리 부문 및 제3섹터의 전문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미국에서 국가봉사신탁 교육상 수상에 따른 상금액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객관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상근 봉사에 대한 교육상 상금 액수를 준거 기준이 될 만한 펠보조금(Pell Grant) 액수의 최대금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한 부분, 봉사시간에 비례해 상금 액수를 조정하는 부분, 봉사자의 연령/학령 기준에 따라 혜택의 가치를 유연화하고 극대화하는 부분 등은 전문화, 법제화, 공식화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예이다.

한편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 및 인정은 시민활동가주의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하는 근본적 목표가 시민들로 하여금 공익 및 공공가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관여하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자원봉사활동의 시민성, 비영리조직의 사회적 기여, 마을공동체의 상호신뢰 및 사회적 자본 축적 등과 맥이 닿아 있다. 결국 공익활동 보상을 하는 이유는 시민활동가주의의 근본 덕목과 자산을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사회 내 시민들 개개인의 공동체 가치 지향, 비영리조직의 사회변화 추구를 위한 시민운동성, 지역사회의 신뢰 등의 자산 등을 통해 시민활동가주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활동가주의 주요 근거 그룹으로 시민들 및 커뮤니티의 자산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자원봉사의 주체 및 마을공동체의 기반과 맞닿아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이중 목표 중의 하나인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 및 사회적 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한데,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비영리조직의 사회공공성 기여와도 맞물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 및 인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자원봉사자주의와 연계된다.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취지는 자원봉사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속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기존 자원봉사자 관리의 주요 특징을 보면 비공식적이고, 이슈 중심으로 특화되거나, 개인 단위의 이타적 관심에 의존하는 등으로 관리되어 왔는데,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노력은 이러한 자원봉사주의의 경향을 완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이를 지속가능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이 상업주의와 연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의 핵심은 결국 금전적 보상 혹은 금전적 보상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

상업주의의 목표가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시장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인데, 공익활동에 대한 금전적/물질적 보상이 바로 이러한 예가 된다. 이 경우 과연 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상업주의가 그러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효율성이 중심이고, 결과측정 중심인 점 또한 상업주의와 통하는 부분이다.

제5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1. 사회적 인정체계의 기준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에 일정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 가치는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에 대한 사회적 반응 또는 피드백을 통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들과 등가적 교환이 가능하다. 다만,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의 노력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산출한다고 했을 때, 그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방법론과 표준화의 이슈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문제로 남게 된다. 다시 말해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범위를 일차원적으로 규정하는 요인은 제도화의 수준에 있다.

공익활동 인정의 제도화 수준은 도덕적 인정(moral recognition)에서 제도적 인정(institutional recognition)에 이르는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도덕적 인정은 공익활동 참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해서 문화적 차원에서 규범적 이해와 정서적 동조를 표현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부자, 자원봉사자, 마을활동가, 공익활동가 등의 사회적 노력과 그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거나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비공식적인 문화적 반응들이 도덕적 인정의 범주를 구성한다.

이러한 도덕적 인정의 토대 위에서 제도적 인정이 활성화된다. 제도적 인정은 공익활동 참가자들의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피드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포상에서부터 공익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공식적인 피드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도적 인정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도덕적 인정의 문화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도덕적 인정의 상징적·문화적 표현방법이 다양할수록 제도적 인정을 통한 공익활동의 가치실현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다른 한편,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범위를 규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보상의 차원이 있다.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자원을 어떤 가치로 환산해 보상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정을 가치의 문제로 이해하는 궁극적인 접근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서 보상은 크게 탈물질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구분해 이해할 수 있다. 탈물질적 가치 보상이 공익활동에 대한 노력을 비물질적인 가치로

환산해 접근하는 것이라면, 물질적 가치 보상은 경제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에 초점을 둔 접근에 기초한다.

예를 들어, 탈물질적 가치 보상은 공익활동 참가자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거나 공연이나 교육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한다. 또는 공익활동을 함께한 사람들과 사회자본을 형성하여 신뢰, 소통, 공감의 사회적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에 반해 물질적 가치 보상은 기념품이나 배지, 유니폼과 같이 물질화된 상징에서부터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실비처리, 직업으로서의 인정까지를 포괄한다.

그러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가치 보상의 수준에서 탈물질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공익활동에서 가치보상의 맥락이 사회적 인정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범위를 설정할 때 제도화의 수준과 보상의 수준을 교차하여 인정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 공익활동 참여의 사회적 인정체계

자료: 저자 작성

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유형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익활동 참여의 사회적 인정체계를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화를 위한 두 개의 기준은 공익활동 인정의 제도화 수준과 보상 수준이다. 제도화의 수준은 도덕적 인정에서 제도적 인정까지 스펙트럼을 형성하며, 보상 수준은 탈물질적 가치에서 물질적 가치의 수준까지를 포괄한다.

우선, '사회적 존중'은 도덕적 인정의 차원에서 탈물질적 가치 보상이 구현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공익활동 참가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징적인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포상을 하는 등 최소한의 존중의 의미를 담아낸다. 이러한 연장에서 추천서나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존중의 의미로도 표현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제도적 인증'은 제도적 인정의 차원에서 탈물질적 가치 보상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예컨대, 시간인증제도, 마일리지제도, 경력인정, 타임뱅크와 같이 공익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적 장치들이 제도적 인증에 사용된다. 제도적 인증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존중에 대한 실용적인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경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우적 보상, 즉 '경제적 예우'는 도덕적 인정의 차원에서 물질적 가치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괄한다. 가령, 공익활동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각종 할인 혜택이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로 활동실비를 지원하거나 공익활동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일정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지역화폐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은 도덕적 인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비영리활동으로서 공익활동에 대한 물질적 가치 보상과 가치 교환을 정당화한다.

마지막으로 '직업적 인정'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삼는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의미한다. 공익활동이 이루어지는 행위자의 구성적 층위는 다양하지만, 공익활동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근활동가의 유지와 충원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서 상근 공익활동가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직업적으로 인정해주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필요하다.

0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제1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자원봉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는 서론에서 밝힌 인정범위에 따라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 살펴본다.

1. 자원봉사와 공익활동

가. 자원봉사의 정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원봉사의 정의는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이라는 자원봉사의 기본 특성에 기초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가장 핵심 개념인 자발성은 자유의지(free will), 자유 선택(free choice)의 개념을 내포한다. 시민들의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 즉 '자기 결정'에 따른 활동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자주성, 자율성의 개념으로 확장될 수 있다. 자원봉사(volunteer)라는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volun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원봉사의 중요한 요소가 자발성임을 뒷받침한다.

자원봉사는 행위에 기반한 '일(work)'로서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이라는 개념은 자원봉사활동을 임금노동, 유급노동(paid work)과 구분한다. 한편 자원봉사활동은 서비스의 제공 및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의 결속 등 유·무형적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무급 노동임에도 가정 내 가사노동이나 돌봄 노동과 같은 사적 행위를 넘어서는 사회적, 경제적 행동임을 보여준다. 또한, 자원봉사의 공익성은 자원봉사가 자원봉사자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 지역사회, 국가 등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개인의 여가 활동과도 구분된다(최상미, 신경희, 이혜림, 2017, pp. 8-9).

그러나 자원봉사의 개념을 특정한 하나의 정의로 규정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유길준, 2012; 정진경, 2012; 최상미, 신경희, 이혜림, 2017). 자원봉사는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개념과 정의가 변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관한 하나의 합의된 개념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자기 시간을 할애하여 어려운 이를 돕는다는 전통적·이타적 개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시민의식과

생활양식이 변해감에 따라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에 대한 해석도 더욱 복잡해졌다. Cnaan 외(1996)은 자원봉사활동의 특성이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와 같이 배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것(the purest)'에서 '가장 광범위한 것(the broadest)'과 같은 연속적 개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원봉사는 참여 방식에 따라 공식 자원봉사(formal volunteering)와 비공식 자원봉사(informal volunteering)로 나눈다. 공식적인 자원봉사는 조직의 지원 아래 기획되고 수행되는 활동을 의미하며, 이에 비해 비공식 자원봉사는 돌봄, 이웃돕기, 동료나 친구 돕기, 가사 활동을 위한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공식 자원봉사, 비공식 자원봉사 모두 사회 전반에 이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공식 자원봉사는 조직이나 프로젝트에서 정형화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인 반면, 비공식 자원봉사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갖는다(박세경 외, 2010). 따라서 공식 자원봉사의 경우 봉사활동이 언제 시작하고 종료하는지, 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쉽다. 그에 반해 개별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비공식 자원봉사는 봉사활동을 위해 특정하게 조직된 시기와 장소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같은 활동이라도 누가 얼마나 제대로 참여하였는지 규정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의하는 자원봉사는 공식 자원봉사로 이해되며,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자원봉사단체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에 의해 기획되고 지원된다.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의 정의에 포함하지 않았다(Volunteering Australia, 2014; Wang & Handy, 2016). 이러한 양상은 코로나19를 겪으며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는 더 이상 정기적, 지속적으로 조직이 구조화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최근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지향적인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경향은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전에 요구되던 강력한 조직적 연대는 '느슨한 연결', 관심과 상황에 따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소속감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이선미, 2020).

2020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동기로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민으로서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17년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항목이었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가 4번째로 높았지만, 2020년에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가 가장 높은 항목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자원봉사활동이 이타성의 개념 보다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를 더 이상 국가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지원하는 보조적인 역할로

인식하지 않고, 시민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시민의 권리로서 자원봉사를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자신이 관심을 둔 사회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나 공익활동조직에의 참여로 이어졌다.

이선미(2020)는 이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욕구의 변화를 '적극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의 등장으로 해석한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시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영향력 있고 참여적인 시민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관협력 차원의 시민사회 회복 시도에서 나타난 개념이다. 적극적 시민성의 개념은 시민으로서 권리 인식에 기초하며, 투표와 같은 소극적 참여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 인식과 지역사회 멤버십을 가지고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활동을 부각시키는 실천지향적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 시민성에 기반한 자원봉사의 개념은 전통적 개념에서는 자원봉사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도 자원봉사의 범주 안에 포괄하게 되었다.

〈표 3-1〉 자원봉사 개념의 변화

정의	이전		최근	적용 사례
자발성	순수 자발성	⇒	자기 결정의 반영	청소년 자원봉사, 기업 자원봉사, 국가봉사단 등
무보수성	엄격한 적용	⇒	최저임금 이하, 실비의 반영	재능나눔, 마일리지, 타임달러
공익성	비영리조직, 공공기관	⇒	자조조직,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자조조직,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참여 방식	공식성	⇒	공식·비공식성	클라우드 액션, 온라인 비대면 봉사
시민성	의무적 시민성	⇒	실현적 시민성	시민참여, 애드보커시, 캠페인 등

자료: 최상미 외(2017) 참고하여 저자 작성

변화된 자원봉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상의 보조적 역할, 공공영역, 행정의 동원 인력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또한 시혜적 개념의 자원봉사가 아닌 사회운동으로서의 범위까지 포괄한다. 즉 시민의 참여 양태에 있어서만큼은 자원봉사와 공익활동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한다. 오히려 비공식·공식 자원봉사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제기된 자원봉사 인정 범위에 대한 논의는 공익활동의 개념을 단순히 공익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공익활동의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할 것을 시사한다.

자원봉사의 개념적 정의는 사회적 인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큼 인정할 수 있는

가의 문제에 해당한다. 결국 사회적 인정제도가 일관성,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적 정의를 합의해 나가는 절차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

나. 자원봉사 인정의 필요성

자원봉사 인정은 봉사자들을 격려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봉사활동을 지속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이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은 일련의 자원봉사 관리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며, 자원봉사 관리자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해 적절한 인정과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봉사활동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원봉사 인정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자들은 인간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매슬로우의 욕구를 들어 설명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식주와 같은 생리적 욕구부터 가장 높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여러 단계의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어느 하나의 욕구만이 자원봉사활동의 이유 또는 동기가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나,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보다는 타인을 위한 활동으로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이강현, 2013). 자원봉사의 여러 효과적 측면 중에서도 자원봉사자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가 이기적이든, 이타적 동기이든 봉사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자긍심, 자아효능감, 자아실현감은 매슬로우가 말하는 다른 욕구와 바꿀 수 없을 만큼 크게 작동한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타인과 사회로부터 '자신이 쓸모 있음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자의 공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정과 보상은 성과와 성취, 성공의 상징으로서 수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유길준, 2012). 이러한 관점에서 자원봉사 인정을 개인적 차원의 인정과 사회적 차원의 인정으로 구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둘째, 자원봉사 참여와 지속의 동기 요인으로서 자원봉사 인정이 필요하다.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는 데 효과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동기가 있겠으나, 특정한 보상이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대외활동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장인들의 자원봉사 유급 휴가제도,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쌓아 인정받고 싶어서 등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가져오는 자기개발 효과나 사회관계망 형성, 자기 보람과 성취감, 자신에 대한 발견 및

진로에 도움 등 여러 간접적 혜택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요인이 된다. 즉, 적절한 인정과 보상은 어느 정도의 자원봉사 참여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또한, 비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권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이와 같은 사례를 뒷받침한다. 인간은 이타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사회에 대한 헌신을 외면하거나 무임승차의 경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과 보상의 기제를 두고 관리할 때 사회구성원이 가치에 더욱 순응하거나 헌신을 보일 수 있다고 간주한다. 즉,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헌신하고 순응할 때 긍정적인 제재(positive sanctioning)로서 인정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는 봉사활동을 지속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는데, 동기부여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과 보상은 이와 같은 참여 동기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원봉사 참여 의지를 지속해서 유지해 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박철훈, 김행렬, 2013; 김학실, 최용환, 2017).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동기를 충족시켜 주지 못할 때, 봉사자들은 자신의 활동이 가치가 없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의 참여 동기를 자발성의 유무로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을 자발적·내재적 동기, 외부유인에 의한 것을 비자발적·외재적 동기로 보는 시각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의 의견을 가진다. 즉, 자원봉사 참여의 외부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효용이 일시적이어서 오히려 지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자원봉사의 본질과 가치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인정, 격려, 칭찬, 감사의 말과 같은 비경제적 보상을 통해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김대건, 김동철. 2015).

셋째, 자원봉사가 사회에 기여한 바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에 가져온 영향, 즉 사회 변화(social impact)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기여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 또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자원봉사가 사회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 개인도 자신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강현(2013)은 자원봉사의 가치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기여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경제적 기여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국내 총생산과 비교하였으며, 정치적 기여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정부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는 데 있다고 했다. 사회적 가치는 사회 통합과 신뢰, 시민성의 함양, 사회적 병폐 예방 등에 있다고 언급했다.

근래 시민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각종 재난재해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위기 시 자원봉사의 기여에 대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자원봉사가 가지는 이러한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에 대한 인정의 표시와

사회적 보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 자원봉사 분야의 사회적 인정 논의와 정책 동향

가. 자원봉사 인정의 개념과 유형

자원봉사 분야의 인정 개념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감사 표시를 의미한다. “훌륭한 일을 해 준데 대한 감사”로 자원봉사자들 개개인이 기여한 바에 대해 이를 알아주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볼런티어21, 2001, p. 241; 최은숙, 2005 : 우정자, 2012 ; 유길준, 2015), ‘자원봉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승인하기 위해) 외부에서 제공되는 유무형의 방법’으로 정의한다(정진경 외, 2008).

자원봉사 인정을 단순히 잘 된 활동에 대한 감사 표시로 이해하는 것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원봉사 인정은 단순한 칭찬이나 감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공익활동 조직이나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한 부분을 담당하고 기여하였음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원봉사자들이 공익활동조직 또는 자원봉사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사회적 명분에 동의하고, 자신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원봉사 인정은 궁극적으로 자발적 시민 참여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성과가 높이 평가될 때 가치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인정은 결과나 성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취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조건이 수반된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 놓은 과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제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종의 경쟁이 수반될 수 있다. 반면에 감사(appreciation)는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들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정은 자원봉사자들이 이루어놓은 일(work), 업적(achievement)에 관한 것이고, 감사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어낸 그들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다수의 자원봉사활동이 단시간에 직접적 변화가 나타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시적인 결과만을 칭찬하는데 치우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시간의 투입이 헛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Robbins, 2019, November 12). 따라서 자원봉사 인정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인정에만 치우친다면 관계 의존도가 높아져 주관적으로 흐를 우려도 있다.

자원봉사관리론의 시각에서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누가 얼마만큼 공헌하였는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의 공헌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계량화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 볼런티어21(2001)은 현재 사람 위주의 자원봉사 인정이 공헌도 위주의 인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에 관한 평가측정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원봉사 인정제도에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원봉사 인정의 대상에 있어서도 자원봉사자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잘 관리하고 이끈 사람들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 자원봉사활동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자원봉사 관리자[14]들의 헌신과 노력과도 깊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 인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용례가 '인정과 보상'이다. 자원봉사 인정(recognition)과 보상(reward)을 하나의 자원봉사 관리 절차로 인식하여 함께 사용하였으나, 보상성이 대가성을 넘어서며 자원봉사의 원칙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근래에는 '보상'을 분리한 자원봉사 인정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 보상은 인정에 대해 주어지는 유무형의 표시로 인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보상(reward)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보람과 의미 같은 혜택(benefits)과는 구분되며, 기관 또는 사회 등의 외부로부터 부여되는 것을 뜻한다.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수준의 기념품이나 감사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은 봉사활동 참여 경험을 통해 기술 개발이나 사회적 연결, 취업 연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형태로 비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경환 외, 2018).

그러나 인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보상이 과도하게 부여될 경우, 감사의 표시를 넘어서 봉사활동을 통해 대가성 이익(이득)을 가져옴으로써 자원봉사의 본디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근래에는 인정과 보상을 동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상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상은 자원봉사 인정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이지 자원봉사 인정 그 자체로 볼 수는 없다.

자원봉사 실비(actual cost)를 보상해 주는 것은 오히려 봉사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회복시켜주는 보상(compensation)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유길준, 2012).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련되었다. 이때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지만, 자원봉사자들에 따라서는 보호받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인정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의견도 있다(정진경 외, 2008). 하지만, 자원봉사 실비 보상이나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자원봉사 인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실비는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이 해당하며, 자원봉사자의 수고에 대한 임금적

14) 조직 내에서 자원봉사 관리를 담당하는 유급직원, 자원봉사단체의 리더 등을 모두 포함.

대가를 제외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실비 제공은 봉사자를 활용하는 조직에서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봉사자들에게 지나친 경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감사의 표시라기보다는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지원(support)'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정진경 외, 2008).

인센티브(incentive)는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정진경 외, 2008; 유길준, 2012)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거나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지속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제도나 할인가맹점 제도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인센티브는 가치에 대한 인정의 의미보다 '동기부여'라는 목적을 위한 전략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3-2〉 자원봉사 인정·보상 및 유사개념 정리

개념	사전적 의미	자원봉사활동 관리적 의미
인정(recognition)	어떤 것을 가치 있다고 받아들임 승인하고 알아줌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
보상(reward)	어떤 것에 대한 인정에 대해 선물이나 무엇인가를 주는 것	인정의 표시 방법
보상(compensation)	손실에 대한 회복, 손해를 갚음	경비에 대한 보상, 봉사활동 중 사고나 상해 발생 시 보호
실비(actual cost)	실제로 드는 비용	봉사활동에 드는 비용 제공 – 재료, 원료비, 교통비, 식비
인센티브(incentive)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자극	봉사자 모집과 활동 시작의 동기유발 지속적 활동을 위한 동기 강화

자료: 이강현, 정진경(2006), 유길준(2012)에서 참고하여 저자 작성

실비와 인센티브는 그 목적 자체가 감사의 표시이기보다 봉사활동 운영과 관리의 목적이 더 당연·우선 되는 것으로 '감사 표시'를 위한 인정의 범위에 포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자원봉사 인정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집중할 때 제대로 된 인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인정과 보상의 형태성, 가시성, 공식성, 내용성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먼저 '유형(tangible)'과 '무형(intangible)'의 인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형의 인정을 물질적, 경제적, 금전적 보상으로, 무형의 인정을 비물질적, 정서적, 비금전적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최은숙(2005)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자원봉사의 제도적 활성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 이전의 자원봉사 인정 유형은 대체로 '물질적 보상'인가, '비물질적 보상'인가가 주요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연구자에 따른 인정 유형

연구자	인정과 보상의 유형과 분류	
조휘일(1990)	비금전적 보상(정신적 만족)	행사 초대, 친목회, 표창 및 시상, 회식, 교양 강좌 등
	경제적 보상 (물질적 만족)	식비, 교통비 지급, 소액 수당 지급 등
조희형(1996)	내재적 보상 (비가시적 보상)	만족감, 성취감
	외재적 보상 (가시적 보상)	화폐적 보상 포함 가시적 보상
M.W. Corrigan(2001)	이타적 보상	타인 돕기
	이기적 보상	친구 사귀기, 개인적 만족감, 정신적, 종교적 성장

자료: 최은숙(2005)

정신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정 방법으로 비금전적 보상과 물질적 만족을 충족시켜 주는 경제적 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식비, 교통비와 같은 활동 실비 및 소액의 활동 수당을 보상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견은 만족감, 성취감과 같은 정서적 기제에 의한 '내재적 보상(intrinsic reward)'과 화폐적 보상을 포함한 '외재적 보상(extrinsic reward)'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내재적 보상은 비가시적 보상, 외재적 보상은 가시적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재적 보상이 더욱 직접적인 인정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김학실·최용환, 2017). 이와 같은 구분은 자원봉사 가치에 대한 승인과 감사의 표시를 유형의 가시적, 경제적 혜택, 무형의 정서적, 심리적 혜택 두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교육·훈련 참여의 기회와 같은 예는 학습과 자기 성장의 관점에서 비금전적 혜택으로 볼 것인지, 교육 훈련비를 면제 또는 대납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 짓기 어렵다.

자원봉사 인정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공식적(formal) 인정'과 '비공식적(informal) 인정'으로 나눈다. 공식적 인정 보상체계는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업적을 보다 공적인 자리(자원봉사주간, 자원봉사 대축제, 축하 행사 등)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이루어진다. 다중의 앞에서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대한 치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적 인정은 사전에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며, 조직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비공식적 인정보상 체계는 이벤트적인 인정보다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하며, 비용이 적게 들거나 거의 들지 않는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거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 인정을 일상적으로 받는 자원봉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 느낌으로써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도록 해 준다(Kyrwood & Meneghetti, 2010). 비공식적 인정은 활동 기관에서 인정에 대한 방침을 세워 운영되지만,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자 간의 인간적 상호작용에 가깝다. 따라서 자원봉사 관리자가 자원봉사 가치에 대해 어떤 관점과 자원봉사 관리 역량, 기술을 가졌는가가

자원봉사 인정의 효과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해외에서는 비공식적 인정이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공식적 인정이나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전용호, 이금룡, 2013).

이강현(2013)은 자원봉사 인정을 '개인적 인정'과 '사회적 인정'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인정은 자원봉사자 개인을 향한 인정이며,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칭찬(praise)을 하는 것이다. 사회적 인정은 자원봉사자가 공헌한 업적에 대해 축하(celebration)하는 것을 뜻한다. 또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누가 인정하는가에 따라 '스스로가 주는 보상', '단체가 주는 보상', '사회와 국가가 주는 보상'으로 나누었다. 스스로가 주는 보상은 개인의 철학과 태도에 달려 있는데, 자신의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발견, 확인하고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내적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단체가 주는 보상이란 자원봉사자가 속해 있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 차원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보상을 말한다. 책임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자원봉사활동 일감을 제공한다거나, 학습 참여 기회, 활동하러 방문할 때 무상 주차할 수 있는 편의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주는 보상은 더 형식적인 것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업적과 공로에 대해 훈·포장을 수여한다거나 자원봉사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최은숙(2005)은 자원봉사 인정이 자원봉사 행동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며, 자원봉사 인정을 사회 심리적 요인, 교육 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3가지 유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구분했다. '사회 심리적 요인에 따른 인정'에는 ① 자부심·보람·성취감·자아 성장·남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 ② 주변의 칭찬·격려·존경, ③ 사회경험, ④ 기관과 사회에의 소속감, ⑤ 유력 인사와의 만남 기회 및 영향력 행사 기회, ⑥ 역할 위임, 회의 참석하고 발언하는 기회, ⑦ 사회에 대한 이해와 원만한 대인 관계, ⑧ 감사장·우수 자원봉사자 시상 등 표창, ⑨ 생일축하 카드·감사편지 등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 표시, ⑩ 봉사활동에 대한 정기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 ⑪ 유니폼·자원봉사 신분증·기념배지 등 신분 표시물 제공, ⑫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등에 초대 기회 등 총 12가지 인정 방식을 제시했다.

'교육 문화적 요인에 따른 인정'으로는 ① 유익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 ② 정기적인 연수회, 견학, 교육 등의 기회, ③ 취미 프로그램 제공, ④ 각종 강좌 개최 및 참가 기회, ⑤소식지 등 간행물 제공, ⑥ 친목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 ⑦ 자원봉사 전문분야에 대한 정기적·지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등이 있으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최은숙, 2005).

'경제적 요인에 따른 인정'은 물질적, 금전적, 인위적으로 주어지는 경우로서 ① 자원봉사 시간 기록·마일리지 적립 제도, ②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 ③ 교통비, 식비, 탁아비 등 최소한의 경비 제공, ④ 식사, 다과, 간식 제공, ⑤ 소액활동 수당 제공, ⑥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기념품, 선물 등 제공, ⑦ 교육비, 연수비, 행사참가비 등의 면제나 지급, ⑧ 무료 건강진단, ⑨ 위험

이나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제공, ⑩ 세금감면 혜택, ⑪ 재료비 제공 등이 해당한다(최은숙, 2005). 최은숙(2005)의 연구는 자원봉사와 관련한 여러 정책(자원봉사기본법, 부처별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기준, 학생 봉사활동, 기업 자원봉사 등)이 시작되는 초기에 진행되었기에 사회적 인정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다 (홍다영, 권혁창, 2022).

Kyrwood와 Meneghetti(2010)는 자원봉사의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써 자원봉사 인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봉사가 가지는 기능적 동기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단순히 남을 돕기 위해', '새로운 배움과 경험을 얻기 위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 위해', '경력 개발을 위한 수단이 필요해서', '단조로운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타인보다 운이 좋은 것에 대한 부채감을 면제 받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등이 있으며, 이를 자원봉사 인정 방법과 매칭하여 정리하였다. 단, 동기에 맞는 인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원봉사 기여도에 따른 맞춤형 인정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같더라도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공헌도에 따라 인정에 대한 기대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표 3-4〉 자원봉사 참여 동기 충족을 위한 인정 방안

동기 충족 욕구	가능한 인정 방법
가치 (Values)	수혜자로부터 개인적 감사 편지
이해 (Understanding)	컨퍼런스 참가비
사회적 관계 (Social)	동료 봉사자들 앞에서 상 주기
경력 개발 (Career Enhancement)	더 어려운 역할과 책임 부여 및 관련 교육 제공
보호 (Protective)	자원봉사 사회적 공헌에 대한 구체적 확인
자기 함양 (Self-Enhancement)	이사나 다른 저명한 조직 지도자가 서명한 특별 추천서 제공

자료: Kyrwood & Meneghetti(2010).

2008년 행정안전부가 (사)한국자원봉사포럼을 통해 진행한 '자원봉사 인정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에서 제시한 인정 유형은 현재 정부나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 인정체계의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앞서 있었던 연구에서 자원봉사 인정·보상을 현금, 신용(교환가치), 현물, 기회, 사회적 보상, 정서적 보상이라는 6개의 유형(정진경, 2006)으로 구분했던 것을 이 연구에서 정서적 인정, 기회의 제공, 상징적 인정, 직·간접적 경제적 인정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로 제시한 인정 모형에는 활동 실비, 재료비, 교통비, 식비 등 현금의 제공은 인정의 방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간접적 경제보상 만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3-5〉 자원봉사 인정 유형

인정 유형	인정의 내용
정서적 인정	• 축하카드(생일,성년 등), 연하장, 축전 등 • 휴대폰 문자 • 언어적, 비언어적 감사의 표시와 관심 표현
기회의 제공	• 국내외 행사 참석 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 전문 심화교육, 워크숍 참가 기회 • 해외연수, 테마 여행 기회 • 새로운 경험과 업무의 기회
상징적 인정	• 각종 기념품, 자원봉사자 유니폼,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 • 자원봉사자 뱃지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금,은,동 뱃지) •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인정
간접적 경제적 인정	•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 놀이공원, 공연 관람료 할인 또는 티켓 제공 • 할인쿠폰 제공 • 식사, 간식 제공
사회적 인정	• 자원봉사 활동 인증서 발급 •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 포상 추천 • 지역 또는 전국 미디어 활용한 홍보 • 상급학교 진학시 경력 인정 • 취업 및 승진 시 경력 인정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적용

자료: 정진경 외(2008)에서 참고하여 정리, p.102.

이와 같은 자원봉사 인정 유형들은 자원봉사 활용조직[15], 지역 자원봉사센터,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원봉사자의 노고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기여한 결과를 승인하고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봉사 관리의 일환으로 일상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인정의 비율이 줄고, 공식적인 인정과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있다(이원규, 정희선, 서종희, 최은희, 2020).

이상에서 살펴볼 때, 자원봉사 분야에서 '인정'을 둘러싼 여러 용어가 혼재해서 활용되고 있으나, 실비 제공이나 보험 가입 등은 보상(compensation)의 성격이 강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센티브(incentive)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극으로서 행해지는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작용하지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5) 조직이나 사업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참여시키고 있는 자원봉사단체 및 비영리공익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적경제조직, 마을공동체조직 등.

인정 유형에 대한 여러 연구는 결국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자원봉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인간 욕구에 대해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원봉사 분야는 '사회적 인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특별히 논의된 것은 없으나, 이 글에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적·제도적인 인정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나.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자원봉사 인정 제도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자원봉사 인정제도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의 경우 공식적 인정, 사회적 인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조직 단위로 갈수록 정서적 인정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으로 UN이 정한 세계자원봉사자의 날(International Volunteers' Day)을 기념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와 업적을 축하하고 인정, 격려하는 데 동참하여, 우리나라 역시 12월 5일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이라는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상제도는 국가 단위 정부 훈·포장 및 표창을 비롯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각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도 외에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정제도는 마일리지 및 할인가맹점 제도 등 자원봉사 활동 시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정 제도는 공공영역에서 전국 및 지역의 모든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강력히 요구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었을 때 자원봉사 인정에 대한 신뢰와 공감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하는 자원봉사 인정은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시간 인증 기준'과 같은 지침을 마련하였다.

〈표 3-6〉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인정 제도 유형

인정 주체 / 인정 방법	국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자원봉사센터	공공/민간 자원봉사자 활용조직
법·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기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원봉사 시간인증 시스템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 등) 자원봉사 상해보험 제도	지자체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기관 내 자원봉사 관리 방침
인센티브		우수봉사자 카드 발급 마일리지 및 할인가맹점	
실비 보상		활동 실비(식비 및 교통비 등) 활동 수당 봉사활동 재료비	봉사활동 재료비, 준비비
사회적 인정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공익광고, 언론 홍보 자원봉사시간,학점 인정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직업 등재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증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자원봉사 축제/박람회 지역 언론 홍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감사 축제, 행사 모범 자원봉사자 상 홈페이지/소식지 소개 감사패 추천서 (취업, 진학 등)
직·간접적 경제적 인정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할인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	식사, 간식 제공 기념품 회비,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또는 면제
기회의 제공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 공연 관람 기회 자원봉사 기본교육 무료 법률·세무 상담	자원봉사 기본교육 매력적인 자원봉사 일감 교육, 문화공연 관람 기회 운영위원 위촉
상징적 인정		유니폼, 배지 등	봉사자 명찰, 명함, 유니폼, 자원봉사자 휴게실 마련
정서적 인정			감사 문자나 감사의 말 연하장, 생일 축하 봉사자 간담회, 다과회 봉사활동 성과 공유

자료: 저자 작성

자원봉사 인정 제도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법적 근거(2005)를 마련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 인정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를 실행하였으며, 시간 인증 기준(2010) 및 시간 인증을 위한 포털시스템(2011)을 만들고, 5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 인정을 통한 가치 증진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독려하고 있다. 자원봉사 인정제도 수립 초기의 추진절차를 정리하면 다음 〈표3-7〉과 같다.

〈표 3-7〉 자원봉사 인정제도 수립 과정

2007	2008	2009	2010	2011
국가 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 인정 관련 우수 사례 발굴·홍보			
	인정 모형 및 인증 기준 개발 연구	인정 및 인증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자원봉사 관리 표준 매뉴얼 개발 보급		
		자원봉사 관리자 교육 양성, 인정 및 인증 교육		
		인정 및 인증 평가 계획 수립	인정 및 인증 관련 평가 체계 가동	
		자원봉사 인정 및 인증 협의 구조 실행 (중앙)	지역별 자원봉사 인정 및 인증 협의 구조 구축 실행 (지방)	
	종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 및 개발			
		자원봉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전국)		

자료: 정진경 외(2008)를 참조하여 재구성.

1) 법·제도

2004년 5월, 자원봉사 민간전문가와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이 모여 '자원봉사활성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정부 제출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듬해 2005년 8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률 제7669호로 공포되었다. 직후, 2006년 2월에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일부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를 담고 있는데, 그중 자원봉사 인정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자 포상,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안전한 자원봉사환경과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과 교육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활동 부담을 덜기 위한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자원봉사 인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총 412건의 자원봉사 지원조례 및 시행령이 있다.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 학교 및 기업 자원봉사 장려, 재능 나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나 인정에 관한 핵심 내용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표 3-8〉 자원봉사 인정과 관련한 법 조항[16)]

법률	법 조항
자원봉사활동기본법 (2005)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2006)	•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행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로 하여금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보호 3.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 · 입원 · 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2.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④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16) 전국 지자체별 지원조례 및 시행령을 분석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예만 참조하여 넣음.

<table>
<tr><th>법률</th><th>법 조항</th></tr>
<tr><td>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2000)</td><td>
• 제9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보험가입 등)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자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및 자원봉사수요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포상 등)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에게 취업·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td></tr>
<tr><td>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0)</td><td>
• 제2조(경비지원) ①「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
<table>
<tr><th>지급 대상</th><th>지급기준</th></tr>
<tr><td>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1.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1일 4시간 이상 참여한 사람</td><td>• 교통비: 5,000원 이내
• 급식비:「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 활동용품비 등</td></tr>
</table>
②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3조(자원봉사주간 설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자원봉사주간은 세계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이 속하는 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주간에는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시상금 지급,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평가대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td></tr>
<tr><td>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2008)</td><td>
• 제3조(자원봉사자통장 발급) 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20시간 이상인 자에게 자원봉사자통장을 발급하고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센터 및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정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부여한다.
• 제4조(자원봉사자증 발급)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1. 자원봉사 전문교육 기회제공 및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2.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제5조(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 ① 센터는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자원봉사활동이 500시간 이상인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
</td></tr>
</table>

<table>
<tr><th>법률</th><th>법 조항</th></tr>
<tr><td></td><td>
1. 문화예술공연 관람기회 제공
2. 국내 선진봉사활동 견학 및 국외 자원봉사활동 참여
[별표1] 자원봉사자 영예 인증
<table>
<tr><th>자원봉사활동 시간</th><th>영예인증</th></tr>
<tr><td>누적 10,000시간 이상</td><td>봉사왕</td></tr>
<tr><td>누적 5,000시간 이상</td><td>명 장</td></tr>
<tr><td>누적 1,500시간 이상</td><td>금 장</td></tr>
<tr><td>누적 1,000시간 이상</td><td>은 장</td></tr>
<tr><td>누적 500시간 이상</td><td>동 장</td></tr>
</table>
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 영예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는 인증패 또는 인증서를 지급하고 광주광역시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 제7조(실비지급)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자원봉사활동실비 지급기준
<table>
<tr><th>지급대상</th><th>지급기준</th><th>지급내용</th></tr>
<tr><td>자원봉사지원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td><td>봉사시간 : 1일 3시간 이상</td><td>•급식비 : 5천원 이내 (1인 1일)
•그 밖에 활동경비</td></tr>
<tr><td>자원봉사자 영예인증 부여자</td><td>봉사시간 : 500시간 이상</td><td>•교통카드 : 52천원 상당 (1인 1년)</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저자 작성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에서는 더욱 자세한 내용의 자원봉사 인정 방안을 담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활동 실비에 관한 내용 및 시간에 따른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실비지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3~4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이 담보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모두 실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 실비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해당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기관 및 조직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원봉사 참여인구가 많아지고 활성화되면서 정부 예산으로 이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법이 제정되던 시기의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센터 및 기관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었다. 2005년 현재 자원봉사 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센터는 120개 센터로 전체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48.6%에 불과했으며, 그 방식에서도 표창 추천 25.8%, 실비 제공 19.7%, 마일리지제 5.6% 수준으로 비교적 단조롭게 운영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정부는 제1차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원봉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를 밝히고, 이를 위해

‘자원봉사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확립’을 추진과제로 내세웠다.

그 후, 자원봉사 분야는 제도화의 시기를 거치며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전의 자원봉사가 개인적, 비조직적, 비공식적 행위로 존재했다면,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이 본격 도입되면서 자원봉사 지원을 위한 법·제도가 마련되고 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며 자원봉사 지원체계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시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는 자발성, 자율성, 민주성에 기반하는 자발적 영역,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체계는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은 한국 자원봉사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원봉사가 양적 성장을 이룬 데에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홍보와 캠페인의 역할이 컸다. 제2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우수 봉사자를 포상하는 데에 제1차 시기에 비해 10배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 중에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며 시민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민간 중심, 가치 중심의 일상적 자원봉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존 제도와 인프라의 실효적 운영 및 기능을 내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행정자치부, 2007).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방식 다양화’라는 과제 도출로 이어졌다. 시간 인증 중심의 자원봉사 인정이 가지고 온 폐해를 반성하고, 참여 인증(활동 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활동의 내용과 자원봉사자의 경험 중심에 대한 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였다.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자원봉사자의 욕구와 동기에 맞는 맞춤형 인정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간 협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자원봉사가 전문적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이라는 사회적 시각을 반영하여 직업으로서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정립’이라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자원봉사 관리자’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의 직업지표 등에 정식 등재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참여뿐 아니라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진행된 제4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3대 정책영역으로 보다 집중된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표방하고 있다. 자원봉사의 가치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인정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자원봉사 정책의 연속선 상에 3개의 정책영역 모두 자원봉사 인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 영역에서는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과 경제적 보상의 문화를 사회적 인정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원봉사 현장의 묵은 과제를 담고 있다.

또한, 제4차 기본계획은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도입과 자원봉사관리자를 위한 사회적 인정

보상 체계 마련에 관한 정책과제를 수립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관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정책과제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공익활동조직의 직업활동가들에게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3-9〉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5개년 국가기본계획 중 인정에 관한 정책 과제

구분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 과제	국비 (만원)
2008 – 2012 제1차 계획	1. 자원봉사 활동 가치 증진과 참여 촉진	1-1. 자원봉사 문화 확산	1-1-2. 자원봉사 행사지원 확대 • 자원봉사 대회(등), 자원봉사 박람회 •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주간 사업 • 기타 행사	22억 2천
		1-3. 바람직한 자원봉사 인정·보상 문화 및 제도 확립	1-3-1. 자원봉사 인정 · 보상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 현행 자원봉사 인센티브 정책의 개선 • 바람직한 인정 · 보상 활동 정착 • 정부포상제도의 개선	7천
			1-3-2. 바람직한 인정 · 보상 문화의 확산 • 인정 · 보상 문화의 확산을 위한 범 국민 홍보 • 자원봉사센터 · NGO 등 비물질적 인센티브 활용 권고 • 자원봉사계의 인정 · 보상 활동에 대한 평가 시스템 확립	2억7천
2013 – 2017 제2차 계획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1. 자원봉사 문화의 정립과 확산	1-1-4.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 • 자원봉사홍보를 위한 민, 관, 언론의 공조 유도 • 자원봉사 홍보 연간통계 자원봉사 백서에 수록	9억
		1-2. 정부-기업-시민사회 파트너십	1-2-2.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 행안부 전국 행사와 축제 지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 행사와 축제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기부박람회 개최 • 나눔대축제 및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확대	205억 600
2018 – 2022 제3차 계획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4.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1-4-7.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 전국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행사 캠페인 실행 • 매년 자원봉사자의 날(12.5)로부터 1주일 • 분야별 특화된 자원봉사 행사개최(사회복지, 노인, 기업, 청소년)	56억 1300
	3.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3-1.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 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3-1-2. 자원봉사 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확립 • '자원봉사 관리자'를 직업으로 정식 등재 • 자원봉사 관리자 직업 탐색 기회 및 인적 자원 유입 • 자원봉사 관리자 윤리강령 공론화	-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 전략 혁신	3-2-4.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방식 다양화 • 시간인증제도 정비 및 참여인증제도 도입 •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확대: 자원봉사자의 날,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개최, 포상 규모 확대 • 수요자 맞춤형 인정보상 프로그램개발, 마일리지 활용처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약, 지자체별 인정 보상 운영실태 조사 및 시행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4억5천

구분	정책영역	정책과제	세부 과제	국비 (만원)
2023 – 2027 제4차 계획	1.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1-3. 자원봉사 지원 방식 다원화	1-3-2.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 •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 • 자원봉사 인정 방식의 다양화	
		1-4.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1-4-1. 범국민 자원봉사 참여의 장 확대 • 전국민 자원봉사 행사, 캠페인 실행 • 분야별 특화된 자원봉사 행사 개최	
	2. 자원봉사 인프라 및 관리	2-3. 자원봉사관리자 및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2-3-1.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 • 공신력 있는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도입 추진 •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제도 운영	
			2-3-3. 자원봉사관리자 사회적 인정·보상체계 마련 • 자원봉사관리자 처우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추진 • 자원봉사관리자 종합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3. 자원봉사 특성화 및 전략사업	3-3. 대한민국 자원봉사 캠페인/브랜드화	3-3-1. 대한민국 자원봉사 캠페인/브랜드 확산(K-Volunteering) • 대한민국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 • 대한민국 자원봉사 캠페인 전개	

자료: 저자 작성

3) 시간 인증

자원봉사 분야의 활동시간 인증제도는 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1년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 시행했다(김병국 외, 2010).[17] 여러 부처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반면, 인정과 보상의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기관의 재량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 주는 혼란도 늘어갔다.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간 인정 가이드라인의 수립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2010)는 인증 주체와 방법을 제시하되, 선정 기준은 지자체, 기관별 재량에 따르도록 하는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 시행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도 2010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실적 인증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시간 인증이 자원봉사 관리의 주요 업무가 되면서 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도 개발, 도입되었다. 전산시스템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 기회를 검색하고, 활동 시간 인증을 위한 증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VMS',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정보 서비스 Dovol[18]'

17) 행정안전부에서 2010.3.27. 발표한 자원봉사 통합포털시스템 구축계획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1999.3에 대구 북구에 행자부 지역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바 있음.

등이 대표적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체육 자원봉사 연계시스템 '문화품앗e[19]', 농림축산부의 농촌재능나눔 '스마일재능뱅크[20]',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와 청소년 본부, 국립공원공단, 문화체육관광부의 걸스카우트연맹, 서울교통공사 등이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1년 말 현재, 등록 자원봉사자 수만 14,700,896명(전체 인구 중 28.5%)에 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1365 포털을 통해 타 부처나 기관에서 인증 받은 시간을 1365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림 3-1]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화면

자료: 1365 자원봉사포털, https://www.1365.go.kr/vols/main.do에서 2022. 10.20. 인출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행해지는 양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현장 자원봉사 관리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되,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 인증의 판단은 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고 있다. 구체적 적용은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

18) 현재는 청소년 활동정보 서비스 '청소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나, Dovol로 통용되고 있음. https://dovol.youth.go.kr
19) 문화품앗이(https://csv.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발(2014)하고, 현재는 (사)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위탁 운영 중임.
20) 농촌재능나눔 스마일재능뱅크(https://www.smilebank.kr/). 농림축산부에서 스마일 농어촌 운동의 일환으로 개발(2011). 농촌을 위한 재능나눔 연계 중심의 플랫폼으로 활동시간 인증은 1365자원봉사포털과 연동하여 처리됨.

단위 및 중앙단위에 심의기구를 두고 지역센터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쟁점들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시간 인증 제도는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특징으로, 자원봉사 인증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하고 이를 실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외국에서는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전용호, 이금룡, 2013). 통계상 자원봉사 시간 관리 인구가 많지 않지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이원규, 정희선, 서종희, 최은희, 2020, p. 94)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365, VMS 등 자원봉사포털'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시간을 관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21%였으며, 2017년에 약 9%였던 것에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10〉 주요 기관의 자원봉사 시간 인증시스템 현황

구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인증기관	각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문화원연합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인증관리 포털	1365 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VMS	문화체육 자원봉사 문화 품앗e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 청소년(Dovol)
보상	활동인증서 발급 포상 및 상패 상해보험 가입 공공시설 이용할인 할인가맹점	활동인증서 발급 훈포장 추천 및 표창 사이버대학교 장학금 및 등록금 감면	활동인증서 발급 마일리지 제공 우수봉사자 및 단체 시상	활동인증서 발급 포상 인센티브 제공 상해보험 가입 (1365 연동)
포털 도입 시기	2011	2001	2014	2000
법적 근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동법 시행령 지자체 지원조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사회복지 자원봉사관리규정 인증관리 규정	지역문화 진흥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원봉사기본법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교육청)

자료: 김병국 외(2020) 참조하여 저자 작성

〈표 3-11〉 자원봉사 시간 인증 기준[21)]

대분류	소분류	시간	대분류	소분류	시간
사회 복지 및 보건 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6시간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	8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주민자치활동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8시간
	놀이, 말벗	4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6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바자회	8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4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환경감시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6시간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체험, 홈스테이,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환자 접수안내, 의료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대기실,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6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관내4 관외8
	이미용 봉사활동	6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21) 자원봉사 시간 인증기준은 2010년 처음 마련되었으며, 이후 매년 발행되는 자원봉사센터운영지침에 포함하여 자원봉사센터 및 각 자원봉사 활동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 2010.6.25. 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보완)
https://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9&nttId=31389

대분류	소분류	시간	대분류	소분류	시간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활동	2시간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지도	4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차량봉사 (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	타지8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8시간
	교통안전교육	4시간		재해예방교육	2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			피해지역 모니터링,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봉사활동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8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8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4시간		통·번역 봉사활동	8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	4시간	공공행정 사무지원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 정리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기관 등)	4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봉사활동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4시간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봉사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봉사활동	4시간	기타 공익활동	자원봉사 관련 회의	2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활동			기타 봉사활동	
	선거관련 봉사활동	8시간			

자료: 행정안전부(2022b)

시간 중심의 자원봉사 인정은 초기 참여를 유인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자원봉사를 시간 관리를 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파생시켰다. 우선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참여를 결정할 때 '의미' 보다는 '활동시간 인정 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자율적 참여이어야 함에도 획일적 시간으로 기준화된 자원봉사 인정 기준은 자원봉사의 의미와 가치보다 시간에 얽매이게 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또한, 부처별 인증관리 시스템이 달라 불가피하게 여러 포털에 중복으로 가입된 시민들의 봉사활동 실적은 통계로서도 정확성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김상민 외, 2017), 1365 포털의 실적을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의 지표로까지 활용하고 있어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센터의 부담과 압박감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더욱이 자원봉사 시간 관리를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을 들여 인증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실적 관리로 인해 인증기관 및 자원봉사 활용 조직의 업무가 과부하 되어 정작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거나 자원봉사자의 정서적·심리적 인정과 동기부여에 투여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낳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과 한계를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활동인증' 방식을 도입(김병국 외, 2020)하고,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경험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활동인증은 정성적 활동 성과와 가치 중심의 인증을 지향하며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안적 관리 제도로 마련되었다. 활동인증 확대를 통해 입시나 취업 등 사회적 활용영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인정을 시간 실적 중심에서 활동의 내용이나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아직 그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4) 마일리지 제도

자원봉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던 시기, 자원봉사활동의 경력 인정이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자원봉사은행'제도가 도입되었다. 1999년 11월 서울 동작구가 처음 실행한 이래 수십여 지자체들에 의해 실행되었다.[2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을 금전처럼 계속해서 적립하고 이를 통장에 기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사람들이 쉽게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했다. 이때 자원봉사자들이 발급받은 통장이 곧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인증서의 역할을 했으며, 누적 봉사시간에 따라 많은 시간을 적립한 봉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이를 마일리지 제도라고 칭한다.

자원봉사 통장 발급

- 발급절차 : 봉사신청(자원봉사자) → 수요처 연계(자원봉사센터) → 봉사활동 실행(자원봉사자) → 대장기록, 통장발급(자원봉사센터) → 발급실적 자원봉사센터로 제출
- 통장규격 : 일반은행 통장규격
- 통장내용 : 자원봉사 활동 일시, 봉사활동 내용 및 장소, 활동 시간, 누적 시간, 확인란

품앗이의 원리로 개발된 자원봉사 은행제도의 추진은 통장에 적립된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자원봉사자 본인 또는 가족 등에게 향후 도움이 필요할 때 적립된 시간만큼 다른 자원봉사자로부터 봉사를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바탕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23]

22) 동아일보 (2002.8.19.).
23) 미디어생활(2006.5.9.).

그러나 적립에 쓰인 봉사활동 시간과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시간을 등가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적립된 봉사활동 시간 보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부족한 점 등 한계가 있었으며, 대가성이 있어 무보수성이라는 자원봉사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왔다.

마일리지 사례

인천광역시의 '찾아 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간병 지원사업'처럼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도 있다. 2008년부터 실행된 이 제도는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1,000시간 이상된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중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록된 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하면 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최대 180시간까지 전문 간병인을 파견 받아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4] 인천광역시는 이러한 마일리지제도의 내용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으로 포함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5]

이후 자원봉사활동 인증시스템의 전산화가 완료되고 전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자원봉사은행 제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정진경 외, 2008). 그러나 자원봉사 참여 촉진을 위한 마일리지 제도는 여전히 누적시간을 기반으로 추후 보상을 받거나 지역사회 자영업자와 연결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다(전용호, 이금룡, 2013). 자원봉사센터들이 지역사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자원봉사 할인가맹점으로 가입시키고, 자원봉사자들이 해당 업체를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보통 100~200시간 정도의 누적시간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우수봉사자증을 발급하고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도록 한다. 할인가맹점은 지역사회 홍보 효과를 갖고 자원봉사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여 고안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할인가맹점을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하다. 점포 수가 많지 않으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유명무실한 인정제도가 될 수도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누적시간에 따라 공공시설이나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받는 사례로 공영주차장 할인, 주민센터 자치 프로그램 할인, 미술관·박물관 등 입장료 할인, 건강검진 및 독감백신 지원 또는 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는 경제적 혜택의 하나로서, 활성화될수록 그에 상응

24) 대한뉴스(2016.4.13).

25) 제6조(자원봉사 인정) 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4-28〉
1. 본인 및 배우자 〈신설 2008-04-28〉
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신설 2008-04-28〉
3. 자녀 〈신설 2008-04-28〉

하는 예산의 투입과 행정업무가 요구되므로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실행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공공시설 및 서비스 이용할인이나 할인가맹점 제도 등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자원봉사의 무보수성이 금전적, 경제적 보상으로 변질하는 사례라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전용호, 이금룡, 2013).

5) 포상 및 축하 행사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원봉사 관련 포상 제도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이 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이란 자원봉사 활성화 및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공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와 기부자 등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의 날(12.5)에 포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계각층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공식적·공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의 가치를 전파하는 목적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선정 및 포장 절차는 각 지자체와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추천받고, 현장전문가, 자원봉사자,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현지실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검증을 거친 뒤 공적 심사를 통해 최종 포상을 결정한다. 추천 기관에 지자체나 자원봉사단체 뿐 아니라 동료 시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 부문이 있는데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포상의 훈격으로는 훈장 및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기관장 표창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12월 5일을 전후로 하여 지자체별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자원봉사 포상도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중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부문은 별도로 구분하여 '대한민국 자원봉사센터대회'를 실시하여 포상하고 있다. 제3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자원봉사관리자의 사회적 위상 강화의 정책 과제에 따라 이 부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개요

구분	포상 개요	
추천 대상	• 개인, 단체, 기업, 자치단체로 구분	
추천 기준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산불·코로나 19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공헌한 자 • 자원봉사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이 있는 자(단체 임직원 등은 지양하고 일선현장에서 봉사한 자를 우선 추천) • 자원봉사를 통해 동료 시민 및 기관과 함께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추천기관	지방자치단체	• 시도가 관할 시군구 및 자체 추천자를 종합·심사하여 추천
	중앙부처	•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수립 11개 부처는 소관 분야 자원봉사 유공자를 자체 공적심사를 거쳐 1~2명씩(단체 가능) 추천
	자원봉사단체	•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소속 회원 및 단체, 봉사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를 거쳐 100명(단체 포함, 가나다순) 정도 추천 • 한국시민자원봉사회와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별도 공적심사 개최
	국민추천	•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공적확인 및 공적심사자료 등을 작성하여 1365 자원봉사포털로 제출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접수된 국민추천 후보자를 일괄 취합하여 자체 공적심사(외부위원 참여)
추천절차	• 추천기관은 분야별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적을 심사한 후 훈격 구분 없이 추천 • 수상 인원(수상 여부)과 훈격은 행정안전부의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자격 요건	• 표창 추천일 기준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장관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단, 민간의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 단축 가능)	
포상 규모	• 2022년 총 266점 추천 (훈·포장 4점, 대통령표창 25점, 국무총리표창 49점, 장관표창 188점 등) • 2021년 총 275점 추천 (훈·포장 4점, 대통령표창 25점, 국무총리표창 49점, 장관표창 197점 등)	

자료: 행정안전부(2022.6.9.)

[그림 3-2]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포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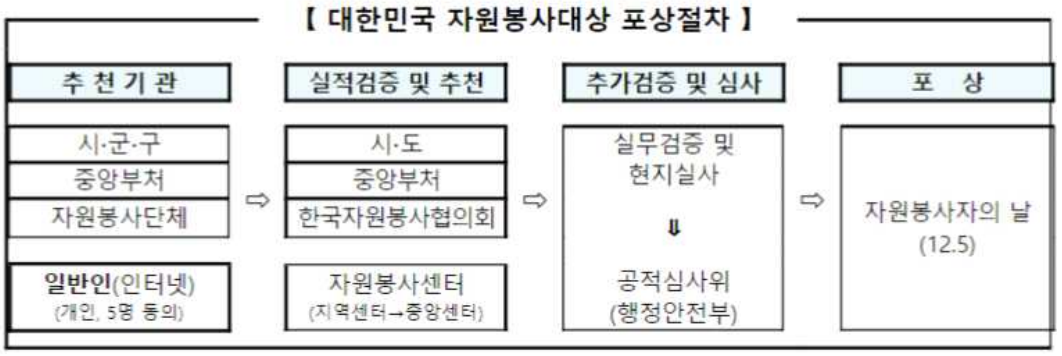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2022.6.9.)

정부와 지자체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인정 격려하기 위해 단순 시상식으로만 진행하지 않고 공연·축제 등의 방식으로 축하 행사도 진행한다. 12월 5일 실시하는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회', 지역별 '자원봉사 페스티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국단위 캠페인과 행사들이 자원봉사 활성화라는 정책과제의 추진 방법으로 제시되고 실행되었다.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자원봉사대축제에서부터 2016-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 최근 자원봉사주간 캠페인으로 추진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섯 글자, 자원봉사자' 슬로건 홍보 등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와 자원봉사의 가치를 공중(public)에게 각인하는 효과를 기하고 있다.

[그림 3-3] 자원봉사주간 캠페인 영상화면

자료: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유튜브 캡처. https://youtu.be/kRd7RQQvE4o?t=327 에서 2022.12.10. 인출

6) 조세 관련 혜택

2002년 태풍 매미와 루사, 2008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등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난재해 복구 활동의 특성상, 주거지가 아닌 재난 발생지역으로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할 경우가 많으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 부담을 갖고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 정부는 재난재해 시 자원봉사자들의 수고에 대한 인정과 피해복구 참여 활동을 독려하고자,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소득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조세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26)]

2003년부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법 제34조2항에 따라 '특별재해(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자원봉사 시간을 금품으로 환산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로 보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듯이 자원봉사도 '노동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참여한 봉사활동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봉사활동이 종료된 후 지자체 또는 지자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특별재해(재난) 지역 자원봉사 용역에 대한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재난재해 자원봉사활동은 관련법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되는데, 자원봉사 8시간을 1일로 간주 봉사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 공제해 주고 있다. 또한, 재난재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유류비 및 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제공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해서 기부금에 포함한다.

자원봉사 인정을 위한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서는 자원봉사활동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자원봉사의 상징적 가치를 증진하는 효과로서 공제 가능한 자원봉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대한 검토 없이 조세 정책만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오히려 자원봉사 원칙을 훼손하고 탈세 수단에 악용되는 등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모두 있었다. 환영과 우려의 의견들 속에서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자원봉사 세제 혜택을 추진하는 지역이 생겨나기도 했다.

3. 사회적 인정 사례의 시사점

자원봉사는 일찍이 제도적으로 발전되어 온 만큼 시행착오 또한 타 분야에 앞서 경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공익활동 인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원봉사 분야의 시행착오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27)] 자원봉사 인정의 쟁점과 한계는 자원봉사가 하나의 개념으로

26) KBS 뉴스(2003.9.21.).
27) 사회적 인정에 대한 자원봉사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봄으로써 본 글의 지적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쉽게 정의되지 않으며,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이 정부 주도의 포상과 인센티브 제도에 치중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현행의 인정체계가 '인정'인가 아니면 '인증'인가(김병국 외, 2020), 또는 '보상'인가라는 자성적 물음에 도착한다.

국가 차원의 자원봉사 인정이 경제적 혜택 위주이다 보니 개인에 대한 인정에 치중하여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활용 조직과 같은 조직에 대한 인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셜 섹터로서 자원봉사 분야나 종사자에 대한 인정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이중적 시각을 나타낸다. 자원봉사자들을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감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동원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나 동원 인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후자의 경우 자원봉사를 폄하하거나 자원봉사 영역을 관변단체들의 집합으로 오인하는 것으로 악화된다. 또한, 경제적 혜택의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 또다시 양적 근거를 활용함으로써 시간 중심의 실적관리라는 문제의 출발점으로 회귀한다.

실적 인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양적 성취 중심의 인정으로 자원봉사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와 성취 중심의 인정은 객관적 근거를 위해 계량적 기준과 규격을 만들어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부 봉사자들은 어느 순간 초기의 자원봉사 참여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인정에 따른 보상 여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봉사활동 경험을 자긍심의 기록이 아닌 증빙을 위한 도구로 관리함으로써 목적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시간을 매개로 실적을 평가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인정체계는 자원봉사자들의 시민성과 문제해결 역량이 얼마나 변화하였는지는 간과하고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는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단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청년들 같은 경우 학점이나 스펙 쌓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마을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는데 어디는 활동비를 주고 어디는 주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활동비 주는 곳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포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결국은 혜택 때문에 봉사활동을 관두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자원봉사 본연의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활동가 4)

> 저는 자원봉사 인정을 시간으로 따져서 경제적 연관시키는 방식에 반대해요. 인정이 보상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간을 까다롭게 따지게 되고, 깐깐하게 따지니까 그럴수록 봉사자들을 더 시간에 연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 인증을 너무 인색하게 따지지 말고 오히려 너그럽게

일시: 2022.11.15. 19:00-21:00
장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의실
참석: 현장활동가 4명 (평균 경력 약 17년)

주면 시간에 연연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요. (활동가1)

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경우는 정말 많죠. 5시간만 하면 1천 시간 채우니까 오늘 조금만 더 봉사하게 해달라고 조르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저 분이 무엇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가 들죠. (활동가4)

시민참여의 한 방법이 자원봉사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인데, 그걸 자꾸 통계를 내고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가치를 매기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니까요. (활동가2)

자원봉사 인정과 관련하여 인정과 인증의 혼용은 자원봉사 실적관리의 문제로 이어져 자원봉사 분야가 극복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자원봉사 '실적 인증'은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이나 참여횟수에 대한 실적 증빙의 개념(김병국 외, 2020)이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 인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적을 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인증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 중심의 접근 방식은 자원봉사자의 초기 참여를 유인하고 관리를 쉽게 하지만 자원봉사를 시간 관리의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한국자원봉사문화, 2015). 그러나 자원봉사 시간 인증은 그것이 건강하게 활용되었을 때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 참여에 대해 목표를 세우고 점검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으로써 봉사활동을 지속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시간을 관리하고 자원봉사 가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측정하는 방식(지표)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시간을 채우면 뭔가를 준다는 식의 방식이 문제에요. 특히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이라면 더 문제죠. (활동가1)

시간 관리가 꼭 부작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쓰이기만 하면요. 우리 지역의 어떤 봉사자는 자원봉사 1만 시간을 채우는 것이 자기 일생의 목표라고 말씀한 것을 들었을 때 뭉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봉사자에게는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의 표시로 받는 단순 시간이 아니라, 봉사하는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활동가2)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봉사 인정을 위해 다각적 시도를 경주하는 데에는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이나 인센티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39.2%가 '인정/인센티브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은 대체로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관이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라는 점 등에서 여전히 아쉬움을 경험하고 있다(이원규, 정희선, 서종희, 최은희, 2020). 또한, 정부 정책의 이행에 시민들의

참여가 결합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당 개념의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노인 복지 영역의 자원봉사형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요양보호사 자격제도 등 시민사회 부문의 자발적 영역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참여가 제도권의 유급 수행인력으로 넘어가는 구축 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행의 자원봉사 인정체계가 과연 실효성을 가지는지 질문하게 한다.

자원봉사 인정이 사회적 예우나 정서적 혜택보다는 포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실적관리와 성과 평가로 엄청난 행·재정적 투입이 이루어진 반면, 그에 비해 자원봉사자들이 원하는 개별적이고 정서적이며 일상적, 지속적인 인정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인정 방안의 다각화가 요구되는 지점이다.

> 자원봉사활동의 의미를 말하지만, '의미'란 것이 주관적이어서 개인마다 의미부여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 어떤 사람은 자기 효용 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인정하는 게 문제라기보다 인정이 경제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게 문제죠. 인정은 필요하다고 봐요. (활동가1)

>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 상권 할인 혜택을 받게 될 때, 자원봉사자증을 내밀며 '내가 자원봉사자니까 이런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뿌듯함이 좋은 거지, 5%, 10% 할인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 않고. 내가 자원봉사를 하니까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만족감이 더 중요한 거지 얼마나 할인을 받는다 그런 금액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활동가1)

> 감사편지로 봉사자가 과연 만족하겠냐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설문 조사를 하고 봉사자 대상으로 FGI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은 경제적 보상보다 자원봉사관리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라든지, 자원봉사자로서 인격적 예우를 받는 것과 같은 인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활동가2)

> 대한민국 사회의 생활 수준이 이미 예전과 다르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의식 수준도 많이 높아졌구요.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중산층일 거예요. 얄팍한 경제적 혜택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을뿐더러 경제적 인정방안은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을 적은 돈에 연연해 하는 저급 인력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 같아요. 인문학적인, 사람 중심의,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늘어가니 결국 적은 비용의 혜택밖에 제공될 수 없고, 조금씩밖에 주지 못하니까 오히려 만족이 어렵게 되는 거죠. 5% 할인받는다고 해서 내가 자원봉사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인정해주는구나, 이런 기분이 들까요? (활동가1)

자원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이 시민의 자발적 참여라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가정할 때, 자원봉사의 사회적 인정방안을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손쉬울 수 있으나, 관 주도적, 경제적 혜택 위주의 사회적 인정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애초부터 다른 각도의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자원봉사 분야는 자원봉사 활성화의 주력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정부 및 지자체의 영향 아래 평가를 받는 처지에 놓여 있어 초기 자원봉사 유입을 위한 도구적 요인으로 자원봉사 인정을 활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자원봉사 인정이 '훌륭한 일을 해 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서 작동하지 못하고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으로 전도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종국에는 '인정'인가 '인증'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받는데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정은 필요하다. 쟁점의 핵심은 인정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아니라, 인정방식의 협의적 접근과 추진 주체의 관성적인 태도에 있다. 자원봉사 인정의 문제와 한계를 통해 자원봉사 양적 시간보다는 자원봉사의 참여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에 연연하게 하지 않도록 자원봉사 참여 자체로 이미 존경과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오영수, 2021).

'자원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에서는 참여 주체인 시민 역시 자기 활동의 정체성을 스스로 개념 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든 공익활동이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지원하는 것은 그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따르겠다는 합의이자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약속한 이상 약속이 지켜질 것이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불필요한 증빙 방식의 인증 과정이 생략될 수 있을 것이다. 관리와 감독의 프레임이 아닌 사회 참여에 대한 감사와 신뢰의 프레임으로, 활동의 대가가 아닌 사회 기여에 대한 존중과 예우로서 인정을 바라보고 접근해야 제대로 된 인정이 가능할 것이다.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1.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

가. 공익활동 현황과 촉진정책

사회서비스 수행 과정에서 정부·지방정부가 제3섹터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거버넌스의 성격이 '서비스 계약' 형태로 바뀌었고, 비영리 조직이 오랫동안 공공부문에 유보된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이 점점 커지면서 비영리 부문의 환경도 많이 변화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이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요한 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서서히 비영리 단체로 이전했다(Frumkin & Kim, 2002). 비영리 단체는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며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등(Light 2000; Lohman 1992; O'Neill 1989) 점차 정부와의 관계에서 공익활동 수행주체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공공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다양하며, 때로는 비영리조직을 통해 연구와 대중적인 캠페인을 거친 후 공공의제로 지정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의제설정(Agenda-Setting)이 이뤄지기까지는 정의내리기와 모니터링, 영향력 설정, 이슈 정체성 수립, 그리고 정책 디자인의 과정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주창'(advocacy), '연구'와 '분석'(research&analysis), '참여'(engagement), '환경분석'(environmental scanning), '피드백'(feedback) 등의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Carter, 2011, p.429).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NPO;Non Profit Organization)와 정부조직 간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마련,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사회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공익활동의 양적·질적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1년 중앙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달리 일찌감치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민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진 해외 사례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정책과 동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공익활동의 수행 범위와 주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벗어나 마을공동체, 비공식 소모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이 중요한 선결과제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제3섹터 영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공익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체인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회문제 해결 등의 프로젝트를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 거버넌스형 공익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의 제도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다. 현행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등록과 보조금 지원, 지원사업 선정 등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 제2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인 영역에서 인정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공익활동 수행주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행령 제5조에서는 재정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5조(공익사업의 유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3.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에 따라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접수일 기준)된 비영리민간단체'(행정안전부 공고문 제2021-816호)가 그 대상이 된다. 지방정부 또한 같은 법령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의 유형은 각 지역별 현안 및 특성이 반영된 주제로 사전 제시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이 조사한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서울-부산-광주-대전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표 3-13〉과 같이 진행됐다.

〈표 3-13〉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
서울 특별시 (2021)	기후환경·자원순환	• 자원재활용, 자연생태 체험학습, 도시농업 프로그램 등
	장애인 복지·인권 신장	•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지증진, 장애인 존중 문화 만들기 등
	여성인권 및 성평등의식 함양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약자 존중 및 성평등 문화 만들기 등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 어르신 및 취약계층 등 지원, 인생이모작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청소년 지원	•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등
	시민의식 개선	• 기초질서 지키기, 계층 간 갈등해소 및 세대 간 이해증진 등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법률상담, 다문화 사회 프로젝트 추진 등
	교통·안전	• 재해·재난 예방활동,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
	통일·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 탈북청소년 및 맞춤형 교육활동, 탈북자 진로교육 등
	문화·관광도시	• 서울 관광자원 발굴, 생활공간 문화화 등
	기타 공익사업	•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동 등 위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부산 광역시 (2022)	①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 경력단절 여성 자립 지원, 일·가정 양립, 보육환경 개선 등
	② 더불어 사는 도시 [사회통합, 계층 간 상생]	• 재능기부, 자원봉사 활성화,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지원 등
	③ 시민이 주인인 도시 [협치소통, 시민참여]	• 시민협치, 시정개선 제안, 지역 문제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지역	사업유형	사업내용
	④ 일자리가 풍성한 도시 [부산형 일자리 만들기]	• 청년 취업 지원, 노인 행복일자리 확충, 지역벤처산업 육성,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 등
	⑤ 평등한 민주 도시 [인권·민주화·평화통일 기반조성]	• 인권보장 및 증진,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증진, 나라사랑 활동 등
	⑥ 친환경 도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	• 도시녹화사업, 환경정비 및 보호, 자원절약·재순환, 지속가능한 개발 등
	⑦ 내사랑 부산 [고향사랑 장려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산 바로 알기, 전통시장 애용 등
	⑧ 건강하고 안전한 부산 [보건, 안전, 재난봉사]	• 시민건강증진, 의료지원, 재해·재난 예방활동, 범죄예방, 생명존중 등
광주 광역시 (2021)	사회통합과 사회적 약자 보호	• 자원봉사 확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취약계층 복지 및 정보화지원 등
	시민소통과 선진시민의식 함양	• 이웃·마을·행정이 소통하는 지속성 있는 시민공유사업 등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사업 등
	여성·청년 일자리창출 및 역량강화	• 아르바이트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일자리 연계지원사업 등
	안전도시 구현	• 안전사고 예방, 4대악 근절 활동, 아동·청소년·노인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등
	환경보전	• 친환경 실천 운동,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기후변화대응과 그린뉴딜	• 자원재생 활동,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쓰레기 줄이기 등
	호남권 상생협력과 국제협력	• 호남권 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주관광 발전사업 등
대전 광역시 (2021)	시민안전 행복도시	• 안전사고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자녀와의 소통증진 사업 등
	친환경 녹색도시	• 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
	함께하는 복지도시	• 여성·아동·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복 복지증진, 저출산 문제해결 등
	품격높은 문화도시	• 시민 건전 여가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등
	시민참여 통합도시	• 기초질서 준수 시민 문화 활동, 도덕성 회복 함양 캠페인 등
	지속가능 미래도시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및 공감사업 등
	공동체 함양 친절도시	•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 함양 등

자료: 이영숙, 박영선, 박소은 외(2022) 제8장 재구성.

보조금사업 이외의 간접지원으로는 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기타 행정 지원 등이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세제 혜택 관련 조항은 현행법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3-14〉 비영리민간단체 직간접적 지원 현황

항목	지원사항	주요내용	지원근거
직접지원	재정지원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수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간접지원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
	우편요금 지원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일반 우편요금의 25% 감면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소득공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등록 및 지정 시 개인기부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7조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행안부와 같은 중앙부처 재정지원 사업,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등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비영리민간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직접지원 혜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그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은 대체적으로 단체의 재정원천 열악성을 극복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공익증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로는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정치적 중립 등 주창성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자원의존적 경향에 따른 자율성 상실 등을 지적하고 있다(박천일, 김선엽, 2011, pp.157-158).

하지만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민-관 거버넌스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사례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필요성

앞서 살펴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영역에서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며, 오히려 활동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그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서 나아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간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현안과 의제를 발굴해 해법을 모색해나가기 위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이 공익활동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발견된다(진성만, 권경선, 2017, pp.132-134)는 제안은 매우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은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지방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 낸 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존재 의의가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가 목적의식을 공유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팔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으로부터 시작된다면 그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의 이유는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수요나 문제에 대응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공공의 문제나 대중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문제의 해결이나 집단의 수요에 대한 대응 등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정당성을 갖는다. 이는 지역주민 간 형성된 신뢰와 규범, 그리고 정보의 교류가 지역경제 발전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 즉 공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회자본 이론의 관점에서 공익활동 지원의 타당성을 발견하게 해주는 지점이다.

셋째,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주장한 위험사회이론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지역사회 비영리조직이나 주민자치조직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구조하고 응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했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영리민간단체들에 의한 시민 구호 활동이나 돌봄서비스 제공 등에서 중요성과 역할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

김정욱 외(2019)의 연구에서도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주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2013년부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점을 제시하며, 이러한 지역사회 변화에 발맞춰 학계에서도 거버넌스·사회적 경제·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정책 등 공익활동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음에 주목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법제도 등에 대한 주제도 연구되기 시작한 동향을 소개했다. 이러한 변화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공익활동의 기본적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행·재정적으로 열악함이 많은 비영리단체에게 공익활동 수행의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모델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부와 시민사회 영역의 거버넌스 모델은 그 논의의 출발점이 '파트너십'이다.

김태영(2002)은 '정부실패'(goverment failure)와 '자발적 부문의 실패'(voluntary failure)라는 상반되는 양 축의 관점에서 도출된 제3의 대안이 정부-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이었고, 이러한 파트너십에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고 보았다. 첫째, 파트너십에는 둘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 둘째, 각 참여자는 당사자의 지위로 참여한다. 즉, 자율성을 가지고 자신을 대표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파트너십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 넷째, 각 참여자는 파트너십 관계에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파트너십 관계의 참여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여야 한다(김태영, 2002, p.141).

복문수(2005)는 이러한 파트너십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NGO의 경우 그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시민적 정당성의 확보도 요청된다고 보았다.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조직과 활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현재적·잠재적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므로 시민적 정당성을 잃은 NGO를 파트너십의 상대로 선택할 경우 정부가 바라는 목표달성을 시민의 외면에 의해 성취하기 어려울 것(복문수, 2005, p.32)이라고 보았다. 이는 곧 시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그들이 수행하는 활동 자체가 공익성을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버넌스 파트너십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나 협력사업을 통해 그 존재가치를 시민들에게 확신시킬 수 있기에, 신뢰 있는 파트너십을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이처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오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원한다는 관점보다는 '공익활동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가 상호의존'(김정욱 외, 2019, p.72)하고 있다는 견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별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이 설립 및 운영되고, 이를 거점으로 다양한 공익활동 공모사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견해는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곧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 정책과 지원사업이 단순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제3섹터가 사업비를 지원받는 구도가 아니라, 상호 필요한 자원을 호혜적으로 주고받는 거버넌스 파트너십을 통해 '공익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확산됨을 보여준다. 다음 항에서 살펴볼 기본계획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지원 사업 수행을 통해 공익성이 구현된다는 것과 더불어 이를 더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성이 구현돼야 한다는 관점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

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논의와 정책 동향

가.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정책 동향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시민사회 결집력과 응집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점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3섹터 분야의 공익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2021년 11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 5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고, 이어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용역이 실시됨과 더불어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등 시민사회 분야 국정과제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소통협력의 사회혁신 △기부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적용대상으로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소비자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근거한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활력있는 시민사회,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기본계획이 제시한 3대 전략 목표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 다루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과 관련한 추진과제는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성장 지원' 중 네 번째 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 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표 3-15〉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전략 목표와 추진 과제

전략 목표	추진 과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	①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체계 마련 -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추진 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구/조사 기반 조성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기초조사 체계 구축 -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관련 연구 활성화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역량강화와 성장 지원	③ 민주시민교육 확대와 공익활동 참여 촉진 - 일상의 민주시민학습 확대 및 지원체계 구축 - 기부 문화 확산 및 행정체계 효율화 -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 ④ 비영리민간단체 및 공익활동가 지원 강화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법인 지원 제도의 효과성 제고 -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 ⑤ 지역 시민사회의 협력 강화 및 기반 구축
민관협력과 사회적 연대 강화	⑥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 -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 / 협력 활성화 체계 마련 -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협력체계 강화 ⑦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공공외교 사업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 국제개발협력에서 시민사회 파트너십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1, p.11) 재구성.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의견에서 국무총리비서실은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과 활동가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역량 제고 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마련' 전략으로 공익활동 이력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위해 '공익활동 이력제' 및 '공익활동 마일리지(Basic Public Mileage)' 등에 대한 도입방안을 연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 이력 기록·관리·공개 등 공익활동 관련 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공익활동정보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관계부처합동, 2021, p.19).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공익활동 수행 단체와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해 정책이 주목한 사례는 △공익활동 이력제, △공익활동 마일리지제도, △공익활동정보시스템 구축, △타임뱅크 제도,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등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내 지자체 단위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행해오고 있기도 하며, 해외에서 매우 활발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플랫폼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향의 정책적 동향과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오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공익활동을 인정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적인 영역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권미혁 의원 외 11인이 2016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안 제6조제2항) 하는 안이 제안됐으나,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①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2020.08)에서는 "시민사회의 안정적인 자립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범위와 보상방안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보고하고, 개정조례 제7조(기본계획) 제9항에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제3항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다음과 같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정의하고 있는 바, '시민사회조직' 중 구체적 기준이 없이 "시민들이 결성한 모임"까지도 시민사회조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민사회조직 범위의 과도한 확장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의견의 제시돼 여전히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장벽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2021년 1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조 및 13조에 따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17개 광역시·도에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했다.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준조례 제16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도 반영됐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조례

제16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에 노력하여야한다.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의 구축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과 더불어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으나, 2022년 9월「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폐지령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10월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이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다만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23년도 및 2024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령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41호, 2022. 10. 4., 폐지]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 계획을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민사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칙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전의 제4조제1항(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는 제외한다)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전의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그 지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전의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방안 정책 논의 및 심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의견들이 주요

정책 의제로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제도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료 등을 검토했다.

우선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19)의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백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모색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행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반영해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단체 내부 회원에게는 강사비 지급이 불가능한 현 지침을 지급 가능으로, 기관마다 사업의 특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자체 공익사업 관련 지침은 행안부 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 없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음으로 개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철민 외(2021)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한 이후 지역 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을 연구한 결과에서 개인(시민)과 함께 공익활동의 주요 주체를 형성하는 조직(단체)의 형태가 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사회적 위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요청하는 인건비 등의 직접 지원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시민자산화·지역재단·사회적투자·공동체이익회사 등에 대한 지원으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즉, 공익활동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공익활동 주체들의 자생적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관한 직업으로서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방안과 관련한 논의는 〈표 3-16〉과 같이 진행되어왔다.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2017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한계, 단체 설립 간소화와 사후 감독 및 평가 강화, 시민사회발전기금 조성을 통한 독립성과 안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제1차 회의에서는 중간지원조직(서울시NPO지원센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에 대한 과제 수립과 정책 연구가 추진됐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및 보상, 사회적 인정, 비영리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시민사회발전연구 등의 공익활동 기반조성 공론의 장이 수차례 진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논의의 장에서는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해 △국가직업분류 상 공익활동가의 분류 방식 문제, △공익활동가 경력 인정에 관한 문제,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및 고용창출 정책에서 공익활동 및 비영리 영역 포함 여부 문제(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 2020, p.108) 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 3-16〉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

회차	주요 내용
2017년 제1차 (2017.04.05.)	•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공익활동 시도를 위한 발전 경로를 만들고, 집중적 투자가 필요함 • 기존 지원사업 체계로는 법적 틀 때문에 대응이 어려움 • 젊은이들이 비영리 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의 틀 때문에 신생단체들이 많이 혜택을 받지 못함
2017년 제2차 (2017.07.06.)	•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은 간소화하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 • 법마다 다양하게 규율돼있는 비영리, 공익성,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 명시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에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및 재정지원의 절차, 사후감독에 대한 기본규정을 둠으로써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의 일관성을 갖추도록 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통상적인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별도의 기금(가칭 시민사회발전기금)을 조성해 상대적 독립성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 (시민사회활성화)기본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비영리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간접적 지원제도(교육 및 연수를 위한 지원,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 규정, 공제조합, 상조규정 등) 마련 • 공공·공익채널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자신의 조직 및 활동 등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후원자 모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방영권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비영리단체 및 시민공익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사후감독과 평가를 도입하되 단체의 자율성과 자발적 활동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중간조직-비영리단체 상호 간 참여형 또는 쌍방향 평가시스템 도입
2020년 제1차 (2020.01.17.)	• 2020년도 서울시NPO지원센터 추진목표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 수립 • (공익)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내적 동기부여와 사회적 인정이 가능하고, 활동가의 성장경험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공간' 필요 •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 및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정책연구 수행

자료: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2017),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2020)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이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특히 박준 외(2020) 협동연구과제로 시행된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방안』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지향하는 비영리 부문은 내재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처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비영리 부문은 단순히 자원봉사 개념을 넘어 중요한 유급(paid) 일자리 창출원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분야에 대한 정책적 한계가 많으므로, 비영리 일자리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체계 마련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정,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부문 간 선순환 구조 확립 등 비영리 생태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논의의 동향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과

더불어, 이를 위해서는 공익활동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사회적 인정'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인정'에 앞서 '사회적' 관점이 어떻게 구축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은 2020년 제1차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2020년도 서울시NPO지원센터 미션체계도'에도 반영됐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2020년 3대 추진목표 중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을 포함했고, 시민인식 제고와 정책 수립을 위한 활동이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그림 3-4] 2020년 서울시NPO지원센터 미션체계도

비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		
미션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와의 견고한 관계력에 기반하여,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 지원**		
추진목표	공익활동의 사회적 역할 강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	시민사회 성장전략 수립
추진과제	▪ 활동의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다양한 유형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책(solution) 실행 지원 ▪ 분야별 의제 전문가로서의 활동가 성장 지원	▪ 공익활동의 가치 제고 및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지지와 존중에 기반한 지원 정책 수립	▪ 포괄적 시민사회를 위한 서울시 시민사회지원정책의 통합 및 융합 ▪ 지역시민사회 균형 성장지원 ▪ 공공지원체계와 민간지원체계의 협력 방안
추진사업	• 조직변화지원 • NPO상담소 • 비영리스타트업 • 활동가연구지원 • 활동가역량의맵구축 • 활동의기술발굴및공유지원	• 정책연구 • NPO지원박람회•컨퍼런스 • 홍보및정보포털구축 • 공간 및 전시지원	• NPO참여예산제 • 대외협력 • 권역NPO지원체계기반조성 • NPO입주협업공간조성
핵심가치	연결, 협력, 전환		
대상	- 조직의 생성, 성장, 전환을 고민하는 NPO/시민 - 사회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활동가/시민		

자료:제1차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자료(2020, p.11).

2020년 시민사회발전 포럼에서 제안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충청남도에서는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가 〈표 3-17〉와 같이 진행됐다. 앞서 서울과 유사하게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이를 비영리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기획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익활동 수행 단체에 대한 자원과 수요조사 등 도(道) 전반에 대한 공익 관련 사업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활동가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충남지역 공익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도 제안됐다. 이처럼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에서는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및 역량강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기초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표 3-17〉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

회차	주요 내용
2020년 1차 (2020.02.19.)	•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 충남 전체 시민사회 역량강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평가 시스템 필요 • 꼭 필요한 단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 추진 시 단체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의도적 기획 필요 • 충남 전체에 대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자원·수요조사 등 기본현황이 제공되어 사업이 충남 전체에 미치는 영향, 변화 등을 알 수 있어야 • 도 전반에 대한 공익 관련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 필요
2020년 2차 (2020.11.24.)	• 청년이 시민사회 경험을 통해 지역 공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체 취업 시 적극 직원 등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시행(비영리 일자리사업) 추진 동의
2021년 1차 (2021.03.11.)	• 당진 활동가 처우 조례 제정 관련, 충남도에서도 타 부서와 협의해 중간지원조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충남지역 공익인재 양성을 위한 현황조사와 단계별 계획 수립 제안

자료: 충청남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 회의록(2020; 2021).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영역에서의 보장이 필요하다. 2022년 12월 기준 각 지역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 인정 방안 반영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3-18〉과 같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포함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로 파악됐다.

특히 충청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본계획 수립이 아닌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과 관련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도지사가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시민

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관련 조항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배제되지만,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다. 경상남도 또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항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 3-18〉 지역별 조례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반영 여부

지역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2.10.17.일부개정) •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시민사회 조사 및 연구, 교육·훈련,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시장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2.09.30.일부개정)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 지자체 자치법규 중 유일하게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조항 ×
충청남도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4.30.일부개정) • 제11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나 도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 충청북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12.17. 전부개정) •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 제9조(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등)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공익활동 단체는 제외한다. 3.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경상남도	• 경상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2.5.6.전부개정) •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홍보 및 공익활동 공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지역	주요내용
경기도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7.14.전부개정)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강원도	• 강원도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2.3.4.제정)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0.5.11.일부개정) •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관련 규정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2020.12.19.제정)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7.9.27.제정)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1.11.22.개정안 통과×) • 개정조례안에도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규정 ×

자료: 지역별 조례 검토보고서 및 심사보고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은 지방분권과 자치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진성만과 권경선(2017)은 현재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은 시민들의 기본권 증진과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에, 공익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강화 근거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의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임무 강화의 간접적 근거라고 보았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관련 주요 쟁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도입에 관한 논의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찌감치 진행된 바 있다. 그러한 논의의 결과가 '현안'에서 '의제'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제도화됐는지, 제도화의 영역에 진입하지 못한 의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시민사회 논의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정부의'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과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진행된 간담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책자료와 심의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조례 및 기본계획에 어떻게 관련 의제들이 반영됐는지를 검토하였다.

1) 공적 자금에 기반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체계 마련

비영리 단체에 대한 정부의 공공자금 지원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보건 및 인적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공적 자금이 집중되며, 이는 비영리 단체 수익의 중요한 원천(Boris & Steuerle, 1999)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대한 공적 지불이라는 주요한 과제가 도출되게 된다. 그러한 공적 지불의 타당성 확보와 더불어, 대상과 범위에 대한 상세한 설계가 이뤄질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주요 논의 및 쟁점을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 조례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들파'(2019)는 관련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수행 과정에서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에 교부해 오던 지방보조금을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로 교부할 수 없게 되자 지원제도의 운영비 사용 논란이 촉발되었으며, 정부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하는 인건비를 '운영비'로 해석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진영은 이를 '사업비'로 봐야한다(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2019.11).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위원회가 주최한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익활동 일자리 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돼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이와 같이 보조사업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운영비 지출은 법률로 제한되어 있지만, 사업비 내에서의 인건비 등 운영비 사용은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통일적이지 않고, 부서에 따라 과도하게 엄격히 제한해 인건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업비 내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고, 이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면 현장에서의 제약극복과 혼란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시민단체가 민간위탁을 받을 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또는 위탁수수료의 경우도 법률에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각종 지침과 규정을 통해 사실상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수탁을 받은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미 일부 지역이나 단체는 위탁수수료 및 관리비를 정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법령 개정 전이라도 민간위탁 관련 위탁관리비 규정과 지침을 변경해 시민사회 민간위탁을 활성화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시민사회위원회, 2019:46-47).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공적 자금, 즉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지원법이 재개정되는 과정을 분석한 조철민(2015)의 연구에서는 관변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비영리 공익지향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작한 데서 출발했지만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 도입 지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공격적인 비판, 지역수준 민간단체 지원의 경우 감시·견제의 사각지대에 놓은 사례들이 많은 점, 지역 수준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활동에 대해 상위법이 지나치게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 등의 담론이 이어져왔음을 연대기 형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지원주체와 사업수행주체 간 상호 관계맺음을 근거로 하는데, '협력적 관계구축'과 '특정단체 특혜지원 폐지'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제가 제기됨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 역사의 관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는 한국 사회의 특징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는 정부 중심의 보조금 지급 과정이 장기간 시스템 변화 없이 지속되다보니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둘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영역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을 수행해나가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 자금 지원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이 사회적 인정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조세감면이나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및 규정 구체화 등에 대한 공공자금의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도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공익활동 경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수행 과정에서 수행주체인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경제적 보상과 더불어 경력 인증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은 토론회 및 간담회, 정책 워크숍 등의 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에서 드러난다.

> 상근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질문에,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절반에 가까운 43.4%의 응답자가 1순위, 74.6%가 3순위 안에 포함하면서 압도적으로 중요시 되는 과제로 나타남. 그 밖에 3순위 안에 30% 이상의 응답자가 선택한 과제들로는 '활동의 전문성 및 경력인정'(38.6%),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37.6%)이 도출됨. 이러한 조사결과는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공적 활동에 대해 무임금 봉사나 헌신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대한 공적 지불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줌(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2019.11.).

> 정부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고려한 실행로드맵 마련이

> 요구되며, 제도 개선 외에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단기·우선과제로 △시민사회 기초통계 및 지식생태계 구축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비영리 영역 일자리 확대 △공익활동 공유공간 확대 등을 포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함을 강조. 특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의 특성 상 4대보험 등으로 경력증빙의 어려움이 존재하며, 공익활동가 직업군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한 대출 등 불이익이 존재하는 한계 개선의 필요성 지적. 이를 위해 △공익활동 경력 인정(채용, 사업참여 시 민간경력 인정 등) △공익활동가 직업군 명시의 과제를 제시함(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정책워크숍. 2020.1.15.).

> 민관협치 활동을 위해서는 예산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 대한 정보(네트워크 정보, 전문지식, 민간 파트너십)를 가지고 있는 공익활동가를 개방형 전문직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민관협치 기반형 위원회 중에서 그 분야의 공익활동가들을 고용한 위원회는 없다(시민사회발전위원회 예외적). 민관협치 네트워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익활동가가 공무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 공익활동가들로 하여금 민관협치 기반형 위원회를 공동운영하도록 하여 민관협치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시민사회위원회, 2019, pp. 71-72).

>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2019)이 실시한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일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전국 800여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에서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인정'이라고 응답한 활동가가 20.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들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줄 것인지, 그 시간에 대해 지역사회는 어떠한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조아신, 2021, p. 21).

구로구의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2020)에서는 공익활동 수행단체 및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조철민·정혁, 2020, p. 39-43).

첫째, 단체와 활동가 권익증진을 위한 '비영리 일자리 지원 사업' 등과 같은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비영리 일자리' 지원에 관한 정책과 과제를 설정하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둘째, 활동과 삶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공익활동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익활동가들은 '활동가'라는 정체성과 함께, 경제적 필요를 해결하는 '노동자'와 단체 구성원으로서 '실무자'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닌다. 3가지 정체성의 균형과 최소한의 삶의 조건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더불어 공익활동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로서 보람과 자부심,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사회적 문화와 인정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공익활동가들이 지역 시민사회를 이해하고, 공익활동의 비전을 형성하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학습과정 마련이 요구된다. 공익활동가 성장과 충원을 위한 공익활동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 관련 지역사회 논의구조와 기초 인프라 마련의 차원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이 운영돼야 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가 지원정책 참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류연미(2014)의 연구에서는 '청년참'[28]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 결과에서 "청년참은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시책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는다"며, "현재 하고 있는 활동의 의미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권위"라고 기술했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이 선배 세대와 갈등을 빚는 요인 중 하나로 '활동을 중시하는 선배 세대와 자기 일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후배 세대 사이에 불편한 인식차'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젊은 세대의 공익활동가들에게는 단순히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활동이 노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박준 외(2020)의 연구에서도 청년들이 지향하는 '비영리 일자리'는 기존의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별도의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사회적경제 등과 연계함으로써 비영리 일자리 확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표 3-19〉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방안

주제	주요내용
재정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을 비영리 부문으로 확대 적용 • 비영리단체 정책자금 융자,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공유공간 등)
인프라 지원	• 비영리 부문 경력 인정 사회적 기준 마련(직무분석, 경력산정기준 수립 등) • 기부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주민세 1% 기부제도(일본) 도입 등 • 주기적 단체 기초 통계조사 등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수립 • 비영리 일자리 채용 플랫폼 구축 • 사회적경제 진출을 위한 청년들의 비영리 일자리 '일경험' 지원
책무성 강화	• 회계정보 공개 간소화로 행정규제 개혁 •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결성 : 공익활동가 고충처리, 활동가 임금결정 등 활동

자료: 박준 외(2020, pp. 106-110).

이처럼 공익활동 경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특화된 정책과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강조되어오고 있다.

3)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정 체계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이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활성화'라는

28) 3명 이상의 청년들로 구성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13년 총 112팀이 선정돼 지원금 100만원과 함께 청년허브 페이스북 그룹에 월 1회 이상 활동내용을 올리고, 매월 열리는 '커뮤니티 반상회'에 총 5회 이상 참석해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결과물과 정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현재는 종료된 사업이다.

선결과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때 해법과 대안이 모색될 수 있다. 즉,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강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시민사회위원회(2019)가 수행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지적됐다.

> 새롭게 등장한 시민 주체가 공식적,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場)이 너무나 빈약하다. 그들에게는 공식 대표도, 대변인도, 법인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거버넌스 파트너로 그들을 호명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우리 사회 행정에 참여하고 발언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로 달려가는 것이다. 온라인이 아니면 그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좀처럼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유령처럼 존재한다. 가장 거대하고 강렬하나 명부에서 지워진 존재, 시민참여의 가장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주체지만 시민참여의 장에서 배제된 존재들이다. … 오늘날의 시민사회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합집합이며,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와 동의어가 아니다. 수적으로 압도적이고, 확장성에 있어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는 다중의 비조직 시민을 배제하고는 시민참여를 논할 수 없다(시민사회위원회, 2019, pp. 109-110).

조철민과 정혁(2020)은 우리 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시민들의 공익활동은 그 규모와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왔지만, 대다수 시민은 아직 공익활동 참여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참여 협치기반 정책사업이 추진돼 주민 참여 경험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시민사회를 통한 지속적이고 심화된 참여로 나아가도록 할 과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주민참여가 주로 다양한 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반면 '목표'로는 인식되지 않아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 정책과 실천이 소홀히 다뤄지는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참여의 의지가 있어서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부족해 참여주민이 자부심과 활동지속의 동기를 느끼기 어려운 문화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실천방안을 연구한 이환성 외(2021)의 연구보고서에서도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법적 명시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낮고 그에 따른 사회적 인정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참여를 통한 시민적 효능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 또한 취약한 상황에서 시민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존중과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그에 걸맞은 사회적 인정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를 위해 신뢰·호혜·연대 기반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그림 3-5]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도를 제시했다.

[그림 3-5] 신뢰·호혜·연대 기반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 구축도

자료: 이환성 외(2021, p. 280).

[그림 3-5]는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공동체 구현을 위한 '품앗이형 지역단위 다자간 교환 시스템, 시티즌파워 뱅크(가칭) 구축' 네트워크로 타임뱅크과 공익마일리지를 결합한 모델이다. 더불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위한 공익활동 이력제를 도입해, 공익활동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인 및 민간단체의 아이디어 무단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제를 구상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지속성을 확보하고, 공익활동을 통한 개인의 삶의 만족도 제고와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적 효능감과 자긍심을 제고하는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환성 외, 2021, pp. 280-281). 이와 같은 모델은 이미 해외사례에서 활발하게 실행되어오고 있으므로([그림 2-6]) 그 타당성과 신뢰도는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시민참여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실험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지역의 다양한 임의단체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현재 상시회원 10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을 완화(박준, 권성근, 2019)해야 한다는 지적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는 구도가 마련돼야 하고, 무엇보다 공익활동 수행 주체의 정보 공개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회적 인정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도출한다.

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 사례

1) 공익성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파트너십)을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 우수기업을 발굴·인정해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고,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활동을 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함께 사회공헌을 진행한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신청하면 심사가 이뤄지며, 인정기업에게 1년간 지역사회공헌 마크를 부여한다. 해당 기업에게는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매출채권보험 가입 보험료 할인, 경영 컨설팅 비용 지원 및 기업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9). 비영리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인정은 아니지만, 공적 자금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에 대한 투자가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한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다.

해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 생산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평가 지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됐다. 이는 공익활동에 투입된 자원과 산출된 결과물이 사회적 가치 측정으로 연계될 수 있고, 객관적인 산출값으로 구현될 때 사회적 인정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와 관련해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 수익률)가 주요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SROI는 이해관계자 중심의 비용 편익 분석 방법론으로, 공익활동과 같이 무형의, 측정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단순히 비용 절감이나 산출물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공익활동의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평가의 범위다. 비영리단체의 SROI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오고 있는 캐나다의 Ecology Action Centre는 2016년도 지역 로컬 푸드 활동 단체인 HFPA의 SROI 비율을 측정한 결과값을 5.53$:1.00$로 산출했으며, 이는 HFPA에 1달러를 투자할 때마다 5.553달러의 이익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즉, 비용가치의 5배 이상이 공익활동을 통해 산출된다는 것이다(Ecology Action Centre. 2016).

이와 같은 SROI 시스템을 통해 캐나다는 2021년 현재 8만3,000여개의 등록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240만여명이 1,92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기여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산출의 기준이 되는 SROI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29].

첫째, 해당 부문의 경제적·사회적 기여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의식이 필요하다.

둘째,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투자 수익에 대한 정량화 가능한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30].

셋째, 비영리단체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인정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동기화, 생산성과 충성도를 향상한다.

넷째,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을 비영리단체로 유인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이러한 동향을 반영해 캐나다는 최근 비영리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에 대한 '사회운동을 위한 연방기금 데이터베이스'(State Funding for Social Movements)를 구축해 1960년대 이후 캐나다의 NGO보조금에 대한 통합 아카이브를 완성했다. 이를 통해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공공 재정 및 국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 입안자와 지역사회 조직은 보조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액세스권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31].

이와 같은 사례들은 단체 중심이 아니라 사업 중심으로 보조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박천일과 김선엽(2011)이 강조한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실태의 파악은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단체의 성향과 활동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될 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충성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타임뱅크 활용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해 지역공동체 영역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인정은 아직 국내에서는 광범위하게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공동체 지원사업 등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구미시의 '사랑고리'는 국내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타임뱅크 활용 인정제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직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체계 구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의 타임뱅크 설립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타임뱅크를 통해 적립한 (봉사)시간을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등록금, 교통비, 기숙사비 등)에

---

29) The Bhayana Family Foundation https://bhayanafoundation.org/take-action/

30) 일례로 Pathways to Education의 정량화 가능한 투자 수익에 대한 Boston Consulting Group의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등록한 학생당 누적 사회적 혜택으로 $600,000를 제공했다고 추정하는 등 자선 및 비영리 부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분석 데이터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거나, Big Brothers Big Sisters에 대한 유사한 연구에서는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수익이 $18-$23인 것으로 추산하는 등의 산출법이 사례로 제시됐다.

31) 캐나다 공공계정 이체 지불 데이터세트
https://open.canada.ca/data/en/dataset/69bdc3eb-e919-4854-bc52-a435a3e19092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강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훈·이다겸, 2018)는 연구 결과도 여전히 시사점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활동가가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타임뱅크를 활용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충분한 숙의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가 공공 및 사회서비스의 주요 주체로 활동해오고 있는 해외사례에서는 타임뱅크를 활용한 사회적 인정의 다양한 모델과 실행체계들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수행과정에서 활용되어오고 있다.

존 캐롤과 그의 동료들(Carroll, 2017)은 공동체 협동을 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타임뱅크와 비영리단체의 관계 디자인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는 본 연구의 비영리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타임뱅킹 모델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기관 구성원뿐만 아니라 개인도 멤버십에 포함시킨다. 현재 타임뱅크는 서비스 교환을 개인 간 관계로 생각한다. 서비스는 수신자에게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자는 시간으로 보상받는다. 이 모델은 특별한 종류의 구성원으로서 기관을 포함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 서비스는 기관에 의해 요청되고 제공될 수 있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받거나(클래식 타임뱅킹 교환) 그들이 일하는 시간을 기관에 다시 기부할 수 있다(자원 봉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이러한 타임뱅킹 모델이 멤버십으로 참여하고, 공익활동가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교환 또는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에 대한 구상도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아이디어는 타임뱅크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역량·평판·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활동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establishing reputation’(평판 세우기)이라고 표현한 이러한 방법은 타임뱅크 시스템을 통해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의 활동 커리어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 수혜자들의 평가시스템까지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적십자 타임뱅크 모델을 참고한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타임뱅크는 서비스 교환에만 머무르지 않고, 공익활동의 평판을 발전시켜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공익활동가와 시민들의 참여도 촉진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적십자 타임뱅크 모델은 별, 배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는 회원들 간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이 지속가능한 시스템 속에서의 평가와 평판 구축의 장으로 조성됨으로써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신뢰와 호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캐롤 역시 이와 같은 타임뱅킹 시스템 모델을 'reputation system'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정 지표와 인정 정도가 형성되고, 'matching service'를 통해 공익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인정을 형성해나가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아래와 같이 실제 사용되는 타임뱅킹 시스템 멤버십 디자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플랫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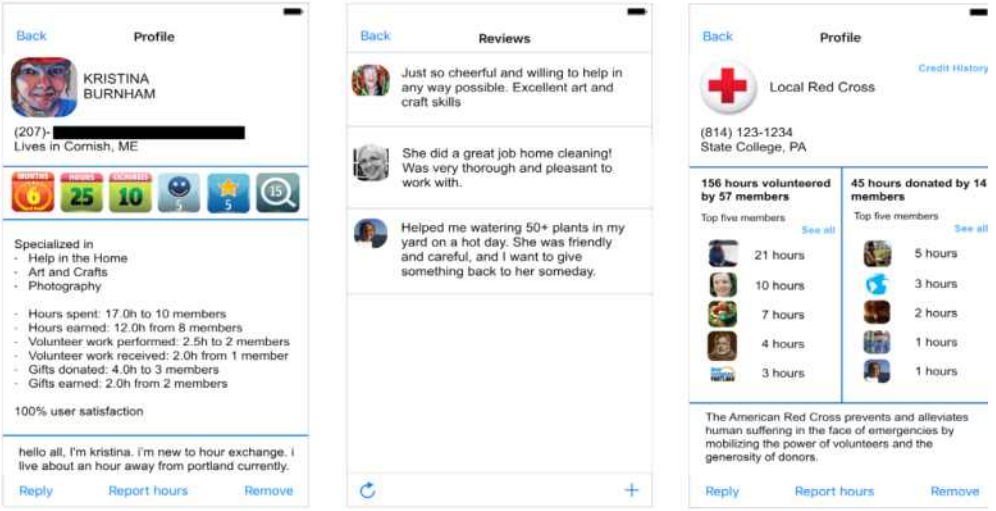

자료: Carroll, Shin, Han, and Kropczynski (2017 : 58).

칸과 그레이(Cahn & Gray, 2015)는 타임뱅크 서비스가 실행되는 영역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사회적 활용의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타임뱅크를 활용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로 로드 아일랜드의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Parent Support Network of Rhode Island)'를 제시했다. 해당 네트워크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 그룹이 공동보호시설을 만들고, 서로에게 보육과 코칭, 교통 및 개인 지원을 제공한 시간을 타임뱅크로 보상받아 시설을 떠날 때 크레딧으로 지급받는다. 이를 통해 장애아 부모는 자녀의 시설 수용이 아닌 대안을 모색할 수 있고, 주정부는 시설 지원 서비스에 지출될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 재해 구호 영역에서도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타임뱅크 시스템을 갖춘 남부 마이애미에 1992년 8월, 허리케인이 강타했고, 주 방위군과 적십자가 도착하기 전 타임뱅크 구성원들은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993년 회원들이 획득한 타임뱅크 크레딧 수는 15만개를 초과했으며, 1994년에는

3,000명 이상의 회원이 매월 1만2,500개 이상의 타임뱅크 크레딧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 외에도 노인돌봄, 공동체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타임뱅크 시스템은 공익활동의 보이지 않는 인정과 보상 체계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효과를 입증해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 및 보상, 이력관리체계가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의 필요성(이환성 외, 2021, p. 276)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실천 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바 있다.

3) 시민참여 활성화

이러한 현장에서의 여건이 반영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혁신제안톡'[32]에는 2021년 3월 30일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시됐다. 해당 제안은 정책 반영 단계로까지는 진입되지 못했지만, 공익활동 수행 현장에서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제안 : 공익활동 참여 마일리지 및 공가 보상 제도화

❍ 제안이유
- 다양한 시민참여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나, 일반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
- 국가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참여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음.
-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지원체계가 필요함. 이는 사회적 참여를 개인적 성향에 맡길 것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며 적극적으로 장려·홍보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사회적 공익활동 참여 마일리지제도 운영 : 중앙정부/지방정부 참여 신청 및 등록, 참여 단위 당 개인 마일리지 부여, 일정 마일리지 정부 혜택 연결
- 공익활동 공가 제도화 및 확산 : 국민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업무시간 참여할 수 있도록 공식 지원 필요

이처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할 필요성이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공감대를 얻어오고 있다.

데니스와 워롭(Denis & Warlop, 2020)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대중의

3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가 관련한 제안이 이뤄진다.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소관부처의 혁신제안톡전문자문단 검토를 통해 정책반영을 추진한다.

사회적 인정이 기부 등 참여를 증진시키는 반면, 인정을 강요하면 오히려 참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실증적 연구결과로 보여줬다. 샤르마(Sharma, 2022)는 비영리단체가 기부자에 제공하는 표창이 기부자들에게 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만들고, 기부자로부터 인정받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기부자에 대한 사회적 증거가 되기에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감사편지와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등 고전적 방식에서 진화해 '소셜미디어 언급'(social media mention), '인정 디스플레이'(recognition wall) 등 다양한 형태로 표창방식이 제공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처럼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참여하는 기증자와 기부자, 대중들에 대한 단체의 인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해 시애틀시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사례를 인용한 바 있다.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자부담 상당량을 비영리민간단체나 공동체가 조달하지만, 노동 참여나 전문 서비스 재능기부 등을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하는 타임뱅크 시스템을 자부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익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주민단체, 지역사회단체, 비공식단체,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 구도가 마련돼 매칭 펀드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는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33].

첫째,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수반한다.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 타임뱅크 시스템을 준용한다. 예를 들어 시간당 10달러의 가치가 있는 공익활동에 참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전문적인 서비스나 공익활동에 수반되는 직접비 및 인건비 등의 25%가 이를 통해 반영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둘째, 보조금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대규모 공익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 기금(semi-annual fund)은 5,000~1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격월로 지급되는 'small and simple fund'는 5,000달러 이하 예산이 수반되는 공익활동 수행 그룹에 지원된다. 500달러 이하를 지원받는 'Neighborhood outreach fund'는 비영리단체의 리더십 개발 및 회원 확장 등과 같은 프로젝트도 참여 가능하다. 최대 1,0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Involving all neighborhoods fund'는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또는 발달장애 이웃 참여 프로젝트 등으로 활용된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수행 범위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와 산출 가치가 국내 사례와는 차별화된

33) https://www.pps.org/article/seattlesmall

점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규모 시민공원 조성이나 공공예술 프로젝트 등 공익활동 수행의 범위도 매우 다양한 사례로 도출되고 있다. 하지만 매칭 펀드 사업 역시 국내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비영리 조직 또는 주민조직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국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민선8기 공약에서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이 주목할 사례로 평가된다. 공익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공익적 가치 증진, 공동체 회복 및 시민참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추진목표다. 마을단위 돌봄(학령기, 노인, 장애인 등), 기후환경 공익가치 일자리(자원순환, 에너지전환사업 등) 참여 시민에게 연간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최대 주 20시간 활동, 생활임금(2022년 10,920원) 기준 지급으로 1인 월 상한액은 873,000원으로 제한했다(광주광역시, 2022). 이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업이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광산시민수당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면서 모집대상으로 '광산구 소재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로 규정함에 따라 점차 공익활동 수행단체로의 확장가능성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참여자들의 활동비 등 인건비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기에, 이와 같은 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조세 혜택 및 금융 지원

프럼킨과 김(Frumkin & Kim, 2002)은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꾸준한 재정 지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공적 자금 투입에서부터 민간자금과의 연계, 세제혜택 등 조세지원 등 다양한 방식에서 발견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다양한 비영리단체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비영리단체는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을 제외하면 소득세 및 일부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상연(2018)은 캐나다 주정부가 지역공동체 비영리 조직에 대해 지원하는 공공자금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금융 지원의 방향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익활동 수행 비영리 조직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경제성, 지역성, 참여성의 3가지 관점에서 설정하고 있다. 즉, 지역의 비영리 조직이 소셜미션 달성을 위한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소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에는 정부, 민간투자자, 지역주민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표 3-20〉 캐나다의 비영리 조직 공공자금 지원 사례

유형	주요 내용
사회금융투자펀드 (Social Finance Investment Funds)	•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비영리단체와 같은 공익사업 자본을 일반인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 • 지역발전을 위한 비영리단체, 사회적 목적 사업 등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자본 투입 가능성 증진
사회성과연계채권 (SIB:Social Impact Bonds)	• 정부와 민간투자자 간 사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달성 여부에 따른 보상에 대한 계약을 통해 투자자가 사회적 서비스 제공 조직에 직접 투자 • 사전에 계약목표 달성 시 투자자는 투자금액 전부와 책정된 금융 수익 보상 • 계약된 성과목표 미달 시 정부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법인 및 개인 등에 의한 기부금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	• 기부금을 통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해 카드 기부 등 기부 방식 간소화 • 세금 환급을 위한 영수증 발급 등 시스템 구축

자료: 이상연(2018, p. 7) 재구성.

이상연(2018)은 캐나다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조직 지원 정책도 우수 사례로 제시했다. 캐나다는 지역공동체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원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고용사회개발부(ESD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조직이 지역 및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커뮤니티비즈니스개발공사(CBDC: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 Porration)를 설립해 지역주민이나 지역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정보 제공, 경영자문, 자금대출 및 알선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영리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지역공동체의 신규 설립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프로그램, 신규 이민자 집단의 사회적응 등을 돕기 위해 지역공동체를 조직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Newcomer Program, 농어업 및 농어업 식품에 대한 건강 및 안전의 기준과 보증 시스템 개발·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업 및 농어업 식품 관련 지역공동체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지역공동체 육성 정책이 지역사회에 근거한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육성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온타리오주는 초기 2년간(2016-2017) 지역공동체 조직의 육성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될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첫 번째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금에서 400만 달러를 투자해 125개 이상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역공동체 조직에서 수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제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해 모두 550개 조직에 대해 400만 달러 규모의 환급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역공동체 조직에서는 이러한 금융지원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여 고용장벽에 직면한 1,100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공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의 지역발전적

기능의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성과측정을 위해 관련 분야 부문별 리더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공통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공동체 조직의 육성과 이의 지원을 위한 사회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세제 및 금융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등록된 비영리 지역공동체에 대해서는 재산세(property tax)를 면제해주고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트릴리움기금(OTF:Ontario Trillium Foundation)[34]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현재 온타리오주 내에서 약 1만개의 지역공동체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동체 조직 당 평균 38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수입 측면에서도 영리 추구 지역공동체의 경우 평균 90만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의 비영리 지역공동체 45%의 설립목적이 지역사회 빈곤 감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상연, 2018, pp. 5-6).

일본의 경우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 100만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확대 가능성을 경험한 후 NPO법이 제정됐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NPO가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부금 조성, 정부의 위탁사업, 세금감면 혜택 등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다만 NPO법인으로 인증받은 단체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는데, 이에 따라 관할청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01년 개정된 세법은 NPO법인에 대한 민간의 기부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조직운영과 사업활동의 내용이 적절하고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인증 NPO법인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부금과 관련해 강화된 세제혜택[35]을 받는 '인정 NPO법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NPO 조세 혜택으로 1998년 NPO법 시행 후 일본의 NPO 법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인정을 받은 NPO는 기부금 비중이 높고, 인정을 받지 않은 NPO는 사업비 비중이 높다(이환성 외, 2021, pp. 95-97)는 재정수입구조의 변화 또한 사회적 인정 방안 모색에 있어서 주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일본 NPO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신청이 다음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설립을 인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준, 김성근, 2019, p. 95).

---

34) Ontario Trillium Benefit(OTB)은 저소득층을 위한 환급 혜택으로, 세 가지의 혜택이 하나로 뭉친 혜택이다. 세가지 혜택은, Ontario Energy and Property Tax Credit (OEPTC), Ontario Sales Tax Credit (OSTC), 그리고 Northern Ontario Energy Credit (NOEC)으로 나뉘는데, 주로 세 가지 혜택을 뭉쳐 1년에 한 번 혹은 매달 나뉘어 받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다. 보고는 개인 세금보고서 (T1) ON-BEN schedule을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더라도 4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만 차질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OTB 외에도 64세 이상 되는 노인일 경우 자신이 소유하는 집에 거주할 경우, 최대 $5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Ontario Senior Homeowners' Property Tax Grant (OSHPTG) 또한 ON-BEN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5)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법인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적용,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인정NPO가 수익사업에서 이익을 비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해 손금산입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본 NPO법 설립 인증 규정

① 특정비영리활동(법이 정한 20개 분야)을 실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사원 자격의 득실에 대해 부당한 조건을 첨부하지 않을 것
④ 임원 중 보수를 받는 사람의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일 것
⑤ 종교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⑥ 특정 공직자(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을 후원,지지,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⑦ 폭력단체 또는 그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통제 아래에 있는 단체가 아닐 것
⑧ 1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질 것

한편 COVID-19 이후 새로운 보조금 집행 관행의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대학 비영리연구소(Nonprofit Institute)가 2021년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내 많은 재단이 비영리단체가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 지역사회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관행을 조정했다. 일부 재단에서는 보고서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비영리단체로부터 기금 우선 순위에 대한 피드백을 활성화했다. 비영리단체가 가장 선호하는 보조금 및 기금 집행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기금의 유연성 향상'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금 역량 구축', '신청 및 보고 과정 최소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리 지역의 비영리 부문과 이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활력을 측정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제시하고, "모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이러한 조직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지난 18개월 동안 COVID-19 상황을 반영해 비영리 부문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두 배로 늘렸다는 점을 강조했다[36].

3. 사회적 인정 사례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사례들이 갖는 함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인정 기준이 되는 '공익성'을 평가 및 진단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므로, 투입된 자원과 예산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등 공익성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평가 체계와 매뉴얼이 요구된다. 행정

36) https://www.sandiego.edu/news/soles/detail.php?_focus=83092 (2022. 11.10.)

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접수된 제안서의 심사과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단체들이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사업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점(민현정, 2004, p. 124)도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공고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에 앞서 공익활동의 가치 평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도 이와 같은 한계를 일찌감치 인지하고, 법률이나 시행령에 공익사업 유형을 제시하는 것은 점점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요구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국회입법조사처, 2015)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반영한 공익성 평가지표 및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와 실행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적 인정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될 이해관계자와 인정의 범위가 명확히 설정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타임뱅크,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 시민참여수당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활동의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구체적인 인정의 방식과 기준 등이 명확하게 설정될수록 사회적 인정의 신뢰도와 참여도가 높아지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앞서 제시한 공익활동의 평가 체계와 사회적 인정의 범위가 구체화된다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과 공공자금 조달 등 금융지원의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조금에 국한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의 비영리 조직 공공자금 지원 사례,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활성화와 세제 지원 혜택을 강화한 일본의 사례 등이 선진사례로 벤치마킹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는 중간지원조직, 허브기관 등 다양한 유형으로 구상될 수 있을 것이다. 서문진희와 권용신(2015)은 경북의 지역형 공익활동사업의 하나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노인세대가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진입하기 위한 허브기관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지적하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민-관 거버넌스형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큼을 강조했다. 김정욱 외(2019)의 연구에서도 지역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갖는 지역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역량 등을 활용하고,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또는 위탁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이상적인 모델로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미등록 영세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량강화나 소규모 공모사업을 진행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할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적·질적 성장과 더불어 그들이 수행하는 공익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마을공동체

1. 마을공동체

가. 마을공동체의 정의

국내 지자체 조례에서 통용되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이다. 여기에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전통적 공동체와 구분되는 현대적 공동체의 운영원리,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활동 목적, 자조 활동과 민관협력이라는 활동 방식이 담겨있다.

현대적인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상호 대등한 관계’를 중요시한다. 전통적 공동체는 높은 결속력과 상호 협력이 장점이지만 그만큼 위계성과 폐쇄성이 강하다(Neal, 2013). 오늘날 마을공동체는 이러한 전통적 공동체의 조직 원리를 벗어나 구성원의 자율성, 수평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채택함으로써 공익활동의 기본 요건을 갖춘다. 2017년 3월까지 전국 139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제정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대부분은 공동체의 상호작용 원리를 이처럼 명시하고 있다(이정민 외, 2017, p. 189).

‘주민자치’는 마을공동체의 역할이 이웃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생적인 마을공동체는 이웃 간에 소소한 도움과 지지를 제공한다. 이것만으로도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닿지 못하는 미시적인 생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나 자율 방범처럼 지역사회와 밀접한 공동의 문제나 욕구를 가진 이웃들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자조(self-help) 활동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국가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사회 문제가 늘어나면서, 마을공동체는 행정당국과 함께 공공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주체가 되기도 한다(Boyle et al., 2009, p. 13).

주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과 지역사회가 더 큰 사회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면서 민주시민으로까지 성장한다. 이렇듯 마을공동체는 단순한 이웃 간의 친목 도모에 그치지 않고 사회자본 형성,

자조적인 문제해결, 공동생산 참여,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

나. 마을공동체의 특징

마을공동체는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보다 비교적 뒤늦게 공익활동 영역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분야는 무대가성, 자발성 등 공익활동으로서 기본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앞선 두 분야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특징은 마을공동체 분야의 사회적 인정 논의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마을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자원봉사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도 참여자가 스스로를 고양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사회변화의 혜택을 함께 누린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나를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는 참여자 공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자조 활동이다. 다만, 해결하려는 문제가 공익과 연결되어 있고, 해결 방식이 민주적인 소통과 협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이기주의와 다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은 공익을 위해 참여자의 사익을 희생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에 가까우므로 사회적 인정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마을공동체는 개인이 아닌 집단 활동이다. 자원봉사와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는 개인 단위 참여나 활동이 가능하지만, 구성원의 관계망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의 욕구를 가진 소수의 이웃이라도 모여서 함께 자원을 조직하고 방법을 모색하려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은 참여자 개인이 아닌 공동체 집단에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개인별 인정은 구성원들의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고, 집단적 소통과 실천이라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밖에 없다. 자원봉사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는 활동 공간에 제약이 없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와 유리되면 다른 두 분야와 독립된 공익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고유함이 사라진다. 초연결사회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정주하고 일상을 보내는 동네가 존재하는 한 마을공동체는 필요하다. 최근 당근마켓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동네 생활이 활발해진 것이 대표적인 예다(김재영, 2021). 따라서 마을공동체 분야는 사회적 인정과 보상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인정 효과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해야 하고, 보상도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것이 활동에 도움이 된다.

2. 사회적 인정 논의와 정책 동향

가. 사회적 인정 논의 등장 배경과 쟁점

1) 정책 출범과 사회적 인정 쟁점화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사회적 인정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지자체의 지원 정책 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을 기준으로 하면, 국내 마을공동체 정책은 2003년 전북 진안군(비도시 지역), 2007년 경기도 안산시(도시 지역)에서 처음 도입됐다. 정책이 존재하지 않던 2000년대 초반에도 부천 고강본동, 부산 반송동, 대구 삼덕동, 서울 성미산마을 등 자생적인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성과가 주목받았다(도시재생지원사업단, 2009). 이러한 관심은 문화적 존중과 학술적 조명에 가까워, 제도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본격적인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국가가 마을공동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협력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련 근거와 규정을 만들게 되면 사회적 인정은 피할 수 없는 쟁점이 된다. 마을공동체는 왜 공적 지원의 대상인가,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공적 자원과 권한을 제공할 것인가, 마을공동체 활동의 무엇을 공익적 성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는 국가가 마을공동체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입장이 자리한다. 마을공동체를 동원과 관리의 대상으로 본다면 엄격하고 높은 요건을 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최소한의 인정을 추구하게 된다. 반면에 육성(incubating)과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면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상태와 특성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최대한의 인정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정책은 지난 20여 년 동안 국가와 마을공동체가 끊임없이 다투고 실험하고 타협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인정 수준을 높여 왔는지를 추상적인 담론을 넘어 구체적인 제도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인정 논의 대상과 초점

이 글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인정 동향과 사례를 주민 모임, 마을활동가, 주민자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 모임은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는 출발점이자 활동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자생적이고 일상적인 마을공동체의 특성상 주민 모임 대부분은 비법인 소모임에서 시작한다. 법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러한 주민 모임은 국가가 공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개인 자원봉사자와 법인 형태의 비영리민간단체와도 다른 새로운 지원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정책이 이러한 지원 자격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했고, 얼마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했는지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직접 주도하거나 다른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원봉사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처럼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도 이러한 활동가의 경력 인정과 처우 개선 요구가 컸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분야는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개인 자원봉사자보다는 많지만 비영리민간단체 상근 활동가보다는 적은 비상근 활동가가 많고 그들의 사회적 인정이 가장 큰 이슈였다. 따라서 이러한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면,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논의를 폭넓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민자원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이러한 자원의 발굴, 조직, 활용은 그 자체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이자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자원은 노동력과 기술처럼 객관적인 가치 측정이 어려워서, 그간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활동 시간 위주로 공익활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상황에서, 재능과 현물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유형별로 경제적 가치 환산 기준을 마련한 마을공동체 분야의 노력은 사회적 인정 대상과 방법을 개선하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나. 비법인 주민 모임의 공적 지원 자격과 권한 부여

1)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

국내외 마을공동체 정책 대부분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소모임에서부터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친밀감과 공동의 요구를 가진 소수의 가벼운 활동이 결속을 다지고, 이질적인 이웃과 의제로 연결되면서 마을공동체의 규모와 활동이 점차 풍성해지기 때문이다(안현찬 외, 2017b, p. 9). 이러한 주민 소모임이 수월하게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마을공동체의 저변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활동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키우려는 정책목표에도 부합한다. 그러려면 마을공동체 정책은 다양한 공적 자원과 권한을 제공하는 지원 대상에 주민 소모임을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합당한 법적 요건과 지위가 요구된다. 예컨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법인, 협동조합 등 법정 단체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법인격, 정관, 대표자, 회계 등을 갖춰야 보조금을 계획대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분야의 주민 소모임은 이제 갓 활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자원과 역량이 부족해 공적 지원을 받으려는 상태이므로 먼저 법적 요건을 갖추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소모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로 소액의 보조금, 기초적인 교육과 컨설팅이어서 지원 내용과 요건의 균형이 맞지 않기도 한다.

[그림 3-7] 사회자본 축적 과정에 따른 마을공동체 형성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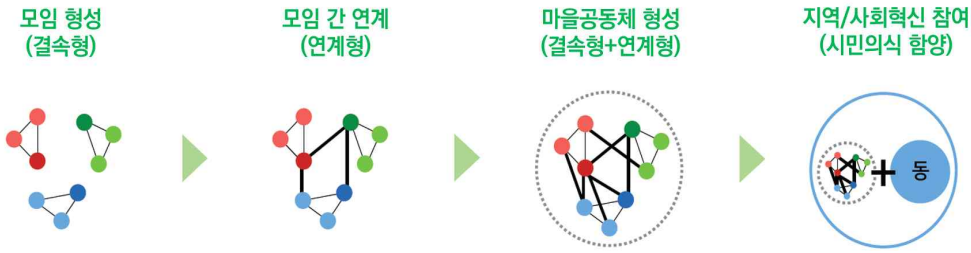

자료: 안현찬 외(2017b), p.10.

정책 취지와 목적에 맞춰 비법인 주민 소모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요건을 완화할 것인가, 아니면 공적 지원의 관례대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법정 단체 요건을 유지할 것인가. 2010년대 초반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도입하면서 제기된 이 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처음으로 공론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비법인 주민 소모임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3). 2013년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설립된 13개 주요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비법인 주민 소모임도 신청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안산시, 수원시, 서울시, 서울 성북구 정도였다. 그 외에는 공모사업 신청 자격을 행정구역(통리)이나 공식적인 위상이 있는 비법인 단체(주민자치위원회)로 제한했고, 공모사업을 계기로 대표와 간사를 갖춘 주민조직(마을회) 구성을 꾀하기도 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어떻게 비법인 주민 소모임을 공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는지를 서울시 사례로 살펴보자(유창복, 2014, pp. 220-227). 첫째, 주민 3명 이상 모임이면 법인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전체 공모사업의 60%까지 신청 자격을 완화하되, 보조금 상한선도 100만 원 내외로 낮춰 주민의 집행 부담과 행정적 위험을 함께 줄였다.

둘째, 공모 횟수를 수시제로 바꿨다. 신청 기회가 적으면 준비가 부족해도 공모에 참여하게 되고, 준비가 부족한 사업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공모 횟수를 여러 번 늘리는 것도 활동 계기가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 소모임의 특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신청 자격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

셋째, 보조금 집행 관련 절차와 교육을 강화했다. 사업 단계에 따라 참여자에게 보조금 집행기준, 서류 작성, 회계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컨설팅과 정산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공적 지원을 위해 높은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미달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격 요건을 낮추되 부족한 부분은 절차, 교육, 지원으로 보충하는 관점의 전환인 것이다.

[그림 3-8]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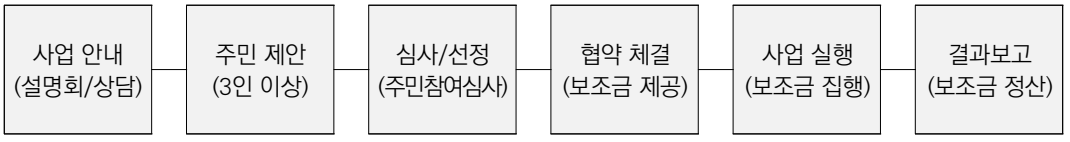

자료: 유창복(2014), pp.220~227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 결과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다수의 주민 소모임 형성을 촉진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와 자치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총 12,461건이고, 이 중 80% 이상은 비법인 주민 모임이 선정됐다(안현찬 외, 2017a;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 10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로 보조금을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은 정산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도 생겼다. 이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충청남도 등 거의 모든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비법인 주민 소모임을 지원한다. 마을공동체의 씨앗인 주민 모임은 법적 요건과 형태에 구애받지 말고 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정책적 차원의 사회적 인정이 전국으로 확산된 것이다.

2) 마을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계획 주체로 인정

사회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공 계획은 국가의 고유한 통치 수단이다(제임스 C. 스콧, 2010). 관련 법령은 공공 계획의 수립, 결정, 집행 권한을 국가에 부여해 계획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담보한다. 국가의 능력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고 계획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해지면서 기업,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적 계획이 보편화됐지만(Healey, 1998), 계획의 주체는 여전히 국가인 경우가 많다.

주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은 곧 주민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벼룩시장을 열고, 공동육아어린이집을 만들고, 골목길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모두 계획이 필요하다. 공익과 연결되어 있지만 마을공동체 참여자들의 사적인 문제를 사적인 자원으로 해결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민간 계획이다. 벼룩시장과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국가가 아닌 축제 참여자나 양육자가 계획하는 것이 맞다. 반면에 마을공동체 참여자의 사적 문제를 넘어 지역주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문제해결에 공적 자원과 권한이 필요한 의제는

엄연히 공공 계획이다. 골목길 주차 문제나 통학로 안전 문제는 마을공동체가 제안하더라도 국가와 협력하거나 국가의 공공 계획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정책 대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회 종합계획, 이른바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마을공동체의 가장 높은 성장 단계로 설정한다. 거대한 국가나 도시 전체가 아닌 일상적인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마을공동체가 공공 계획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어떤 마을공동체가 마을계획을 세우려는 충분한 욕구와 역량이 있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주민조직을 공공 계획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공적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했던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도시재생뉴딜" 등은 주민협의체라는 조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종합계획 수립과 실행에 참여하지만, 공식적인 계획 수립 주체는 해당 지자체였다. 계획의 규모와 성격은 마을계획이지만, 수립 방식은 주민주도형보다는 관주도 주민참여형에 더 가깝다.

그런데 2015년 경기도 안산시가 시도한 사1동 마을계획과 300인 원탁회의,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 단위 마을계획"(이하 찾동 마을계획)은 제도적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를 공적 계획 주체로까지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3-21〉 서울시 찾동 마을계획 수립 과정

단계	세부 내용	소요 기간
추진기반 마련	1. 마을계획 실행 동 선정	4개월
	2. 자치구 및 행정동 추진체계 구축(담당부서, 중간지원조직 구성)	
마을계획단 구성	3. 주민 만남 및 지역 현황조사	5개월
	4. 마을계획단 홍보 및 모집	
	5. 신청자 대상 기본교육	
	6. 마을계획단 설립식(분과 구성, 운영규칙 제정, 대표 선출 등)	
마을계획 수립 및 결정	7. 마을자원 조사 및 의제 발굴	6개월
	8. 마을계획 수립(의제별 분과 구성, 마을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9. 마을총회 개최(마을계획 결정 및 예산 배정)	
마을계획 실행	10. 계획 실행 준비(참여자 추가 모집, 상세 실행방안 작성 등)	6개월
	11. 실행계획별 예산 확보 및 실행	
마을계획 평가	12. 마을계획 평가	1개월

자료: 서울시(2015), p.57.

수년간 지속된 서울시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마을계획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주민 100명 내외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1년 남짓 동안 분과 구성, 지역조사 및 의제 발굴,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을 진행한다. 마을계획의 결정은 행정동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마을총회와 투표로 결정된다.

총회는 실행계획에 지자체 보조금과 참여예산 등 다양한 실행예산까지 배정하고, 실행계획 성격에 따라 주민주도, 민관협력, 관의 계획 및 사업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제안 등의 방식으로 실행된다.

마을계획단은 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 주민조직으로 관주도 주민참여형 사업의 주민협의체와 마찬가지로 법적 지위나 대표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마을계획단 구성부터 마을계획 수립까지 전체 과정도 관주도 주민참여형 사업과 비슷하며, 차별점인 마을총회도 회원 자격이나 정족수 등 의결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한 공식 의사결정기구는 아니다. 그럼에도 마을계획에서 마을계획단이 공적인 계획 주체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가능했던 대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계획 과정을 통해 마을계획단이 공공 계획을 수립하는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 마을계획단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선출 방식은 아니지만 참여 기회의 형평성, 개방성, 자발성으로 계획기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계획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 정보, 의사소통 지원(facilitation)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계획은 참여민주주의 못지않게 숙의민주주의를 추구했다. 참여예산제나 공론화위원회처럼 마을계획의 타당성은 다수의 참여가 아닌 소수의 숙의에서 만들어진다. 마지막으로, 마을계획의 결정 권한을 마을계획단도 지자체도 아닌 마을총회라는 지역사회 공론장에 부여했다. 소수가 숙의한 마을계획에 대한 주민 다수의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대표성을 보완하고 실행 동력을 확보한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기될 수 있는 마을계획단의 공공 계획 주체 자격 논란은 지자체가 가진 '권한의 일부를 주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원칙으로 대응했다. 마을계획의 거의 모든 의제는 지자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하고 해결해야 하는 고유한 사무이자 권한이다. 이 가운데 관주도보다는 주민주도와 민관협력이 문제해결에 더 효과적이거나 지역사회 합의 형성이 중요한 의제에 한해서는, 민주적인 절차와 요건을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지자체가 가진 공공 계획 권한의 일부를 마을계획단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계획은 마을공동체가 공공 계획 주체로 완전히 인정받은 사례로 보긴 어렵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인정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 인정 여부는 인정 대상뿐 아니라 인정 절차가 중요하다.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는 제도적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제공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적 인정은 존재하지 않던 가치, 권한, 자원을 새롭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국가가 가진 일부를 넘기거나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와 마을공동체의 인정-피인정 관계를 고려하면, 이 방식은 사회적 인정의 본질에 더 가까운 동시에 실효성 있는 권한과 자원을 현실적으로 확보해 인정 대상에게 제공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현재 마을계획이 제도적으로 가장 발전한 곳은 세종시이다. 세종시는 2018년 서울시 사례와 유사한 마을계획 사업과 함께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도입했다.

2022년 수립한 2기 기본계획에서는 마을계획과 행정계획을 적극 연계하고, 특별회계 규모와 용처를 확대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공공 계획 주체로 인정하는 수준을 한층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표 3-22〉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의 마을계획 지원 전략

목표	추진 전략	실행과제
4,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공공의 혁신	13. 읍면동 행정 기능강화	13-1. 마을계획 사업 등 행정계획과 연계
		13-2. 마을계획 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피드백
	14. 자치분권특별회계와 연계한 지원체계 혁신	14-1. 자치분권특별회계 규모 확대
		14-2.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체계 혁신(위탁사업 도입 검토)

자료: 대전세종연구원(2022)

3) 기본법 제정 노력과 국공유 재산 활용 권한 부여

이제까지 마을공동체를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 계획 주체로 인정한 제도적 근거는 지자체 조례였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시작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지원조례를 제정해 담당부서와 중간지원조직 설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실행의 근거를 마련했다(태윤재 외, 2010). 하지만 상위 법령이 없는 자치조례였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공공계획과 관련된 법령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나 마을계획에서 성취한 사회적 인정이 흔들리고 후퇴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아우르는 통합 법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이 시도됐다(전대욱, 2021). 2016년에는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상향적으로 만든 최초의 법안이 마련되었고, 2020년 9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하 이해식 의원안), 2021년 1월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이하 진선미 의원안)이 발의되면서 본격적인 입법이 추진됐다. 두 입법안은 모두 계류 중으로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어디까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볼 수는 있다.

첫째, 자생적인 비법인 주민 모임도 마을공동체로 인정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갖는 지역사회 차원의 공익성을 분명히 했다. 두 입법안은 마을공동체를 읍면동 단위로 일상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자발적으로 구성한 단체"(이해식 의원안 제2조1), "마을 주민이 구성하는 모임, 단체 또는 법인 등의 주민자치 공동체"(진선미 의원안 제3조3)로 정의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마을을 발전시키거나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이해식 의원안 제2조2), "지역사회가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진선미 의원안 제3조4) 활동으로 정의했다.

둘째,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식 의원안은 이러한 지원 방식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제7조2의④), 광역시도(제8조2의③), 시군구(제9조2의③)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에 마을공동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반면에 진선미 의원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명문화하고(제10조), 국가와 지자체가 시행령에 따라 "마을공동체에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셋째, 마을공동체를 마을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공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해식 의원안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0조). 진선미 의원안은 마을공동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및 실행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7조). 두 입법안의 마을계획은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종합계획을 분명하게 명문화했다고는 보기 힘들고, 기본법의 특성상 세부 조항은 시행령으로 유보한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가 기존 지자체 정책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기본법으로 공고히 하려는 조치였다면, 두 입법안이 사회적 인정을 한 단계 더 높이고자 한 대목은 마을공동체에게 국공유재산을 활동을 위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소유한 땅과 건물 등 국공유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령에 의해 민간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안은 마을공동체가 이러한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감면받는 것은 물론 수의계약으로 직접 사용, 수익활동, 재임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제17조). 진선미 의원안은 한발 더 나아가 국가와 지자체가 유휴 국공유 재산을 목록화해서 공개하고,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제22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제17조(국유 · 공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한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국유 · 공유 재산의 사용료 ·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마을공동체활동계획을 수립한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 · 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제22조(마을공동체의 국유·공유 재산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가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국유·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마을공동체에 우선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조성하거나 취득한 부동산 자산의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유·공유 재산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국유·공유 재산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마을공동체를 국공유 재산의 특별한 사용 주체로 인정하고자 한 것은 국내 마을공동체 정책의 한계와 영국 사례에서 찾은 가능성에서 비롯됐다(전대욱 외, 2016). 마을공동체 활동에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이 공간이다. 공간을 소유하지 못한 마을공동체는 스스로 보증금, 임대료, 운영자 인건비를 조달하고, 지원사업으로는 공간조성비와 사업비를 보충한다. 행정당국은 공공공간을 빌려주거나 보증금, 임대료, 인건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을공동체 활동은 원천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거나, 수익을 내더라도 공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업시설처럼 수익으로 공간 임대 및 운영 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활동 공간을 유지할수록 적자가 심해지고 임대료 상승을 부담할 수 없게 되면, 공간 운영과 함께 공동체 활동까지 종료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331개의 공동체공간 조성을 지원했는데, 이러한 한계로 공간 유지율이 6년차에 이르면 48.3%까지 하락했다(안현찬 외, 2017b, pp. 27-28). 소소한 활동으로 시작한 주민 소모임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활동 공간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드물고, 민간에서 자발적인 "지역자산화" 운동이 일어난 이유였다(오은주 외, 2019, pp. 15-26).

반면에 영국은 2003년 지방정부법 개정, 2007년 공유자산 관리 검토 보고서(Quirk Review) 발간, 2010년 지역주권법(Localism Act) 제정으로 국공유 재산은 물론 민간 부동산까지도 마을공동체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매입하거나 임대료를 대폭 감면받는 제도가 도입됐다(안현찬 외, 2017b; 오은주 외, 2019). 대표적으로, 공동체 자산 이전(Community Asset Transfer)은 운영 역량과 계획을 갖춘 마을공동체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소유한 유휴 국공유 자산을 거의 무상으로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37]. 그 결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 전역에서는 약 1,500건의 공동체 자산이 주민조직에 이전됐다.

또한 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은 공동체 가치(Asset of Community

37) 영국 로컬리티 재단은 임대 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이어야 공동체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런던에서는 유휴 공공건물을 마을공동체 조직에 총 임대료 1파운드에 99년 동안 임대한 사례도 있다.

Value: ACV)가 입증된 민간 부동산을 소유자가 매각할 경우 매입 의사가 있는 마을공동체 조직이 6개월 동안 거래 유보를 요청할 수 있고, 그동안 매입 금액과 활용계획을 준비해 우선 입찰할 수 있는 권리다. 국공유 재산이 아닌 사적 재산에 대해서도 마을공동체를 최우선적인 권한을 갖는 주체로 인정한 이 파격적인 제도를 활용해, 영국 전역에서는 약 500개의 커뮤니티 펍(Community Pub)이 만들어졌다.

〈표 3-23〉 영국 지역주권법의 마을공동체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공동체 가치 자산 매각에 관한 지역공동체 입찰권 (Community Right to Bid)	공동체 가치 자산(ACV)의 소유자가 자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 의사가 있는 지역 공동체조직이 판매를 일시 중지(6개월)할 수 있으며, 중지 기간 동안 매입금액을 준비하여 우선 입찰할 수 있는 권리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지역공동체 참여권 (Community Right to Challenge)	지방정부가 담당하던 공공서비스 중 지역 공동체조직이 수행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에 대해 위탁 신청하여 공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지역공동체 개발권 (Community Right to Build)	일반적인 도시계획절차를 걸치지 않고 주민공동체 조직이 주도하여 주택, 상점 사업체 등 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권리(지역주민의 50% 이상 동의 필요)
유휴 공공토지에 관한 지역공동체 활용 요청권 (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지역위원회 및 기타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또는 미사용 토지를 지역공동체 조직에 판매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주거, 공동체공간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마을계획권 (Neighbourhood Planning)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결정할 기회를 제공

자료: 오은주 외(2019), pp. 32~42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의 마을공동체 기본법안도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가능하려면 보조금과 같은 소모성 예산보다는 활동 거점이자 수익 창출원이 되는 공간 자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아직 제정 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은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공익활동을 위해 마을공동체를 국공유 재산을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자 했던 도전적인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다. 비상근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 및 처우 개선

1) 마을활동가의 유형과 사회적 인정 요구

마을활동가는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사용하는 명칭도 지자체나 사업별로 다양하다[38]. 마을공동체 영역 속에 자생적인 주민 활동, 사회 운동, 국가 정책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황규홍,

2016). 그럼에도 관련 연구를 종합하면 대체로 '직접 마을공동체 활동을 주도하거나, 다른 주민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정석 외, 2017). 이러한 마을활동가를 사회적 인정과 밀접한 제도권으로 좁혀서 유형을 나눠보면 주민 리더, 비상근 지원자, 상근 지원자로 구분할 수 있다(서울시, 2017, p. 99).

〈표 3-24〉 마을활동가의 유형 분류

구분	유형	해당 사례
직접 활동 주도	주민 리더	공모사업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다른 활동 지원	비상근 지원자	마을지원활동가, 마을강사, 마을상담원, 마을코디, 마을닥터 등
	상근 지원자	중간지원조직 직원, 임기제 공무원(마을사업전문가) 등

자료: 서울시(2017), p. 99.

주민 리더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모임을 주도하는 대표제안자나 실무책임자를 말한다. 모임과 활동을 챙기고, 사업에서 요구하는 각종 실무와 책임을 맡다 보니 일반 참여자보다 활동에 투입하는 노력과 시간이 월등히 많다. 비상근 지원자는 공모사업 참여자에게 필요한 교육, 상담, 컨설팅, 자원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양한 전문성과 풍부한 인력 확보를 위해 지원 내용과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비상근직으로 주로 운영한다. 서울시 마을활동 지원가, 안산시 마을닥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근 지원자는 마을공동체 정책 전반을 기획, 집행, 관리하고 주민과 행정당국을 매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 민간위탁형 중간지원조직 직원,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 등 상근직으로 주로 운영한다.

주민 리더, 비상근 지원자, 상근 지원자의 활동 형태는 일의 강도와 구체성, 투입되는 시간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활동, 일거리, 일자리로 구분할 수 있다(듣는연구소, 2021). 상근 지원자는 활동가인 동시에 정규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 활동가로서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급여, 4대 보험 등 경제적 보상과 복리후생을 제공 받기 때문이다. 중간지원조직 직원은 다른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에 비해 고용 안정, 임금 수준, 복리후생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기도 하다(동행, 2019). 따라서 이 글은 활동 형태가 일자리가 아니어서 통상적인 잣대로 활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주민 리더와 비상근 지원자에게 초점을 맞춰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논의를 다루고자 한다.

38) 예를 들어, 마을활동가의 명칭이 서울은 마을지원활동가, 코디네이터, 리더, 상담원, 강사 등 30개 이상이고, 부산은 마을코디와 마을계획가, 안산은 마을닥터, 진안은 마을 간사를 쓴다(김동민 외, 2019)

〈표 3-25〉 마을공동체 활동 형태 분류

낮음 ← 일의 강도, 시간, 구체성, 전문성 → 높음					
구분	활동		일자리		
	무보수 활동	활동비	일거리	일자리	
경제적 보상 형태	보상 없는 자발적 활동	공공성이 인정되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실비 보전	(간헐적) 과업 수행에 대한 대가 제공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노동, 사업체 운영 등 생계유지 수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	
				한시적 일자리	상시적 일자리
사례	공모사업 일반참여자, 주민 모임	공모사업 대표참여자	마을지원활동가, 공간운영자, 주민자치회 간사	동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사무국, 재정지원일자리 사업(뉴딜일자리)	중간지원조직 직원
	호혜적 활동	회의비	강의비, 수당	인건비	인건비

자료: 듣는연구소(2021), p.140을 재구성.

주민 리더와 비상근 지원자의 가장 큰 불만은 경력 미인정과 낮은 처우였다. 이들의 활동과 일거리는 상근 지원자의 일자리와 형태가 다를 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없다. 이들에게도 상당한 경험과 역량이 요구되는 동시에 거듭되는 활동으로 그러한 역량이 쌓이기도 한다. 하지만 학위, 자격증, 인증제 등 흔히 인정하는 전문성처럼 표준화하기 어렵다. 상근 지원자는 소속, 직책, 직무 등으로 활동 내용과 수준을 타인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반면에 대표제안자의 활동은 구체성과 전문성을 설명하기 어렵고, 비상근 지원자의 일거리는 교육, 조사, 컨설팅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어 단순하고 기능적인 역할로 치부되는 한계도 있다.

이로 인해 대표제안자와 비상근 지원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긍심을 갖거나, 가족과 지인의 존중과 지지를 얻거나, 마을공동체 및 유관 분야로 이취직을 할 때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정규 일자리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활동에 투입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근직과 동일한 처우까지는 아니어도 실비 보전 수준의 활동비, 낮은 수당 단가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컸다(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6; 2017).

2)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논의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이 공론화된 계기는 마을활동가 자격증 제도였다. 2017년에 중앙정부, 경기도, 부산시에서 마을활동가 자격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면서, 마을활동가를 위한 적절한 사회적 인정 제도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7년 마을만들기전국대회 자유주제 컨퍼런스

「마을활동가, 노동권은 어디에 있나?」에서는 자격증과 같은 "인증 제도는 오히려 마을활동가의 자율성을 저해"하므로 반대하고, 이보다는 마을공동체 정책 개선과 내부 노동권 확보, 마을활동가를 지원하는 공단 및 재단 설립, 마을활동가 공론장 운영을 제안했다.

당시 마을활동가가 가장 많고 종류도 다양했던 서울시는 담당부서와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이슈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비상근 지원자의 처우가 상근 지원자, 역할이 비슷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 소개됐다. 하지만 자격증은 국가에 의한 인증과 통제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그 대신 당시 수립 중이었던 「서울시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서울시 2기 기본계획)에 마을활동가 경력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표 3-26〉 서울시 마을활동가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처우 비교

구분	마을지원활동가	마을사업전문가	마을지원센터 직원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소속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자치구
근무형태	비상근	상근(임기제공무원)	상근	상근
월 급여	50만 원 내외(수당)	125만 원(9급) 308만 원(7급)	158~352만 원 (1~5급)	150만 원(수습) 270만 원(중급)
활동내용	공모사업 상담, 컨설팅	찾동 마을계획주) 지원	공모사업 운영 네트워크 지원 교육, 컨설팅, 홍보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 주민협의체 지원 교육, 홍보 등
4대 보험	미적용	적용	적용	미적용(1단계) 적용(2단계 이후)
경력 인정	미인정	인정	인정	미인정

주: 서울시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 단위 마을계획"(이하 찾동 마을계획)
자료: 양선혜(2017), p.65.

이에 따라 서울시 2기 기본계획은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과 배치"를 11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실행 전략으로 "(가)마을자치전문가 양성과 배치",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서울시, 2017). 마을자치전문가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위한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현장 지원 협력파트너"로 향후에는 "정책지원활동가"로 명칭이 변경됐다. 마을자치전문가는 주민 리더, 풀뿌리 활동가, 비상근 지원자, 상근 지원자 등 기존의 다양한 마을활동가가 수행하던 역할을 통합하고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경력 인정과 인건비 현실화를 달성하고자 했다.

제도권 마을활동가인 비상근 및 상근 지원자는 서울시가 마련한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자치전문가로 전환된다. 반면에 주민 리더와 풀뿌리 활동가와 같은 자율적인 영역의 마을

활동가들은 기존 활동 방식을 유지할 수도 있고,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 마을자치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 자격증 제도와 다르게 자율적인 영역의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시 2기 기본계획은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서울시가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자치구에서 동별 1명씩 마을자치전문가를 선발해, 2022년까지 총 424명의 마을자치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림 3-9]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비전과 전략

비전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방향	1기 성과 지속 **주민의 등장**	1기 과제 개선 **공동체의 성장**		정책 변화 대응 **주민자치 활성화**
영역	참여자	활동	인프라	지원체계
전략	등장에서 확산으로	모임에서 마을로, 공동체에서 자치까지	지원에서 역량강화로	실험에서 제도로
추진 과제	01 참여자 확대 지속과 다양화	03 일상적 활동과 모임 연계지원 강화	06 역량강화 중심의 간접지원 강화	09 區 주도 마을자치 통합지원체계 구축
	02 시민 정책 공감대 제고	04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재구성	07 공동체자원의 조달, 활용, 축적 지원	10 법제도 개선
		05 주민자치회 설립과 실질화 지원	08 정책지원 전문가 양성과 배치	11 온라인 시스템 개선

자료: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보고서(2017), p.65.

[그림 3-10] 서울시 마을자치전문가 양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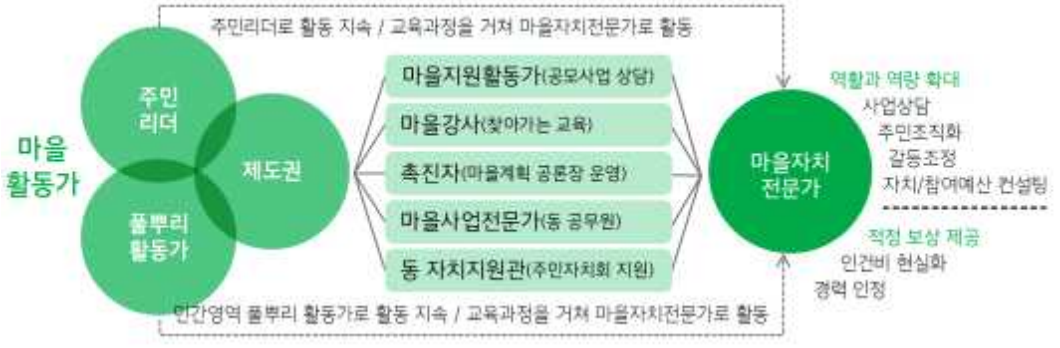

자료: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보고서(2017), p.100.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주민리더와 비상근 지원자의 교육 이수, 활동 실적 등에 관한 경력 증명을 목표로 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데이터베이스는

매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정보가 축적된다. 여기에는 공모사업의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인 주민 리더, 공모사업에 교육, 상담, 컨설팅을 제공한 비상근 지원자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 관리 목적으로 구축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력 관리 목적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특정인을 기준으로 전체 활동 기간을 통틀어 이수한 교육, 참여한 공모사업, 비상근 지원자로서 제공한 교육, 강의, 상담, 컨설팅 등을 일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스템 관리 주체인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세터(이하 서울마을센터)가 주민리더와 비상근 지원자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서울시 2기 기본계획은 마을활동가의 자율성과 제도화 사이에서 적절한 사회적 인정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마을활동가를 가장 제도화된 형태인 상근 지원자로 전환하면 사회적 인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곤란하다. 직무가 불분명한 활동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고,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 형태를 유지하고 싶은 활동가에게는 자격증 제도처럼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생적인 활동, 사회 운동, 국가 정책이 혼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도, 마을활동가는 공식과 비공식, 제도권과 자율권이 공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2기 기본계획은, 한편으로는 제도권 마을활동가를 마을자치전문가로 고도화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 리더나 비상근 지원자가 현재 상태로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3)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도입과 한계

하지만 다양한 마을활동가를 마을자치전문가로 고도화, 일원화하는 정책과제는 실현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찾동 마을계획의 마을사업전문가,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동자치지원관 등 한시적 일자리의 상근 지원자가 대거 늘어나면서 마을자치전문가를 대신했다. 마을사업전문가와 동자치지원관을 채용하는 부서가 서로 다른 점도 마을자치전문가로 통합하는 데 걸림돌이 됐다.

마을지원활동가 등 비상근 지원자의 운영 방식도 수당이 소폭 상승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주민 리더도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기준에서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활동비만 제공할 뿐 인건비, 강의비, 회의비, 자문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계속 유지됐다. 마을활동가의 처우 개선은 고용과 예산이 결부되어 있어, 서울시와 정부의 관련 규정을 넘어서기 어려웠던 것이다.

반면에 경력 인정 시스템 구축은 실현됐다. 2022년 현재 서울마을센터는 마을공동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과 교육 이수 내역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주민 리더, 비상근 지원자, 마을공동체 교육생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서는 본인들의 활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사람들이다. 서울마을센터도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활동 증명이 가능한 비상근 지원자의 종류와 시간적 범위, 주민리더가 참여한 공모사업 종류와 시간적 범위를 정해두고 있다.

서울마을센터가 발급한 활동 증명서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다른 일거리나 일자리로 이취직을 할 때 경력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 분야 임기제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직원 채용 공고에도 이러한 활동 증명서를 인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나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유관 분야나 민간 기업까지도 이 활동 증명서를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일자리가 아닌 활동과 일거리도 그 자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든 것은 성과이지만, 마을공동체 분야 외부에서도 이러한 인정의 효력을 점차 늘려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표 3-27〉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및 교육 이수 내역 관리 기준

구분	대상		내용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정책지원활동가 (마을활동가)	마을지원활동가(2012~2016) 부모 커뮤니티 컨설턴트(2012~2013) 우리마을지원사업 컨설턴트(2015) 찾동 전문촉진자(2015~2019) 마을학교 PD(2016~2017) 주민모임연합사업 촉진자(2016) 주민제안사업/지정공모사업 컨설턴트(2014)	활동증명서 발급 (인적정보, 활동 내용 및 기간)
	공모사업 대표제안자, 실무책임자	부모커뮤니티(2012~2018) 공동육아(2013~2019) 이웃만들기(2014) ※타 연도는 자치구별 진행 우리동네마을밥상(2017) ※타 연도는 자치구별 진행 우리마을활동지원사업(2016) 주민모임연합사업(2017) 서울마을회의(2017)	
교육 이수 내역	교육 목록	2015~2020년 : 230개 교육과정 2021년 : 34개 교육과정	교육명, 기간, 회차, 시수, 대상, 방법 등
	교육생	2015~2020년 : 누적 804명(실인원 486명) ※ 수료증 발급 대상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마을실천대학), 사업참가자 교육(일부) /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교육 참가자는 제외	교육수료증 발급 (교육명, 이수시간, 학점, 수료 여부)

자료: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은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1)는 「2021-2025 경기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11개 전략과제 중 하나로 "마을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을 채택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활동가 경력 인정 체계 개발"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경력 인정 방식은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서울시와 경기도 간 마을활동가 교류와 이취직이 활발한 만큼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28〉 경기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전략

전략 목표	전략과제	추진과제
1, 비전과 역량을 갖춘 추진주체 성장 지원	1-3. 마을활동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1-3-1. '공동체지원활동가' 정책 활용
		1-3-2. 교육, 심사, 자문 활동 등에 현장활동가 활용
		1-3-3. 매년 모범적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및 공유회 개최
		1-3-4. 활동가 경력 인정 체계 개발

자료: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1), p.36.

라. 주민자원의 인정과 가치 환산[39)]

1) 주민자원의 인정 필요성

주민자원은 주민들이 대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공익활동에 투입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력, 재능, 재화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가 높지만 시장경제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돌봄, 자원봉사, 사회참여 등은 주민자원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손서락, 2018, p. 27).

최근에는 이러한 주민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하고, 더 나아가 호혜적인 교환을 촉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유엔(UN)의 가계생산 작성지침은 그동안 임금노동에 비해 저평가 됐던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측정해서 회원국의 경제통계에 포함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도 2018년 10월 그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40)]. 미국, 영국, 스페인 등에서는 남을 도운 시간을 적립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지역단위 다자간 교환 시스템인 "타임뱅크"(Timebank)가 1,000곳 이상에서 운영 중이다. 시애틀, 밴쿠버 등 북미 도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쓰인 주민자원을 공동체 역량으로 인정하고, 이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Neighborhood Matching Fund)를 운영 중이다(안현찬 외, 2018, pp. 35-47).

국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주민자원을 존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정

39) 이 부분은 안현찬 외(2018)의 본문과 표를 일부 발췌 및 편집했음을 밝힌다.
40) 통계청 보도자료,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가치 평가)", 2018.10.08.

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중요한 원칙은 '자립 지원'이다.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조달하고(당사자주의), 부족분을 서울시가 지원함으로써(보충성의 원리) 마을공동체의 주도성과 자립성을 담보한다는 것이다(유창복, 2014, pp. 211-213). 하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은 주민들의 노동, 재능, 현물 등 다양한 자원을 제외하고 현금만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자부담으로 인정했다. 현금 자부담은 정부 보조금 지원의 관례적인 의무 규정이었고, 비현금 주민자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기준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립 지원 원칙은 정책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었다. 한편에서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현금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주민들의 의존도가 높아서, 지원이 종료되면 활동도 중단되거나 공동체가 해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41]. 다른 한편에서는 주민들이 현금 자부담 외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투입하는 무형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립성이 낮아 보이는 것이고, 이로 인해 활동 의욕과 성취감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강세진 외, 2017). 주민자원을 무엇까지 인정하는가에 따라 마을공동체의 자립성과 지원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서울시 2기 기본계획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1기 정책에서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 정도"에 대한 동의율이 사업참여자(주민)는 44.2점, 공무원은 33.2점이었다(100점 만점). 동의율이 전체적으로 낮지만, 공무원이 주민보다 더욱 부정적이었다. "앞으로 주민들이 사업에 투입한 시간, 재능, 현물 등이 공식적인 자부담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책 이슈 동의율도 사업참여자는 79점, 공무원으로 51점으로 차이가 컸다.

〈표 3-29〉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사업참여자	공무원	마을넷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응답자(명)	755	73	25	100
자립 지원 원칙의 실현 정도 (100점 만점)	44.2	32.2	45.0	42
현금 외 주민 노력을 자부담으로 인정 (100점 만점)	79	51	83	83.8

자료: 안현찬 외(2018).

이러한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서울시 2기 기본계획은 "현금 외 공동체 자원을 자부담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책 추진과제로 채택했다(서울시, 2017, pp. 91-92). 그동안 간과되었던 비현금

41) 서울시(2017, p. 21)가 5개 부서의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성과감사한 결과,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한 1,489개 사업 중 662건(44%)이 중단됐고, 그 중 354건(53.5%)이 사업비 부족, 사업 종료 후 해산 등이 원인이었다.

주민자원을 현금 자부담처럼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이러한 자원의 발굴, 조직, 활용을 촉진해서 마을공동체의 주도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정책과제를 실현하는 첫 시도로 2018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금 집행기준에는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대표제안자 등 사업참여자의 재능 활동(강의)에 국한해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하는 지침이 시범 도입되었다. 그러나 그해 10월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사업부서 중 이 규정을 실제 사업 공모 요강에 반영한 곳은 57.9%에 불과했고[42], 실제로 강의 활동을 자부담 사업비로 인정한 곳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의 지침 개정이 다양한 비현금 주민자원 중 강의에만 국한되고 이조차도 실제 반영률이 낮은 것은, 앞선 설문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 관계자들의 합의형성이 부족했던 탓이 크다. 그런데 더욱 실질적인 원인은 주민자원의 실태 파악과 이를 측정하는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한 데 있다[43]. 사업 집행을 맡은 공무원은 실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어떤 주민자원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자원의 투입 여부를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지, 자원별로 자부담비는 얼마로 환산하면 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주민자원의 인정에 대한 동의와 실행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역시 자신들의 어떤 노력이 어느 정도 가치로 인정받는지, 확인 절차로 인해 주민자원의 인정에 따른 혜택은 적고 행정당국의 관리통제만 강화되는 건 아닌지 등 여러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개정된 지침을 지지하고 동참하기 어렵다. 결국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주민자원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활용을 촉진하려는 정책과제는 다양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합의를 형성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2) 주민자원 인정 기준 마련과 가치 평가

서울시는 2기 기본계획의 후속 연구로 다양한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모사업에 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민자원 인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업참여주민 32명, 담당 공무원 35명, 중간지원조직 직원 및 활동가 32명, 전문가 11명 등 총 110명의 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자원에 대한 인식,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의 종류와 경제적 가치 환산 기준, 주민자원 활용 촉진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서울시 정책 관계자들은 대부분 주민자원의 중요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편이었다. 정책 관계자의 85% 이상이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이 중요하고, 주민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42)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내부자료

43) 강의는 제공한 사람, 시간,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쉽고, 보조금 집행기준에 있는 강의비 단가를 자부담비 환산 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정책 관계자의 71.1%는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하지만 23.7%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순수성 훼손, 객관적인 가치 환산 기준 설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 환산에 동의하지 않았다.

〈표 3-30〉 마을공동체 정책 관계자들의 주민자원에 대한 인식

문항	동의	비동의	잘 모르겠다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주민자원은 중요하다	87.6%	7.2%	5.2%
주민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필요하다	85.6%	11.3%	3.1%
주민자원의 평가와 활용을 위한 경제적 가치 환산이 필요하다	71.1%	23.7%	5.2%

자료: 안현찬 외(2018).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은 4개 대분류와 이에 따른 14개 세분류로 유형화했다. 4개 대분류는 자원활동, 재능, 현물, 현금으로 정책 관계자의 71.1%가 이러한 대분류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적합하다고 동의했다. 14개 세분류의 동의율은 98~69%로 편차가 컸는데, 전문성이 있거나 임금노동에 가까울수록(강의, 컨설팅, 공간 운영 등) 동의율이 높은 반면에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절차이거나 소모품일수록(식음료, 기부물품, 의무활동 등) 동의율이 낮았다.

이 결과는 현재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인정할 수 있는 주민자원의 범위와 종류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동시에, 시간(자원활동)이나 현금에 비해 인정받기 어려웠던 다양한 재능과 현물까지 인정 범위에 포함하게 됐다는 의의가 있다.

〈표 3-31〉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인정 가능한 주민자원 대분류

구분	세부 내용
자원활동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따른 회의 참여, 봉사, 노동 등을 제공한 시간
재능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위한 강의, 디자인, 공연 등 전문적인 서비스 기부
현물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위해 기부 또는 무상 대여한 각종 물품과 공간
현금	자부담 사업비 외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위해 모금, 기부, 갹출한 현금

자료: 안현찬 외(2018).

〈표 3-3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세분류별 인정 동의율

구분		측정 단위	내용	동의율 (%)
자원 활동	의무활동	시간	마을공동체 사업에 따른 의무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석한 활동	70.1
	회의		기획회의, 워크숍, 실무회의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한 활동	82.5
	홍보		SNS, 전화, 포스터, 현수막 등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작업에 참여한 활동	79.4
	실무		축제 준비, 벽화그리기, 장보기, 차량 운전, 유아 돌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수행한 다양한 업무	88.7
	행정업무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 결과보고서 작성 등 사업절차상 수행한 업무	72.2
	공간운영		공동체공간 운영관리에 자원봉사로 참여한 시간(유급운영자 제외, 단 유급시간 외 추가로 참여한 시간은 포함)	87.6
재능	강의	시간	교육, 사례발표, 실무강습 등의 활동	98.2
	컨설팅		법률자문, 갈등조정, 회계 컨설팅, 디자인 자문 등	94.7
	기술	횟수	퍼실리테이팅, 촬영, 디자인, 연주, 수리, 제작 등	93.0
현물	공간	시간	회의, 교육, 행사 등에 무료로 이용한 실내외 공간	80.4
	차량		물품구입, 물품 운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	77.3
	대여물품	개수	주방도구, 공구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무료로 대여한 물품	77.3
	기부물품		식재료, 옷, 책, 전자제품 등 주민들이 기부한 물품	70.1
	식음료	횟수	회의, 교육, 행사 등에 제공된 식음료	69.1
현금		원	자부담 금액을 제외한 마을공동체 사업에 지출된 현금	-

자료: 안현찬 외(2018).

주민자원의 경제적 가치 환산 기준은 시중가격 이하로 책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해외 사례는 시중가격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UN의 가계생산 작성지침은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를 투입산출법 중 시장대체비용법을 채택해 청소, 요리 등 세부 행위별 유사 직종 시중 임금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를 환산할 것을 권고한다.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도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된 주민자원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 주민자원 유형에 따라 유사 시중가격 기준으로 환산한다. 주민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시장 가치와 동등하게 인정하려는 것이다.

반면에 서울 노원구 지역화폐 NW, 일본 마치즈쿠리 포인트 제도는 자원활동을 시중 임금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환산한다. 이 제도들은 환산된 가치만큼 지역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개인에게 보상하고 있어 사적 이익 추구 방지와 행정당국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내외 정보를 제공받은 정책 관계자들은 '시중가격에 가깝게'(43.7%) 또는

‘시중가격보다 낮게’(36.6%) 환산 기준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자원의 가치환산 금액은 세분류별로 인정 동의율, 시중 가격과 시중 가격 이하 예시 금액 및 근거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금액을 질문한 뒤 평균값으로 구했다. 그 결과는 시중가격 대비 45~110%로 세분류별 차이가 컸는데, 과대 혹은 과소평가를 우려해 시중 가격이 큰 자원은 환산금액을 낮추고, 반대인 경우는 환산금액을 높이는 조정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33〉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가치 환산 기준(안)

분류			측정 단위	인정금액 (원)	시중가 대비(%)	시중가 근거
자원 활동	마을강좌		시간	6,470	100	2017년 최저임금
	회의					
	홍보					
	실무					
	행정업무					
	공간운영					
재능	강의		시간	96,000	80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컨설팅			75,000	110	
	기술	퍼실리테이팅		165,000	55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 기준
		제작	횟수	247,500	55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기준
		공연		240,000	60	
		기타		실제 가격	-	인테리어 설계, 집수리 등
현물	공간	회의실	시간	8,000	80	스페이스클라우드 공유공간 평균 대여가(종류별)
		행사장		19,000		
		특별실		20,000		
	차량	승용차		6,000	80	쏘카 비할인 대여료(차종별)
		승합차		20,000		
		트럭		20,000		
	대여 물품	전자제품류	개수	1~10만	65	온라인 렌탈업체 대여가 (저가/중가/고가에 따라 차이)
		소품류		3천~1.3만		
	기부 물품	전자제품류		2만~18만	45	온라인 재활용센터 구매가 (저가/중가/고가에 따라 차이)
		소품류		3만~3.5만		
	식음료		횟수	실제 가격	-	행사(축제)에 기부된 음식

자료: 안현찬 외(2018).

그렇다면 이러한 주민자원 인정 범위와 기준을 적용했을 때,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된 주민자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강북구에서 진행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97건을 사업단계(1~5단계)와 연차(1~3년차)에 따라 샘플링한 44건을 대상으로 주민자원 투입 실태를 사후 조사하고 가치를 환산했다. 그 결과, 사업당 평균 2,434만 원의 주민자원이 투입됐고, 대분류별로는 자원활동이 1,253만 원(1,888시간), 재능이 361만 원(45시간과 3건), 현물이 449만 원(113시간과 22건), 자부담 외 현금이 168만 원(9건)이었다.

〈표 3-34〉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자원 가치 환산 결과

구분		투입량		가치 환산액 (만 원)	총액 대비 비율 (%)
		시간	건수		
자원활동		1,888시간	-	1,253	51.5
재능		45시간	3건	361	14.8
현물		113시간	22건	449	18.4
현금	자부담 외	-	9건	168	6.9
	자부담	-	-	203	8.3
총액		-	-	2,434	100.0

자료: 안현찬 외(2018).

주민자원의 가치환산 결과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관한 다양한 논쟁을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한다. 두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첫째는 대표제안자의 활동 강도이다. 대표제안자는 마을활동가 중 주민 리더에 해당하지만, 활동 강도와 투입 시간 등이 비상근 및 상근 지원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래서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늘 낮았다. 강북구 공모사업 44건에서 대표제안자 집단은 사업당 평균 529만 원, 전체 주민자원의 23.7%를 투입했다. 반면에 투입량이 가장 많은 집단은 일반참여자로 사업당 평균 1,048만 원, 전체 주민자원의 47.0%를 투입했다.

하지만 주민자원 가치환산액을 1인당 평균으로 비교해보면, 대표제안자(132.3만 원)가 일반참여자(22.8만 원)보다 6배 가까이 많은 주민자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당 평균 대표제안자는 4명, 일반참여자는 46명이기 때문이다. 대표제안자는 모든 주민자원 유형에서 일반참여자에 비해 최소 3배 이상, 행정업무와 공간 대여에서는 40배 이상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표제안자를 일반참여자와 달리 마을활동가로 분류할 만큼 활동 강도가 높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에서도 공동체 자원 투입 데이터가 오랜 기간 축적된 이후 대규모 장기 사업의 주민 운영진은 정규 직업 수준의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다는 것이 확인됐고, 이를 근거로 해당 사업의 주민 운영진 1인에게는 전체 보조금의 10% 이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사례가 있다(안현찬 외, 2018, p. 36)

둘째는 마을공동체의 주민자원에 대한 의존 여부다. 강북구 공모사업 44건의 평균 보조금은 1,139만 원으로, 주민자원 환산 총액인 2,434만 원이 약 2.1배 더 많다. 현금을 제외한 비현금 주민자원 환산 총액인 2,063만 원도 보조금의 약 1.8배에 달한다. 보조금 지원액이 가장 많은 5단계 사업은 평균 보조금(3,300만 원)과 주민자원 가치 환산액(11,033만 원) 차이가 3.3배였다.

이러한 결과는 네이버후드 매칭 펀드의 공동체 자원 매칭 성과에 비견할 만하다. 따라서 그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현금 자부담만을 근거로 주민들의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자립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던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지원 방식에서도 보조금 액수를 넘어서는 주민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이러한 주민자원을 합당하게 인정하고 더욱 활발하게 활용되어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주민자원 인정 및 촉진 방안의 도입과 한계

서울시는 2019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부터 이러한 주민자원 인정 방안과 함께 세 가지 촉진책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자 했다. 도입 단계에는 투입된 주민자원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핵심 성과로 인정한다. 핵심 성과를 단순 참여자 수 증가에서 주민자원 투입량으로 바꾸는 것은 가장 수월한 개선인 동시에 사업 참여자에게 즉각 정책 변화의 메시지와 자긍심을 줄 수 있다. 정착 단계에는 비현금 주민자원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자부담에 포함한다. 이 방법은 사업 표준 절차와 보조금 집행기준 개정이 필요한 과제로, 사업 참여자들에게 주민자원 인정의 실물적인 보상을 줄 수 있다. 발전 단계에는 투입된 주민자원의 일정 비율을 마을공동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이 방법은 보상을 위한 새로운 규정과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지만, 보상이 참여자 개인의 혜택이 아닌 주민 모임의 활동에 재투자되는 구조가 장점인 동시에 보조금 일변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을 다변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정책 변화는 사업부서와 자치구에 도입 단계를 자율적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는 것에 그쳤다. 주민자원 인정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이고 간소하게 마련했지만, 기존 업무량이 과중한 담당부서와 중간지원조직에 추가 예산과 인력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주민자원 인정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현금 주민자원의 자부담 인정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보조금 집행기준을 고쳐야 하는 것으로, 지자체인 서울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컸다.

대신 서울시는 2021년 5월부터 마을공동체 정책에 타임뱅크를 도입해 “서울시간은행”이라는 시범사업을 4개소에서 실시했다. 블로그를 이용해 도움과 시간화폐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주고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종류와 예시를 정했으며, 모든 도움은 1시간당 60페이로 가치환산

기준도 책정했다. 서울시간은행은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민자원 인정 방안 논의를 되살리고, 주민자원 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의했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중요한 주민자원으로 확인된 재능, 현물 등은 자원활동 시간만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간으로 대치돼 주민자원 인정 범위와 방식이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과 개인 간 호혜적 협력을 기본 원리로 하는 서울시간은행은,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 조직, 활용하는 집단적 행위인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간은행으로 주민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가 넓어진다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주민자원 인정방안을 도입하는 노력을 다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1] 서울시간은행 이용 방법

자료: 내 손안에 서울(2022.6.20.)

3. 사회적 인정 사례의 시사점

가. 사회적 인정 사례의 쟁점

마을공동체는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낯선 공익활동 분야다. 현대 사회의 마을공동체는 개방성, 자율성, 수평성 등 민주적인 운영원리를 채택하고, 이웃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 지역사회 차원의 자조적인 문제해결, 공공정책의 공동생산, 사회자본 형성, 민주적 시민의식 함양 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익활동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공통된 생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치의 보편성',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주민과 지역 자원이 조직되는 '행위의 연대성', 그 결과로 지역사회의 신뢰와 합의를 형성하는 '관계의 호혜성'을 충족한다.

일상적인 마을공동체는 자발적인 사회운동을 거쳐 지자체의 지원 정책과 연결되면서 제도적 차원의 사회적 인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자원봉사와 비영리민간단체 분야가 앞서 경험했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제도가 국가에 의한 통제와 동원의 수단이 될지, 아니면 국가로부터의 존중과 수평적인 협력의 기회가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그런데 마을공동체는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와도 이질적인 공익활동 주체이다. 그래서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관례와 이에 따른 쟁점이 마을공동체 분야에 그대로 이어진 점도 있지만, 변주된 쟁점과 새로운 시도도 적지 않았다. 전자에는 마을활동가의 경력을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 후자에는 주민 모임에 공적 권한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 다양한 주민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합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해당한다.

마을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은 유급 노동으로 볼 수 없는 비상근 지원자와 주민리더의 활동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관련 공론장이 가장 활발했던 서울시는 비상근 지원과 주민리더 활동 그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비상근 지원자의 분산된 기능을 통합하고 고도화한 상근 지원자 일자리를 확충하고 기존 활동가의 커리어 전환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과제로 채택했다. 상근 지원자 일자리 확충은 미흡했지만, 광역 중간지원조직이 활동가의 활동 및 교육 이력을 관리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처음 갖춰진 것은 중요한 성과이다.

주민 모임의 사회적 인정은 공적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요건은 무엇이고, 어떤 권한과 자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비법인 주민 소모임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를 발판으로 마을계획과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은 주민 모임을 각각 공적 계획 수립과 국공유재산 활용 주체로까지 인정하고자 했다.

주민자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투입된 유무형의 노력과 재화로, 그중 측정하기 쉬운 현금과

시간만 인정받아 왔다. 마을공동체 분야는 저평가되었던 재능, 현물까지 주민자원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고, 14가지 세부 자원별 가치환산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표제안자가 일반참여자보다 1인당 평균 6배 가까이 많은 자원을 활동에 투입하고, 주민자원의 가치환산 총액이 보조금보다 사업당 평균 2.1배까지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민자원을 무엇까지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따라 주민리더의 숨은 노고와 주민 모임의 자립성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원의 보상 방안은 핵심 사업 성과로 채택, 주민 자부담으로 인정, 활동에 쓸 수 있는 마일리지나 지역화폐로 일부 환급 등 단계적으로 제안되었으나, 각종 법령과 예산의 한계로 도입되진 못했다.

나. 사회적 인정의 함의와 한계

마을활동가와 달리 주민 모임과 자원은 자원봉사나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던 인정 대상처럼 보일 수 있다. 주민 모임은 마을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최소 활동 단위라는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와 같은 공익활동 조직에 해당한다. 주민자원은 이웃과 문제해결을 위해 발굴, 조직, 활용하는 그 자체가 마을공동체 활동이자 역량이라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영역(sector)에 대한 인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분야는 사회적 인정 논의가 주민 모임, 마을활동가, 주민자원으로 각각 전개된 것처럼 보이지만, 공익활동의 인정 대상 체계인 영역(주민자원), 조직(주민모임), 개인(마을활동가)을 아우르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시도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어떻게 하면 국가에 의한 통제, 관리, 외주화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과제와 닿아 있다. 비법인 주민 소모임에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법인격을 갖추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 풀뿌리 마을활동가들에게 상근직인 마을자치전문가가 될 수 있거나, 원래대로 자율적인 비상근 활동을 하더라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 것, 비현금 주민자원을 시간 외에도 재능과 현물 등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각각의 가치에 맞는 환산기준을 설정한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다. 분명한 한계와 시행착오가 존재하지만,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마을공동체의 특성을 국가의 규격화된 기준에 맞춰 재단하지 않고, 그러한 특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회적 인정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분야의 사회적 인정은 조례를 근거로 도입되어 지자체별로 차이가 크고 국가법령에 의한 안정적인 제도화가 미흡했다. 지역사회에 착근할 수밖에 없는 마을공동체는 지역별로 활동 내용과 방식이 다른 게 마땅하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도가 전개되고 그 성과가 상향적으로 모여 국가법령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기본법이 제정되지 못한 것은, 마을공동체 분야의 사회적 인정 동향에서 대단히 아쉬운 한계이자 향후 재시도가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제4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 국제 비교론적 준거 및 해외 사례

1. 국제 비교론적 준거 기준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정부 혹은 커뮤니티에서 정책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본 절에서 검토하는 수준은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다. 개인의 행위를 장려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개인의 자원봉사 장려 및 인정 등), 사회의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및 활동에 관계되는 사례(비영리조직의 공익활동 인정 및 장려 등), 마을 및 지역공동체 수준에서 공익활동의 취지에 맞는 상호 교류 활동을 장려하거나 인정하는 사례(가령, 마을기업 등의 운영 및 관련 정부 정책 등) 등을 모두 포괄하여 검토한다.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 수준에서 국가 서비스 및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 및 자원봉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미국 비영리조직 및 공정근로기준법을 토대로 공익활동 인정을 위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짚어본다. 이를 토대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논의가 한국 사회를 넘어 비교론적으로 어떠한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인정 정책에 반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유엔의 국가 계정과 공익활동의 간접 측정 근거

유엔의 국가 계정을 통해 비영리부분을 측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왔다(European Commission et al., 2009). 본 방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본 접근을 통해 시민사회 내 공익활동을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이를 공식 경제지표로 계량화하는 간접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의 국민계정시스템은 유엔통계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민 계정에 대한 국제 통계 표준이다.

비영리기관(Non-profit Institution)은 국가계정에서 다소 특이한 역할을 한다(European Commission et al., 2009). 기업과 마찬가지로 일부 비영리기관은 상품과 서비스, 즉 시장 생산을 생산한다. 다만 이 경우는 영리추구 및 상업활동을 위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 충당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시장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최종 소비를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부 비영리기관은 생산물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개별 가구나 지역 사회 전체에 경제적

기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비시장형 비영리기관 중 일부는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일반 정부 부문에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비영리기관들은 자체 부문인 가구지원 비영리기관이라는 별도 그룹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Non-profit Institution serving households : NPISH).

본 그룹 분류에서 보듯 비영리기관은 유료 또는 무료로 가정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되, 이용료가 부과될 경우 이들 이용료가 비영리기관 및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거나 충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이들 서비스 이용료가 비영리 기관의 서비스 생산 및 기관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수준이고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본 기관은 기업 부문에 할당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 et al., 2009).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비영리기관과 기업 사이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유의미한(economically significant)" 수준이라는 기준으로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서술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비영리기관의 생산 및 서비스 활동이 기업 영역의 활동과 비교해 활동 형태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그 정도가 경제적 혹은 상업적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여전히 비영리기관의 범주로 할당되고 국제 비교를 위한 국가계정 또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항을 짚어보는 이유는 비영리조직,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등의 개념 각각이 이러한 공식/비공식, 영리/비영리, 보수/무보수 개념의 연속선 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전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마을공동체 내에서 행하는 임무라고 해서 경제적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보수 형태여야 한다는 주장 등은 현실에 존재하는 복잡하고 연속성을 지닌 활동과 괴리되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한편, 본 계정에서 가계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 및 활동이라는 개념은 공식 경제 계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활동들을 지칭하고 이를 측정한다. 가계지원을 하는 비영리기관들은 무료로 활동을 하거나 그 경제적 가격이 시장 기준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다. 특히 이들 활동에 노동을 제공하는 고용인이나 자원봉사자 등의 기여분에 대한 시장수준의 가격 책정 노력이 이루어지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노동 및 활동을 통한 기여에 대해 공정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인정내지는 보상해 주는 노력을 위해 본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한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계정 확립을 위한 유엔의 노력은 생산의 경계에 있는 경제활동을 총괄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국가 계정을 얼마나 종합적으로 다 포괄할 수 있는가의 과제와 연결된다. 이를 위해

유엔 등은 보이지 않는 경제 (hidden economy) 혹은 비공식 경제 영역을 공식 집계에 포함시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칙상,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제 영역의 노동과 활동이 공식적 보상 체계에서 측정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들 통계 자료가 미국의 노동 통계 및 산출 자료와 연결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일반 개인 및 시민들의 공익활동 및 이들을 사회적 인정은 유엔의 국가 계정 확립 노력과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시민들의 공익활동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당 부분 이루어지며, 공식 집계로 잡히지 않는 경제에 대한 기여분이 존재한다. 다만 한가지 차이점은 유엔의 국가 계정이 보다 경제적 활동과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역사회 봉사 및 공익활동은 비경제적인 사회/지역사회 봉사의 사회적 합의와 인정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나.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과 공익활동 인정의 근거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 정하는 비영리조직에서의 최소임금, 초과근로, 자원봉사자 조항 등을 근거로 간접적으로 공익활동의 근거 및 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함에 있어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가 공익활동의 경제적/제도적 보상 수준을 정하는 일이다. 이 경우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서 비영리 부문 및 비영리 조직의 보상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방식은 두가지로 정리가 된다. 하나는 기업 적용범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적용범위이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5). 첫째, 기업의 적용범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5). 일반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비즈니스 사업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이다. 그리고 연간 총판매 수입 혹은 사업규모가 최소한 50만 달러 (약 6억 2천7백만원 규모; 1달러 대비 1,274원으로 환산할 경우)에 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비영리 자선조직은 원칙적으로 본 법에서 정의하는 기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다만 이들 비영리자선 조직이 일상적인 상업활동에 관여하게 되고, 이들 활동이 일종의 판매활동 내지 사업활동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박물관 등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고 비영리조직의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자선, 종교, 교육, 그리고 이와 유사한 활동들의 경우 이들이 비영리조직에서 행해질 경우 다른 기업들과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경우 이들 조직의 활동이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에 본 법조항의 기업적용 범주에 들게 된다. 기부로부터 오는 수입, 회원의 서비스 이용료, 회원의 가입비, 기부금 (현금 혹은 비현금 형태) 등은 이들 항목이 자선 활동에 기여할 경우,

해당 조직이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기업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 가령, 동물보호 비영리조직에서 무료로 동물치료 서비스, 애완동물 입양서비스, 집없는 동물들을 위한 은신처 제공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영리 조직 고유의 자선활동의 범주에 해당한다. 반면, 이들 비영리 조직이 치료 서비스에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상업적 활동의 범주에 해당하게 된다. 만약 본 비영리조직의 수입이 이러한 상업활동의 범주에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수입의 연간 최소 50만 달러에 달하게 되면, 이들 비영리조직에서 이러한 상업활동에 관여한 근로자들은 공정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된다. 비영리조직 본연의 자선활동의 경우 비즈니스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기업활동 기반에 의한 조항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개인단위의 적용 범위이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5). 상업활동에 관여하는 비영리 조직 내의 근로자는 공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업활동에 관여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판명되지 않은 비영리 조직 내의 근로자이더라도, 이들 개인이 주간 (interstate) 상업활동 내지는 재화생산에 관여하는 경우 본 법조항의 보호 범주에 들게 된다. 예를 들면,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화 서비스, 주경계를 넘나드는 배송서비스, 주경계를 넘어서는 승객운송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해당 근로자가 정기적이 아닌 일부 특수한 경우에 한해, 상당한 양에 이르지 않은 소량의 수준에서 관련 활동에 관여한 경우에는 본 공정근로기준법상의 보호 범주에 속하는 개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셋째, 공정근로기준법 조항의 자원봉사자 적용과 관련 미국 노동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U.S. Department of Labor, 2015). 공정근로기준법은 자원봉사 활동을 특징짓는 관대함 (generosity) 내지는 공익 (public benefit)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연의 자원 활동의 경우 자원봉사자가 자유롭게 자선목적 내지는 공적 목적으로 해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은 종교, 자선, 시민적, 인도주의적, 혹은 비영리 조직에 관계한 유사한 활동에 본인들의 시간을 내어 보상을 바라지 않는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활동은 공공서비스로서 간주되며, 공정근로기준법상 보호받는 범주에 들지 않는다. 비영리조직에 관계된 활동이더라도 상업 및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가령, 개인들이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기념품 가게에서 시간을 내어 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자원봉사 활동들의 경우 일상적으로 파트타임 기반이며, 정규직 근로자의 일을 대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비영리조직의 근로자들은 본인이 근무하는 조직에 동일 서비스 제공을 하는 형태로 자원봉사를 할 수는 없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이 공익활동이라는 단어나 개념을 언급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 법이 기반해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 개념의 본 취지를 살려 공익활동에 적용해 보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가 바로 공익 활동의 적극적 보상

기준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왜냐하면, 공익활동을 협의의 근로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논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의 기준 적용과 관련해, 비영리 조직내 활동 및 마을공동체 내 공식 역할 수행이 공식적 사업 수행에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근로 인정 및 보상 정도를 유추하는 근거로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이 경우 핵심은 비영리 조직 혹은 마을공동체의 법적 지위 자체가 아니라 이들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의 성격 내지는 이들 근로자가 수행하는 역할의 사업 관여 여부가 된다. 공정근로의 기준에서 보호를 받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이 어느정도 공식 사업 및 근로에 준하는 형태를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의 비영리단체들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금전적으로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단순히 헌신과 희생으로 공익에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하는 현실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던진다. 규모가 일정 부분 되는 비영리 단체들의 경우에도,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및 기타 근로 혜택 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간접적 유추 기준을 공정 근로기준을 바탕으로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본 연구의 비영리단체 관련 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 이력에 대한 인정 및 공익활동 마일리지 도입방안 등의 논의는 공정근로기준이 논의하는 보상 및 인정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검토 및 논의가 될 수 있다.

한편 마을공동체의 경우 비상근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 및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은 간접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본 연구의 마을공동체 관련 절에서 언급하듯이 마을지원 활동가가 정규 일자리에 근접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시간을 할애하지만,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비상근직으로 공정한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 이 경우 처우개선의 문제 또한 공정근로기준법의 근거와 연계해 검토가 가능하다.

자원봉사 활동의 경우 이를 협의의 근로로 인식할 것인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 활동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취지는 근로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지니는 공익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내지는 경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자원봉사가 금전적 보상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경우 혹은 자원봉사가 기존의 정규 고용 근로 인원을 대체하는 경우 공정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구분해 논의하는 자원봉사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의 자원봉사 관련 절에서 논의하듯이 자원봉사 개념은 무보수성을 그 주요 특징의 하나로 하되, 이는 양분 개념이라기보다는 연속선상에 위치한다. 무보수성의 기준에 있어서도 엄격한 무보수성이 이전의 형태였다면, 최근에는 최저임금 이하의 실비 반영이 적용되거나 금전적 보상 이외 다른 형태로 기여한 시간에 대한 마일리지 형태 등으로 보상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근로기준법의 보호 적용을 받는 근로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정근로기준법상 보호하는 근로의 취지에 저촉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기여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할 수 있는 형태와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를 논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근의 변화된 현실에 적절하고 부합해 보인다.

2. 사회적 인정에 관한 주요 해외 사례

가.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신탁법 및 주봉사위원회

미국의 경우 1993년 개정된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신탁법에서 주봉사위원회가 창설되었다. 주봉사위원회는 연방정부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의 주단위 파트너이다. 주봉사위원회는 주아메리콥스 (AmeriCorps State), 자원봉사 진흥기금 (Volunteer Generation Fund) ,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들과 관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을 총괄해 관리한다(U.S. State Service Commissions, n.d.).

주봉사위원회는 주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에 의해 구성되며, 이들 위원회는 1,200명 이상의 민간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미국 시민의 서비스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국가 서비스 기금 10억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매년 재교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제공되는 자원으로부터 1억 달러를 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U.S. State Service Commissions, n.d.).

주봉사위원회는 아메리콥스AmeriCorps, 자원봉사양성기금Volunteer Generation Fund, 아메리콥스 비스타AmeriCorps VISTA, 퇴직노인 자원 봉사 프로그램, 수양 조부모 프로그램, 시니어 동반자 및 지역 자원 봉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프로그램 지원의 예에서 보듯 미국 연방 및 주정부는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함은 물론 이를 금전/비금전적으로 양성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 보상 및 지원책 이외에도 자원봉사상 수여 등 자원봉사자 표창을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나. 국가 및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공익활동 인정 사례

미국의 경우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 (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에서 공익활동 인정 및 장려를 위한 취지와 유사한 국가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을 개발 및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CNCS)는 독립적인 연방기관으로, 1990년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NCSA)과 1973년 국내 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DVSA)의 두 법령으로 인가된 프로그램들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 및 국내 자원봉사법에서 승인 및 추진된 프로그램들은 2009년 에드워드 케네디 서브 아메리카법(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에 의해 재승인 되었다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본 프로그램들은 노동부, 보건 및 인적 서비스, 교육 및 관련 기관 책정법(Departments of Labor,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Education and Related Agencies Appropriations Act, Labor-HHS-ED)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법의 목표는 인적, 교육적, 환경적 안전과 공공 안전의 필요성을 다루며, 국가 봉사 계획에 시민참여를 독려하며, 시민의 책임에 관한 윤리와 지역사회의 정신을 다지는 것이다. NCSA 계획은 아메리콥스 주정부 및 국가 보조금(AmeriCorps State and National Grants), 국가 봉사 신탁(National Service Trust), 국가 민간인단(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NCCC), 미국 학습 및 봉사(Learn and Serve America, LSA)계획을 포함한다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이들 프로그램 혹은 지원계획이 어떠한 취지와 방향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인정하고 지원하는지를 참고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 및 보상의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국가 및 커뮤니티 봉사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수상 형태로 공익활동과 유사한 취지로 그 가치와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보상을 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1) 아메리콥스 주 및 국가 보조금

본 보조금은 1993년 만들어졌으며, 아메리콥스 주 및 국가 보조금에 따른 프로그램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불우한 청소년 개인지도 및 멘토링, 방과후 프로그램 관리 또는 운영, 지역사회 재난 대응 지원, 의료 서비스 개선, 저렴한 주택 건설, 공원과 개울 청소 등 지역사회의 주요한 필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들이다. 보조금에는 주 및 주의 해당지역에 대한 공식보조금(formula grants)과 주, 주의 해당지역, 인디언 부족 및 국가 비영리 단체에 대한 경쟁 보조금이 포함된다. 자원봉사자 자격으로는 17세 이상 개인이어야 하며, 자원봉사 기간은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이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각 주 및 해당지역의 주지사가 봉사위원회 구성원을 임명하며, 이들 봉사위원회가 해당 주의 연간 보조금 신청을 관리 및 모니터링한다.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단은 주의 위원회 공식보조금 패키지를 검토하고 국가 단위 상을 수여한다. 여러 개 주에 걸치는 경우, 수상

및 전국 상의 수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봉사단 본사 사무실에서 경쟁적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자원봉사 혜택으로는 일부 상근 아메리콥스 회원은 생계 수당, 건강 보험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아메리콥스 참가자는 국가봉사신탁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 서비스에 대한 교육상을 받을 자격이 된다. 본 교육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항목 다음에 자세히 소개한다. 아메리콥스 회원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자격을 갖춘 학자금 대출의 상환에 대한 대출 유예(즉, 연기) 혜택을 얻는다. 또한 교육상을 받으면 신탁에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금전적, 금융적 혜택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참고할 만한 예가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상을 수여하는 것은 비금전적이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하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2) 국가봉사신탁 교육상

미국 재무부의 특별 계정인 국가봉사신탁 (National Service Trust)을 통해 아메리콥스 보조금, 국가민간인단, 및 미국 국내봉사단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 VISTA) 참가자에게 교육상을 제공한다. 개인은 상근 봉사에 대한 두 개의 상을 합산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원봉사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기준 및 상한을 정한 예로 공익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 기준과 관련해 참고할 만하다.

상근 봉사에 대한 교육상의 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은 수준에서 정해진다. 봉사단이 해당 국가봉사직 직위를 승인하는 당해 회계연도 초에 유효한 펠보조금 (Pell Grant)의 최대 금액과 동일하다. 가령, 회계연도 2021년에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 정규직으로 봉사하는 아메리콥스 회원은 직책이 승인된 연도의 펠보조금의 최대 금액 수준인 $6,345을 최대 수준으로 하여 상금을 받게 된다. 상근직의 절반의 시간동안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비례 수준을 적용해 보상을 하게 된다. 임기 시작 시 55세 이상인 아메리콥스 회원은 자녀, 의붓자녀, 손자녀, 의붓 손자녀 또는 수양자녀에게 교육상을 양도할 수 있다. 아메리콥스 주 및 국가 봉사자는 최대 4개 기간에 걸쳐 자원봉사를 수행할 수 있다. 풀타임, 하프타임, 단축 하프타임, 쿼터타임 및 최소 시간 자원봉사 기간은 각각 하나의 서비스 기간으로 계산된다.

교육상 수여 외에도 국가봉사신탁은 유예(대출 상환 연기)를 얻은 아메리콥스 보조금 수혜자와 국가민간인단, 미국 국내봉사단 참가자에게 적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액을 지급한다. 아메리콥스 봉사 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가봉사신탁에 등록하면 시갈 아메리콥스 교육상 (Segal AmeriCorps Education Award)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상금을 사용하여 적격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적격 고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기관에서 교육비를 지불한다.

교육상 수상 및 이에 수반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을 보면, 펠보조금의 최대 금액과 동일 수준을 그 기준으로 잡아서 보상을 하는 데에서 보듯, 그 수준이 상당액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의 연령이 높은 경우 그 혜택이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듯, 매우 유연하면서 맞춤형으로 혜택이 극대화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상 수상의 혜택을 학자금 대출의 상환 및 이자금 지급과 연결시킨 것은 학자금 대출 및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미국의 현실에서 매우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보상 방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미국의 봉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인정은 상징적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개인의 연령/학령 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필요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부분은 한국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및 보상책을 정하고 그 수준을 정할 때 참고할 부분이다.

3) 아메리콥스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AmeriCorps National Civilian Community Corps, AmeriCorps NCCC)의 배경과 역사를 짚어보면, 이는 대공황 시대의 민간환경보호단 CCC(Civilian Conservation Corps)에 기반을 두고 시대에 맞게 다시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U.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n.d.).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은 오랜 기간 동안 험난한 조건에서 활동하고, 보존 및 산불 진화 프로젝트, 홍수 조절 및 재해 구호에 참여해야 했던 민간환경보호단과 유사하다. 다만, 민간환경보호단과 달리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은 공공 근로 구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비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참가자의 리더십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여 설계되었다.

아메리콥스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는 팀 기반 국가 및 지역 사회 봉사에 18세에서 24세 사이의 대상자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의 팀은 10개월의 복무 기간 동안 약 4개의 서로 다른 6~8주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구성된다.

본 프로그램은 여러 후원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자원봉사를 할 기회를 청년들에게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갖추도록 돕고, 이후 전문직업 경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전형적인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 회원으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는10개월, 팀 리더의 경우 11개월이다. 국가민간인단이 되려면18-26세이어야 하며, 팀 리더가 되려면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에 포함된 혜택의 내용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 첫째, 주택, 식사, 일부 건강 보험관련 비용 등 기본 비용을 제공한다. 둘째, 프로그램 수행 관련 여행경비를 일체 제공한다. 훈련 교육, 프로젝트 참여, 서비스 이후 귀가를 위한 여행에 관련된 경비가 제공된다. 셋째, 개인

경비를 위한 적정 수준의 생활비가 제공된다. 넷째, 리더십, 기술, 팀워크 배양을 위한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 다섯째, 연방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로, 봉사 서비스를 마친 후 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여섯째, 특정 과목 및 기술 과정에 관련된 학부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자원봉사학습개론, 자원봉사에 있어서의 다양성, 핵심 수퍼비전 기술 등의 과목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교육상 관련해서 소개하였듯이, 시갈 아메리콥스 교육상으로 6천불 이상을 미래 교육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적격 학자금 대출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600개 이상에 달하는 아메리콥스 봉사단 출신 고용주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구직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봉사단 출신의 고용주 네트워크를 아메리콥스 봉사자 출신들이 민간, 공공 및 비영리 부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원이다.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지역 사회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재난 대응을 돕도록 연방재난관리 봉사단(FEMA Corps)을 만들었다.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은 연방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초기 경험을 마련하도록 돕고, 재난 및 위기 관리 부문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의 임기는 11개월이며, 팀리더로 봉사하는데 10개월이다. 연령 요건은 국가민간인단과 마찬가지로 18-26세이다.

한편,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은 관련 봉사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재해 생존자 지원, 개인 지원, 물류 조정, 계획/지리 정보 시스템 및 공공 지원과 같은 연방재난관리청의 핵심 기술/기능 중 하나 이상에 대해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경력 진입을 위한 교육훈련이 자원봉사과정에 포함됨으로서 봉사자의 업무 능력 및 경험이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된 것 또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보상의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사항이다.

4) 미국 국내봉사단 프로그램

미국 국내봉사단 (AmeriCorps VISTA: Volunteers In Service To America)은 미국 국내의 주요한 사회 문제 및 수요에 대응한 봉사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로 고안되었다. 본래 비스타 프로그램(VISTA)은 1964년 린든 존슨(Lyndon Johnson)의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에 의해 평화 봉사단(Peace Corps)의 국내판으로 만들어진 빈곤 퇴치 프로그램이다 (Newman, 2009). 초기에 본 프로그램은 빈곤과의 전쟁이라는 취지를 갖고, 본 취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기회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원 봉사자들은 미국 전역의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며 미국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둔다. 1973년 국내 자원봉사법(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DVSA)에 정의된 바와 같이 비스타의 입법 목적은 1년 동안 모든 계층의 미국인을 정규직으로 참여시켜 저소득 지역 사회의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U.S. Congress, 1973). 본 프로그램은 세가지 주요 목표를 갖는다. 1) 지역 수준에서의 자원봉사 서비스 장려, 2) 민간 부문 자원의 헌신 창출, 3) 저소득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지역 기관 및 조직 강화이다. 클린턴 행정부 기간 동안 비스타는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에 의해 새로 만들어진 아메리콥스 프로그램에 속하게 되었으며 미국 국내봉사단 (AmeriCorps VISTA)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본 프로그램이 초점을 두는 핵심 이슈로는 교육, 공중 보건, 기후, 빈곤 등이 있다. 주요 활동 영역에는 기금모금, 그랜트 지원 작성, 연구, 자원 봉사자 모집 지원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경험과 리더십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비영리 조직 및 공공기관에서 역량을 구축하여 민간 부문 자원의 투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하고 지역 수준에서 자원 봉사를 장려하며 개인 및 지역 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돕는다. 미국 국내봉사단 참여자는 1년간 풀타임으로 봉사하게 된다. 한편, 축소된 수준의 아메리콥스 교육상 혜택을 조건으로 1년 풀타임이 아닌8주, 9주 또는 10주에 걸친 여름회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제공되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기본 비용을 충당할 수준의 생계비가 지급된다. 둘째, 지역사회 개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 개발 교육기회가 부여된다. 셋째, 미국 국내봉사단은 연방 차원의 고용 과정에서 비경쟁적으로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아메리콥스 프로그램이다. 비경쟁적 우위를 허용한다고 함은 해당 회원이 미국 연방 정부 기관의 직원 고용 과정에서 공식적인 경쟁 구인 공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채용되는 것을 허용함을 뜻한다. 다만 이 경우 고용이 보장된 것은 아니며, 적격 교환 프로그램을 지닌 회원은 연방 직원에게만 공개되는 특정 연방 직원 채용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특별 지위를 제공받는 것을 뜻한다. 넷째, 시갈 교육상을 선택함으로서 $6,495 상당의 교육 비용을 지불 받거나, $1,800 상당의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본 프로그램의 혜택 중에 연방 직종 채용에 있어, 비경쟁적 우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물론 비경쟁적 우위가 채용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 구인공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방 직원에게만 공개되는 특정 연방 직원 채용을 위해 경쟁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보상과 혜택에 해당한다. 이와같이 적극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혜택이 어느 정도 공익활동 보상 및 인정의 논의와 정책에 일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점에는 다소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다만, 직업 내용의 특수성, 봉사 내용의 기여 정도,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을 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종합적 고려에 의해 적극적/소극적 수준의 보상의 범주 및 형태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5) 국가 노인봉사단 프로그램

국가 노인봉사단 (AmeriCorps Seniors) 프로그램의 관련 프로그램들(위탁 조부모 프로그램 Foster Grandparents, 노년동반자 프로그램 Senior Companions, 퇴직자 및 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은 원래 비슷한 목적으로 1973년 국내 자원봉사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이들 세 가지 프로그램은 고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모두 노인 자원봉사자의 기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수요에 대응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1993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을 설립했을 때 세 조직은 단일 기관인 노인봉사단으로 개편되었다 (America's Service Commissions, n.d.). 위탁 조부모 프로그램은 1965년 8월 60세 이상의 저소득층이 지역내 사회봉사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시행되었다. 1968년 노년동반자 프로그램은 보건교육복지부 및 고령화부처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저소득 노인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고, 노년동반자 프로그램이 법률로 서명되었다. 퇴직자 및 노인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의 경우 미국 노년층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및 성장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정부기관에서 조직한 프로그램들로부터 파생되어 시작하게 되었다. 초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뉴욕 지역 사회 봉사 협회 (Community Service Society of New York)는 1965년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이러한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1969년 미국 노인법 (Old Americans Act)이 개정되어 이를 전국단위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었다 (U.S. Congress, 1969).

국가 노인봉사단 (AmeriCorps Seniors) 프로그램들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위탁 조부모 (Foster Grandparents)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봉사단 회원들은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회원들은 미숙아 또는 장애 아동을 돌보거나, 학업 및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젊은 연령대 어머니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특별한 역할 모델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본 프로그램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둘째, 노년동반자 (Senior Companion) 프로그램은 연로한 이웃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친구겸 동반자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노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쇼핑이나 청구서 지불과 같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도움을 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자원봉사자들은 이들 연로한 이웃 노인들이 더 오래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가족 간병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퇴직자 및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Retired and Senior Volunteer Program, RSVP)은55세 이상의 노년층 자원봉사자들을 미국 전역에 위치한 기관들과 연결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퇴직자 및 노인들이 지닌 경험, 기술, 및 지혜를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퇴직자 및 노인 자원봉사자들은 주당 몇 시간에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봉사할 방법, 장소 및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가 노인봉사단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봉사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일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에게 약간의 급여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은 사고, 개인책임, 자동차 책임보험 등의 혜택을 포함한다. 이외에 물질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이들 노인들 스스로 사회에 기여를 함으로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개선을 지속하며,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신 및 육체 건강을 스스로 돌보게 되는 등의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가 노인봉사단 프로그램의 경우 아메리콥스의 다른 봉사자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물질적인 혜택을 강조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또한 이러한 정서적인 혜택과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노인봉사단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보면, 건강과 웰빙 그리고 커뮤니티 형성의 긍정적 기능을 혜택의 일환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령, 불안, 우울증 및 외로움 감소 등 노인봉사단의 84%가 봉사 후 건강이 안정되거나 개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봉사단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 소속감이나 동료애 부족을 느낀 노인 봉사단 자원봉사자의 88%는 자원봉사 이후 고립감이 줄었다고 보고했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혜택 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U.S. AmeriCorps Seniors, n.d.). 이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보상을 단순히 물질적 보상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상층의 주요 문제과 고민이 되는 부분을 고려해, 이를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공익활동 자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혜택이 이들 봉사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한국이 당면한 초고령화 사회진입 상황에 비추어 미국의 국가 노인봉사단 프로그램의 보상 정책이 주는 함의를 짚어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22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7.5%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2). 한국의 가장 큰 당면 과제인 초고령화 사회의 수요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령층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의 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들의 경험 및 전문성을 살려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및 해결책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과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한국 고령층의 경제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이들이 경제적 보상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는지, 지속적인 취업의 기회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사회적 명예(사회적 인정)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본인 및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65.0%로 지난 10년간 13.4%p 증가하였고, 고령자 중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15.6%, 소비에 만족하는 비율은11.2%에 불과했다. 65 ~ 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 2022).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 비물질적/정신적 보상에 국한된 공익활동의 기회는 한국 고령층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자의 절대 대수가 지속적인 소득과 수입에 대한 필요를 느끼는 상황에서, 물질적, 금전적, 혹은 실질적 도움을 주지 않는 공익활동은 일시적인 참여 등에는 통할지 몰라도 지속적인 참여 독려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고령층에게 물질적/실질적 도움을 주는 형태로 맞춤화된 공익활동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예산 집행의 효과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3. 해외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사례의 시사점

가. 공익활동 보상 수준 책정에 대한 표준화 및 준거 기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여분에 대해 사회적 수준에서 계량화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사항과 과정이 비영리 부문 및 제3섹터의 전문화와 맞물려 있다. 가령, 국가봉사신탁 교육상 수상에 따른 상금액을 정하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객관화하고 전문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상근 봉사에 대한 교육상 상금 액수를 준거기준이 될만한 펠보조금 액수의 최대금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정한 부분, 봉사시간에 비례해 상금 액수를 조정하는 부분 등은 전문화, 법제화, 공식화를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이 표준화되고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한 예이다.

나. 보상 및 혜택의 개별화 및 유연화

공익활동 보상의 표준화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은 이를 활동가의 연령/학령 기준에 따라 혜택의 가치를 유연화하는 부분이다. 가령 미국 아메리콥스 보상의 범위를 보면,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에 따라 보상의 초점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금 부채 문제를 떠안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 학자금 상환유예라는 개별화된 보상을 도입하고 있다. 유연성을 갖추되, 이러한 유연성을 갖춘 보상책을 임시방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을 제공하는 개인 및 그룹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따라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 아메리콥스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보듯, 이러한 맞춤형 보상을 다시 법제화와 공식화 단계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자의적인 해석·적용에 따른 책임성 소재 논란을 막을 수 있다.

다. 정부 및 공공 부문 근무 진입의 기회 제공

공익활동을 정부 및 공공분야 근무의 진입 과정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한 분야라면 이를 고려해 봄직하다. 공익활동에 특정 기술, 경력 및 경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유형의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정부 및 공공 부문 근무 진입의 기회로 제도화시킬 수 있다. 가령, 미국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과 미국 연방재단관리청이 협력하여 고안해 낸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의 경우, 본 프로그램의 활동이 연방정부 근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일정 부분 수행함으로써 연방정부 근무 진입을 위한 초기 경력을 쌓게 되는 것이다.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의 임기는 11개월이며, 팀리더로 봉사하는데 10개월이다. 연령 요건은 국가민간인단과 마찬가지로 18-26세이다. 이 경우 대략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되는 기간이 1년 가까이 되며, 이는 특정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또한 봉사자 연령이 청년층에 해당하기에 공공분야 채용을 위한 주요 고려 대상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따라서 이 분야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익활동 근무를 통해 경험을 쌓은 해당 청년층 인력들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정부 및 공공분야 인력 고용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제도적 공정성과 형평성이다. 이러한 제도가 공공분야 진입을 바라고 준비하는 다른 청년층의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진입의 수준이나 경로가 이들에게 부여되는 기존의 기회와 충돌되지 않도록 새로운 근무 분야나 세부 직종을 만들고 확장하며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게 필요하다. 그리고 공익활동을 통한 경력 축적이 업무 특성상 실제적인 자격 요건 향상에 기여하는 분야/직종에 한해 매우 신중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보상에 있어 적극적/소극적 다양성 인정

보상의 범주와 정도는 다양할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국의 아메리콥스 봉사와 이에 따른 혜택 가운데에서만 보더라도 소극적 수준의 혜택과 적극적 수준의 혜택이 공존하고 있다.

소극적 수준의 혜택으로는 자원봉사에 수반되는 경비 지급 및 활동상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보험 혜택 반영 등이 있다. 또한 비물질적/정신적 보상 등도 소극적 수준의 혜택으로 꼽힌다. 국가

노인봉사단 활동의 주요 혜택으로 이러한 소극적 수준의 물질적 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정서적 보상 그리고 정신건강 등에서의 혜택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소극적 보상의 좋은 예에 해당한다. 일상적으로 논의되는 자원봉사의 정서적 보상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지만 연령층이나 대상에 따라 이러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보상의 형태에는 교육관련 비용 지급, 생활비 지급,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 민간인단 프로그램 등 아메리콥스 프로그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다. 한편 매우 적극적인 성격의 혜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직업채용에 있어서 비경쟁적 우위를 허용하는 사례 등이 있다. 가령, 미국 국내 봉사단 프로그램의 경우 연방 직종 채용에 있어, 비경쟁적 우위를 허용하고 있다. 비경쟁적 우위가 채용 자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 구인공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방 직원에게만 공개되는 특정 연방 직원 채용을 위해 경쟁하는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인 보상과 혜택에 해당한다.

앞서 제시한 예는 미국 사회문제의 특수성과 심각성 을 반영해,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혜택이 어느 정도 공익활동 보상 및 인정 논의에 확대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미국과 다른 한국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신중스러울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렇듯 소극적/적극적, 비물질적/물질적 스펙트럼 상에 존재하는 보상과 인정의 범위를 논의함에 있어 유연성을 갖고, 봉사 내용의 특수성, 사회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합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는 한에서 보상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 공익활동의 프로그램이 경력개발에 관계된 교육·훈련을 통합하도록 제도화

공익활동이나 관련 프로그램이 경력개발에 요구되는 교육 훈련 과정을 통합하도록 구성함으로서, 이를 공익활동이 부여하는 혜택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정 공공분야 업무는 사전에 교육훈련을 통한 해당 기술 연마가 요구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공익활동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통해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서, 사회적 자원과 청년층의 투자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국가민간인단 프로그램과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이 협력하여 구성한 연방재난관리 봉사단을 꼽을 수 있다. 재난 대응 분야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및 대비에 관련되는 사전 기술 숙지가 중요한데, 이에는 시간과 기술이 상당 부분 요구된다. 따라서 관련 공익활동으로 꼽히는 연방재난관리 봉사단 프로그램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연방 정부의 해당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관련 기술 숙지 및 숙련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바. 자원봉사자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 활용

자원봉사 및 국가 및 지역사회내 공헌 등, 공익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미국의 경우 600개 이상에 달하는 아메리콥스 봉사단 출신 고용주들의 네트워크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 조직은 미국의 모든 주와 지방 단위에 걸쳐 있다. 이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활용해 공익활동에 기여한 참가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형성 과정을 도와야 하는데, 아메리콥스의 웹사이트에서 보듯 아메리콥스 봉사단 웹사이트 등 공식적 사이트에서 파트너 기관 리스트를 통해 직접 연계해 줄 경우 이용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아메리콥스 봉사단 웹사이트는 국가 및 지역봉사자 출신 고용주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봉사자 출신 졸업생들이 자체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이렇듯 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도화는 정부 조직 자체만으로 전체적 파악이 어렵고 관리가 어려운 민간 및 비영리 부문의 파트너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장점을 지닌다.

Ⅱ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운영현황

04

공익활동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제1절 플랫폼의 개념과 역할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의 정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장, 진화하고 있다. 플랫폼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통상 거래 혹은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점이나 환경으로 묘사된다. 어의로는 평평한 모체 혹은 어떤 것의 기반이라는 단어와 관련된다. 플랫폼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포함하여 관심을 가진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특정한 물질적 비물질적 대상을 공유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환경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플랫폼이라고 할 때, 대개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하게 많이 사용되는 포털이라는 용어가 온라인 특히 인터넷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인터넷의 정보를 활용하고 접속하기 위해 꼭 거쳐 가야 하는 관문을 의미한다. 대개 포털사이트는 그 자체에서 수많은 사이트나 정보를 특정한 분류에 따라 정리해놓고 주소를 링크시키거나 검색엔진을 탑재하고 있어서 정보습득을 위한 플랫폼의 하나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과 포털은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포털이 특정 분야나 내용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각 분야에 대한 내용적 구체성은 떨어진다. 반면 플랫폼은 영역이나 분야별로 다양하지만, 포털의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하지는 않는다.

플랫폼이 일상적 용어가 되어가고 있지만 다소 이공학적 측면에서 특히 데이터와 관련해서 플랫폼의 개념, 그리고 그 역할과 기능이 강조되어왔던 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견해이다. 과학정보기술원에서는 플랫폼의 개념을 구조물/서비스의 관점, 기술 관점, 가치 관점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먼저 구조물/서비스 관점에서는 플랫폼은 어떤 특정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는 틀, 구조물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Halman 외 2003)하는 것으로 본다. 기술 관점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공유하는 기술적 요소 혹은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가치사슬의 허브로 플랫폼을 정의(Economides, Katsamakas 2006)하고 있다. 가치 관점에서는 플랫폼을 사용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는 틀로서 사용자들 간의 연계를 토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Gawer, Cusumano 2008)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은 기존에 분리된 주체들 간의 연결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공유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의 측면에서 플랫폼 생태계 주요 주체

들의 관계를 Alystine 등은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림 4-1] 플랫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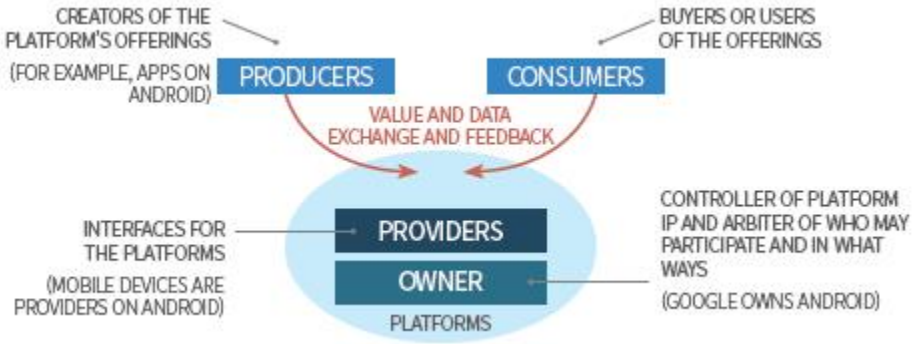

자료: Allystine 외(2016); 손영주(2020)에서 재인용.

이공학적 측면, 특히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공공부문의 플랫폼 도입과 활용이 활발하다. 과거의 경우 소위 시장실패와 관련하여 공공 인프라 같은 물리적 플랫폼이 공공의 역할로 많이 강조되었던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플랫폼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조가 크다. 통상적으로는 데이터와 관련되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기능을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방식이다.

[그림 4-2] 공공플랫폼과 민간플랫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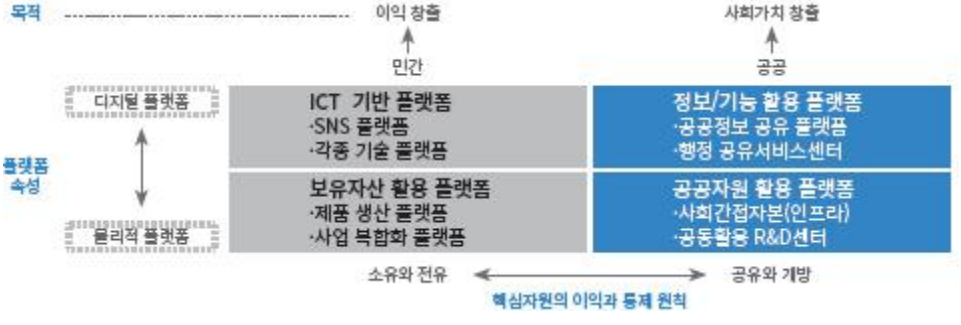

자료: 손영주(2020).

그림에서 공공플랫폼은 민간플랫폼과 달리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와 기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데이터의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플랫폼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정책을 수립

하여 구축된 국가차원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9년 33,600여 건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시작으로 오픈 포맷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0년 말 현재 4,000여 건의 데이터 개방과 1,5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다(손영주, 2020). 여기에서는 국가/지방행정기관, 교육행정기관, 입법기관 등 925개 공공기관이 보유, 생성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통합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림 4-3] 공공 데이터 플랫폼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 2022.12.1. 인출.

플랫폼은 데이터의 집적과 공유 측면에서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비정형적 노동의 대표적 양상으로 플랫폼 노동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용어가 부각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2022.12.27.)에 따르면 플랫폼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약 80만명, 전국의 경제활동인구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년 사이에 13.4만명 즉, 20.3%가 증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를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이 대가나 보수를 중개하고, 중개되는 일이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열려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배달이나, 번역 플랫폼을 통해 연계되는 사례와 같은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단순 중개 또는 알선을 통해 일거리(일감)을 구한 종사자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92만명으로 이 역시 1년 전에 비해 약 72.2만명(32.9%) 증가한 것이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의 직종은 전형적인 3대 규모 직종에 해당하는 배달, 배송, 운전 직종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가사, 청소, 돌봄 직종에서는 89.3%, 웹 기반형 플랫폼 직종에 해당하는 미술 등 창작활동89.5%)과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83.9%)의 증가가 두드러졌고, 통번역이나 상담과 같은 전문 서비스도 60.4%의 높은 증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중에서 57.7%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전년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이다. 부업형과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이 각 21% 가량으로 유사한데, 부업형의 비중은 전년 대비 35.8% 크게 감소한 것이다. 부업이 아닌 전업형의 플랫폼 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만이 아니라 고전적인 '시장'의 의미로서 당근마켓이나 네이버 혹은 카카오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의 거래도 엄청난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아마존의 팽창과 같이 국제적 물류와 유통의 질서변화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의미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의 신조어라 할 수 있는 '네카라쿠배당토직야' 역시 온라인, IT, 플랫폼이라는 시대적 선호의 유행을 나타낸 기업명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면, 비영리나 사회공익활동이 아닌 영리적 노동시장에서의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과 관련되어 몇 가지 최근의 동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로 플랫폼을 통한 노동(활동)의 연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둘째 이 같은 경향은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던 노무가 온라인의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처음에는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다가 점차 주된 활동영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넷째,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되는 활동의 분야 자체도 점차 다양해지는 방식이다.

여기서 최근에는 플랫폼이 장소의 개념으로서 꼭 물리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온라인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서 그 활동의 활성화와 효과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맥락이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도 일자리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부각이 언급되는 것이다. 거래나 매개를 위해 온라인을 통한 검색과 연결의 수단만이 아니라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와 기술의 제공체계, 성과 확인과 홍보체계, 소통의 방법으로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한때 웹 기반의 홈페이지나 포털이 중요한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SNS가 온라인 소통의 기반으로 사생활만이 아니라 공적인 활동에서까지 필수적인 기제로 플랫폼 역할의 일부를 간편한 형태로 갈음하고 있기도 있다. 한편으로 기록체계로서의 아카이빙이 유행처럼 여러 조직체계에서 도입되고 있으면서 플랫폼과 유사한 역할기대가 증폭되기도 한다.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가치와 역할

온라인 플랫폼은 영리 목적의 활동에서 그 효율성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유용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공익적 활동, 자원봉사활동이나 마을공동체 활동,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서도 플랫폼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다. 특히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의 공익활동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수 있다. 온라인 인프라와 환경의 급속한 발달, 여러 정보와 지식체계의 온라인 데이터화는 과거에 비해 정보나 지식체계, 성과의 검증, 홍보나 활동 공유에서 시공간적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플랫폼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비영리, 비정부단체의 활동에서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과거에 오프라인 중심으로 플랫폼이 형성되어야 하거나 혹은 온라인이더라도 어려운 기술이나 자본을 필요로 하는 포털 중심의 제한된 온라인 환경만이 활용가능하였던 시점에 비교한다면, 최근에는 대규모의 자본이나 조직이 없더라도 활동을 공유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형성이 가능해졌다. 특히 포털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SNS체계의 활용은 소규모의 기동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형성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비영리 공익활동은 대개 대규모의 조직이나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체계성을 갖추고 출발하는 경우가 적다. 동시에 활동을 위한 전문성이나 효과성 증진을 위한 기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성을 고양하기 위한 생태계 기반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은 높다. 이 때문에 비영리의 공익활동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특히 관심이 높게 나타난다. 신진욱의 연구(2022)에서 시민사회 활동이 새로운 참여모델로서 참여자 모집과 확대를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일상적인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질적 면접을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나 모색은 그에 상응하는 플랫폼의 구축 혹은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자연스럽게 수반하곤 하는데 여기서 몇 가지 쟁점이 대두될 수 있다.

공익활동은 소지역 단위의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비정부 비영리조직인 NPO에 기반한 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에 해당하여 좁은 범위의 지역성, 이슈나 과정에서의 다양성, 유연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대면적인 활동의 속성이 강하다. 특히 마을공동체 관련의 활동은 '나와 우리 동네'의 관심과 활동에서 출발하면서 점차 그 공익적 관심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좁은 지역적 범위에서의 직접적 접촉과 대면성이 중요하다. 이는 일반적인

온라인 플랫폼의 활용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또한 공익활동은 특정한 전문성이나 생업적 이해관계 및 영리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접근용이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용이성을 가져야 하고 접근용이성은 보편적인 관심이나 이해관계에 기반해야 하지만, 이 경우 자칫 간과될 수 있는 지역의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온난화와 기후위기는 더 말할 것 없이 중요한 이슈이지만 당장 개인, 가족, 동네의 실천적 의제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을 다루어야만 생생한 참여와 실천의 유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은 누가 활용할 것인가에 맞추어 그 참여 범위나 내용의 포괄성 정도에서 균형을 잘 갖추어야 활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플랫폼의 과도함, 혹은 플랫폼은 존재하되 해당 생태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타나는 빈 플랫폼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의 형성은 하나의 시류로 나타나면서, 여러 주체들이 관련 영역에서 '자신이 가지는 중심성'의 인식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형성하곤 한다. 이는 공익활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플랫폼에서 제공해야 할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한편으로 공익활동 플랫폼은 그 주된 이용자를 일반 대중, 시민으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의 핵심 참여자를 이용자로 설정할 것인지도 관건이 된다. 플랫폼의 각 부분에서 필요한 만큼의 자격을 부여하여 참여자를 설정하는 것은 만능의 대답이지만 플랫폼 전체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두어질지는 사용자의 참여 정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다.

현재 공익활동과 관련되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부 포털 등은 플랫폼이라기엔 공지나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국한되어 정보가 일방향으로만 흐르는 양상도 문제가 된다. 이 때문에 역으로 소위 '소통형' 플랫폼의 강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공익활동에 대한 대표적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가? 혹은 전국적 단위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가? 등의 부분도 그 자체로 쟁점이 될 수 있다. 공익활동에서 플랫폼의 구축과 보급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회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이다. 플랫폼을 통해 공익활동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에서 플랫폼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해야 그 생태계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즉, 플랫폼의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의 사례들을 검토해보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한다. 그리고 공익활동 참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이나 현장 관계자의 포럼이나 FGI와 같은 내용의 분석에서 나타난 공익활동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욕구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 플랫폼의 구축이나 활용을 위한 정책의 쟁점들을 도출하여 살펴본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은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그 구축을 모색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플랫폼과 관련된 본 연구 논의에서의 궁극적인 지향이다.

이미 플랫폼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드물지 않고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다. 오히려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홈페이지나 SNS 계정을 보는 것이 더 일상적인 상황이다. 공익활동의 국내외 사례도 다양한 만큼, 그와 관련된 플랫폼의 사례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익활동을 마을기반의 지역공동체 활동, 비영리 비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NPO의 활동, 자원봉사활동으로 국한하여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활동의 범위와 경계가 명확하지만은 않다. 공익활동 관련의 플랫폼 역시 다양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특정 기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소통통로, 사업관리 및 성과에 대한 정보지원체계, 해당 프로그램과 기관의 정보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소규모 공익단체의 활동가나 독립적인 개인활동가를 지원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온라인 정보화를 모색하기도 한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추진체계의 플랫폼은 활동의 연계를 위한 체계로서 특히 활동인증을 위한 시스템으로 많이 활용된다.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들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도구,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소규모의 조직 소속의 활동가들은 자체적인 소통창구로서 SNS 체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활동 욕구와 수요처를 연결하겠다는 전국 단위 혹은 세계적 단위의 온라인 체계도 드물지 않다. 공익활동 플랫폼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특정한 한 단위의 온라인 체계가 각자 관련 공익활동 단위의 전체를 연결하겠다며 구성한 플랫폼들이 다수가 혼란스럽게 존재하면서 어느 것도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익활동의 플랫폼이 가지는 유용성은 그 플랫폼과 직접 관련되는 실제 공익활동 특정 주체의 활동 과정과 내용의 우수성이나 모범적 사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관련성은 가진다. 플랫폼의 활성화는 곧 활발한 활동 생태계의 상황을 의미하고 이는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이 단선적으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 공익활동을 잘 수행하는 단체나 이름난 중간지원조직의 경우가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도 잘 만들어 활성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정보와 네트워크를 위한 유사한 경험들이 존재해 왔다. 공익활동이 가지는 비영리성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나 자원에 대한 배타적 전유(사적 재의 배제성과 경합성에 따른 전유)를 추구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적절한 공유를 도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열린 형태의 공유와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염의 문제도 있다. 일부에서는 끊임 없는 조정을 위한 노력(큐레이터 고용) 혹은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SNS처럼 개방형 소통체계를 활용할 것인지 혹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폐쇄형 소통체계를 활용할 것인지의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플랫폼 공론장에서의 오염 현상 그 자체를 공유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양상으로 인정하면서 공개된 시민들의 공론장을 추구하기도 한다.

결국 대규모 자본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공익활동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활동의 저변 확대와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해 유용한 도구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기능하고 있기도 하지만, 실제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효과에 근접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 인식 속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의 진단과 모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05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제1절 국내외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1. 정부의 정책참여 관련 공공 플랫폼

국내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부처에서 공공행정과 관련되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정책참여 등의 통로 목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포털과 같은 것이다.

[그림 5-1] 시민통통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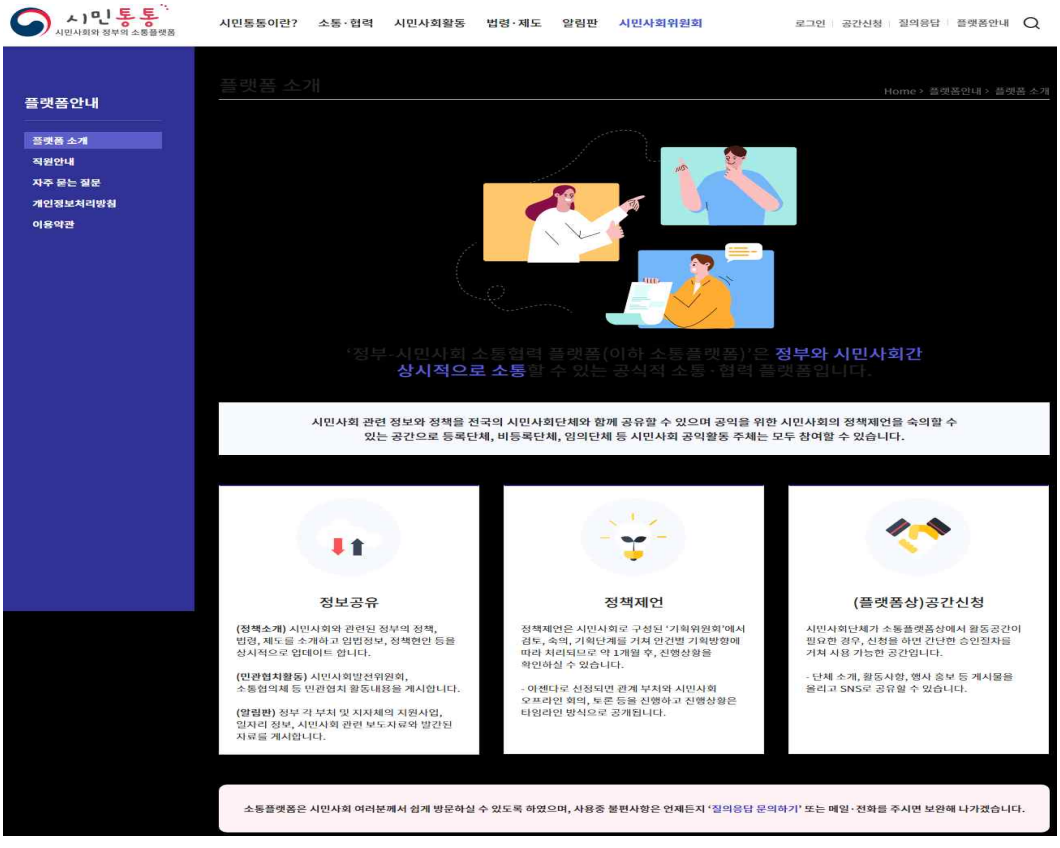

자료: 시민통통(htpp://civil.opm.go.kr/) : 2022.12.1. 인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소통 플랫폼으로 시민통통을 구성해 활용하고 있다. 시민통통은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에서 ⑥ 정부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 중에서 정부-시민사회 간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 활성화에 따라 모색된 것이다.

[그림 5-2] 시민통통의 홍보와 활동 공간 제공

자료: 시민통통(htpp://civil.opm.go.kr/) : 2022.12.1. 인출

시민통통은 (행정안전부의 온국민소통과 다소 유사한) 정책제언 기능과 아울러, 정부-시만사회,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 간 소통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온라인 지원 체계나 홍보 등 수단을 가지지 못한 시민사회 단체들에게 온라인의 공간 제공과 대면적인 논의를 위한 인프라의 대여 등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중앙부처가 직접 관할하는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플랫폼으로 또 하나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것은 온국민소통이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제안, 정책참여 등과 관련된 온라인 체계이다. 시민통통과 아울러 정부가 운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 관련 소통채널이라 할 수 있다. 온국민소통은 광화문 1번가로 알려져 있던 것을 최근 이름을 전환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공정책과 관련되어 국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져 있다. 정책을 제안하거나 혹은 제안된 정책에 대해 일정한 숙의단계를 거쳐 대안으로 채택해가는 과정과 관련된다. 온국민소통은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혁신제안톡을 통해 제안 구체화 토론과 채택 과제 고도화를 거쳐 각 부처에 정책제안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결국 중앙부처의 온라인 플랫폼인 만큼 국민의 정책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공공정책 참여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른 대표적인 부분은 협업이음터로 공익활동 추진 중에 다른 공공 혹은 민간기관과의 연계 활동이나 협업이 필요할 때, 이를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참여 커뮤니티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참여모임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3] 온국민소통, 구 광화문 1번가(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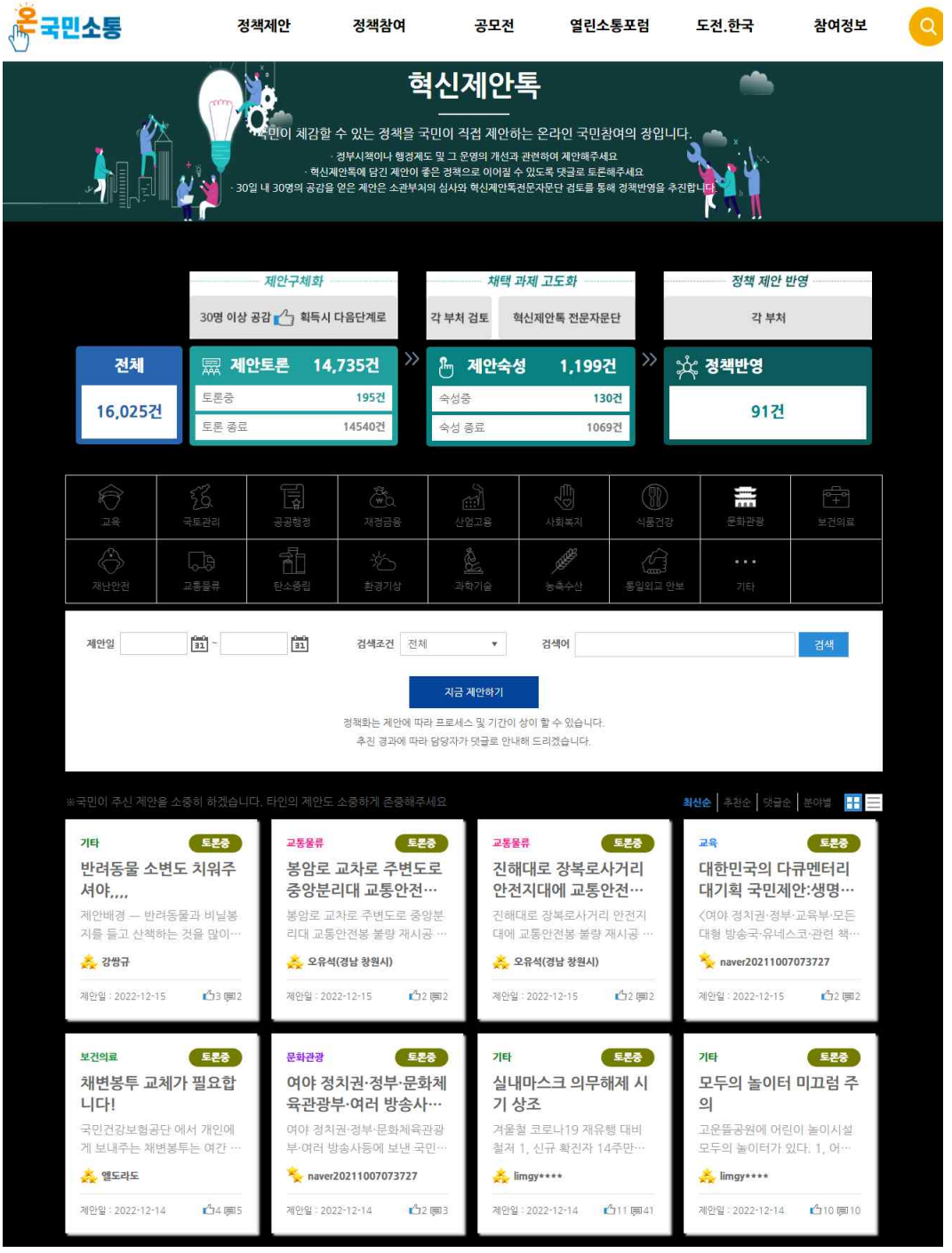
온국민소통
정책제안
정책참여
공모전
열린소통포럼
도전.한국
참여정보
혁신제안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온라인 국민참여의 장입니다.
· 경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세요
· 혁신제안톡에 담긴 제안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댓글로 토론해주세요
· 30일 내 30명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소관부처의 심사와 혁신제안톡전문자문단 검토를 통해 정책반영을 추진합니다
제안구체화
30명 이상 공감 획득시 다음단계로
채택 과제 고도화
각 부처 검토
혁신제안톡 전문자문단
정책 제안 반영
각 부처
전체
16,025건
제안토론 14,735건
토론중 195건
토론 종료 14540건
제안숙성 1,199건
숙성중 130건
숙성 종료 1069건
정책반영
91건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탄소중립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기타
제안일
검색조건
전체
검색어
검색
지금 제안하기
정책화는 제안에 따라 프로세스 및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추진 경과에 따라 담당자가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제안을 소중히 하겠습니다. 타인의 제안도 소중하게 존중해주세요
최신순
추천순
댓글순
분야별
기타
토론중
반려동물 소변도 치워주셔야,,,
제안배경 — 반려동물과 비닐봉지를 들고 산책하는 것을 많이…
강쌈규
제안일 : 2022-12-15
3 2
교통물류
토론중
봉암로 교차로 주변도로 중앙분리대 교통안전…
봉암로 교차로 주변도로 중앙분리대 교통안전봉 볼량 재시공 …
오유석(경남 창원시)
제안일 : 2022-12-15
2 2
교통물류
토론중
진해대로 장복로사거리 안전지대에 교통안전…
진해대로 장복로사거리 안전지대에 교통안전봉 볼량 재시공 …
오유석(경남 창원시)
제안일 : 2022-12-15
2 2
교육
토론중
대한민국의 다큐멘터리 대기획 국민제안:생명…
〈여야 정치권·정부·교육부·모든 대형 방송국·유네스코·관련 책…
naver20211007073727
제안일 : 2022-12-15
2 2
보건의료
토론중
채변봉투 교체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개인에게 보내주는 채변봉투는 여간 …
엘도라도
제안일 : 2022-12-14
4 5
문화관광
토론중
여야 정치권·정부·문화체육관광부·여러 방송사…
여야 정치권·정부·문화체육관광부·여러 방송사등에 보낸 국민…
naver20211007073727
제안일 : 2022-12-14
2 3
기타
토론중
실내마스크 의무해제 시기 상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철저 1, 신규 확진자 14주만…
limgy****
제안일 : 2022-12-14
11 41
기타
토론중
모두의 놀이터 미끄럼 주의
고운뜰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모두의 놀이터가 있다. 1, 어…
limgy****
제안일 : 2022-12-14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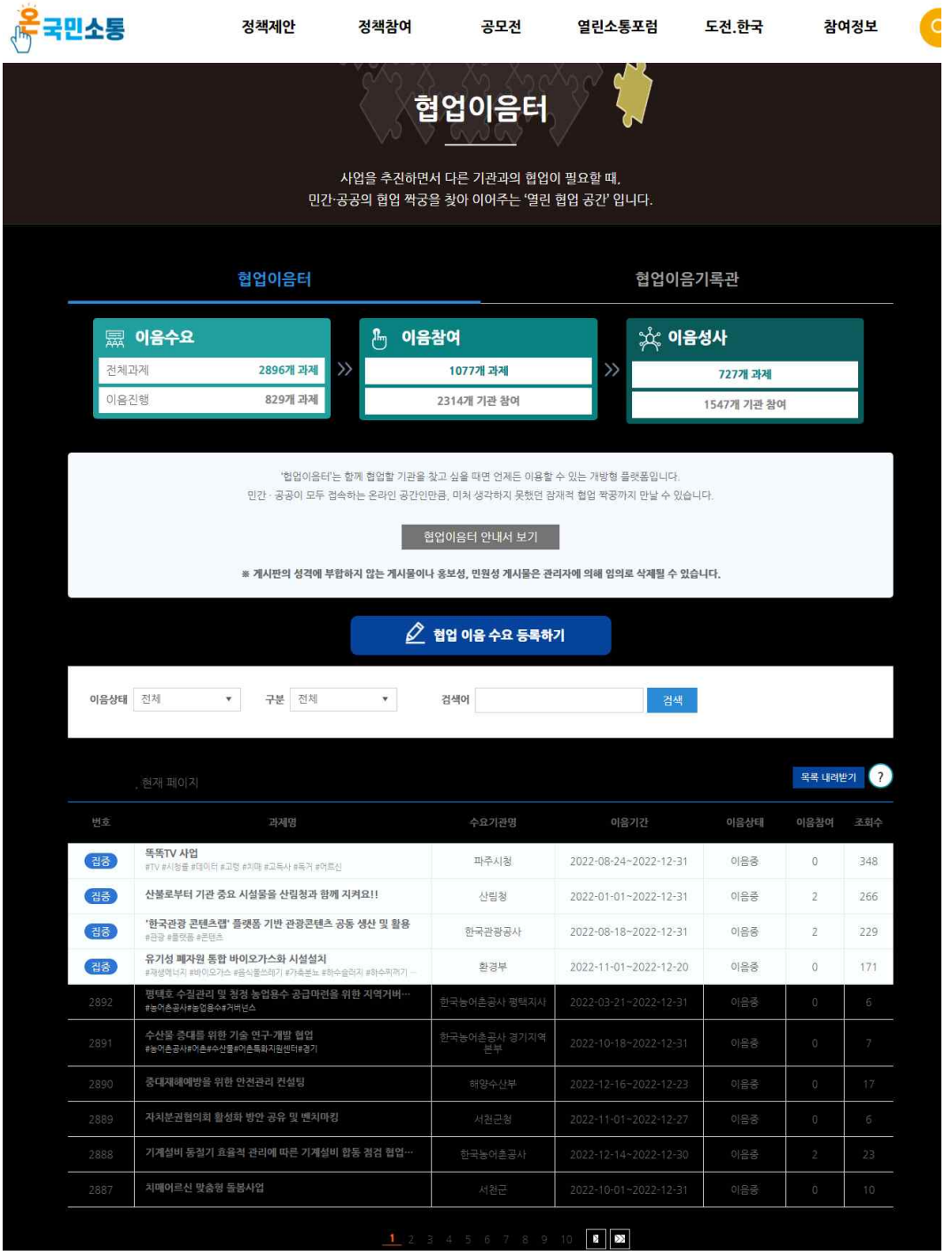
온국민소통
정책제안
정책참여
공모전
열린소통포럼
도전.한국
참여정보
협업이음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할 때,
민간·공공의 협업 짝궁을 찾아 이어주는 '열린 협업 공간' 입니다.
협업이음터
협업이음기록관
이음수요
전체과제 2896개 과제
이음진행 829개 과제
이음참여
1077개 과제
2314개 기관 참여
이음성사
727개 과제
1547개 기관 참여
'협업이음터'는 함께 협업할 기관을 찾고 싶을 때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입니다.
민간 · 공공이 모두 접속하는 온라인 공간인만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 협업 짝꿍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협업이음터 안내서 보기
※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이나 홍보성, 민원성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협업 이음 수요 등록하기
이음상태 전체
구분 전체
검색어
검색
현재 페이지
목록 내려받기
번호 과제명 수요기관명 이음기간 이음상태 이음참여 조회수
짐중 똑똑TV 사업 #TV #시청률 #데이터 #고령 #치매 #고독사 #독거 #어르신 파주시청 2022-08-24~2022-12-31 이음중 0 348
짐중 산불로부터 기관 중요 시설물을 산림청과 함께 지켜요!! 산림청 2022-01-01~2022-12-31 이음중 2 266
짐중 '한국관광 콘텐츠랩' 플랫폼 기반 관광콘텐츠 공동 생산 및 활용 #관광 #플랫폼 #콘텐츠 한국관광공사 2022-08-18~2022-12-31 이음중 2 229
짐중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하수찌꺼기 … 환경부 2022-11-01~2022-12-20 이음중 0 171
2892 평택호 수질관리 및 청정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위한 지역거버… #농어촌공사#농업용수#거버넌스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2022-03-21~2022-12-31 이음중 0 6
2891 수산물 증대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 협업 #농어촌공사#어촌#수산물#어촌특화지원센터#경기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2022-10-18~2022-12-31 이음중 0 7
2890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컨설팅 해양수산부 2022-12-16~2022-12-23 이음중 0 17
2889 자치분권협의회 활성화 방안 공유 및 벤치마킹 서천군청 2022-11-01~2022-12-27 이음중 0 6
2888 기계설비 동절기 효율적 관리에 따른 기계설비 합동 점검 협업… 한국농어촌공사 2022-12-14~2022-12-30 이음중 2 23
2887 치매어르신 맞춤형 돌봄사업 서천군 2022-10-01~2022-12-31 이음중 0 10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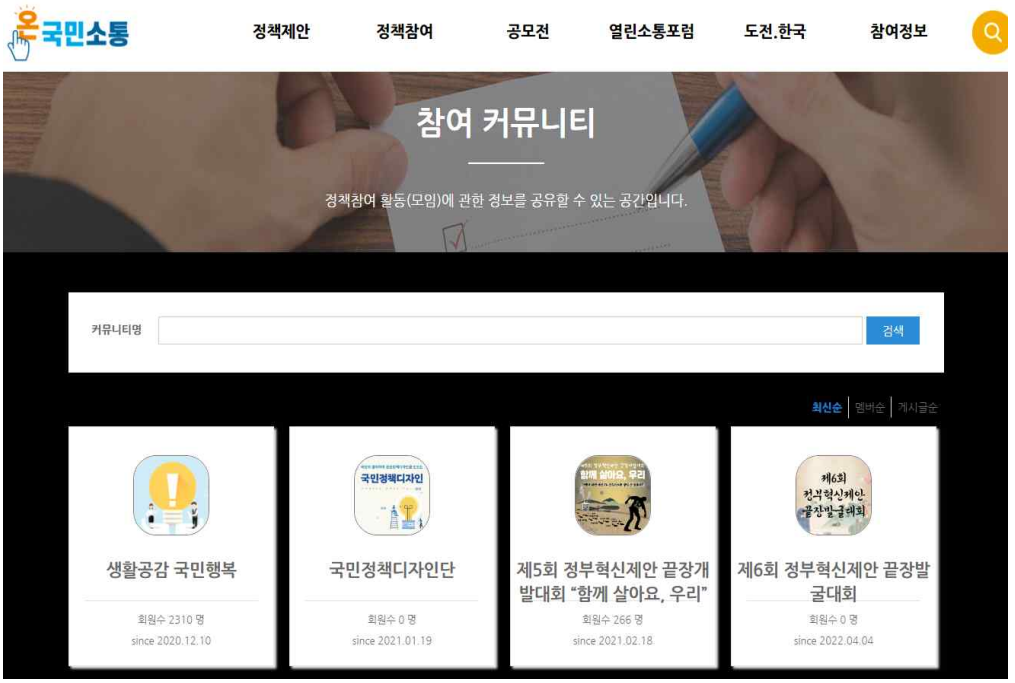

자료: 온국민소통(https://www.onsotong.go.kr/) : 2022.12.1. 인출

그 이전에 있었던 정부 부처의 관행적 홈페이지나 포털에 부속된 게시판 수준과는 달리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주체적 참여 과정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협업과정의 창출, 커뮤니티의 형성 등을 모색하고 있어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온국민소통은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정책 제안과 참여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공정책' 관련성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공익활동 주체로서의 지역사회와 민간의 욕구보다는 중앙정부의 욕구에 일차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라는 온라인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온국민소통과 같이 중앙정부 집중적이기보다는 전국 각 지역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다. 주민들,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각종 단체 조직들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이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해결하는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2018년 대구광역시와 강원도의 시범 운영으로부터 출발했다. 기존의 관 주도, 중앙정부 중심, 예산 투입 위주의 해결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 공공기관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민·관 협업형 문제 해결 방식이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2019년도에는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가 참여했다. 2019년도에는 이들 6개 지역에서 292개 기관(67개 공공기관 포함)이 참여해 지역추진위를 구성, 플랫폼이 출범했고, 94개 협업의제를 선정해 총 72개

과제를 실행했다. 2020년도에는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추가 선정됐고, 이후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등을 포함 전국 1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된 플랫폼의 구성이나 논의방식은 전통적인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하다.

[그림 5-4]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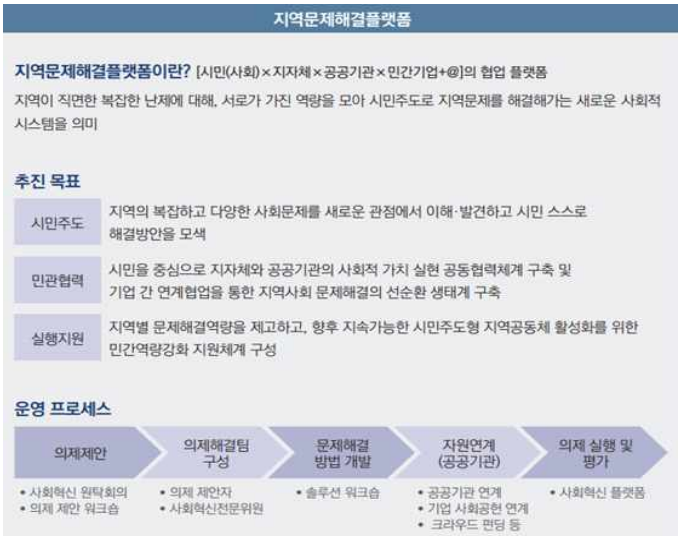

자료: 이환성 외(2021).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홈페이지나 온라인 포털보다는 SNS 체계(페이스북)에서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 논의와 교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5] 페이스북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자료: 페이스북의 지역문제해결플랫폼(https://www.facebook.com/socialchange0) : 2022.12.1. 인출

각 지역별로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의제와 관련된 논의, 지역 문제와 관련된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된 구체적 부분을 논의하는 별도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6] 전라남도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자료: 전라남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https://jnsocial.modoo.at/) : 2022.12.1. 인출

시민통통이나 온국민소통, 혹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같은 경우 정부가 주도하는 온라인 플랫폼인만큼 공익활동의 한 축으로 공공의 영역과 연결되어 정책을 제안하거나 협력하는 등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공공영역과의 연계성 내에 위치지우려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공공행정에 시민의 참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극히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인식하던 것에 비해서는 시민사회의 공론이나 시민의 공익적 참여활동을 수용하는 경로로 온라인 플랫폼이 구성되어 활용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측면에서 시민공익활동을 정해진 공공의 체계 내로 유도하는 방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다수의 조직이나 시민들이 자신이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공익활동과 관련되어 이 플랫폼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플랫폼 사용을 위해 별도의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사회의 자체적인 공익활동의 허브로서 중앙부처의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영향력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크지 않다. 이 플랫폼을 공익활동을 위해 활용하는 주체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공익활동과 관련된 플랫폼 혹은 공익 관련의 정보플랫폼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지역문제해결 플랫폼과 문제의식이나 구성에서 유사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여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한 사례로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지역의 공익활동 자원을 한 곳에 집적한 온라인 공유플랫폼을 통해 개인과 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 물건, 지식과 재능, 정보 등의 유무형 자원을 망라하여 공익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5-7]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유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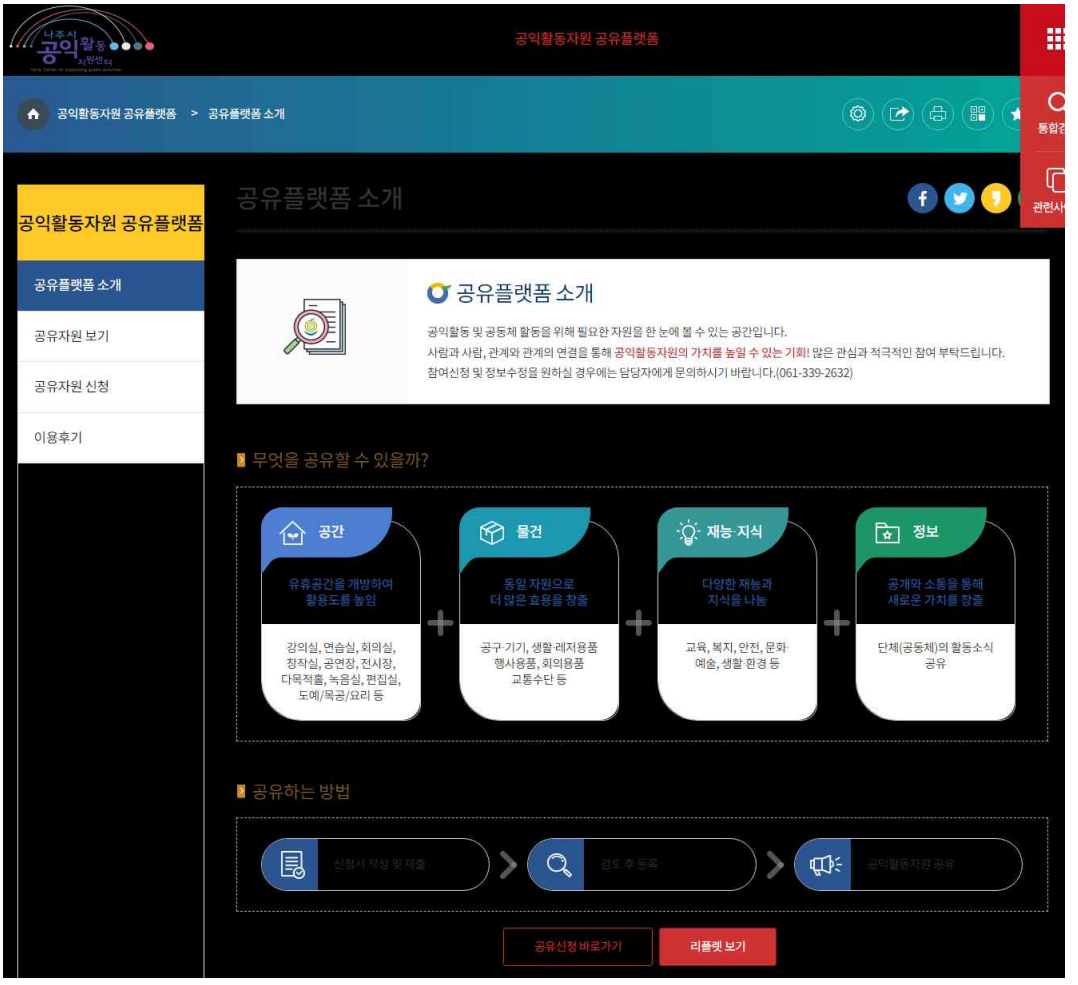

자료: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https://www.naju.go.kr/gongik) : 2022.12.1. 인출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들어 늘어나기 시작한 청년에 대한 각종 정책이나 자원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직접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공공이나 민간의 청년 관련 정책과 자원 및 활동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활동 플랫폼과 내용적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림 5-8]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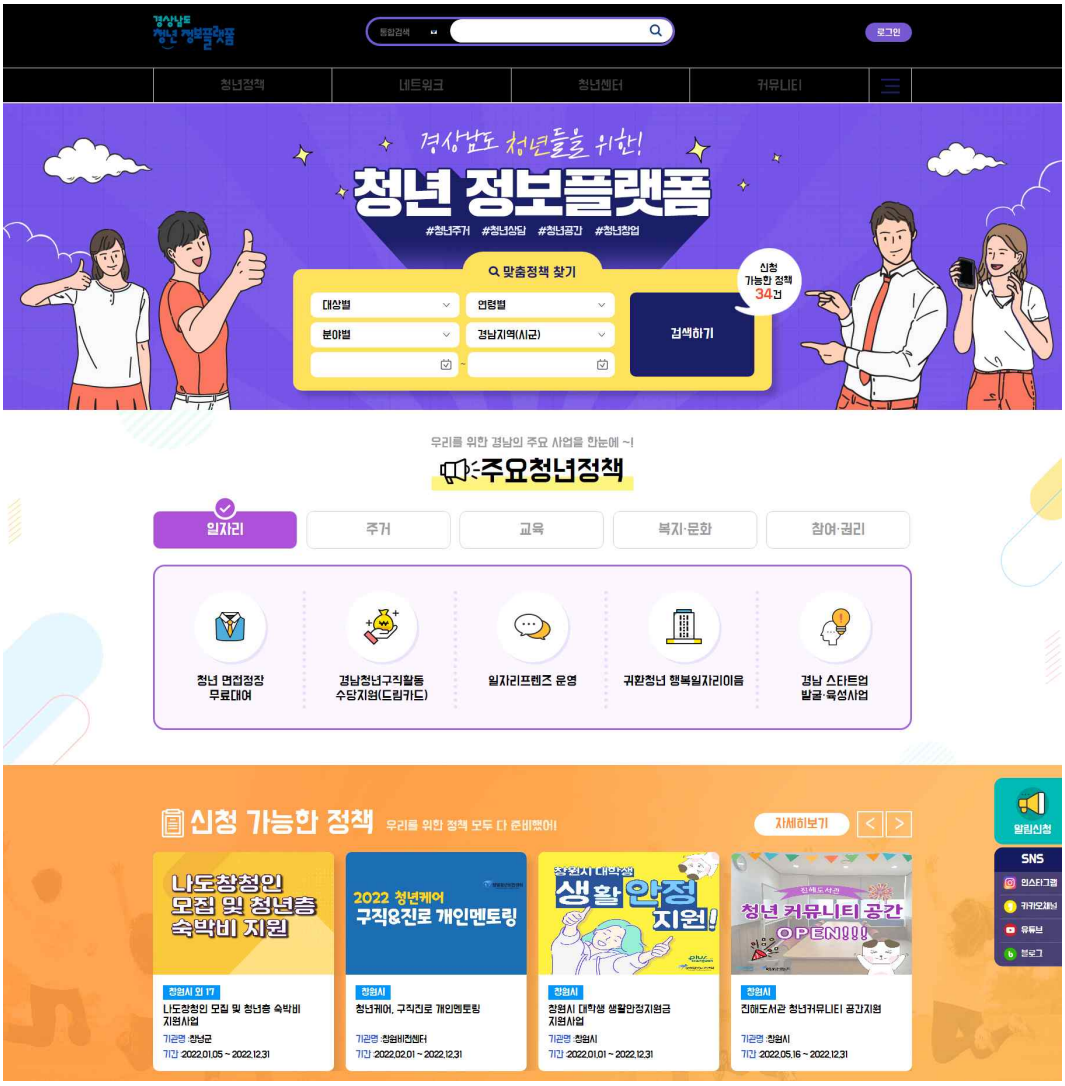

자료: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https://youth.gyeongnam.go.kr/youth) : 2022.12.1. 인출

3. 자원봉사활동 중심의 플랫폼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양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진학 관련에서의 반영이 점차 축소되는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지역별로 자원봉사센터가 구축되어 있고 자원봉사자 특성에 따른 몇 가지 유형의 추진체계와 지원체계가 편성되어 있으나 자원봉사

활동 개별 현장과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직접 연결되어 활동하는 추세가 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활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장 대표적 자원봉사활동 관련 플랫폼은 법에 따라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1365자원봉사 포털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기부와 관련한 포털과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내와 자원봉사활동 현장과 수요에 대한 정보 제공, 자원봉사활동의 연계,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에 의해 각 시군구마다 편성되어 있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정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주요 조직체에 대한 연결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나 소집단 간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림 5-9] 1365자원봉사포털

자료: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 2022.12.1. 인출

자원봉사활동의 실적은 시간 단위로 인증되고 이를 누적관리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시간인증이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시민참여적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어찌되었건 현장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과 교육반영이 자원봉사 양적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활동 인증관리의 기능은 사회복지자원봉사에 대한 VMS체계에서 전통적으로 큰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관리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성한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10]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체계

자료: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 2022.12.1. 인출

외국의 경우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활동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체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하나의 사례로 VolunteerMatch와 같은 플랫폼을 들 수 있다.

[그림 5-11] VolunteerMatch의 자원봉사 연계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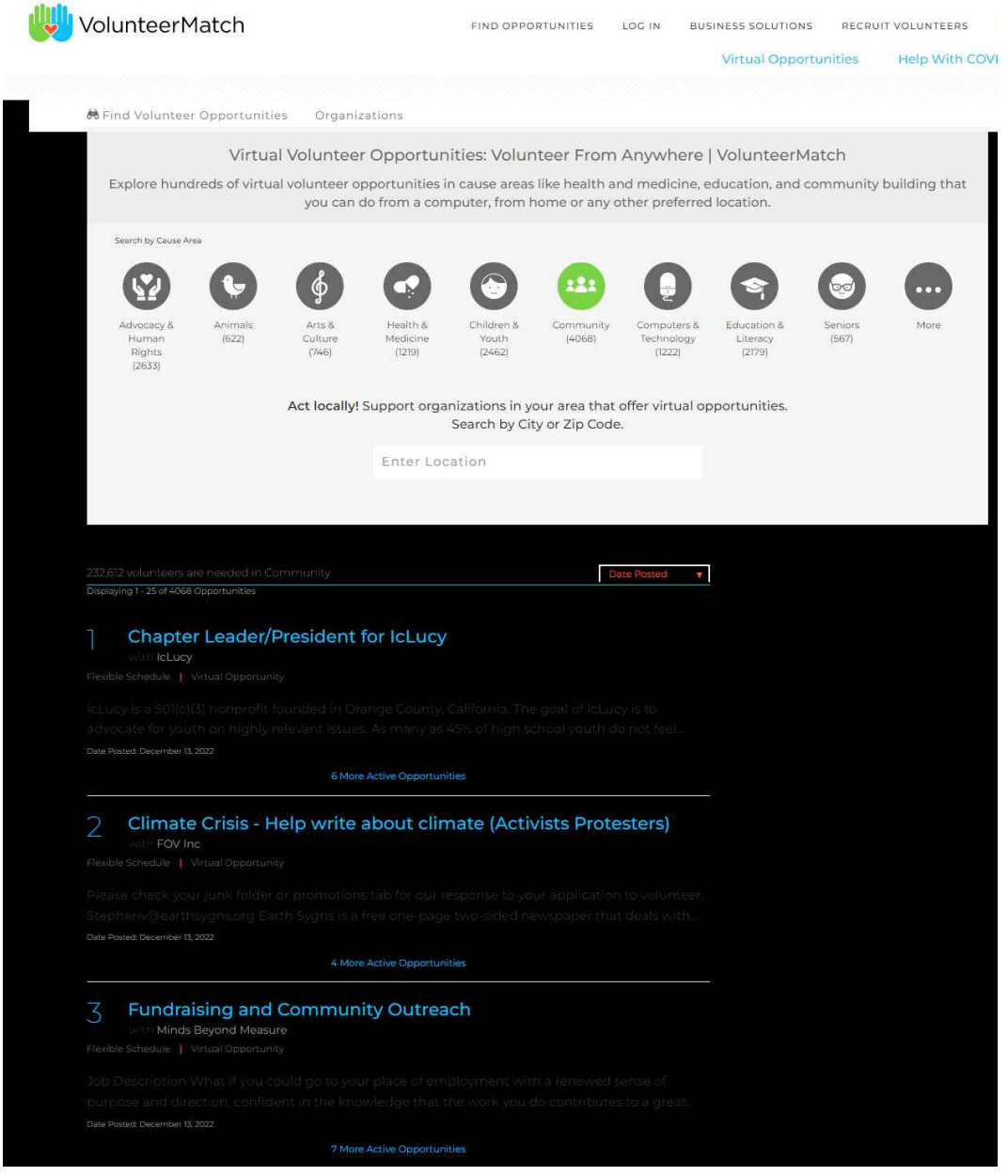

자료: volunteermatch(https://www.volunteermatch.org/virtual-volunteering) : 2022.12.1. 인출

전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이고 유명한 자원봉사 관련 플랫폼으로는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그림 5-12] 촛불재단(Points of Light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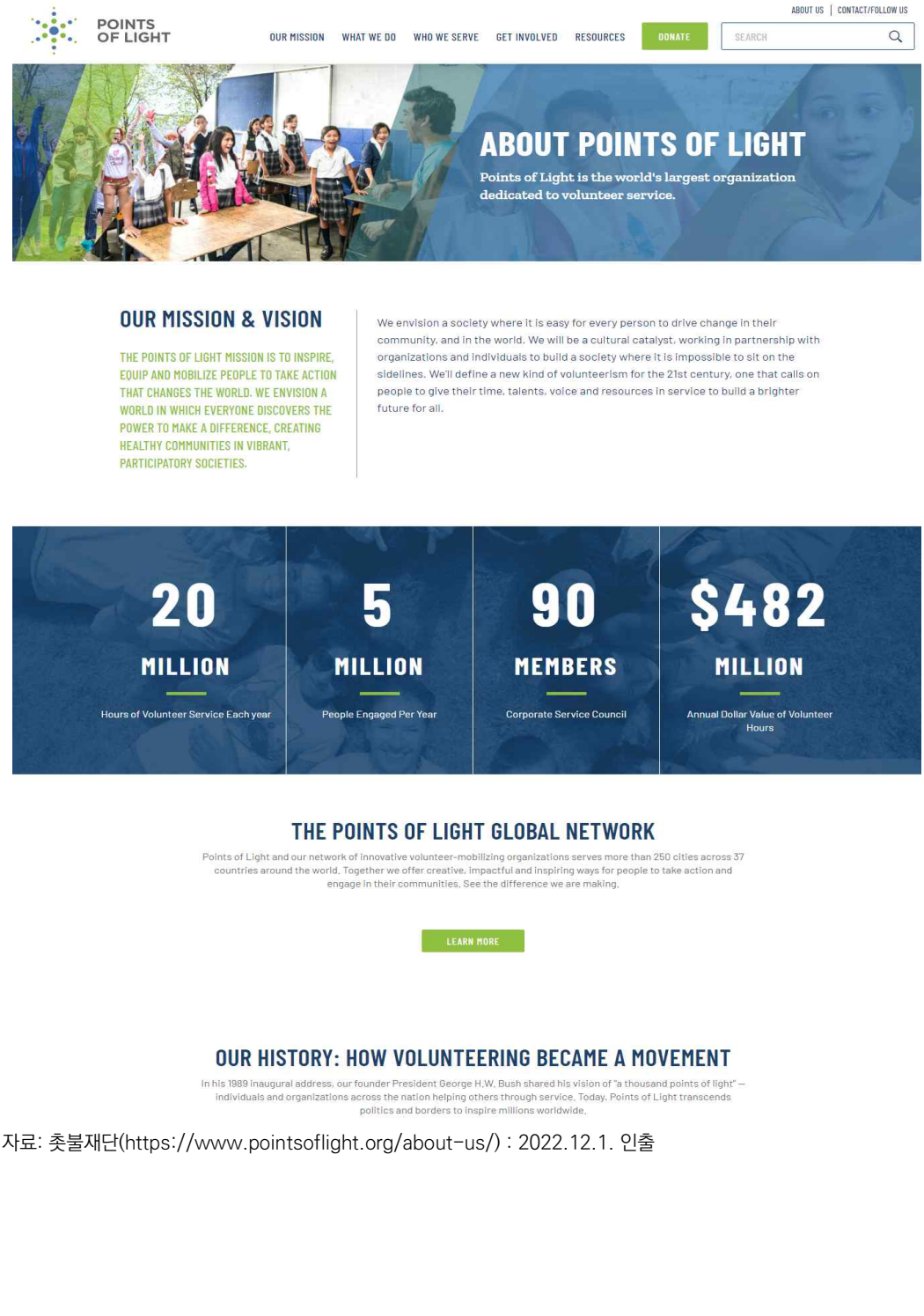

자료: 촛불재단(https://www.pointsoflight.org/about-us/) : 2022.12.1. 인출

4. 미국의 아메리콥스(AmeriCorps)와 영국의 NCVO

미국은 자원봉사활동을 비롯한 시민적 참여활동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미국은 1960년대 평화봉사단과 VISTA 등의 창설로 공공이 주도하면서 시민들의 국내외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한 이래,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이 공공지원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

1990년 전국 및 지역사회봉사법(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act), 전국봉사트러스트법(national service trust act)이 제정되면서 클린턴 정부는 백악관의 National Service와 ACTION, NCCC 등의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미국전국봉사단을 창설하였다. 이는 당시 CNS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1993년 아메리콥스가 결성되었는데 미국의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국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미국봉사단은 CNCS 체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 CNCS는 공공조직으로 예산 지원 및 운영 전반이 공공에 의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지만,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지 않도록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이사회와 경영팀에 의해 운영된다. CNCS가 제공하고 있는 아메리콥스(미국봉사단)과 Senior Corps(시니어봉사단)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아메리콥스는 매해 8만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10-12개월의 자원봉사활동 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프로그램의 통합 내용에 따라 아메리콥스VISTA, 아메리콥스NCCC 등의 하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또한 Senior Corps는 55세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RSVP, FG, SC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enior Corps의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 프로그램과 일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44]

아메리콥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활동 정보의 제공, 상담, 기술적 지원 등의 기능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 단순한 포털 혹은 홈페이지와는 구별되는 검색과 연계 플랫폼으로 기능을 도모하고 있다.

44) 아메리콥스의 구체적 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본 협동 연구의 해외의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사례의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그림 5-13] 미국의 아메리콥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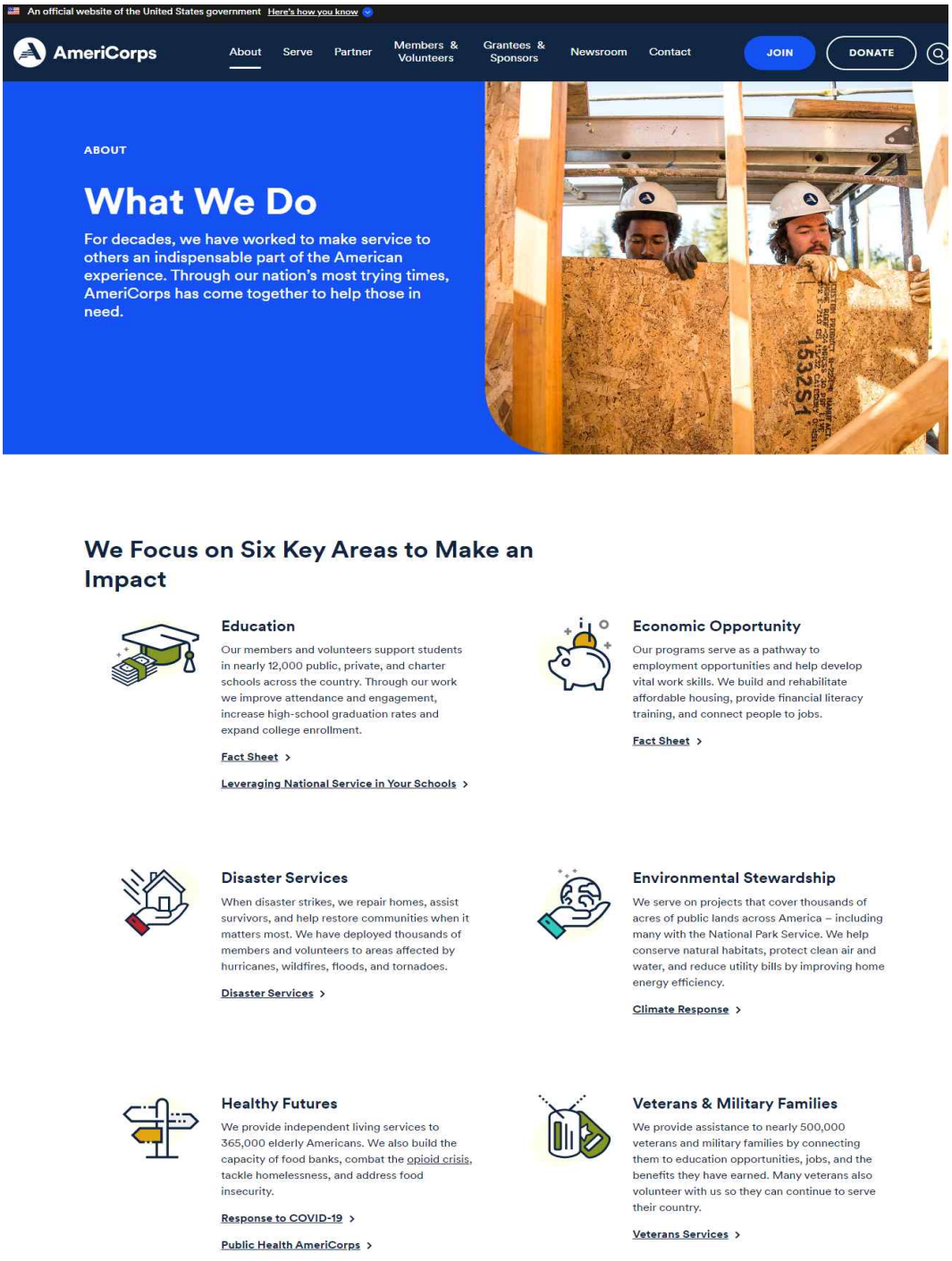

자료: AmeriCorps(https://americorps.gov/about/what-we-do) : 2022.12.1. 인출

영국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은 특히 NHS를 비롯한 영국 공공체계의 재정부담과 관료적 경직성에 따른 지역사회와 민간의 보건, 돌봄 등에 대한 역할분담과 관련된 속성이 부각되곤 한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 총리 후보는 민관의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공약의 하나로 내걸고 당선되어 영국 정부와 민간 자원섹터의 협약(the Compact, 1998)을 발표하였다. 중앙정부와 여러 지방정부에서도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송정인, 이혜영, 2017).

영국 정부와 민간 자원섹터(voluntary sector) 협약의 원칙

1.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다
2. 독립적이고 다양한 자원 영역과 공동체 영역은 사회 전체적 복리의 기초가 된다
3. 공공정책과 서비스의 개발 및 전달에서 정부와 자원 섹터는 각각 독특하지만 보완적인 역할을 분담한다
4. 정부와 자원섹터는 서로 다른 형태의 책무성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들에게 책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양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통합성, 객관성, 책무성, 개방성, 정직 및 리더십이다
5. 자원 섹터와 공동체 섹터는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의 범위에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 정부는 다른 일보다도 자원 섹터의 재정지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와 자원 섹터 관계에서 재정지원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7. 정부와 자원 섹터는 인종, 연령, 장애, 성,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기회와 평등을 증진시키는 중요성을 상호 인지한다

자료: 남기철(2022)

NCVO(National Council of Voluntary Organization)는 영국에서 민간의 자원단체를 지원 및 대표하는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직접적인 자원봉사자 모집이나 활동연계를 주된 활동으로 수행하고 있지는 않고 간접적으로 돕는 로비, 캠페인,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원조직이다. 20세기 초 서비스 제공 비영리조직들의 모임인 전국사회서비스협의회(NCSS ;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가 1980년에 NCVO로 개편되었다. 그런데 이 NCVO가 블레어 정부에서 1998년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약(the Compact)을 체결하고, 아베스 보고서(Aves report)를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민간의 자원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인정받아 역할을 수행하였다. NCVO는 14,000개 이상의 민간자원단체가 회원이 되고 있다. 협약을 토대로 하는 영국 자원봉사 체계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4] 영국의 NCV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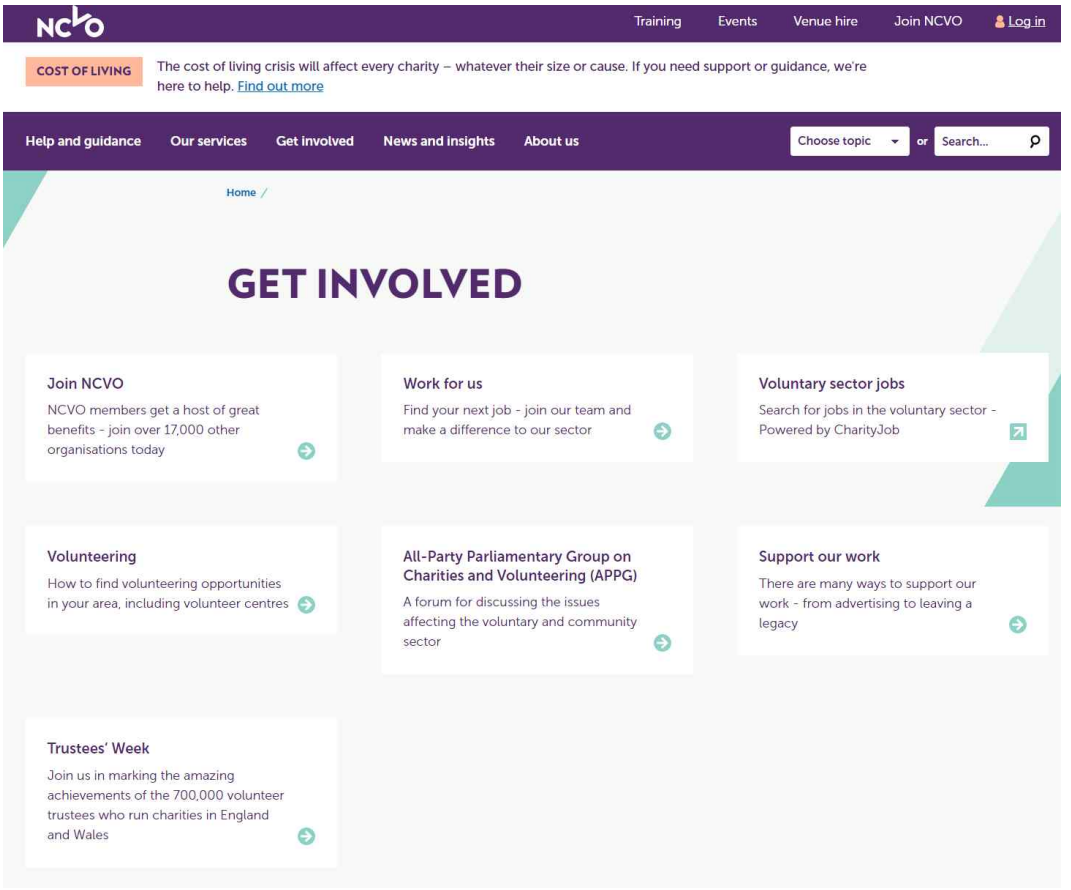

자료: NCVO(https://www.ncvo.org.uk/) : 2022.12.1. 인출

5. 기부자원 등과 관련한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체계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들도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가이드스타라 할 수 있다.

[그림 5-15] 한국가이드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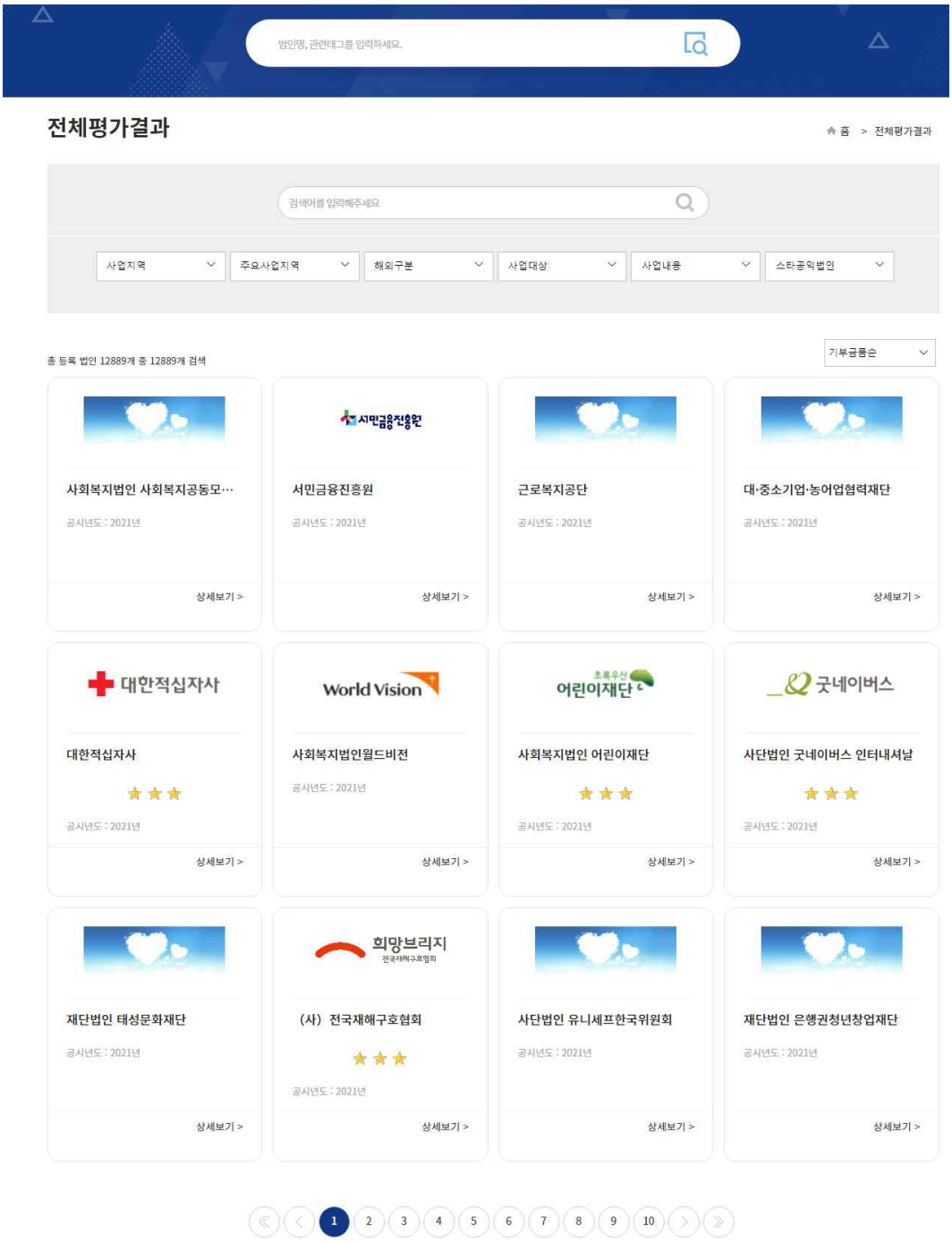

자료: 한국가이드스타(https://guidestar.or.kr/web/eval-result/list) : 2022.12.1. 인출

한국가이드스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결산서류를 기부활성화 목적으로 제공받은 최초의 공익법인으로, 민간 최초로 비영리 정보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하였다. NPO 정보 공시 및 검색환경을 구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비영리 단체들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비영리단체 평가지표(GSK Index)를 개발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Candid가 비슷한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가 되고 있다.

[그림 5-16] Candid의 정보제공체계

자료: Candid(https://candid.org/) : 2022.12.1. 인출

가이드스타나 Candid의 정보제공체계는 공익활동 관련 조직체에 대한 정보를 외부의 기준에 의해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적 측면에서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익활동 주체들의 활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주체들의 교류체계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 공익활동 플랫폼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의 현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취득하는 부분에서는 유용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다.

6. 마을공동체 관련의 온라인 플랫폼

공익활동의 주요한 한 유형으로서 지역사회의 마을공동체 관련의 활동은 특히 소규모의 대면성, 지역별 의제에 따른 활동의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인 포털이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 또한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정책제안이나 협업소통 등의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인 활동주체들의 상호소통이 지원되는 기능이 필요하다. 정보, 기술적 지원, 자원공유, 활동의 성과홍보, 활동이력의 인증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다양한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통을 위한 지원수단으로서의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마을공동체 활동에서의 특징적 모습이다.

[그림 5-17]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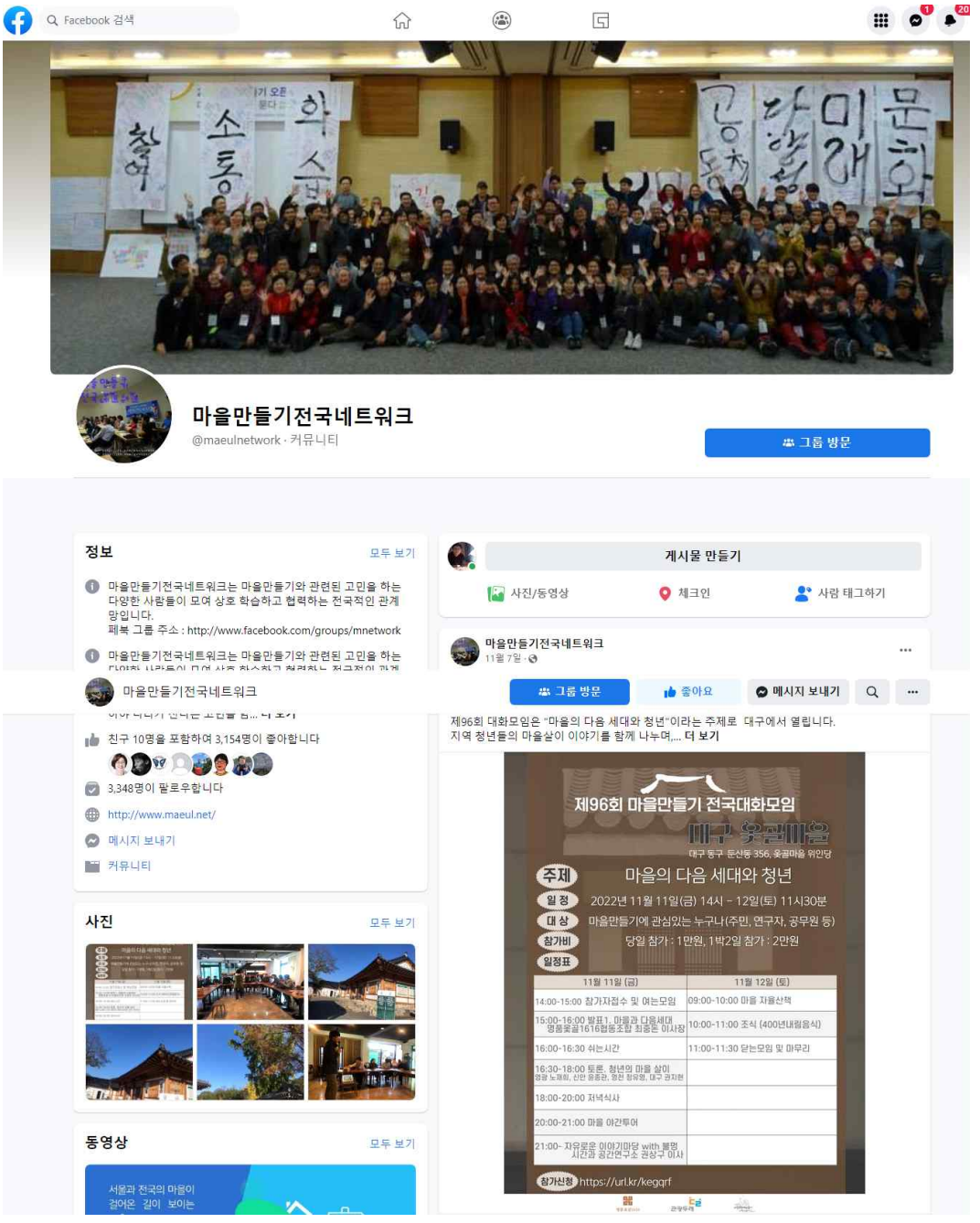

자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maeulnetwork) : 2022.12.1. 인출

마을공동체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소규모 논의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가벼운 SNS 체계가 가지는 장점이 부각된다. 따라서 자원봉사나 NPO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들보다도 유연한 SNS 체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험공유와 연대성 고취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SNS를 통해 전국적 단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혹은 만들기와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내용을 보여주었던 곳은 서울지역이다. 서울에서는 서울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공공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플랫폼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SNS 기반의 소통연계 이상의 기능을 탑재하는 지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홈페이지를 종료하기로 예정되어 플랫폼의 기능은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8]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서울시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 2022.12.1. 인출

7. 서울NPO지원센터의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차원에서 NPO의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의 형성과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 가장 대표적인 지역의 사례를 서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형으로 활동의 모습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물리적으로도 공간 거점을 구축하여 공간대여와 오프라인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지만,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모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지역에 영향을 끼쳐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림 5-19] 서울시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서울NPO지원센터(https://www.snpo.kr) : 2022.12.1. 인출

서울NPO지원센터의 경우 3단계의 버전을 통해 홈페이지와 플랫폼 운영의 방향을 마련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지원사업의 안내와 정보 아카이브를 중점적으로 구축, 활동가들의 센터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 두 번째 단계에서는 NPO소식, 채용정보, 타 기관 지원사업 안내를 추가하여 단체 활동에 대한 홍보와 NPO의 구인구직 정보제공, NPO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의 지원사업의 일정, 참여방식 등을 안내함으로써 NPO생태계를 연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센터의 사업을 활동지원 플랫폼, 자원연계플랫폼, 정보지식플랫폼 등 3개의 플랫폼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생성에 따라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로 연결하였다. 서울NPO지원센터는 단계마다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보다는 가볍고 유연하게 별도의 페이지를 구축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플랫폼의 형성에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구성된 3개 플랫폼의 목적과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서울NPO지원센터의 3가지 플랫폼 운영방식

구분	사이트 명칭	목적	운영
활동지원 플랫폼	공공공공(2021~) * 별도페이지	활동가가 필요로 하는 시민사회 공공재를 활동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공간.	- 비영리행정업무오픈위키 - 비영리활동가들이 이야기공간 - 퇴근이 빨라지는 회의문화만들기 - 소셜섹터 종사자들의 역량나눔 커뮤니티
	NPO도구상점 (2021~) *별도페이지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도구를 소개하고 사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제공	- 성과관리도구 - 위기관리도구 - 디지털도구 - 조직문화&비영리 일잘러 - 1분도구
정보지식 플랫폼	정보아카이브(2013~) *센터홈페이지	국내외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직접 정보를 탐색·발굴하여, 직접 개요를 작성하고 원문을 연결하는 방식(센터만의 고유 컨텐츠) - 비영리 대표적 뉴스레터들이 정보를 소개하고 센터의 정보아카이브로 연결하는 사례 증가 - 현재 2,700여개 정보 등록 - 기존에 등록된 정보의 수정, 업데이트 작업의 증가
	변화사례아카이브	NPO가 바꾼 변화사례를 발굴하여 직접 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이 사례를 정리하여 제공	- 총 180여개의 변화사례 정리 - 네이버브런치, 웹툰, 동화책, 모션그래픽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가학습플랫폼 '판' *별도의 홈페이지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60여개 파트너기관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활동가 학습 정보 제공	- 교육판 : 663개의 컨텐츠 제공 - 모임판 - 활동가서재

구분	사이트 명칭	목적	운영
자원연계 플랫폼	NPO파트너페어 아카이브	NPO지원산업박람회 참가기관들의 정보제공과 행사 기록 아카이브	- 총 242개의 기관 DB - 17년~21년의 행사 스케치와 홍보자료, 언론보도 등 기록
	센터 블로그	NPO관련 제도, 정책의 소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 1,311건의 컨텐츠 등록 - 29만건의 조회수

자료: 정란아(2022).

서울NPO지원센터의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의 사유공론장으로서의 특성을 지향하기보다는 'NPO활동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생태계'를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특징이 있다. 오히려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참여는 일정하게 수준을 제약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의 플랫폼들은 대부분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활성화 자체의 기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다. 정보제공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정보아카이브, 박람회, '판' 등)의 경우도 큐레이터, 파트너기관 등 플랫폼의 주요 행위자들이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의 소통 자체가 아닌 오프라인에서의 협력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공공공공'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댓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보완하고, 투표와 선정까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100명의 활동가라는 수적 제한과 공공재 생산이라는 공동의 목표라는 초점화를 유지하고 있다. 이 제한성이 실제 플랫폼의 논의가 가능했다고 판단(정란아, 2022)하고 있다.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려면 다루는 컨텐츠가 명확해야 하고, 의제의 크기가 작아야 하고, 일정한 참가자의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주민의 공론장이라는 모호한 개방성을 강조하지는 않는 것이다.

플랫폼의 모든 컨텐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하고, 새로운 요소를 단계별로 반영하는 고도화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충분한 관리 인력과 상당한 비용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 예산지원과 분야별 큐레이터의 활동이라는 조건을 통해 가능했다. 플랫폼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유용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히 '정보아카이브'에서는 20여명의 분야별 큐레이터들의 조력을 핵심사항으로 하였다.

특히 과거에 비해 점차 고도화되어가는 공익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전문적 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요구되는 도구와 정보에 대한 제공 필요성이 높다. 국내 NPO단체와 활동가들도 관련된 도구의 존재나 정보수집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시민이나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받을 정보나 도구를 알고 싶은 욕구가 높다. 특히 최근 NPO의 활동 상당수가 정부나 각종 기금의 지원이나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이나 성과입증을 위해 정보와 도구의 확보 욕구가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NPO지원센터의 경우에도 '도구상점'이나 '정보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는 주 표적을 NPO 활동가로 삼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접근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나 도구상점의 도구를 활용하는 활동가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고, 관련 교육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정란아, 2022).

NPO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서 도구와 정보,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기능이 실용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8. 공익활동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도구 지원체계

공익활동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정보나 도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에서는 기술적 도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많이 탑재하곤 한다. 동시에 이를 제공하는 자체를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주요한 몇몇 국내의 공익활동 플랫폼에서는 해외의 도구와 관련된 플랫폼을 연결하거나 소개하는 경우도 많으며 해외의 도구 관련 플랫폼을 직접 활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NGO-IDEAS나 PNGK 등이 NGO나 비영리 공익단체들이 효과성 증진을 위한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20] NGO-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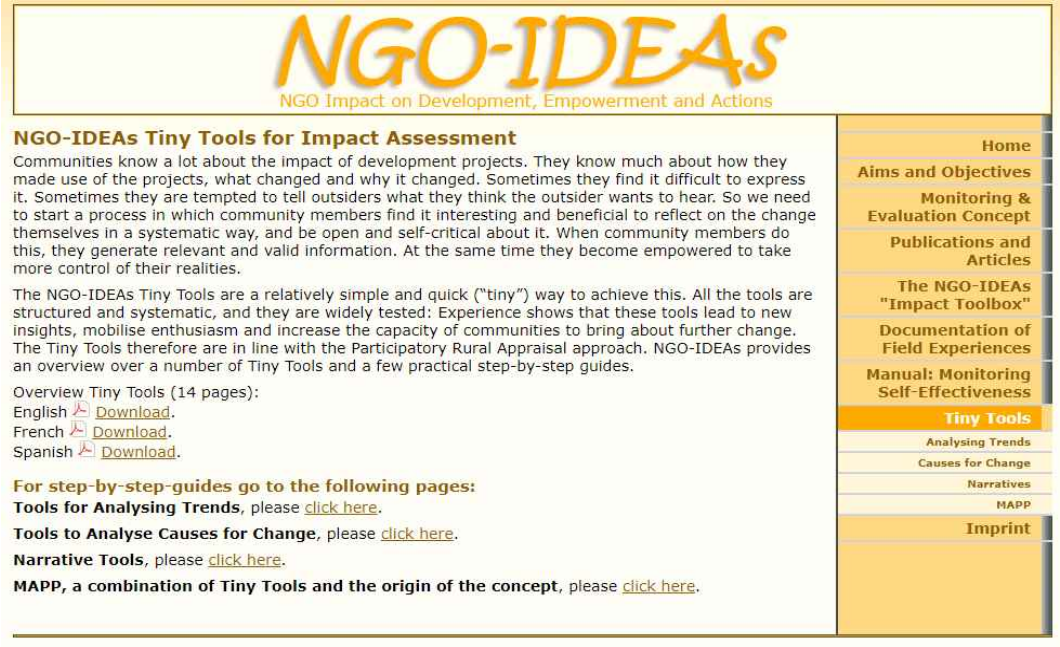

자료: NGO-Ideas(www.ngo-ideas.net/tiny_tools) : 2022.12.1. 인출

[그림 5-21] PNGK의 도구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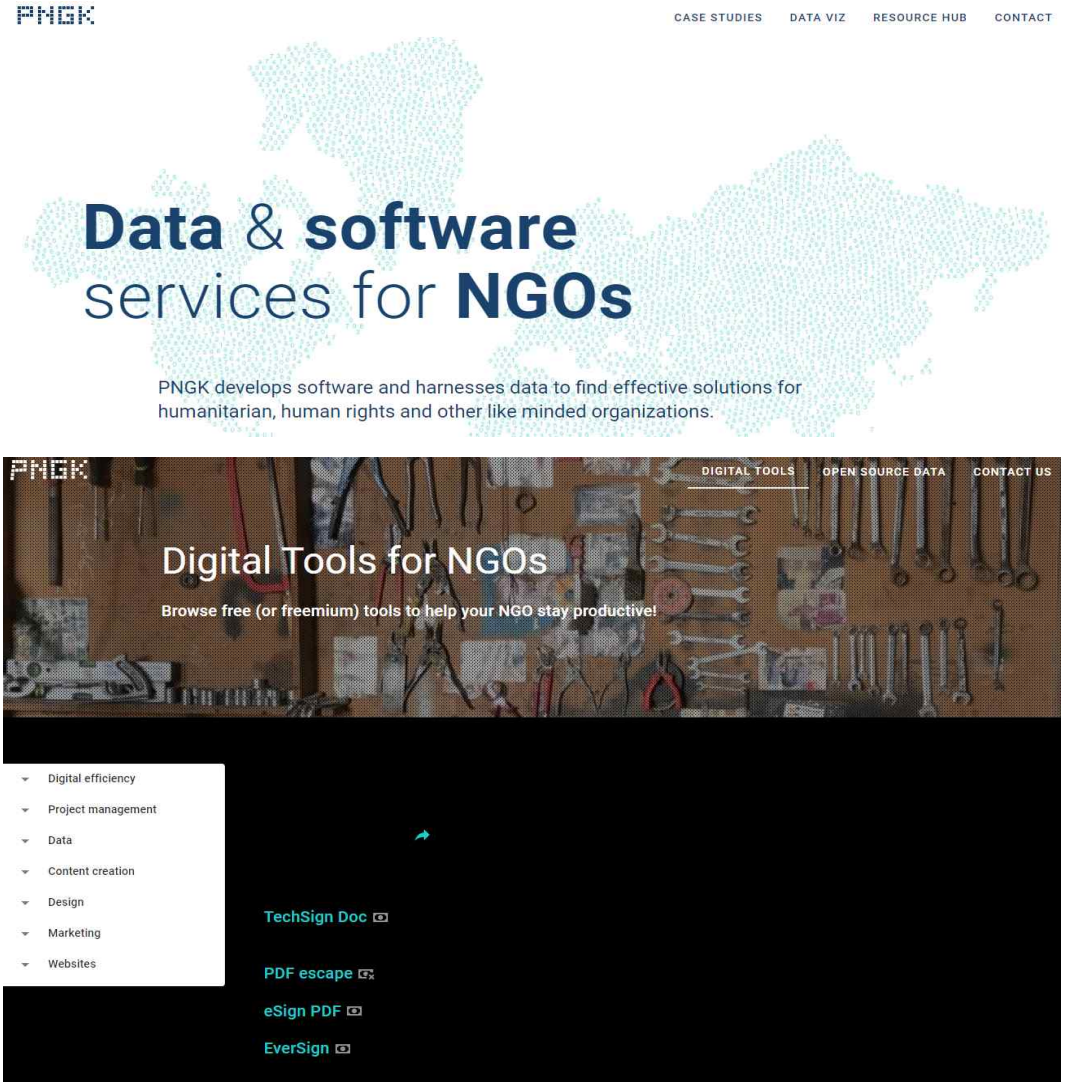

자료: PNGK(https://www.pngk.org/resource-hub/) : 2022.12.1. 인출

한편으로는 NGO나 비영리 공익활동 기관을 명시적인 대상으로 초점화하고 있지 않지만 공익단체들에서 많이 활용하는 기술적 도구지원체계들도 있다. 공익활동만이 아니라 일반 영리적 조직에서도 사용하는 지원적인 자원체계라는 점에서 공익활동의 온라인 지원도구라기보다는 외부의 자원이라 할 수도 있다. Collaboration Superpowers 와 같은 경우가 이러한 도구와 기술지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이와 같은 온라인 체계는 영리적인 성격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5-22] Collaboration Superpow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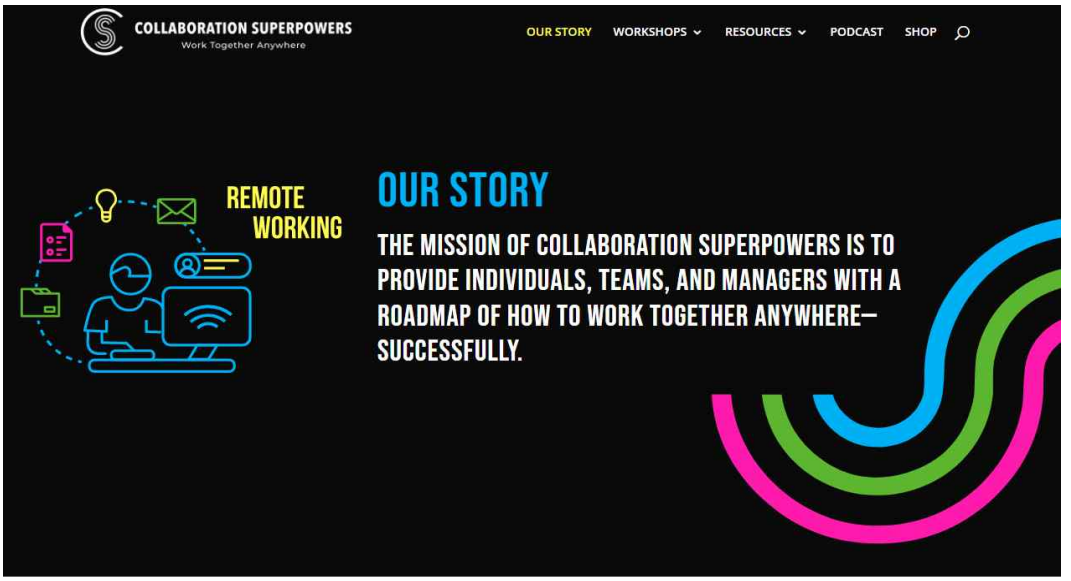

COLLABORATION SUPERPOWERS BEGAN IN 2004 WITH A *DESIRE* TO ESCAPE THE CONFINES OF THE OFFICE...

...AND AN *INSATIABLE CURIOSITY* ABOUT HOW OTHERS WERE USING REMOTE WORK TO DESIGN THEIR OWN LIFESTYLES AND SOLVE INTERESTING PROBLEMS.

We started by researching how companies were working remotely and sharing that information with our network via social media and Google Hangouts (now Google Meet). Over time, more and more people began asking for products: a podcast, a workshop, and then a book.

With guidance from the talented Nick Jaworski from Podcast Monster, the Collaboration Superpowers podcast launched in 2015 with the purpose of bringing to light the many stories of all the successful remote companies we were speaking with.

With the help of friend and graphic designer, Alfred Boland, and website guru, Good Karma Works, the Collaboration Superpowers website showcases the most recent interviews, workshops and resources for remote workers.

THE WORK TOGETHER ANYWHERE WORKSHOP AND ITS ACCOMPANYING HANDBOOK ARE COLLECTIONS OF THE TIPS AND TECHNIQUES GLEANED FROM THE INTERVIEWS.

Work Together Anywhere is the flagship workshop of Collaboration Superpowers. However, based on demand and changing needs, many others have been developed including: Hybrid Team Collaboration, Design & Deliver Great Online Events, the Remote Meetings Masterclass, and more.

When COVID-19 hit, companies worldwide recognized the need to become "remote first" to survive, and Collaboration Superpowers is here to meet the moment. Don't be fooled by images of pajamas and umbrella drinks. There's more to being a high performing virtual team than meets the eye. Working remotely is a new medium and we'd love to show you how.

Inspired by the Management 3.0 business model, trainers from all over the world can now license the workshop material to teach their clients and colleagues the fundamentals of productive virtual collaboration.

IF YOU WANT TO LEVEL-UP YOUR REMOTE SKILLS, JOIN ONE OF OUR FUN AND ENGAGING ONLINE WORKSHOPS BY A LICENSED FACILITATOR.

자료: Collaboration Superpowers(https://www.collaborationsuperpowers.com/) : 2022.12.1. 인출

9. 타임뱅크와 공익적 활동 관련 교환체계

다른 한편으로 공익활동에서 많이 제기되곤 하는 공익적 활동의 가치를 가시화하고, 이를 교환가치를 가지도록 하자는 주장과 관련된 온라인 체계의 모색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사회적 가치의 거래'와 관련되는 것이다. 유럽 일부에서는 사회적 가치 거래소가 부분적으로나마 인증과정과 결합되어 실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 5-23] 타임뱅크코리아의 타임뱅크 플랫폼

자료: 타임뱅크코리아(http://www.timebanks.or.kr/) : 2022.12.1. 인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모색은 타임뱅크의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타임뱅크코리아에서 자원봉사와 비경제적인 공익적 활동에 대해 이를 수요처와 연결하고 활동이 이루어진 시간을 계량적으로 인증하여 경제적 혹은 다른 공익적 가치와 교환하거나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타임뱅크 체계를 community weaver라는 솔루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비영리민간단체나 자원봉사와 같은 공익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커리어를 등록하고, 이용자와 수혜자가 상호 평가와 인증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림 5-24] 미국의 타임뱅크와 community weaver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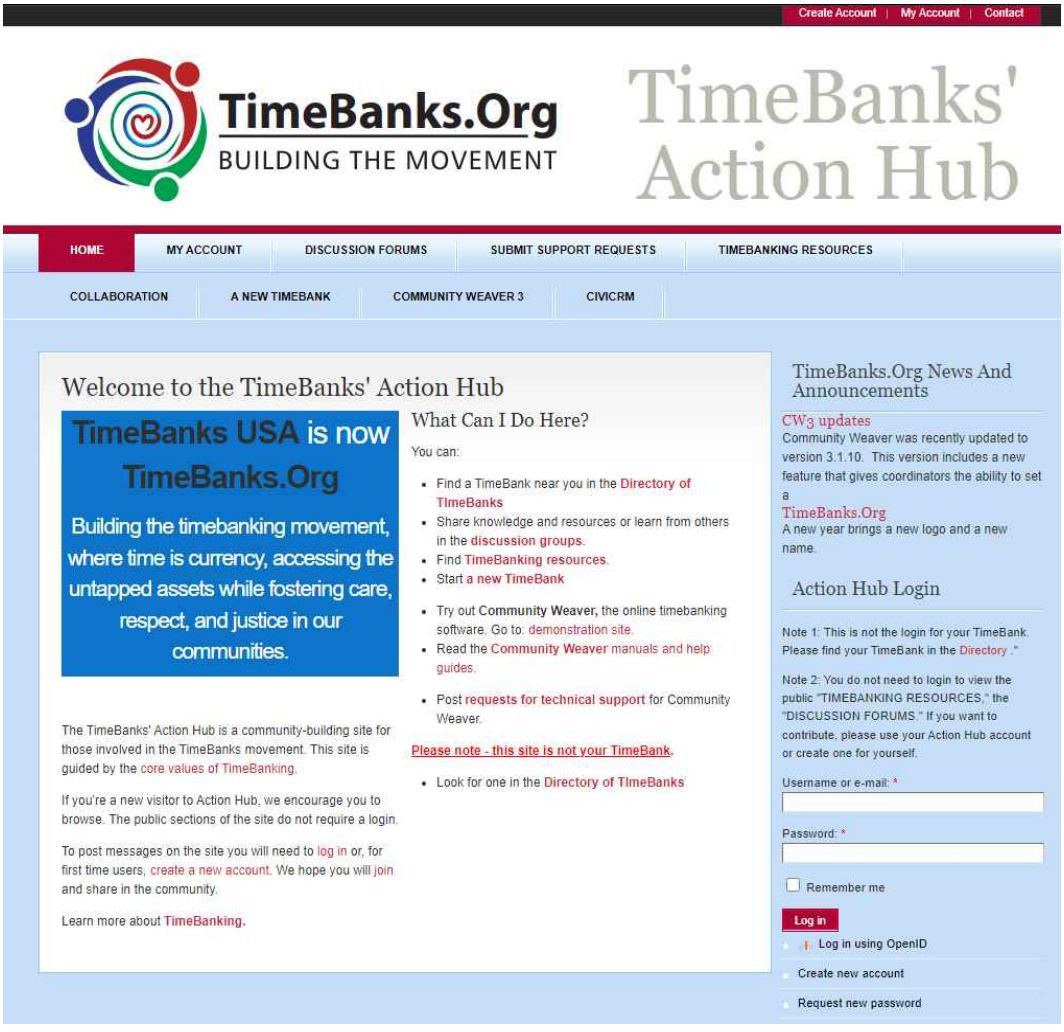

자료: timebank와 community weaver 3.0(https://actionhub.timebanks.org/home) : 2022.12.1. 인출

타임뱅크코리아에서 community weaver 3.0의 번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모색도 있다. 동시에 타임뱅크 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자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웹 플랫폼 체계를 개발하려는 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5] 타임뱅크 웹 플랫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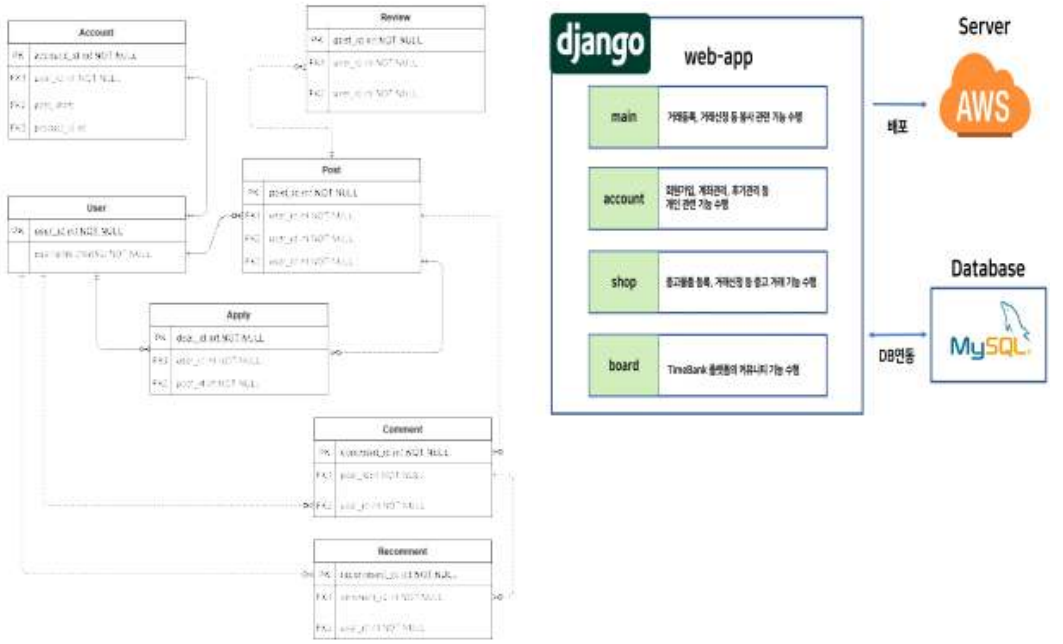

자료: 선다영 외(2021).

10. 아카이브와 기록관리체계

공익활동의 일반적인 성과와 홍보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아카이브적 속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포털이나 플랫폼 같은 용어와 함께 아카이브 혹은 아카이빙이라는 용어도 유행을 타며 많이 활용되고 있고 특히 온라인 체계와 관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아카이브는 통상 개인 및 단체가 활동하며 남기는 수많은 기록물 중 가치가 있는 것을 선별하여 보관하는 장소, 또는 그 기록물을 지칭한다. 아카이브는 사전적으로 중의적 용어인데, 영구적인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혹은 가치 있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기구, 가치 있는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아카이브로 간주되어 관리되는 기록물은 내용(content), 구조(structure), 맥락(context)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내용은 기록물에 담겨 있는 문자, 숫자, 이미지, 소리 등으로 표현된 정보를

의미한다(최영준 외, 2022). 구조는 기록물의 내용을 눈에 보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형태적 양식이다. 맥락은 기록물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 온 환경과 정황 및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경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아카이빙(archiving)의 공정은 가치 있는 기록물을 생산/수집/이관 등을 하는 획득 활동, 필요한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분류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관리활동, 기록물 원문 열람 및 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시, 출판, 웹서비스 등을 통해 이용자들과 공유하는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카이브에서 이들 활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5-26] 아카이브의 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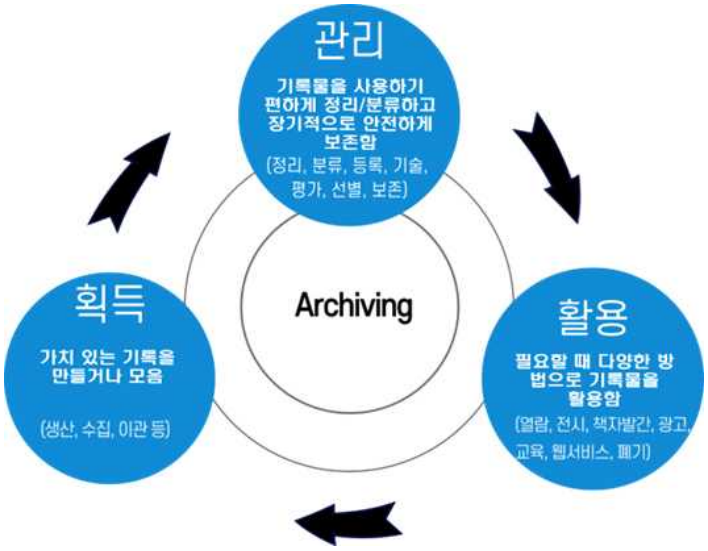

자료: 최영준 외(2022).

공익활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아카이브가 온라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 경험의 축적의 측면에 초점이 두어지면서 동시에 자원봉사자나 관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림 5-27]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아카이브

자료: 자원봉사 아카이브(https://archives.v1365.or.kr/) : 2022.12.1. 인출

자원봉사 영역 이외에도 기부와 관련되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아카이빙을 위해 아키비스트를 채용하는 등의 동향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공익 관련 조직들도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활동의 역사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

일단 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의 선별과 보관이라는 측면을 기본 속성으로 한다. 때문에 즉각적이고 동시적인 정보제공과 정보 제공자와 이용자 쌍방의 실시간 연계활용과는 성격적으로 초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11. 기타 : 공익활동 관련의 플랫폼 시도

그밖에도 다양한 공익활동 관련의 주체들은 최근에는 모두 다 포털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나름의 온라인 플랫폼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대개 그 활용의 양적 실적은 미미한 경우가 많지만, 공익적 성격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플랫폼은 공익활동 플랫폼과는 다소 구별되는 속성을 가진다. 예를 들어 최근 관심을 모았던 법률플랫폼과 같은 경우 비싼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자체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플랫폼이지 공익활동 플랫폼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림 5-28] 고려대학교 미국법센터의 공익활동 연계 내용

자료: 고려대학교 공익법센터(https://www.amlaw.center/) : 2022.12.1. 인출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대학에서 법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공익법센터 등과 관련하여 공익활동을 연계하는 플랫폼의 성격을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림 5-29]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의 공익활동 매칭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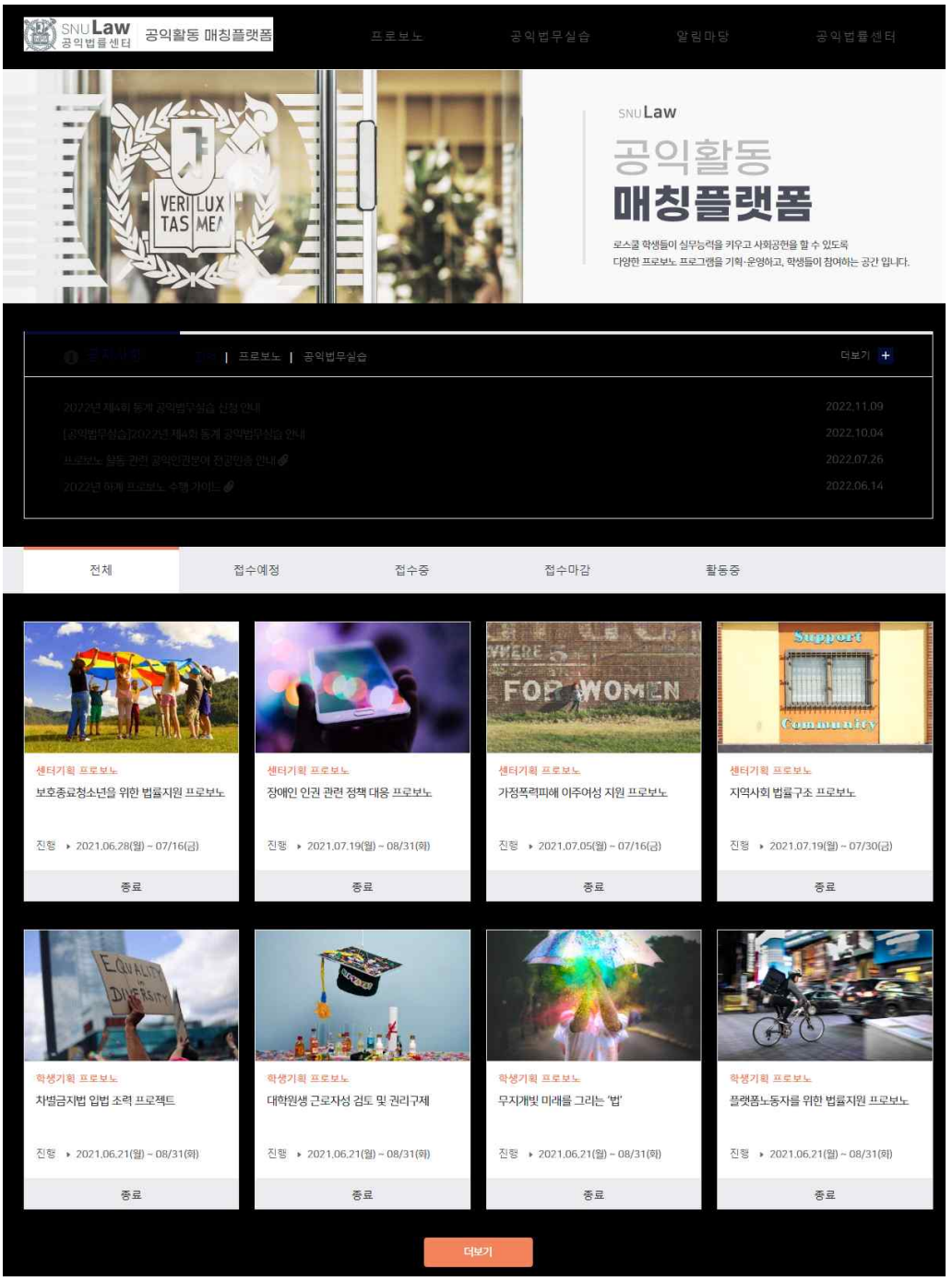

자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활동 매칭플랫폼(http://probono.snu.ac.kr/prj/main/main_form.acl) : 2022.12.1. 인출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현황 및 사례 시사점

공익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체계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일부는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시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별 조직이나 활동의 홍보나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이나 운영의 주체도 공공인 경우도 있고 영리와 비영리 등 다양한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공익활동 플랫폼이 나타내고 있는 가장 대표적 양상은 그 다양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간 중앙정부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공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수렴 등 논의를 핵심으로 하여, 민간 자체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정보나 공간(물리적 혹은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이나 NPO활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하는 민간위탁운영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이 보다 유연하고 현장친화적인 온라인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활동에 대한 검색과 정보 이외에 공식적인 인증체계를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나 자원봉사활동 현장에 대한 정보검색과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혹은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기술도구를 제공하는 온라인 체계들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현되고 있지는 않으나 공익활동에 대한 가치인증과 상호교환 등의 인정과 관련된 타임뱅크 등의 온라인 플랫폼도 모색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플랫폼이나 온라인 지원체계는 비교적 최근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런데 공익활동 플랫폼은 그 중에서도 역사나 경험이 짧은 편에 속하는 부분이다. 대개의 홈페이지나 플랫폼은 그 구현의 기간이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단위와 형태에서 급격하게 플랫폼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 구축의 확산은 특정한 체계가 있지 않아 중복과 누락의 혼란스러움이 있다. 물론 민간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이유는 없다. 다만 플랫폼의 측면에서는 비어 있거나 사용량, 정보와 기능이 제약된 다수 플랫폼의 존재는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공익법센터 등과 같이 특정 전문 분야의 주체가 독자적으로 공익활동 플랫폼을 형성하게 만드는 현상도 나타난다.

플랫폼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기능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경로로서 활동에 대한

검색과 관련되어 참여 정보의 제공 및 수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다. 정보제공과 이를 통한 참여의 촉진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홈페이지의 홍보와 같은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개의 플랫폼에서 공익활동 구체적인 참여분야나 현장에 대한 검색 결과는 포괄성이나 구체성의 부분에서 제한적이다. 즉,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현재의 플랫폼 검색을 통해 원하는 분야에서 활동할 기회를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활동에 대한 검색 기능은 본격적인 아카이브로 기능할 수 있는 수준은 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적 플랫폼들은 해당 조직이나 분야와 관련된 활동 취지나 성과에 대한 홍보의 정보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 역시 홈페이지와 같은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부 해외의 관련 플랫폼들을 살펴본 바 있다. 자원봉사 관련 플랫폼으로서 촛불재단, 공공과 협력하는 민간 파트너로서 NCVO, 공공자원봉사단의 한 휴형이라 할 수 있는 아메리콥스, 사회적 교환체계로서 타임뱅크를 비롯하여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PNGK, NGO-IDEA, Collaboration Superpower 등)이다.

공익활동 플랫폼 자체로서는 해외의 것들이 국내 플랫폼에 비해 우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타임뱅크의 community weaver를 제외한다면 플랫폼 자체의 구성이나 기능은 특별한 차이가 없다. 플랫폼의 차이가 활동의 차이를 만들고 있다기보다는 플랫폼 운영주체나 공익활동의 전반적 활성화 정도가 플랫폼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플랫폼 자체에서 사회적 인정의 교환체계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공익활동 플랫폼에 도입함으로써 활동과 생태계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할만한 특별한 아이템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다만,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검색과 접근성 강화, 활동가들의 소통 공간, 활동등록과 인증을 포함한 포털, 기술적 정보 지원체계, 교류와 교환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살펴보았던 공익활동 플랫폼들의 사례를 검토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공공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나타내는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다. 예를 들어, 시민통통이나 온국민소통의 경우 신뢰성이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 홈페이지에 비해 민간 시민사회와의 소통과정이나 의견수렴에서 개방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특성도 나타난다. 과거에 비해 공공이 민간활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며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체계의 '홈페이지 혹은 온라인 담당자'라는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운영관리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즉각적인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공익활동에서의 구체적 이슈에 대해 지원하거나 대응하는 콘텐츠의 생산이나 연결에서 제한적이다.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직접적인 논의나 조직화를 위한 활동은 이 공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개방형 소통체계 혹은 폐쇄형 소통체계의 창구를 만드는 노력이 경주되기도 하지만 활동가들은 대개 공공 플랫폼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공공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 정부의 성격에 따라 호의성과 지원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중앙정부 차원과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한 유사한 취지의 온라인 체계가 같은 공공의 영역 내에서도 개별 약진과 분절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하는 시민들이 중앙정부의 사안과 지자체의 사안을 구별해가며 온라인 체계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둘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공익활동의 주된 범주 중에서 자원봉사와 다른 영역 간의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분절성의 이슈이다. 사회공익활동과 자원봉사는 그 개념과 포괄성의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전통적인 형태로 해서 발전해 온 자원봉사활동은 마을공동체나 NPO활동에 비해 더 오랜 활동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약 30년 전인 1990년대부터 그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면서 활동시간에 대한 공식적 인증체계를 수립하였고, 현재의 자원봉사 관련 플랫폼은 이 연장선 내에 있다. 때문에 활동시간 인증이라는 나름대로의 표준화와 기술적인 과제가 구현되어 온라인 플랫폼 체계와 연동되고 있다. 1365, VMS, DOVOL 등이 이와 관련된다. 반면, 다른 공익활동 플랫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기술적인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식적 인증체계가 취약하다. 서울시의 일부 플랫폼에서 활동경력이나 교육경력의 일부를 인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활동시간 인증을 제공하는 자원봉사 플랫폼에 비해서 다른 공익활동 영역 플랫폼의 활동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은 매우 취약하다.

자원봉사활동에서는 활동 인증체계가 존재하고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서는 인증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원봉사 분야의 인증체계를 다른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응용하여 적용한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자원봉사 온라인 인증체계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현장과 온라인 체계에 매우 많은 인증기관과 인증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이 인증은 실제 활동시간이라는 명확한 인증단위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체계를 이용한 인증의 결과는 특히 진학이나 이력에 반영되는 사회적 인정과도 관련되고 있다. 이 때문에 넓은 의미의 공익활동 참여도 자원봉사활동의 형태로 인증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관련 플랫폼에서의 인증이 자원봉사 이외의 공익활동에 대해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고, 반대로 자원봉사

활동과 별도의 분리된 온라인 인증체계를 공익활동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도 (자원봉사관리 현장에서의 반발 등) 실무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에서는 인증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는 실효적인 인정 수단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인증의 대상이 개인 혹은 조직이라는 복합성도 나타내고 있다. 활동의 속성이 민간의 자발적이고 지역단위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한다는 것 이전에 인증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공익활동 그리고 공익활동 플랫폼 내에서 자원봉사와 다른 분야 간의 플랫폼 주된 활용방식과 인증에서의 격차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셋째, 공익활동의 온라인 플랫폼이 '소통'에서 가지고 있는 제한성의 부분이다. 흔히 소통형 플랫폼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타나곤 한다.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조회와 같은 기존 홈페이지나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본질적 활성화와 기여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활발한 소통과 쌍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최근 공공에서 구축한 플랫폼에서도 이 소통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실제 공익활동 참여자들은 활동 참여자들 간의 상시적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는 유연한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단 공익활동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특히 폐쇄형 대화채널로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체계가 가진 유연성이나 광범위한 활용성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익활동 플랫폼이 모든 논의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공익활동 관련 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공익활동 플랫폼 내에서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개방형 소통공간과 폐쇄형 소통공간의 적절한 편성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소통성은 그 쌍방향이 플랫폼 운영 주체 혹은 공공과 참여자 간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간 소통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감안해야 한다.

넷째, 현재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있지 못한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 활동의 기술적 진전을 위한 정보와 같은 내용들이 개별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도되고 있다. 공익활동 활성화를 플랫폼이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플랫폼에서 제공되거나 혹은 연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포괄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공익활동 플랫폼에서는 아직 구현되거나 다루고 있지 못하다. 타임뱅크와 같은 방식의 상호적 활동 인증과 사회적 교환체계도 별도의 플랫폼에서 모색되고 있는데 공익활동 플랫폼 전반과 연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표적인 공익활동 지원 플랫폼의 구성 필요성이다. 여기서 대표적 플랫폼의 의미는 첫째로 공익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양적 범위의 포괄성을 지녀야 하고, 두 번째로 다른 관련 플랫폼과 1/N의 형태로 경합하는 것이 아닌 우선성을 인정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표성 획득에서는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활동시간 인증체계를 탑재하고 있는 자원봉사 플랫폼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 통계에서 통계청의 조사결과와 플랫폼에서의 활동시간 누적 통계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다른 공익활동의 경우에도 플랫폼의 활용정도는 전체 활동가나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욕구에 비해 매우 낮다. 대표적 플랫폼의 부재는 결국 공익활동가나 잠재적 활동 참여자들에게 관련 검색과 정보 획득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표적 플랫폼의 구성이 반드시 '신규' 플랫폼의 형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플랫폼으로의 강제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과 동일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앞서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던 내용과 특징적 사항들에 대한 정보나 연계성이 '모두' 다루어지는 공신력을 갖춘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06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 일반 현황 분석

제1절 조사개요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그리고 다양성, 접근성, 소통성을 갖춘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공익활동 참여율을 높이면서 잠재적 활동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회적 인정과 플랫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의 목적은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는데 있어서 사회적 인정방안 및 공익활동 플랫폼의 구축방향을 제시하려면 공익활동 경험자 혹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욕구와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즉 데이터에 근거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1. 조사 설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정의)제2호 '공익활동'이란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제3호 '시민사회'란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와 공익활동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본 조사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비영리활동단체들이 있으나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시민활동단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단체를 중심으로,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일본 NPO 개념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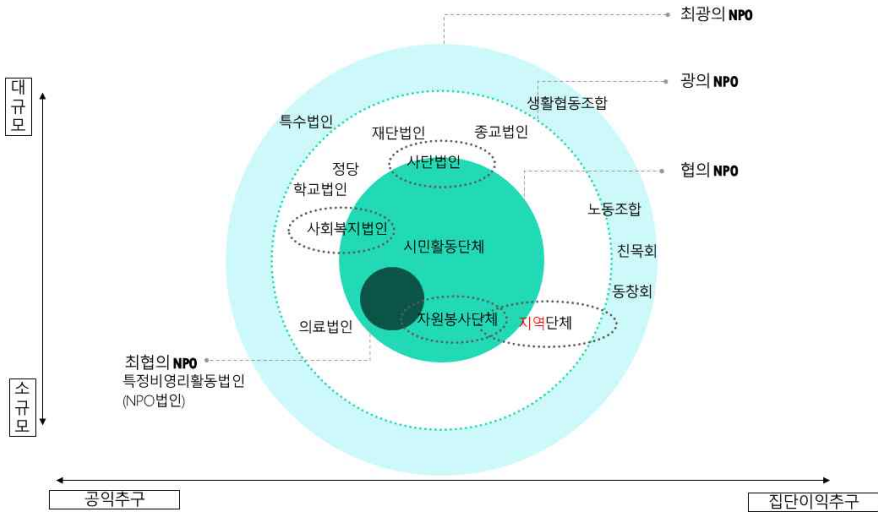

자료: 박상필(2006) p.147 재인용

본 조사를 위한 모집단은 공익활동을 하는 국민이 되지만, 현재 국내 통계로는 시민단체 현황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수 혹은 공익활동가 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 문제로 조사 모집단 파악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통계적 방법에 의한 표본설계는 불가능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조사는 현재 공익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경험이 있는 활동가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자들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점, 최근의 세계적인 팬데믹 영향으로 대면 면접이 어려운 점, 시민활동의 특성상 활동영역이 사무실보다는 사무실 밖 활동이 많은 점, 조사대상자 접촉이 용이한 방법 등을 고려하여 웹 링크를 통한 자기기입식의 온라인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 모집과 조사 홍보를 위해 공익활동과 활동가의 접점에 있는 공익활동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시민'과 지역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자원봉사활동 관련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4개 조직의 행정적 협조를 통해 지역단위 네트워크에 소속된 공익활동가들에게 조사 참여를 독려하였다.

조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제2022-113호)을 완료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11월 14일~11월 30일(약 17일)동안 진행하였다. 조사완료는 4,000명을 목표로 하였으나 99.3%인 3,970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상치 및 중복을 제거한 후 최종 3,891명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2. 조사 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 조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공익활동 참여와 지속요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조사표 설계는 〈표 6-1〉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내부 연구진 회의 및 공익활동 관련 산·학·연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사항목을 설계하였고, 조사항목 결정 이후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활동가 5인을 섭외하여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사전 설문조사에서 지적되었던, 예컨대 조사문항에 사용된 용어 정리 등과 같은 사전조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조사표가 확정되었다.

〈표 6-1〉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조사표 개발 과정

구분	일자	회의참석자	주요 내용
연구진 회의	2022. 9.7.	연구진	- 표본설정 및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 · 공익활동가의 전체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활동 분야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검토 필요 · 조사 수행시 활동 분야별 활동가의 조사 독려 등 조사 협조를 위한 협력 업체의 도움이 필요함 - 주요 조사문항 구성 논의 · 본 연구내용(사회적 인정, 플랫폼 구축)에 대한 현황 및 인식관련 문항으로 구성
연구진 회의	2022. 9.20.	연구진	- 주요 조사문항 내용 검토 · 활동분야, 활동가의 역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인식 · 현 포털의 도움정도, 플랫폼이 갖춰야할 기능, 플랫폼에 대한 인식
연구진 회의	2022. 9.30.	연구진	- 주요 조사문항 내용 검토 · 사회적 인정별 필요 정도, 불필요 이유 · 현 주요 공익활동관련 포털의 이용, 정보의 충분성, 정보의 신뢰성 · 일반적특성(성, 연령, 거주지역, 소득 등) · 공익활동 관련 특성(시작연령, 공익활동 관련 참여 빈도 및 경제적 보상(상근활동가의 급여 및 참여수당 등)
자문 회의	2022. 10.21.	자문위원 5인 (공익활동 관련 연구자,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등 관련 분야 활동가)	- 주요 조사문항 내용 자문 · 설문지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설문 응답자가 설문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설명 추가 작성 · 활동영역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영역을 20개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응답자의 주 활동 분야에 대한 문항 검토

구분	일자	회의참석자	주요 내용
			·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응답자가 혼동되지 않도록 보기 문항 수정 · 공익활동 참여 형태 분류를 급여 수령 유무와 정기/비정기에 대한 분류로 수정
연구진 회의	2022. 10.28.	연구진	- 활동 분야별 조사 대상의 목표 모집단(4,000명) 설정 - 조사 협조를 위한 협력 업체(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선정 검토 - 조사 실시 전 연구윤리심위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사 준비 - 온라인 조사표개발 및 조사 수행 업체 선정 논의 - 최종 조사문항 내용 검토

조사 내용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눠 공익활동의 참여와 가치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하였다(〈표 6-2〉 참조).

〈표 6-2〉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조사 항목

구분	일자	주요 내용
공익활동의 참여와 가치관	- 단체 소속여부	
	- 공익활동 영역	
	- 공익활동 분야	
	- 공익활동 참여 형태	
	- 공익활동 가치	
	공익활동 인식	- 취약자 도움 또는 사회적 가치 도모 위해 활동 - 지역사회 현안 문제 해결 위해 활동 -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기술 가짐 - 활동가로서 전문성 보유함 - 공익활동 직무교육 받을 기회 있음 - 내 활동의 공익적 가치 대해 충분히 답변 가능 -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임 - 내 활동이 타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 미침 - 현재 내 활동에 보람 느낌
	- 공익활동 통한 사회적 성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필요 여부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필요 이유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방안 필요 정도 - 정부의 적극적 인정 -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 공익활동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구분	일자	주요 내용
		- 공익활동 단체에 조세감면 제도 확대 - 공익활동 단체에 산재·고용보험 지원 - 사업수행인력 인건비 인정 -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에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 - 공익활동 참여 시간/노력 대한 공식적 인정
		- 공익활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
	-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불필요 사유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공익활동 플랫폼 이용경험, 이용빈도, 도움 된 정도	- 1365자원봉사포털 -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 DOVOL - 활동 기관 홈페이지(포털) - 활동 기관 공식 SNS - 활동 기관 참여자 SNS -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포털 - 공익활동 참여자 SNS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 공익활동 정보수집처	
	제공 정보 사용 여부, 충분 정도	-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 신청 기능 -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 공익활동 성과 홍보·알림 기능 -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 지역 공익활동단체 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 공익활동 플랫폼 품질 및 신뢰성 만족도	
	공익활동 플랫폼 기능 중요도	- 정부 공공정책 대한 정보 제공 - 정부 공공정책 대한 의견 개진 - 지역 정책 대한 정보 제공 - 지역 정책 대한 의견 개진 -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 정보 제공 - 공익활동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 공익활동 아이템 제안 창구 -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 공익활동 성과 홍보 - 공익활동 참여자 간 소통 경로

구분	일자	주요 내용
		-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 공익활동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 공익활동 참여자 요구사항 취합 - 정보탐색/질의응답 피드백 체계
	공익활동 플랫폼 동의	-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 -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우선 - 부적절한 내용 차단하는 관리 활동 필요 - 참여자들 공익활동 이력 취합 체계 갖춰야 함 - 플랫폼의 공익활동 인정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함 -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별도 생성해야 함 - 정부/지자체에 요구 사항은 플랫폼에서 취합되어야 함 - 새로운 플랫폼 개설 필요 - 새로운 플랫폼 개설 시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될 것 - 플랫폼은 정부 관여 없이 운영되어야 함
응답자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거주지 유형,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 수입
	공익활동 특성	- 공익활동 시작 연령대, 공익활동 지속 기간대, 월평균 공익활동 참여 수입, 공익활동 참여 빈도 및 평균 시간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적인 인식이나 만족도를 묻는 설문 문항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4점 Likert 척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2개의 부정적 진술과 2개의 긍정적 진술을 서열적으로 배치하여 얻은 응답의 결과들이다. 전체적으로 응답은 긍정적 형태의 동의나 만족에 치우쳐 있다. 긍정적 응답의 편향과 같은 후광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점수화 수치에 직접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특히 문항 간에 나타난 응답 결과의 상대적 차이와 같은 비교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관적 인식에 대한 서열적 Likert 척도 문항의 조사 결과는 문항의 특성에 비추어 100점 만점으로의 환산 혹은 긍정적 응답의 비율 등 각각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제2절 주요 내용 분석

1. 응답자 일반 특성

본 조사에 응답한 3,891명의 성별을 보면, 남자는 34.8%, 여자 65.2%이며, 응답자 중에서 공익활동 단체에 소속된 비율은 약 5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마을공동체영역이 17.7%, 비영리민간단체영역 34.6%, 자원봉사영역 47.7%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3〉 참조).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전체의 25.3%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24.8%, 50대 20.7%, 60대 이상 7.9% 등의 순으로 분포하였다. 특히 14세~19세 응답자도 1.8%를 차지하였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보면 대도시(특별/광역시) 거주자 66.7%, 중소도시 거주자 25.3%, 읍면 거주자 8.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수준은 대학 재학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이 전체의 87.8%로 가장 많았다(〈표 6-3〉 참조).

〈표 6-3〉 응답자의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자	여자	합계
단체 소속여부	단체 소속	2,210(56.8)	30.0	70.0	100.0
	단체 무소속	1,681(43.2)	41.1	58.9	100.0
공익활동 영역	마을공동체	689(17.7)	27.9	72.1	100.0
	비영리민간단체	1,348(34.6)	32.6	67.4	100.0
	자원봉사	1,854(47.7)	38.9	61.1	100.0
연령	14세~19세	71(1.8)	22.5	77.5	100.0
	20대	761(19.6)	38.9	61.1	100.0
	30대	983(25.3)	42.0	58.0	100.0
	40대	964(24.8)	29.1	70.9	100.0
	50대	805(20.7)	26.3	73.7	100.0
	60대 이상	307(7.9)	44.3	55.7	100.0
거주지	대도시(특별/광역시)	2,595(66.7)	34.1	65.9	100.0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자	여자	합계
	중소도시	983(25.3)	35.8	64.2	100.0
	읍면	313(8.0)	37.4	62.6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1(0.3)	63.6	36.4	100.0
	중학교 졸업 이하	45(1.2)	42.2	57.8	10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435(11.0)	35.6	64.4	100.0
	대학 재학 이상	3,400(87.8)	34.5	65.5	100.0
전체		3,891(100.0)	34.8	65.2	100.0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시작 연령을 살펴보면, 20대에 시작한 응답자가 3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에 시작한 응답자가 27.2%를 차지하였다(〈표 6-4〉 참조).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을 시작한 연령을 성별로 분석해 본 결과, 성별에 따라 공익활동 시작연령에 유의한 차이(χ^2=62.734, p〈.02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익활동을 시작한 평균 연령은 남자의 경우 30.99세, 여자 31.93세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이른 나이에 공익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5.931, p〈.015).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받는 급여나 참여수당 등의 수입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6%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조금의 수입이라도 있는 응답자들 중에는 수입이 200~299만원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13.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의 수입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17.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4〉 참조). 이것은 공익활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따른 수입은 없거나 있더라도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참여 빈도를 보면, 최소 주 1회 이상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의 50.2%를 차지하였다. 특히 여자(51.9%)가 남자(47.0%)보다 주 1회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공익활동 참여 빈도를 살펴봤을 때 주 2~3회 참여한다는 비율이 22.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월 1회 19.1%, 주 1회 참여 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 응답자의 공익활동 시작연령, 공익활동 기간, 수입 및 참여 빈도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별(%)		
			남자	여자	합계
공익 활동 시작 연령	10대	467	11.4	12.3	12.0
	20대	1,383	41.5	32.4	35.5
	30대	1,060	25.4	28.2	27.2
	40대	650	12.3	19.1	16.7
	50대	239	5.8	6.3	6.1
	60대 이상	92	3.6	1.7	2.4
공익 활동 기간	1년 미만	625	16.8	15.6	16.1
	1년 이상~3년 미만	936	24.9	23.6	24.1
	3년 이상~10년 미만	1,341	34.2	34.6	34.5
	10년 이상~20년 미만	711	16.2	19.4	18.3
	20년 이상~30년 미만	213	5.6	5.4	5.5
	30년 이상	65	2.3	1.3	1.7
공익 활동 수입	수입 없음	2,165	59.5	53.6	55.6
	10만원 미만	303	8.6	7.3	7.8
	10~29만원	156	3.7	4.2	4.0
	30~49만원	111	1.8	3.4	2.9
	50~99만원	125	3.0	3.4	3.2
	100~199만원	299	5.2	9.0	7.7
	200~299만원	540	12.0	14.9	13.9
	300~399만원	151	4.3	3.7	3.9
	400만원 이상	41	1.8	0.6	1.1
공익 활동 참여 빈도	매일(주중)	397	9.0	10.8	10.2
	주 2~3회	864	18.9	24.0	22.2
	주 1회	694	19.1	17.1	17.8
	월 2~3회	744	0.7	18.3	19.1
	월 1회	678	18.3	16.9	17.4
	월 1회 미만	514	14.0	12.8	13.2
전체		3,891	100.0	100.0	100.0

응답자들의 활동분야를 보면, 봉사·기부 분야의 공익활동이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활동이 15.7%,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과 관련된 활동 12.2%, 기후·환경·생태 관련 활동을 하는 응답자 8.4% 순으로 많았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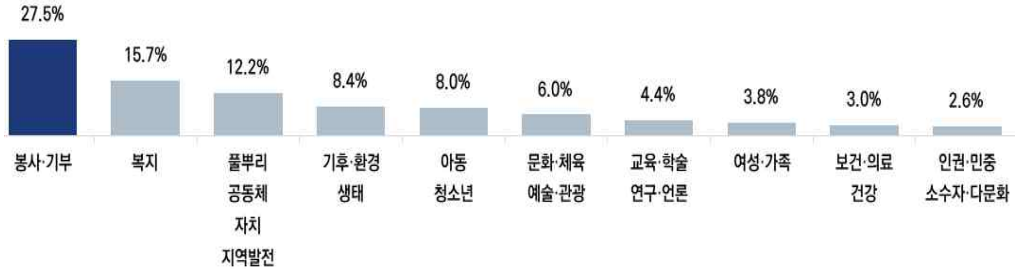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활동참여 형태는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응답자가 4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가 28.0%,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정기적인 활동참여자 22.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표 6-5〉의 공익활동 참여형태 중 기타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개인 활동가 혹은 활동할 때만 급여를 받는 활동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5〉 응답자의 공익활동 기간, 활동분야 및 참여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성별(비율)		
			남자	여자	합계
공익 활동 기간	1년 미만	625	16.8	15.6	16.1
	1년 이상~3년 미만	936	24.9	23.6	24.1
	3년 이상~10년 미만	1,341	34.2	34.6	34.5
	10년 이상~20년 미만	711	16.2	19.4	18.3
	20년 이상~30년 미만	213	5.6	5.4	5.5
	30년 이상	65	2.3	1.3	1.7
공익 활동 분야	복지	609	15.9	15.5	15.7
	문화·체육·예술·관광	233	6.2	5.9	6.0
	기후·환경·생태	326	6.6	9.3	8.4
	교육·학술·연구·언론	173	4.8	4.3	4.4
	봉사·기부	1,070	32.1	25.0	27.5
	아동·청소년	312	5.9	9.1	8.0
	주택·교통·안전	90	3.9	1.5	2.3
	국민운동	14	0.4	0.3	0.4
	여성·가족	146	0.4	5.6	3.8
	보훈·기념·추모	18	0.7	0.3	0.5
	인권·민중·소수자·다문화	101	3.4	2.2	2.6

구분		사례 수	성별(비율)		
			남자	여자	합계
	평화·통일·민족	35	1.0	0.9	0.9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	473	10.9	12.8	12.2
	경제·소비자·과학·기술·IT	37	1.0	0.9	1.0
	보건·의료·건강	115	2.8	3.0	3.0
	국제협력·국제연대	19	0.1	0.7	0.5
	권력감시·사회정의	39	1.1	0.9	1.0
	농수축산업	22	0.7	0.5	0.6
	청년	59	2.0	1.3	1.5
공익 활동 참여 형태	급여를 받지 않는 정기적 활동참여자	870	18.3	24.5	22.4
	급여를 받지 않는 비정기적 활동참여자	1,825	52.7	43.8	46.9
	유급의 상근활동가	1,088	27.0	28.5	28.0
	기타	108	2.1	3.2	2.8
전체		3,891	100.0	100.0	100.0

2. 공익활동의 가치관

응답자들에게 공익활동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그 결과 응답자 대다수인 97.9%는 공익활동이 삶에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익활동이 삶에서 매우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6.3%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공익활동이 삶의 가치에 미치는 정도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익활동이 삶에 가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6-6〉 참조).

〈표 6-6〉 귀하의 삶에서 느끼는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연령별 현황

(단위: 명, %)

연령	귀하의 삶에서 느끼는 공익활동의 가치									
	전혀 가치 없다		별로 가치 없다		약간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		합계	
10대	-		1	(1.4)	36	(50.7)	34	(47.9)	71	(100.0)
20대	4	(0.5)	36	(4.7)	355	(46.6)	366	(48.1)	761	(100.0)
30대	1	(0.1)	22	(2.2)	378	(38.5)	582	(59.2)	983	(100.0)
40대	1	(0.1)	7	(0.7)	248	(25.7)	708	(73.4)	964	(100.0)
50대	1	(0.1)	7	(0.9)	146	(18.1)	651	(80.9)	805	(100.0)
60대 이상	1	(0.3)	3	(1.0)	66	(21.5)	237	(77.2)	307	(100.0)
전체	8	(0.2)	76	(2.0)	1,229	(31.6)	2,578	(66.3)	3,891	(100.0)

〈표 6-7〉은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로써,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4%(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였고,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비율은 84.4%,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84.2%,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77.5%,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비율은 71.7%,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는 비율은 86.7%,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75.5%,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6.1%,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는 비율은 95.0%로 파악되었다.

〈표 6-7〉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나는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	0.4	4.2	41.0	54.4	100.0
나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1.7	14.0	43.0	41.4	100.0
나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1.6	14.2	55.3	28.9	100.0
나는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9	19.6	49.0	28.5	100.0
나는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5.3	23.0	43.2	28.5	100.0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1.3	12.0	49.3	37.4	100.0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4.0	20.5	42.1	33.4	100.0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0.5	3.4	43.1	53.0	100.0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0.4	4.6	38.9	56.1	100.0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활동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활동영역별로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에 유의(χ^2=170.087, p=0.000)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에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응답자는 타 활동영역의 응답자보다 지역사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8〉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이유(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

활동영역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마을공동체	1	(0.1)	38	(5.5)	278	(40.3)	372	(54.0)	689	(100.0)
비영리민간단체	20	(1.5)	164	(12.2)	524	(38.9)	640	(47.5)	1,348	(100.0)
자원봉사	45	(2.4)	341	(18.4)	871	(47.0)	597	(32.2)	1,854	(100.0)
전체	66	(1.7)	543	(14.0)	1,673	(43.0)	1,609	(41.4)	3,891	(100.0)

〈표 6-9〉는 응답자들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본인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로, 그렇다(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한 비율이 10대는 77.5%, 20대 78.3%, 30대 82.4%, 40대 85.2%, 50대 89.7%, 60대 이상 88.3%로 조사되었다. 즉, 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χ^2=107.823, p=0.000).

〈표 6-9〉 연령대별 공익활동 시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

연령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10대	3	(4.2)	13	(18.3)	39	(54.9)	16	(22.5)	71	(100.0)
20대	19	(2.5)	146	(19.2)	447	(58.7)	149	(19.6)	761	(100.0)
30대	21	(2.1)	152	(15.5)	558	(56.8)	252	(25.6)	983	(100.0)
40대	9	(0.9)	134	(13.9)	531	(55.1)	290	(30.1)	964	(100.0)
50대	8	(1.0)	75	(9.3)	411	(51.1)	311	(38.6)	805	(100.0)
60대 이상	4	(1.3)	32	(10.4)	164	(53.4)	107	(34.9)	307	(100.0)
전체	64	(1.6)	551	(14.2)	2,150	(55.3)	1,125	(28.9)	3,891	(100.0)

응답자들에게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에 관해 조사해봤더니 기회가 약간 이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71.7%이며, 이 중에서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78.3%)에게 직무교육의 기회는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활동조직에서 급여는 받지 않지만 정기적(76.2%)활동 참여자는 비정기적(65.7%)활동 참여자보다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χ^2=88.456, p〈0.040).

〈표 6-10〉 활동참여 형태별 공익활동 시 '공익활동에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

활동참여 형태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급여 받지 않는 정기적 활동참여자	44	(5.1)	163	(18.7)	380	(43.7)	283	(32.5)	870	(100.0)
급여 받지 않는 비정기적 활동참여자	122	(6.7)	504	(27.6)	778	(42.6)	421	(23.1)	1,825	(100.0)
급여 받는 상근활동가	34	(3.1)	202	(18.6)	488	(44.9)	364	(33.5)	1,088	(100.0)
기타	6	(5.6)	27	(25.0)	36	(33.3)	39	(36.1)	108	(100.0)
전체	206	(5.3)	896	(23.0)	1,682	(43.2)	1,107	(28.5)	3,891	(100.0)

공익활동을 통해 경험한 주된 사회성과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어본 결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위로는 '시민사회 역량강화(활동력 강화, 지속성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9%를 차지하였다(〈표 6-11〉 참조). 이를 응답자의 공익활동 영역별로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혹은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된 활동영역의 응답자들은 '시민사회 역량강화(활동력 강화, 지속성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을 주요 성과로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자원봉사영역의 응답자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성과로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χ^2=325.505, p=0.000).

〈표 6-11〉 공익활동 통해 경험한 주된 사회성과에 대한 공익활동 영역별 분포

(단위: 명, %)

성과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합계	
없었다	11	(1.6)	15	(1.1)	90	(4.9)	116	(3.0)
공익적 가치 확산 (국민들의 인식·태도 변화, 제도 변화 등)	152	(22.1)	406	(30.1)	376	(20.3)	934	(24.0)
시민사회 역량강화	322	(46.7)	425	(31.5)	416	(22.4)	1163	(29.9)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146	(21.2)	278	(20.6)	749	(40.4)	1173	(30.1)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58	(8.4)	224	(16.6)	223	(12.0)	505	(13.0)
전체	689	(100.0)	1,348	(100.0)	1,854	(100.0)	3,891	(100.0)

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조사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지에 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95.4%인 3,711명은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필요하지 않다고 한 비율은 겨우 4.5%에 불과하였다([그림 6-3] 참조).

[그림 6-3]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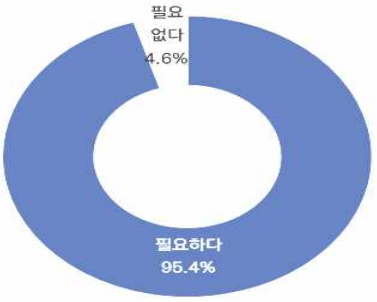

특히 응답자들이 단체에 소속해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χ^2=89.017, p=0.000). 즉, 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을 더 원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봤더니 10대를 제외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필요하다는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χ^2=119.472, p=0.000).

〈표 6-12〉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필요여부

(단위: 명, %)

구분		사회적 인정 필요여부		
		전체	필요하다	필요없다
공익활동유형	단체 소속	2,210(56.8)	98.1	1.9
	단체 무소속	1,681(43.2)	91.7	8.3
공익활동 참여영역	마을공동체	689(17.7)	98.7	1.3
	비영리민간단체	1,348(34.6)	96.4	3.6
	자원봉사	1,854(47.7)	93.4	6.6
연령	10대	71(1.9)	100.0	0.0
	20대	761(19.6)	90.5	9.5
	30대	983(25.3)	92.0	8.0
	40대	964(24.8)	98.2	1.8
	50대	805(20.7)	98.8	1.2
	60대 이상	307(7.9)	99.3	0.7
합계		3,891(100.0)	3,711(95.4)	180(4.6)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3,711명 중 65.2%는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서'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20.8%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8.5%는 '공익활동가로 성장을 위해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그림 6-4] 참조).

[그림 6-4]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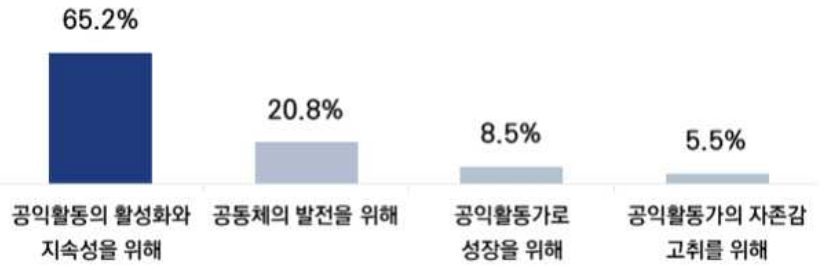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 10가지를 제시하고 각 방안에 대하여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10가지 인정 방안 모두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포함)는 비율이 85.0%를 상회하였다(〈표 6-13〉 참조). 특히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인정 방안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며 94.0%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한편,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인정 방안은 85.8%를 차지한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하는 방안이었다.

〈표 6-13〉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 정도

(단위: %)

구분	필요 정도					
	잘 모르겠다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정(공익활동의 날 제정, 공익활동가 포상 등)	1.5	1.5	6.7	39.8	50.4	100.0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공익광고 활성화 등)	0.8	1.0	4.2	38.0	56.0	100.0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역사회공헌 인정제 등)	1.3	1.4	6.7	38.1	52.5	100.0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확대	1.4	2.2	10.3	37.8	48.4	100.0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지원	1.0	1.0	6.0	34.3	57.7	100.0

구분	필요 정도					
	잘 모르겠다	전혀 필요없다	별로 필요없다	약간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	1.1	1.6	5.8	35.3	56.1	100.0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표준직업 인정)	0.9	0.8	5.4	33.0	59.9	100.0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에 대한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1.1	1.8	9.3	39.3	48.5	100.0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	1.3	2.4	10.5	37.0	48.8	100.0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0.6	1.0	4.6	33.8	60.0	100.0

공익활동에 따른 보상이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응답한 인정방식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한다'로 응답자의 34.9%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한다' 31.8%, '공익활동은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로 충분하다' 18.3%,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는 비경제적 보상을 지원한다' 14.0%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그림6-6] 참조).

[그림 6-5]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해 항목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그림 6-6] 공익활동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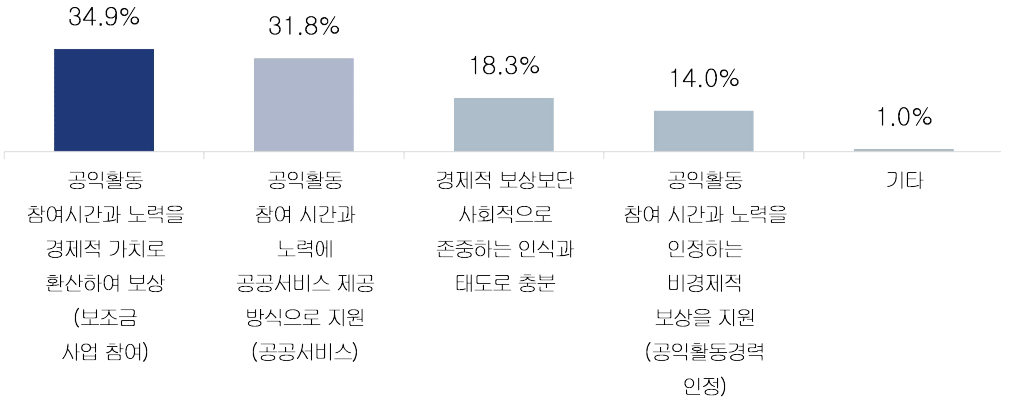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한 비율은 [그림 6-3]에서 보았듯이 전체 응답자의 4.5%인 180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왜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조사해보았다. 사회적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33.9%)는 점을 꼽았다([그림 6-7] 참조). 그 다음은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30.0%),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19.4%) 등의 순위로 파악되었다.

[그림 6-7]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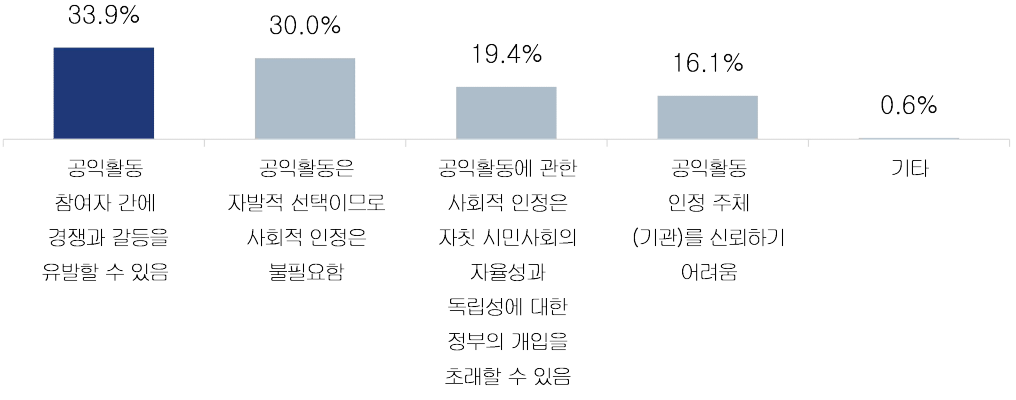

4.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이나 플랫폼의 이용 경험, 공익활동과 관련된 정보 수집처에 대한 내용, 기존 플랫폼의 콘텐츠에 대한 품질 신뢰성, 공익 플랫폼이 가져야 할 기능, 공익 플랫폼 구축에서 쟁점 사항과 관련된 견해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존 플랫폼의 이용 경험에 대해 확인하였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1365, VMS, DOVOL 등의 온라인 포털이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다. 또 공익활동 참여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익활동 단체나 혹은 중간지원조직의 홈페이지를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가 아닌 SNS의 활용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여기서는 이와 같은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 경험의 여부, 이용하는 빈도, 그리고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였을 때 도움이 된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림 6-8]은 공익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이용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써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 디지털 채널은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66.6%)이며, 1365 자원봉사포털도 응답자의 65.8%가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공식 SNS' 이용 경험도 64.5%로 조사되었다. 또한 활동하고 있는 '기관 참여자들간 SNS'도 62.5%의 이용 경험이 있었다.

[그림 6-8] 공익활동 관련 사이트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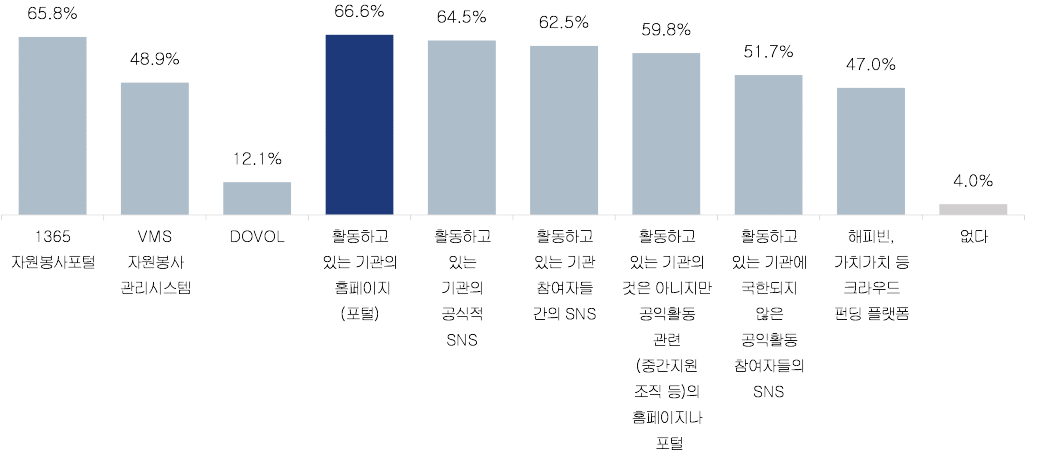

응답자들의 활동영역별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용 경험을 분석해 본 결과,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온라인 채널 중에서 '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마을공동체 영역 응답자들의 82.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 영역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온라인 채널은 '활동기관 공식 SNS'로 이용 경험률은 84.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은 '1365자원봉사포털' 이용(70.9%) 경험이 가장 많았다. 〈표 6-14〉에 의하면 활동영역별로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 종류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14〉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483	(71.1)	844	(64.2)	1233	(70.9)	2,560	(68.6)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290	(42.7)	596	(45.3)	1016	(58.4)	1,902	(50.9)
DOVOL	83	(12.2)	140	(10.6)	246	(14.1)	469	(12.6)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516	(76.0)	1102	(83.8)	973	(55.9)	2,591	(69.4)
활동기관 공식 SNS	522	(76.9)	1109	(84.3)	879	(50.5)	2,510	(67.2)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557	(82.0)	1070	(81.4)	806	(46.3)	2,433	(65.2)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536	(78.9)	1052	(80.0)	737	(42.4)	2,325	(62.3)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485	(71.4)	892	(67.8)	634	(36.4)	2,011	(53.9)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313	(46.1)	803	(61.1)	714	(41.0)	1,830	(49.0)
전체	679	(100.0)	1,315	(100.0)	1,734	(100.0)	3,734	(100.0)

주 1: 다중 응답
2: 제시된 온라인채널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157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연령계층별로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플랫폼 이용현황을 보면, 10대 응답자들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포털인 1365자원봉사포털이나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이용이 다른 연령계층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계층별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채널은 20대 1365자원봉사포털, 30대 활동기관 공식 SNS, 40대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50대와 60대 이상은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 SNS 이용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15〉 참조).

〈표 6-1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63 (96.9)	492 (67.0)	527 (57.3)	667 (71.1)	603 (76.7)	208 (71.2)	2,560 (68.6)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48 (73.8)	455 (62.0)	413 (44.9)	436 (46.5)	407 (51.8)	143 (49.0)	1,902 (50.9)
DOVOL	29 (44.6)	130 (17.7)	102 (11.1)	115 (12.3)	72 (9.2)	21 (7.2)	469 (12.6)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28 (43.1)	422 (57.5)	632 (68.8)	695 (74.1)	604 (76.8)	210 (71.9)	2,591 (69.4)
활동기관 공식 SNS	23 (35.4)	362 (49.3)	652 (70.9)	682 (72.7)	586 (74.6)	205 (70.2)	2,510 (67.2)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20 (30.8)	351 (47.8)	550 (59.8)	671 (71.5)	625 (79.5)	216 (74.0)	2,433 (65.2)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21 (32.3)	324 (44.1)	559 (60.8)	677 (72.2)	559 (71.1)	185 (63.4)	2,325 (62.3)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19 (29.2)	269 (36.6)	458 (49.8)	601 (64.1)	502 (63.9)	162 (55.5)	2,011 (53.9)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7 (26.2)	388 (52.9)	524 (57.0)	522 (55.7)	309 (39.3)	70 (24.0)	1,830 (49.0)
전체	679 (100.0)	734 (100.0)	919 (100.0)	938 (100.0)	786 (100.0)	292 (100.0)	3,734 (100.0)

주 1: 다중 응답
2: 제시된 온라인채널을 한 번도 이용해 보지 않은 157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표 6-16〉은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채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이며, 온라인 채널별로 이용 빈도를 보면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이용을 주1회이상(거의 매일 포함)한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위로 이용 빈도가 높은 채널은 '활동기관 공식 SNS'이며 54.2%가 주 1회 이상(거의 매일 포함)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각 온라인 채널별로 연 1회 미만의 저조한 이용 빈도를 보인 것은 DOVOL로, 이것은 이용자층이 청소년에 제한되어 있어서 가장 낮은 이용 빈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나, 자원봉사 관련 포털인 1365자원봉사포털과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도 다른 온라인 채널 이용 빈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용 빈도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플랫폼의 활용 경험에서는 자원봉사 관련 포털의 경험 정도가 높았던 결과가 나타났던 바 있다. 그런데 이용 빈도는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조사대상자들은 자원봉사포털의 이용 빈도가 현저히 낮고, 특히 SNS의 이용 빈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아무래도 자원봉사포털의 이용은 활동시간 인증과 관련된 속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활동과 관련된 SNS는 활동과정 상에서의 소통이 중심적인 용도라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16〉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별 이용 빈도

(단위: 명, %)

구분	이용 빈도													
	거의 매일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연 1회 미만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102	(4.0)	324	(12.7)	616	(24.1)	538	(21.0)	505	(19.7)	475	(18.6)	2,560	(100.0)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58	(3.0)	232	(12.2)	465	(24.4)	367	(19.3)	394	(20.7)	386	(20.3)	1,902	(100.0)
DOVOL	8	(1.7)	44	(9.4)	102	(21.7)	100	(21.3)	86	(18.3)	129	(27.5)	469	(100.0)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501	(19.3)	668	(25.8)	716	(27.6)	384	(14.8)	205	(7.9)	117	(4.5)	2,591	(100.0)
활동기관 공식 SNS	610	(24.3)	750	(29.9)	607	(24.2)	288	(11.5)	161	(6.4)	94	(3.7)	2,510	(100.0)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	613	(25.2)	755	(31.0)	554	(22.8)	258	(10.6)	151	(6.2)	102	(4.2)	2,433	(100.0)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232	(10.0)	627	(27.0)	773	(33.2)	351	(15.1)	197	(8.5)	145	(6.2)	2,325	(100.0)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325	(16.2)	614	(30.5)	564	(28.0)	267	(13.3)	144	(7.2)	97	(4.8)	2,011	(100.0)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92	(5.0)	265	(14.5)	530	(29.0)	380	(20.8)	336	(18.4)	227	(12.4)	1,830	(100.0)

공익활동을 하면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활동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살펴 본 것이 〈표 6-17〉인데, DOVOL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들은 응답자들에게 모두 도움 되었다(약간 도움 이상)는 비율이 85%를 상회하였다. 그 중에서도 공익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약간 도움 이상)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93.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본다면, 소규모의 직접적 사안 논의와 같은 소통 방식의 유용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응답의 경향이다. 공익활동 플랫폼에 대해서 '소통형' 플랫폼이 제기되곤 하는 근거라 할 수도 있다. 즉, 일반적인 포털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방적인 의제와 참여방식의 결정, 이용자의 수동적 참여방식보다는 참여자 간의 가볍고 쉬운 논의나 적극적 소통에 대해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6-17〉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별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53	(2.1)	235	(9.2)	1,275	(49.8)	997	(38.9)	2,560	(100.0)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49	(2.6)	177	(9.3)	909	(47.8)	767	(40.3)	1,902	(100.0)
DOVOL	17	(3.6)	84	(17.9)	229	(48.8)	139	(29.6)	469	(100.0)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20	(0.8)	183	(7.1)	1,317	(50.8)	1,071	(41.3)	2,591	(100.0)
활동기관 공식 SNS	25	(1.0)	162	(6.5)	1,219	(48.6)	1,104	(44.0)	2,510	(100.0)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20	(0.8)	136	(5.6)	1,111	(45.7)	1,166	(47.9)	2,433	(100.0)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21	(0.9)	184	(7.9)	1,269	(54.6)	851	(36.6)	2,325	(100.0)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9	(0.4)	144	(7.2)	1,072	(53.3)	786	(39.1)	2,011	(100.0)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24	(1.3)	185	(10.1)	966	(52.8)	655	(35.8)	1,830	(100.0)

온라인 채널별로 이용 빈도를 분석한 〈표 6-17〉에서 각 채널 이용자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 플랫폼을 응답자의 활동영역별로 도움정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모든 활동영역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0%(약간 도움된다 이상)을 넘었으며 그 중에서도 도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마을공동체이고, 가장 낮은 영역은 자원봉사 영역이었다(〈표 6-18〉 참조).

〈표 6-18〉 활동영역별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합계	
마을공동체	2	(0.4)	15	(2.7)	229	(41.1)	311	(55.8)	557	(100.0)
비영리민간단체	7	(0.7)	50	(4.7)	510	(47.7)	503	(47.0)	1,070	(100.0)
자원봉사	11	(1.4)	71	(8.8)	372	(46.2)	352	(43.7)	806	(100.0)
전체	20	(0.8)	136	(5.6)	1111	(45.7)	1166	(47.9)	2,433	(100.0)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수집하는지 조사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집처로는 응답자의 29.0%를 차지한,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6-9] 참조). 그 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수집처는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20.0%),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자원봉사포털 등)(16.0%) 등이었다. 정보의 수집 측면에서는 활동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가장 높은 자료원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역시 SNS의 방식이 가지는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6-9] 공익활동에 대한 필요정보 수집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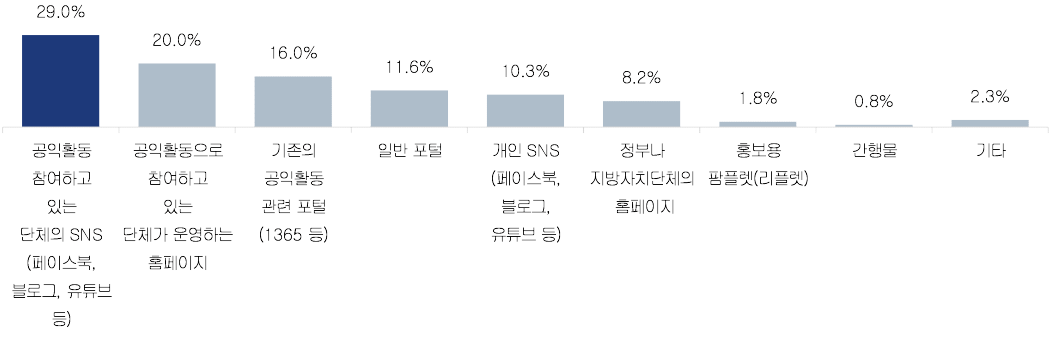

공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취득하는 정보수집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을 텐데 과연 응답자들은 정보수집처의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표 6-19〉와 같이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78.5%)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기능(59.3%),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기능(57.3%),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기능(56.7%) 등의 순위였다.

〈표 6-19〉 공익활동을 위해 응답자들이 이용하는 정보수집처의 제공 기능 사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용여부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3,054	(78.5)	837	(21.5)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1,874	(48.2)	2,017	(51.8)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2,308	(59.3)	1,583	(40.7)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1,805	(46.4)	2,086	(53.6)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1,856	(47.7)	2,035	(52.3)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1,388	(35.7)	2,503	(64.3)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2,230	(57.3)	1,661	(42.7)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1,992	(51.2)	1,899	(48.8)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1,660	(42.7)	2,231	(57.3)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1,672	(43.0)	2,219	(57.0)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2,207	(56.7)	1,684	(43.3)

응답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충분한지를 조사하였더니 제시한 기능 모두 최소 72%이상 충분하다(약간 충분, 매우 충분 포함)고 응답하였다. 그 중에서 충분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기능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으로, 이 기능을 사용하는 응답자의 82.1%는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위는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이며 충분하다는 응답은 80.1%,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에 대한 충분하다는 비율은 79.7%였다. 반면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은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기능과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이었다(〈표 6-20〉 참조).

〈표 6-20〉 공익활동 정보수집처의 제공 정보에 대한 충분 정도

(단위: 명, %)

구분	충분 정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 하지 않다	약간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합계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56 (1.8)	490 (16.0)	1,818 (59.5)	690 (22.6)	3,054 (100.0)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41 (2.2)	332 (17.7)	973 (51.9)	528 (28.2)	1,874 (100.0)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52 (2.3)	415 (18.0)	1,256 (54.4)	585 (25.3)	2,308 (100.0)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35 (1.9)	405 (22.4)	968 (53.6)	397 (22.0)	1,805 (100.0)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62 (3.3)	457 (24.6)	969 (52.2)	368 (19.8)	1,856 (100.0)

구분	충분 정도				
	전혀 충분하지 않다	별로 충분 하지 않다	약간 충분 하다	매우 충분 하다	합계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44 (3.2)	294 (21.2)	712 (51.3)	338 (24.4)	1,388 (100.0)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63 (2.8)	531 (23.8)	1,082 (48.5)	554 (24.8)	2,230 (100.0)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66 (3.3)	413 (20.7)	1,037 (52.1)	476 (23.9)	1,992 (100.0)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57 (3.4)	364 (21.9)	852 (51.3)	387 (23.3)	1,660 (100.0)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66 (3.9)	394 (23.6)	815 (48.7)	397 (23.7)	1,672 (100.0)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77 (3.3)	472 (21.4)	1,138 (51.6)	525 (23.8)	2,207 (100.0)

공익활동과 관련된 기존 온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81.0%는 만족(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포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6-10] 참조).

[그림 6-10] 기존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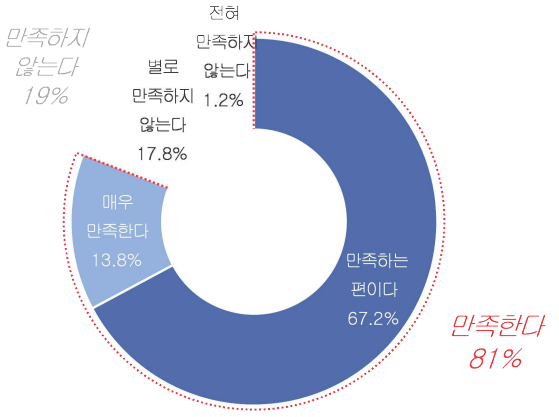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14가지 기능을 나열하고 각 기능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해보았더니, 제시한 기능 중 13개 기능에서 중요하다(약간 중요하다 이상)는 의견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공익활동 플랫폼은 나열된 14가지 기능 모두 있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94.9%였고, 가장 낮은 것은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로 89.4%였다(〈표 6-21〉 참조).

〈표 6-21〉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명, %)

구분	중요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7 (1.0)	162 (4.2)	1,820 (46.8)	1,872 (48.1)	3,891 (100.0)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26 (0.7)	264 (6.8)	1,676 (43.1)	1,925 (49.5)	3,891 (100.0)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19 (0.5)	207 (5.3)	1,466 (37.7)	2,199 (56.5)	3,891 (100.0)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27 (0.7)	208 (5.3)	1,614 (41.5)	2,042 (52.5)	3,891 (100.0)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22 (0.6)	247 (6.3)	1,752 (45.0)	1,870 (48.1)	3,891 (100.0)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18 (0.5)	206 (5.3)	1,701 (43.7)	1,966 (50.5)	3,891 (100.0)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21 (0.5)	222 (5.7)	1,652 (42.5)	1,996 (51.3)	3,891 (100.0)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23 (0.6)	217 (5.6)	1,536 (39.5)	2,115 (54.4)	3,891 (100.0)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25 (0.6)	239 (6.1)	1,611 (41.4)	2,016 (51.8)	3,891 (100.0)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17 (0.4)	235 (6.0)	1,588 (40.8)	2,051 (52.7)	3,891 (100.0)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20 (0.5)	221 (5.7)	1,657 (42.6)	1,993 (51.2)	3,891 (100.0)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23 (0.6)	343 (8.8)	1,690 (43.4)	1,835 (47.2)	3,891 (100.0)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18 (0.5)	206 (5.3)	1,774 (45.6)	1,893 (48.7)	3,891 (100.0)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	46 (1.2)	368 (9.5)	1,793 (46.1)	1,684 (43.3)	3,891 (100.0)

[그림 6-11]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에 대한 중요도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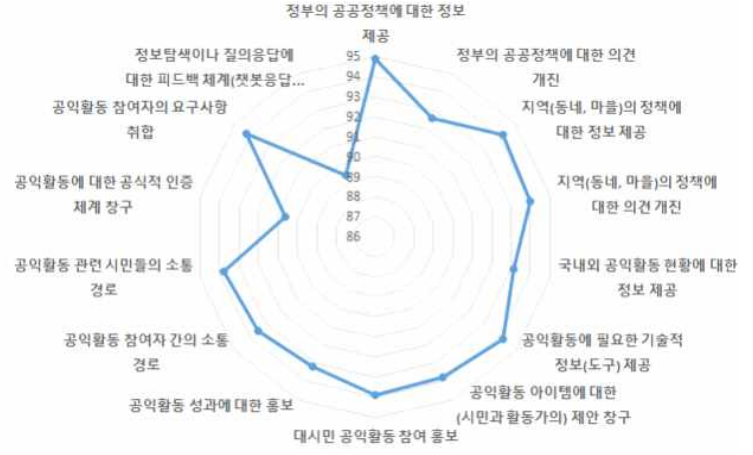

공익활동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서는 많은 쟁점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에 이미 관련되는 많은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다. 자원봉사 영역과 마을공동체 혹은 비영리

민간단체 영역은 서로 현장 여건에서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이미 활동시간의 공식적 인증체계를 구축해서 누적적인 활동이력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입시와 진학, 기업의 인사관리 등에서 보상체계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서는 공익활동을 위해 SNS와 온라인 정보체계 등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인증체계 구축은 오히려 이루어져 있지 못하다.

더구나 공익활동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지형과 관련되어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을 특정 정치적 편향성에 기초하여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보수성 정도에 따라 이 활동의 활성화를 오히려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선도적인 공익활동 실험이 많이 나타난 서울지역에서 지난 10여 년간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체계가 급격히 성장하다가 최근 1-2년 동안은 그 지원체계들을 축소 혹은 폐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양상이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와 맥락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공익활동 플랫폼, 특히 그 구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10개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각각의 동의정도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10가지 구축 방향에 대하여 동의(약간 동의하다 포함)하는 비율이 모두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에서 제시한 플랫폼 구축방향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동의 수준이 높은 항목은 '공익활동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로 92.9%가 동의하였고, 가장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인 항목은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로 78.9%의 동의를 얻었다(〈표 6-22〉 참조).

먼저 플랫폼이 시민의 자유로운 공론장이어야 한다는 부분과 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응답은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과정에서 포럼과정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부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포럼의 논의과정에서는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는 일단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일차적인 플랫폼 사용의 대상이며 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던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래의 플랫폼 취지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높은 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부각되는 측면이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통제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현장 활동가들의 의견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된 온라인 소통공간이 가지는 대표적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내용들의 범람을 차단할 기제와 관리활동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도 많지만(전체 10개 문항 중 두 번째의 긍정적 응답비율 순위), 적어도 시민들의 공론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자체에 대해 가장 높은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공익활동 이력에 대한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항목들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와 별도로 공익활동 인증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인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이 갖추지 못한 대표적 기능부분은 공익활동에 대한 이력 취합과 인증기능이라는 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시간 인증과 누적 이력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동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각 지역별로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에 대한 동의 정도도 전반적인 응답의 동의 정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 이는 최근에 공익활동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사회전반적인 플랫폼 홍수의 현상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을 낳고 있다. 또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기존에 비교적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던 공익활동 플랫폼 일부를 오히려 폐쇄하는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표 6-22〉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명, %)

구분	동의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약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22 (0.6)	256 (6.6)	1,817 (46.7)	1796 (46.2)	3,891 (100.0)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39 (1.0)	541 (13.9')	1,902 (48.9)	1409 (36.2)	3,891 (100.0)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 필요	38 (1.0)	363 (9.3)	1,779 (45.7)	1711 (44.0)	3,891 (100.0)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이력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46 (1.2)	452 (11.6)	1,878 (48.3)	1515 (38.9)	3,891 (100.0)
공익활동 인정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구별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60 (1.5)	515 (13.2)	1,785 (45.9)	1531 (39.3)	3,891 (100.0)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152 (3.9)	670 (17.2)	1,789 (46.0)	1280 (32.9)	3,891 (100.0)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 좋다	40 (1.0)	459 (11.8)	1,943 (49.9)	1449 (37.2)	3,891 (100.0)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101 (2.6)	639 (16.4)	1,953 (50.2)	1198 (30.8)	3,891 (100.0)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80 (2.1)	542 (13.9)	1,945 (50.0)	1324 (34.0)	3,891 (100.0)
공익활동 플랫폼은 정부의 관여 없이 제3섹터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74 (1.9)	498 (12.8)	1,748 (44.9)	1571 (40.4)	3,891 (100.0)

07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 : 주요 특성별 분석

제1절 공익활동의 참여와 가치관

연령대별로 공익활동을 시작한 연령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1016.789, p=.000). 10대는 평균 14.5세에 공익활동을 시작하였고, 20대는 평균 20.4세, 30대는 평균 27.4세, 40대 평균 33.5세, 50대 평균 39.2세, 60대 이상은 평균 50.3세부터 공익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30대부터는 공익활동 시작연령과 현재 연령 간에 차이가 점차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나이가 들어서 공익활동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40대와 50대의 경우 평균 30대에 공익활동을 시작한 것을 보면 공익활동에 있어서 30대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1〉 참조).

〈표 7-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평균 시작연령

(단위: 세)

연령	평균 시작연령	표준편차
10대	14.51	2.267
20대	20.42	4.570
30대	27.45	5.217
40대	33.58	7.473
50대	39.25	10.065
60대 이상	50.38	12.123
전체	31.61	11.508

응답자들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연평균 시간은 약 608.9시간정도이며 월 약 50.7시간정도(1개월=4주로 환산)를 공익활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40대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5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2〉 참조).

〈표 7-2〉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에 투입한 연평균 시간

(단위: 시간)

연령	연평균 공익활동 소요시간	표준편차
10대	147.0423	280.76016
20대	391.2536	778.07743
30대	554.1363	859.71195
40대	791.9129	1043.11587
50대	733.9230	962.73573
60대 이상	528.5342	791.57193
전체	608.9365	917.85817

주: 1개월 4주, 주 2~3회는 주3회, 월2~3회는 월3회, 월 1회 미만은 분기1회로 환산하여 계산함

[그림 7-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시작연령 및 연평균 활동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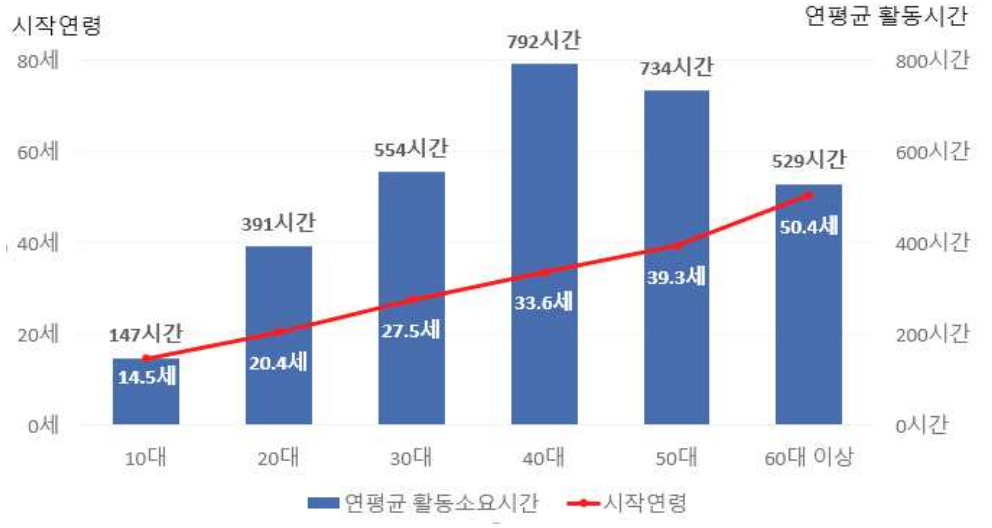

〈표 7-1〉과 〈표 7-2〉에 의하면, 30대에 공익활동을 시작해서 40대에 가장 많은 시간을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활동분야를 활동단체 소속여부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봉사·기부분야(27.5%)에 활동하는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복지(15.7%),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12.2%) 등의 순위로 분석되었다(〈표 7-3〉 참조).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활동하는 분야로는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18.1%), 봉사·기부(17.1%), 복지(14.4%), 기후·환경·생태(10,7%)분야 등의 순위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거나 1인 활동가들이 주로 활동하는 분야로는 봉사·기부(41.2%), 복지(17.3%), 문화·체육·예술·관광(5.9%)분야 등의 순위로 활동하는 응답자 비율이 높았다. 특히, 봉사·기부, 보건·의료·건강분야는 1인 활동가 혹은 무소속 활동가 비율이 높은 반면에 기후·환경·생태, 교육·학술·연구·언론, 여성·가족, 인권·민중·소수자·다문화, 평화·통일·민족,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 경제·소비자·과학·기술·IT, 국제협력·국제연대, 권력감시·사회정의 등의 활동분야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χ^2=492.211, p=0.000).

〈표 7-3〉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활동분야 현황

(단위: 명, %)

활동 분야	공익활동단체 소속		공익활동단체 무소속		합계	
복지	318	(14.4)	291	(17.3)	609	(15.7)
문화·체육·예술·관광	134	(6.1)	99	(5.9)	233	(6.0)
기후·환경·생태	237	(10.7)	89	(5.3)	326	(8.4)
교육·학술·연구·언론	115	(5.2)	58	(3.5)	173	(4.4)
봉사·기부	377	(17.1)	693	(41.2)	1,070	(27.5)
아동·청소년	180	(8.1)	132	(7.9)	312	(8.0)
주택·교통·안전	51	(2.3)	39	(2.3)	90	(2.3)
국민운동	6	(0.3)	8	(0.5)	14	(0.4)
여성·가족	97	(4.4)	49	(2.9)	146	(3.8)
보훈·기념·추모	11	(0.5)	7	(0.4)	18	(0.5)
인권·민중·소수자·다문화	81	(3.7)	20	(1.2)	101	(2.6)
평화·통일·민족	31	(1.4)	4	(0.2)	35	(0.9)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	399	(18.1)	74	(4.4)	473	(12.2)
경제·소비자·과학·기술·IT	33	(1.5)	4	(0.2)	37	(1.0)
보건·의료·건강	46	(2.1)	69	(4.1)	115	(3.0)
국제협력·국제연대	15	(0.7)	4	(0.2)	19	(0.5)
권력감시·사회정의	36	(1.6)	3	(0.2)	39	(1.0)
농수축산업	13	(0.6)	9	(0.5)	22	(0.6)
청년	30	(1.4)	29	(1.7)	59	(1.5)
전체	2,210	(100.0)	1,681	(100.0)	3,891	(100.0)

[그림 7-2]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활동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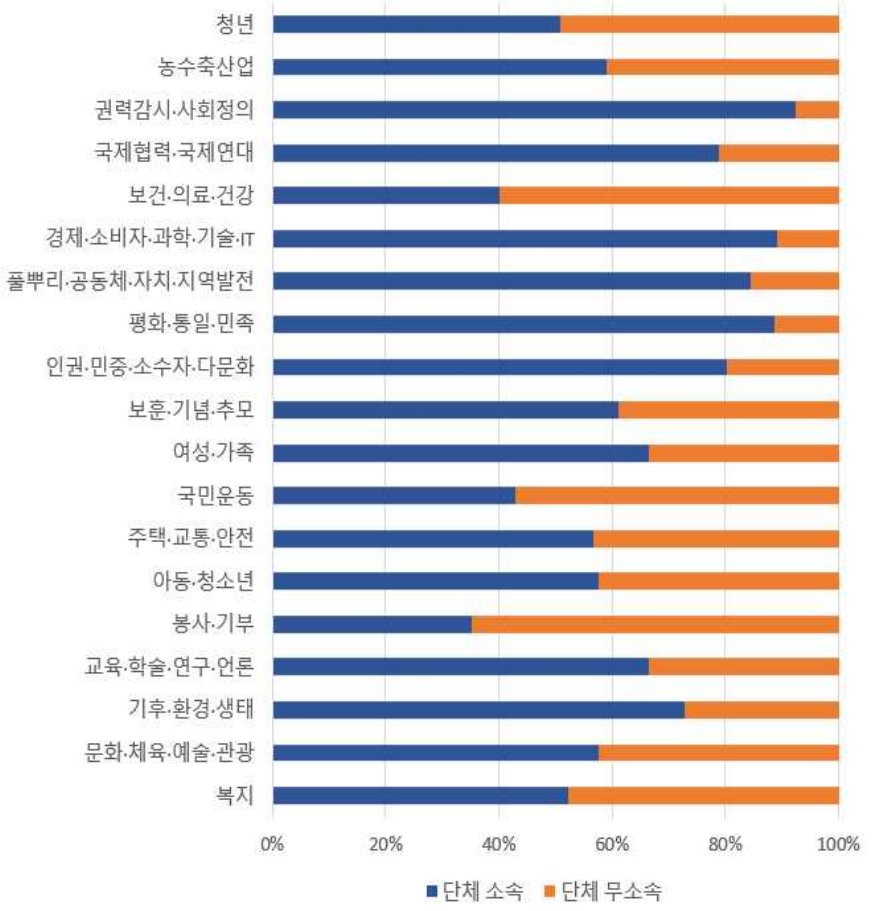

응답자 스스로 판단할 때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연령계층별로 분석해보았다. 50대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4〉 참조).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4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회는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는 생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에 활력을 넣는 기회로 작용하게 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표 7-4〉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단위: 점)

구분	연령계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나는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	3.32	3.32	3.38	3.57	3.66	3.64	3.49
나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3.01	3.03	3.18	3.32	3.39	3.36	3.24
나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2.96	2.95	3.06	3.14	3.27	3.22	3.11
나는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54	2.85	2.97	3.07	3.24	3.09	3.03
나는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2.65	2.87	2.91	2.91	3.07	3.14	2.95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2.97	3.07	3.18	3.28	3.34	3.35	3.23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2.79	2.87	3.10	3.16	3.08	2.97	3.05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3.41	3.35	3.39	3.57	3.62	3.55	3.4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3.48	3.33	3.37	3.58	3.67	3.73	3.51

주: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지속 기간별로 분석해 본 결과, 공익활동 지속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와 관련해서는 활동 지속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지속기간이 10년 이상 될수록 직무교육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표 7-5〉 참조).

〈표 7-5〉 활동지속기간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단위: 점)

구분	활동 지속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나는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	3.32	3.36	3.45	3.58	3.65	3.73	3.49
나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2.91	3.15	3.25	3.35	3.41	3.47	3.24
나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2.80	3.01	3.10	3.21	3.29	3.40	3.11
나는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2.69	2.89	3.02	3.11	3.25	3.40	3.03
나는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2.58	2.94	2.90	2.99	3.07	3.18	2.95

구분	활동 지속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전체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2.96	3.17	3.19	3.27	3.45	3.46	3.23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2.81	3.05	2.99	3.05	3.18	3.29	3.05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3.36	3.40	3.47	3.49	3.62	3.69	3.4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3.40	3.40	3.47	3.54	3.62	3.71	3.51

주: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마을공동체 영역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생각을 가진 비율이 높으며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7-6〉 참조). 한편,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도 마을공동체 영역은 타 영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원봉사영역의 응답자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타 영역보다 낮았으며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도 가장 낮았다.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는 생각은 비영리민간단체 영역의 응답자가 가장 높았고, 자원봉사영역이 가장 낮았다.

〈표 7-6〉 활동영역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

(단위: 점)

구분	활동영역			
	마을 공동체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	전체
나는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	3.51	3.52	3.47	3.49
나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3.48	3.32	3.09	3.24
나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3.27	3.23	2.97	3.11
나는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3.21	3.19	2.85	3.03
나는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3.17	2.99	2.83	2.95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3.36	3.36	3.08	3.23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3.17	3.20	2.89	3.05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3.57	3.55	3.41	3.4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3.58	3.50	3.48	3.51

주: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이유를 연령계층별로 분석해 본 결과, 전 연령층 모두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χ^2=130.143, p=0.000). 반면에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상당히 낮았다. 연령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0대는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외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5.2%를 차지하였으며,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은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만큼 인정의 필요성에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보였다. 연령계층별로 봤을 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은 40대는 〈표 7-2〉에서 보여줬듯이 공익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다. 즉, 〈표 7-2〉와 〈표 7-7〉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이 많을수록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비율도 높았다.

〈표 7-7〉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연령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공익활동가로 성장을 위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합계	
10대	1	(1.4)	13	(18.3)	32	(45.1)	25	(35.2)	71	(100.0)
20대	45	(6.5)	87	(12.6)	409	(59.4)	148	(21.5)	689	(100.0)
30대	62	(6.9)	118	(13.1)	565	(62.5)	159	(17.6)	904	(100.0)
40대	37	(3.9)	59	(6.2)	670	(70.7)	181	(19.1)	947	(100.0)
50대	35	(4.4)	23	(2.9)	551	(69.3)	186	(23.4)	795	(100.0)
60대 이상	23	(7.5)	16	(5.2)	194	(63.6)	72	(23.6)	305	(100.0)
전체	203	(5.5)	316	(8.5)	2,421	(65.2)	771	(20.8)	3,711	(100.0)

주: 사회적 인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180명은 제외됨

[그림 7-3]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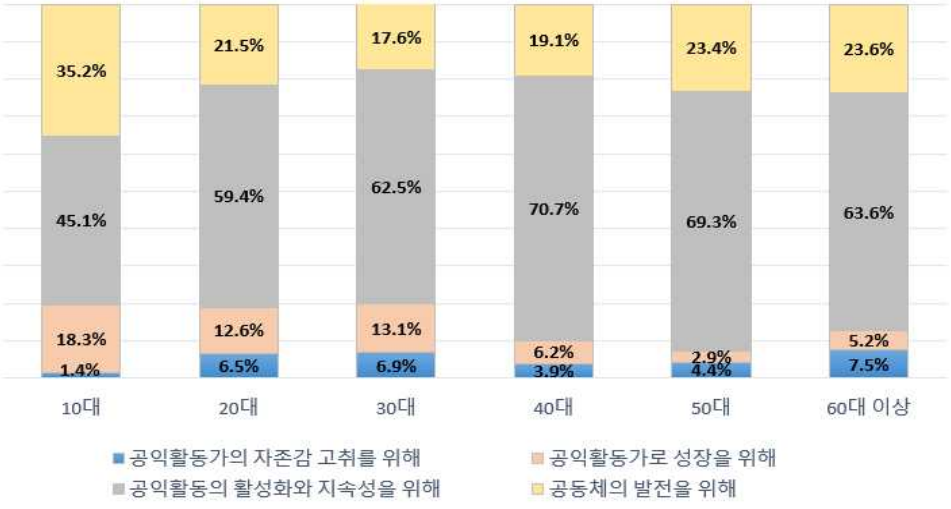

〈표 7-8〉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필요 이유를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지속기간별로 분석해본 것인데,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는 공익활동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는 활동 지속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나 활동 지속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χ^2= 117.422, p=0.000).

〈표 7-8〉 공익활동 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단위: 명, %)

활동 지속 기간	사회적 인정이 필요한 주된 이유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공익활동가로 성장을 위해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합계	
1년 미만	40	(6.8)	68	(11.5)	326	(55.3)	156	(26.4)	59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55	(6.5)	120	(14.2)	516	(61.2)	152	(18.0)	843	(100.0)
3년 이상~10년 미만	57	(4.4)	93	(7.2)	888	(68.5)	259	(20.0)	1,297	(100.0)
10년 이상~20년 미만	42	(6.0)	28	(4.0)	494	(70.3)	139	(19.8)	703	(100.0)
20년 이상~30년 미만	8	(3.8)	6	(2.8)	151	(70.9)	48	(22.5)	213	(100.0)
30년 이상	1	(1.5)	1	(1.5)	46	(70.8)	17	(26.2)	65	(100.0)
전체	203	(5.5)	316	(8.5)	2,421	(65.2)	771	(20.8)	3,711	(100.0)

주: 사회적 인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180명은 제외됨

공익활동을 지속한 기간에 따른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필요정도를 4점 척도(전혀 필요없다 1점, 매우 필요하다 4점)로 분석해 본 결과, 10개의 사회적 인정 방안 모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9〉, 〈표 7-10〉 참조). 특히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인정 방안 모두에 대하여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참여기간이 길수록 사회적 인정 방안 각각에 대한 필요성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9〉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1

(단위: 점, 명)

구분		시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사회적 인정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 기업 인센티브	단체 조세감면 제도 확대	단체 산재·고용보험 지원
1년 미만	평균	3.23	3.27	3.18	3.08	3.24
	N	590	590	590	590	590
	표준편차	.842	.848	.904	.944	.886
1년 이상~ 3년 미만	평균	3.25	3.33	3.31	3.23	3.40
	N	843	843	843	843	843
	표준편차	.792	.748	.784	.838	.741
3년 이상~ 10년 미만	평균	3.37	3.50	3.43	3.32	3.48
	N	1297	1297	1297	1297	1297
	표준편차	.790	.660	.742	.807	.720
10년 이상~ 20년 미만	평균	3.48	3.67	3.54	3.43	3.63
	N	703	703	703	703	703
	표준편차	.786	.548	.705	.810	.634
20년 이상~ 30년 미만	평균	3.59	3.69	3.54	3.48	3.61
	N	213	213	213	213	213
	표준편차	.713	.482	.724	.768	.669
30년 이상	평균	3.68	3.71	3.55	3.55	3.80
	N	65	65	65	65	65
	표준편차	.562	.579	.685	.771	.403
전체	평균	3.36	3.47	3.39	3.30	3.47
	N	3711	3711	3711	3711	3711
	표준편차	.798	.701	.780	.843	.743
F값		15.144	35.368	18.774	15.992	23.743
유의확률(p)		.000	.000	.000	.000	.000

주: 척도-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약간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4점

〈표 7-10〉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2

(단위: 점, 명)

구분		시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보조금 사업 인건비 인정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공공서비스 할인	활동 참여시간 공식적 인정
1년 미만	평균	3.17	3.28	3.11	3.10	3.37
	N	590	590	590	590	590
	표준편차	.883	.836	.939	.927	.798
1년 이상~3년 미만	평균	3.35	3.38	3.23	3.27	3.46
	N	843	843	843	843	843
	표준편차	.753	.759	.803	.823	.717
3년 이상~10년 미만	평균	3.49	3.56	3.37	3.29	3.53
	N	1297	1297	1297	1297	1297
	표준편차	.750	.673	.759	.845	.658
10년 이상~20년 미만	평균	3.61	3.68	3.47	3.43	3.65
	N	703	703	703	703	703
	표준편차	.663	.565	.725	.824	.598
20년 이상~30년 미만	평균	3.58	3.61	3.45	3.46	3.63
	N	213	213	213	213	213
	표준편차	.740	.675	.791	.704	.572
30년 이상	평균	3.68	3.68	3.54	3.40	3.66
	N	65	65	65	65	65
	표준편차	.589	.615	.686	.915	.644
전체	평균	3.44	3.50	3.32	3.29	3.52
	N	3711	3711	3711	3711	3711
	표준편차	.769	.716	.804	.850	.687
F값		28.835	29.565	18.368	12.337	13.890
유의확률(p)		.000	.000	.000	.000	.000

주: 척도-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약간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4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연령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50대는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인정 방안에 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7-11〉 참조). 10대의 경우 필요하다는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시 개선'과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방안이며, 반대로 가장 낮은 점수항목은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방안이었다. 20대와 30대, 60대 이상은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 필요정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40대와 50대는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이 필요정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7-11〉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단위: 점)

구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정	3.13	3.20	3.23	3.42	3.54	3.50	3.36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3.31	3.27	3.37	3.59	3.64	3.51	3.47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15	3.17	3.27	3.53	3.55	3.47	3.39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2.92	3.07	3.27	3.40	3.45	3.26	3.30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지원	3.18	3.26	3.40	3.59	3.61	3.43	3.47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	3.04	3.21	3.35	3.61	3.59	3.38	3.44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3.13	3.27	3.43	3.66	3.67	3.40	3.50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에 대한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3.07	3.08	3.24	3.40	3.54	3.38	3.32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	3.08	3.10	3.24	3.34	3.47	3.33	3.29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3.31	3.37	3.46	3.59	3.63	3.54	3.52

주: 척도-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약간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4점

[그림 7-4]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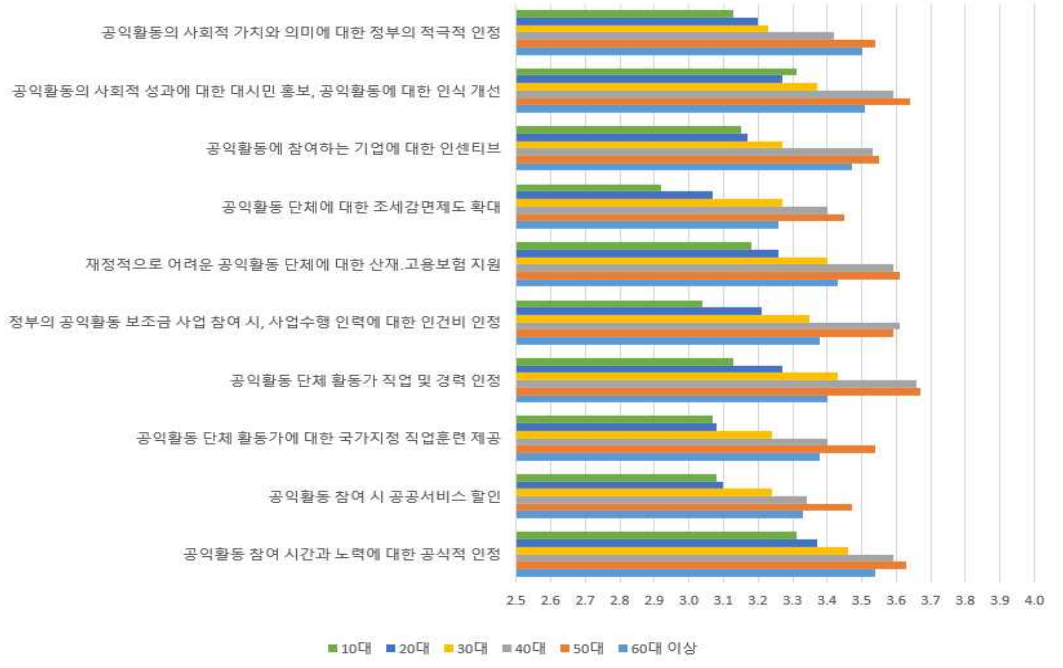

주: 척도-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약간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4점

〈표 7-12〉는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정 방안의 욕구 수준을 합리적인 보상·인정방식과 분석한 것인데, 가장 합리적인 보상 혹은 인정방식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그룹은 본 조사에서 제시한 사회적 인정 방안 10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지원',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방안의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보다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그룹을 보면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공익광고 활성화 등)'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다른 방안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7-12〉 합리적 보상방식과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필요정도

(단위: 점)

구분	합리적인 보상·인정방식					
	사회적 존중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비경제적 보상 지원	경제적 가치 환산 보상	기타	전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정	3.30	3.30	3.20	3.50	2.94	3.40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3.41	3.40	3.33	3.70	3.44	3.50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3.27	3.30	3.18	3.60	3.39	3.40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확대	3.05	3.20	3.12	3.50	3.39	3.30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지원	3.28	3.40	3.26	3.70	3.69	3.50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	3.20	3.30	3.26	3.80	3.56	3.40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3.31	3.30	3.42	3.80	3.72	3.50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에 대한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3.20	3.30	3.14	3.50	3.44	3.30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	3.07	3.40	3.04	3.40	3.17	3.30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3.31	3.50	3.40	3.70	3.39	3.50

주: 척도- 전혀 필요없다 1점, 별로 필요없다 2점, 약간 필요하다 3점, 매우 필요하다 4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던 3,711명에게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보상 혹은 인정방식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공익활동 지속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198.926, p=0.000). 활동기간이 3년 미만인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3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한 그룹 모두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상하여 보상'하는 것을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7-13〉 참조).

〈표 7-13〉 공익활동 지속기간·활동영역·연령계층별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

(단위: 명, %)

구분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											
	사회적 존중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비경제적 보상		경제적 가치 보상		기타		합계	
1년 미만	124	(21.0)	245	(41.5)	103	(17.5)	111	(18.8)	7	(1.2)	590	(100.0)
1년 이상~3년 미만	150	(17.8)	315	(37.4)	151	(17.9)	226	(26.8)	1	(0.1)	843	(100.0)
3년 이상~5년 미만	99	(18.8)	151	(28.7)	63	(12.0)	211	(40.0)	3	(0.6)	527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15	(14.9)	246	(31.9)	98	(12.7)	302	(39.2)	9	(1.2)	770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88	(17.6)	120	(24.0)	57	(11.4)	226	(45.3)	8	(1.6)	499	(100.0)
15년 이상	104	(21.6)	103	(21.4)	48	(10.0)	219	(45.4)	8	(1.7)	482	(100.0)
마을공동체	86	(12.6)	144	(21.2)	74	(10.9)	371	(54.6)	5	(0.7)	680	(100.0)
비영리단체	170	(13.1)	247	(19.0)	170	(13.1)	695	(53.5)	18	(1.4)	1,330	(100.0)
자원봉사	424	(24.5)	789	(45.6)	276	(15.9)	229	(13.2)	13	(0.8)	1,731	(100.0)
10대	21	(29.6)	29	(40.8)	12	(16.9)	8	(11.3)	1	(1.4)	71	(100.0)
20대	122	(17.7)	294	(42.7)	123	(17.9)	147	(21.3)	3	(0.4)	689	(100.0)
30대	159	(17.6)	313	(34.6)	158	(17.5)	268	(29.6)	6	(0.7)	904	(100.0)
40대	134	(14.1)	248	(26.2)	127	(13.4)	424	(44.8)	14	(1.5)	947	(100.0)
50대	140	(17.6)	211	(26.5)	73	(9.2)	364	(45.8)	7	(0.9)	795	(100.0)
60대 이상	104	(34.1)	85	(27.9)	27	(8.9)	84	(27.5)	5	(1.6)	305	(100.0)
전체	680	(18.3)	1,180	(31.8)	520	(14.0)	1,295	(34.9)	36	(1.0)	3,711	(100.0)

활동영역별로 공익활동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인정 방식에 대한 응답자들의 생각을 분석해 본 결과, 활동영역별로 유의한 차이(χ^2=712.293, p=0.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원봉사영역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45.6%)'의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각 54.6%, 53.5%)'하는 것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한편, 공익활동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자원봉사영역의 응답자(24.5%)들이 마을공동체(12.6%) 및 비영리민간단체(13.1%)영역 응답자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활동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에 대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았더니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χ^2=258.202, p=0.000). 60대 이상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인정방식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사회적 존중(34.1%)이었고, 10대, 20대, 3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이 응답한 합리적 인정방식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이며 그 비율은 10대 40.8%, 20대 42.7%, 30대 34.6%이었다. 40대, 50대는 공익활동에 따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방식에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7-14〉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180명을 대상으로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에 따른 불필요 이유를 분석한 결과로, 단체 소속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13.308, p<.010).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된 응답자의 경우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응답자는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따라서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공익활동에 사회적 인정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부의 개입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가의 개입에 따른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익활동 1인 활동가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응답자는 공익활동이 자발적 의지로 시민사회간 소통·협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인데 사회적 인정 도입으로 인해 시민단체간, 혹은 참여자간 경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 공익활동 활성화를 저해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7-14〉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불필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					
	소속		무소속		합계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	13	(31.7)	41	(29.5)	54	(30.0)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15	(36.6)	20	(14.4)	35	(19.4)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11	(26.8)	50	(36.0)	61	(33.9)
공익활동 인정 주체(기관)를 신뢰하기 어렵다	2	(4.9)	27	(19.4)	29	(16.1)
기타	0	(0.0)	1	(0.7)	1	(0.6)
전체	41	(100.0)	139	(100.0)	180	(100.0)

공익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응답한 180명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표 7-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30대 이하 연령이 83.9%를 차지하였으며, 연령계층별로 사회적 인정이 필요치 않다고 한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연령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39.997, p<.001).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고 했던 20대는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서'(45.8%)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30대는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와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각 31.6%로 가장 많았다. 40대 이상은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국, 40대 이상은 공익활동에 담겨진 활동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해석되고, 그렇지 않아도 집단 내에서 구성원간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30대 이하는 만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도입된다면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획득하기 위해 시민단체간 혹은 참여자간 공익활동 일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공익활동 활성화는 커녕 공익활동의 기본적 이념을 무너뜨리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불필요 이유

(단위: 명, %)

구분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	9 (12.5)	25 (31.6)	10 (58.8)	8 (80.0)	2 (100.0	54 (30.0)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13 (18.1)	17 (21.5)	3 (17.6)	2 (20.0)	0 (0.0)	35 (19.4)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33 (45.8)	25 (31.6)	3 (17.6)	0 (0.0)	0 (0.0)	61 (33.9)
공익활동 인정 주체(기관)를 신뢰하기 어렵다	17 (23.6)	11 (13.9)	1 (5.9)	0 (0.0)	0 (0.0)	29 (16.1)
기타	0 (0.0)	1 (1.3)	0 (0.0)	0 (0.0)	0 (0.0)	1 (0.6)
전체	72 (100.0)	79 (100.0)	17 (100.0)	10 (100.0)	2 (100.0)	180 (100.0)

제3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공익활동과 관련된 9가지 종류의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용경험을 연령계층별로 분석해봤더니 10대와 20대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가장 많이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30대는 활동기관의 공식 SNS를 가장 많이 이용, 40대는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를, 50대 이상은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16〉 참조).

〈표 7-16〉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63	(23.5)	492	(15.4)	527	(11.9)	667	(13.2)	603	(14.1)	208	(14.6)	2,560	(13.7)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48	(17.9)	455	(14.2)	413	(9.4)	436	(8.6)	407	(9.5)	143	(10.1)	1,902	(10.2)
DOVOL	29	(10.8)	130	(4.1)	102	(2.3)	115	(2.3)	72	(1.7)	21	(1.5)	469	(2.5)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28	(10.4)	422	(13.2)	632	(14.3)	695	(13.7)	604	(14.2)	210	(14.8)	2,591	(13.9)
활동기관 공식 SNS	23	(8.6)	362	(11.3)	652	(14.8)	682	(13.5)	586	(13.7)	205	(14.4)	2,510	(13.5)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20	(7.5)	351	(11.0)	550	(12.5)	671	(13.2)	625	(14.6)	216	(15.2)	2,433	(13.1)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21	(7.8)	324	(10.1)	559	(12.7)	677	(13.4)	559	(13.1)	185	(13.0)	2,325	(12.5)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19	(7.1)	269	(8.4)	458	(10.4)	601	(11.9)	502	(11.8)	162	(11.4)	2,011	(10.8)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17	(6.3)	388	(12.2)	524	(11.9)	522	(10.3)	309	(7.2)	70	(4.9)	1,830	(9.8)
전체	268	(100.0)	3,193	(100.0)	4,417	(100.0)	5,066	(100.0)	4,267	(100.0)	1,420	(100.0)	18,631	(100.0)

주: 다중응답

연령대별로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을 몇 종류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봤더니, 10대는 평균 3.7종, 20대는 4.1종, 30대는 4.4종, 40대는 5.2종, 50대는 5.3종, 60대 이상은 4.6종을 사용해 본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17〉 참조). 공익활동 지속기간별로는 지속기간이 길수록 사용한 온라인 채널 종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활동영역보다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자원봉사영역은 타 영역보다 온라인 채널 경험 건수가 가장 적었다.

〈표 7-17〉 연령계층별·공익활동지속기간별·활동영역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경험

(단위: 종, 명)

구분		이용 경험 평균 수	표준편차	빈도
연령	10대	3.7746	2.50826	71
	20대	4.1958	2.25768	761
	30대	4.4934	2.35057	983
	40대	5.2552	2.25784	964
	50대	5.3006	2.14501	805
	60대 이상	4.6254	2.34027	307
공익활동 지속기간	1년 미만	3.4784	2.25461	625
	1년 이상~3년 미만	4.1303	2.30278	936
	3년 이상~5년 미만	4.9750	2.15844	559
	5년 이상~10년 미만	5.2673	2.18982	782
	10년 이상~15년 미만	5.6779	1.97889	503
	15년 이상	5.8333	1.94433	486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5.4935	2.07148	689
	비영리민간단체	5.6439	1.99015	1,348
	자원봉사	3.9040	2.30124	1,854
전체		4.7882	2.31678	3,891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지속 기간별로 온라인 채널 이용 행태를 살펴본 결과, 활동 기간이 길수록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18〉 참조). 예를 들어,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활동기관 공식 SNS, 활동기간 참여자들간의 SNS,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등의 이용 경험은 활동 지속 기간이 길수록 점차 이용 경험률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18〉 활동 지속기간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이용경험

(단위: 명, %)

구분	활동 지속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합계
1365자원봉사포털	364 (64.9)	542 (61.5)	363 (66.9)	546 (70.6)	378 (75.9)	367 (76.8)	2,560 (68.6)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343 (61.1)	366 (41.5)	270 (49.7)	385 (49.8)	270 (54.2)	268 (56.1)	1,902 (50.9)
DOVOL	95 (16.9)	113 (12.8)	62 (11.4)	94 (12.2)	53 (10.6)	52 (10.9)	469 (12.6)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252 (44.9)	561 (63.7)	387 (71.3)	583 (75.4)	410 (82.3)	398 (83.3)	2,591 (69.4)
활동기관 공식 SNS	231 (41.2)	561 (63.7)	373 (68.7)	545 (70.5)	398 (79.9)	402 (84.1)	2,510 (67.2)
활동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243 (43.3)	478 (54.3)	376 (69.2)	541 (70.0)	391 (78.5)	404 (84.5)	2,433 (65.2)

구분	활동 지속 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합계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230 (41.0)	462 (52.4)	350 (64.5)	532 (68.8)	375 (75.3)	376 (78.7)	2,325 (62.3)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187 (33.3)	396 (44.9)	321 (59.1)	452 (58.5)	318 (63.9)	337 (70.5)	2,011 (53.9)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229 (40.8)	387 (43.9)	279 (51.4)	441 (57.1)	263 (52.8)	231 (48.3)	1,830 (49.0)
전체	561 (100.0)	881 (100.0)	543 (100.0)	773 (100.0)	498 (100.0)	478 (100.0)	3,734 (100.0)

주 1: 다중 응답
2: 제시된 온라인채널을 한번 도 이용해보지 않은 157명은 제외하고 분석함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용 빈도를 6점 척도(연 1회 미만 1점, 연1회 이상 2점, 분기 1회 이상 3점, 월 1회 이상 4점, 주 1회 이상 5점, 거의 매일 6점)로 하여 연령대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0대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플랫폼은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로 분기 1회 이상 사용, 20대와 30대는 '활동기관 공식 SNS'로 월 1회 이상 사용, 40대이상은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을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19〉 참조). 특히 30대 이상 연령층은 이용하는 플랫폼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플랫폼마다 방문하는 빈도 역시 20대 이하보다 더 빈번히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 빈도

(단위: 점)

구분	연령계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1365자원봉사포털	2.97	2.84	3.03	2.97	3.10	3.66	3.04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2.96	2.94	3.00	2.73	3.03	3.50	2.97
DOVOL	2.62	2.46	3.04	2.56	2.60	3.81	2.72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3.36	3.95	4.34	4.30	4.20	4.09	4.20
활동기관 공식 SNS	3.52	4.17	4.39	4.60	4.49	4.37	4.43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	3.50	3.91	4.37	4.74	4.58	4.44	4.46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3.14	3.62	4.01	4.05	4.03	4.00	3.96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3.63	3.80	4.15	4.41	4.28	4.15	4.21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3.29	3.30	3.55	3.24	2.99	3.21	3.30

주: 척도- 거의 매일 6점, 주 1회 이상 5점, 월 1회 이상 4점, 분기 1회 이상 3점, 연 1회 이상 2점 연 1회 미만 1점

[그림 7-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 빈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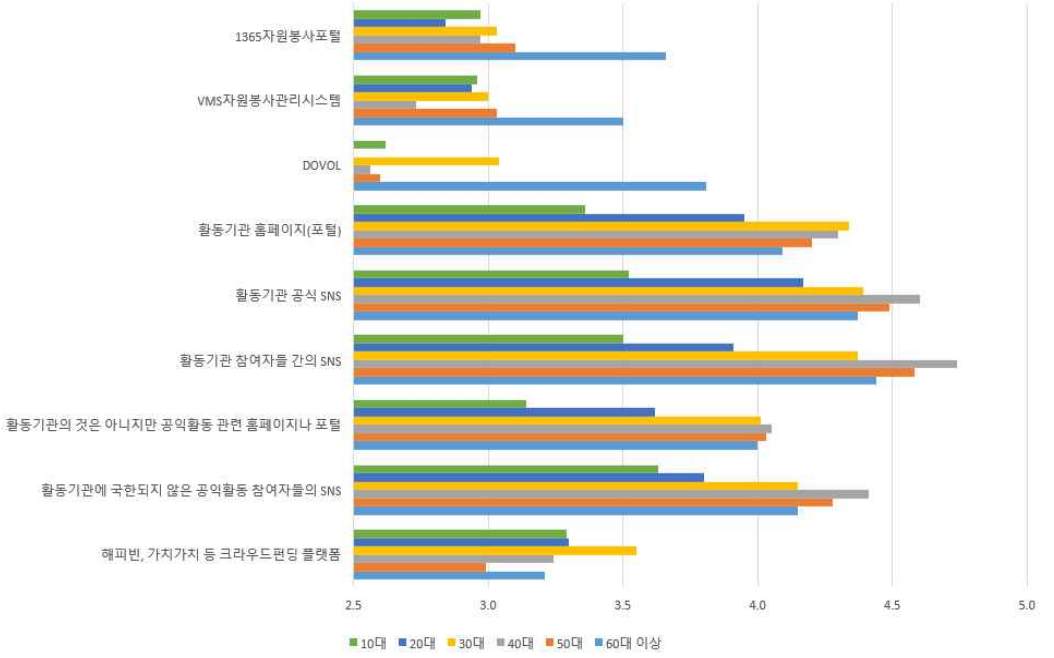

주: 척도- 거의 매일 6점, 주 1회 이상 5점, 월 1회 이상 4점, 분기 1회 이상 3점, 연 1회 이상 2점 연 1회 미만 1점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온라인 채널 이용 정도를 6점 척도로 하여 살펴보았더니 1365 자원봉사포털과 해피빈 같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제외한 나머지 온라인 채널에 대해 공익활동 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무소속 응답자들보다 이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20〉 참조). 특히 활동기관과 연관되지 않은 온라인 채널조차도 공익활동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7-20〉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 평균 이용현황

(단위: 점)

구분	공익활동단체 소속 여부			F값/유의확률
	소속	무소속	전체	
1365자원봉사포털	3.01	3.11	3.04	2.965/.085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2.75	3.24	2.97	56.711/.000
DOVOL	2.66	2.79	2.72	1.106/.294
활동기관 홈페이지(포털)	4.49	3.62	4.20	256.258/.000
활동기관 공식 SNS	4.67	3.90	4.43	192.709/.000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	4.65	4.00	4.46	121.056/.000
활동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 홈페이지나 포털	4.12	3.58	3.96	84.989/.000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4.34	3.90	4.21	46.181/.000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3.21	3.44	3.30	12.481/.000

주: 척도- 거의 매일 6점, 주 1회 이상 5점, 월 1회 이상 4점, 분기 1회 이상 3점, 연 1회 이상 2점 연 1회 미만 1점

〈표 6-16〉에서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별 이용 빈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표에서 이용 빈도가 다소 낮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대한 도움 정도를 응답자의 활동영역별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활동영역별로 유의한 차이(χ^2=120.459, p=0.000)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365자원봉사포털은 자원봉사 영역에 있는 응답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비율(92.9%)이 가장 높았으나, 반대로 도움이 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활동영역은 비영리민간단체(84.1%)와 관련된 응답자들로 나타났다(〈표 7-21〉 참조).

따라서 자원봉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포털은 자원봉사영역의 공익활동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다른 영역의 공익활동가에게는 상대적으로 도움 정도가 낮은 것을 봤을 때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 안에 모든 공익활동 영역을 포괄하는 것은 자칫 활동가에게 외면당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판단해야 한다.

〈표 7-21〉 활동영역별 '1365자원봉사포털'에 대한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도움 정도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합계	
마을공동체	17	(3.5)	50	(10.4)	50	(51.3)	50	(34.8)	50	(100.0)
비영리민간단체	19	(2.3)	115	(13.6)	115	(56.9)	115	(27.3)	115	(100.0)
자원봉사	17	(1.4)	70	(5.7)	70	(44.4)	70	(48.6)	70	(100.0)
전체	53	(2.1)	235	(9.2)	1,275	(49.8)	997	(38.9)	2,560	(100.0)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주요 정보 수집처 현황이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χ^2=384.274, p<.003).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은 공익활동단체의 SNS(36.2%)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24.1%)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7-22> 참조).

<표 7-22>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별 정보 수집처 현황

(단위: 명, %)

구분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					
	소속		무소속		전체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559	(25.3)	221	(13.1)	780	(20.0)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	217	(9.8)	405	(24.1)	622	(16.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161	(7.3)	159	(9.5)	320	(8.2)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유튜브 등)	801	(36.2)	326	(19.4)	1,127	(29.0)
네이버·다음 같은 일반 포털	177	(8.0)	275	(16.4)	452	(11.6)
개인 SNS(페이스북, 블로그,유튜브 등)	173	(7.8)	227	(13.5)	400	(10.3)
홍보용 팜플렛(리플렛)	40	(1.8)	29	(1.7)	69	(1.8)
간행물	22	(1.0)	10	(0.6)	32	(0.8)
기타	60	(2.7)	29	(1.7)	89	(2.3)
전체	2,210	(100.0)	1,681	(100.0)	3,891	(100.0)

연령계층별로 공익활동 시 정보를 수집하는 수집처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정보 수집처에도 유의한 차이(χ^2=380.974, p=.000)를 보였는데, 10대와 20대는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 이상은 공익활동 참여단체의 SNS에서 공익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7-23> 참조). 한편, 정보 수집처와 공익활동 지속기간 혹은 활동영역, 활동참여 형태 각각의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표 7-23〉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주요 정보 수집처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10 (14.1)	99 (13.0)	164 (16.7)	191 (19.8)	224 (27.8)	92 (30.0)	780 (20.0)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	31 (43.7)	193 (25.4)	113 (11.5)	138 (14.3)	98 (12.2)	49 (16.0)	622 (16.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3 (4.2)	61 (8.0)	113 (11.5)	69 (7.2)	55 (6.8)	19 (6.2)	320 (8.2)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3 (4.2)	150 (19.7)	270 (27.5)	331 (34.3)	284 (35.3)	89 (29.0)	1127 (29.0)
네이버·다음 같은 일반 포털	12 (16.9)	146 (19.2)	134 (13.6)	96 (10.0)	46 (5.7)	18 (5.9)	452 (11.6)
개인 SNS(페이스북, 블로그,유튜브 등)	6 (8.5)	84 (11.0)	146 (14.9)	91 (9.4)	54 (6.7)	19 (6.2)	400 (10.3)
홍보용 팜플렛(리플렛)	4 (5.6)	12 (1.6)	13 (1.3)	12 (1.2)	21 (2.6)	7 (2.3)	69 (1.8)
간행물	1 (1.4)	4 (0.5)	10 (1.0)	4 (0.4)	9 (1.1)	4 (1.3)	32 (0.8)
기타	1 (1.4)	12 (1.6)	20 (2.0)	32 (3.3)	14 (1.7)	10 (3.3)	89 (2.3)
전체	71 (100.0)	761 (100.0)	983 (100.0)	964 (100.0)	805 (100.0)	307 (100.0)	3,891 (100.0)

응답자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분석해 본 결과 평균적으로 약 5.7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24〉 참조). 10대는 평균 4.6개의 기능을 사용하는가 하면, 50대는 평균 6.3개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50대가 젊은 층보다 최소 1개 이상의 기능을 더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활동영역별로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살펴보면, 마을공동체 영역에 속한 응답자들이 평균 6.8개의 가장 많은 기능을 이용하고 있고, 자원봉사 영역에 있는 응답자들은 정보수집처의 제공 기능 중에서 평균 5.0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24〉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관련 주요 정보 수집처 기능 사용현황

(단위: 명, %)

구분		사용 기능 평균 수	표준편차	빈도
연령	10대	4.6620	4.14709	71
	20대	5.3022	3.46571	761
	30대	4.9644	3.36112	983
	40대	6.0176	3.48870	964
	50대	6.3019	3.58196	805
	60 이상	6.2736	3.69110	307

구분		사용 기능 평균 수	표준편차	빈도
공익활동 지속기간	1년 미만	4.1808	3.40874	625
	1년 이상~3년 미만	4.8996	3.42038	936
	3년 이상~5년 미만	5.8694	3.32458	559
	5년 이상~10년 미만	6.4079	3.46685	782
	10년 이상~15년 미만	6.4314	3.54802	503
	15년 이상	6.8313	3.35100	486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6.8549	3.37257	689
	비영리민간단체	5.9451	3.27823	1,348
	자원봉사	5.0210	3.65056	1,854
전체		5.6659	3.54355	3,891

모든 연령계층에서 정보수집처를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이었다. 2순위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을 보면, 10대와 20대는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이었고, 30대, 40대, 50대는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60대 이상은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기능이었다(〈표 7-24〉 참조). 따라서 연령대가 낮은 공익활동가에게는 공익활동 시간 혹은 노력에 대한 인증 기능이 중요하고 연령이 높아지면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기능과 공익활동단체간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마당 기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충분 정도를 4점 척도(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 별로 충분하지 않다 2점, 약간 충분하다 3점, 매우 충분하다 4점)화하여 활동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마을공동체 활동영역에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활동자(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지역 공익활동단체 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3점(약간 충분하다 이상)이상으로 평가하였다(〈표 7-25〉 참조).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영역의 응답자들은 모든 정보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충분하다(3점 이상)고 평가한 기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자원봉사 영역의 응답자들은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기능에 대해 모두 3점(약간 충분하다 이상)이상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정보수집처의 제공 정보에 대한 충분정도는 활동영역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5〉 활동영역별 정보수집처 제공 정보의 충분 정도

(단위: 점)

구분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3.01	2.89	3.14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3.01	2.85	3.19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3.02	2.96	3.10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2.93	2.86	3.06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2.87	2.77	3.02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2.95	2.84	3.10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3.02	2.88	2.98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2.96	2.83	3.08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2.98	2.80	3.07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2.91	2.80	3.04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3.02	2.85	3.03

주: 척도-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 별로 충분하지 않다 2점, 약간 충분하다 3점, 매우 충분하다 4점

[그림 7-6] 활동영역별 정보수집처 제공정보의 충분 정도

(단위: 점)

주: 척도-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 별로 충분하지 않다 2점, 약간 충분하다 3점, 매우 충분하다 4점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참여형태별로 정보수집처에서 이용하는 기능의 정보 충분정도를 보면,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들은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각 정보의 충분 정도를 모두 3점(별도 충분하지 않다 이하) 미만으로 평가한 것과는 완전 반대로,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정기적인 활동참여자는 각 정보의 충분 정도를 모두 3점(약간 충분하다 이상)이상으로 평가하였다(〈표 7-26〉 참조).

〈표 7-26〉 활동참여 형태별 정보수집처 제공 정보의 충분 정도

(단위: 점)

구분	활동참여형태			
	무급여 정기적 활동참여자	무급여 비정기적 활동참여자	급여 상근활동가	기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3.11	3.10	2.86	2.97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3.11	3.03	2.87	3.02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3.13	3.05	2.94	3.01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3.07	2.98	2.82	3.02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3.02	2.92	2.77	2.87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3.11	3.00	2.82	2.81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3.08	2.94	2.85	3.00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3.09	2.99	2.84	2.83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3.09	2.98	2.81	2.72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3.05	2.96	2.77	2.87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3.08	2.98	2.85	2.92

주: 척도-전혀 충분하지 않다 1점, 별로 충분하지 않다 2점, 약간 충분하다 3점, 매우 충분하다 4점

〈표 7-27〉에 의하면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주로 수집하는 수집처 중에서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해당 포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정도를 모두 3점(약간 충분하다 이상)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주된 정보수집처로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정보 제외한 나머지 기능에 대해 3점(약간 충분하다 이상)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을 제외하면 정보의 충분 정도를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일반 포털을 통해 공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에 필요한 정보가 모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일반 포털이 특정 영역의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대중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공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조차도 사람마다의 검색 스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서 그럴 것으로 판단된다. 〈표 7-27〉에서 특이한 점은 개인 SNS를 이용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에 대한 정보의 충분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면 개인 SNS는 인증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상세히 설명해주는 소통 공간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7-27〉 정보수집처별 제공 정보에 대한 충분 정도

(단위: 점)

구분	정보수집처								
	단체 홈페이지[1]	기존 관련 포털[2]	정부·지자체 홈페이지[3]	단체 SNS[4]	일반 포털[5]	개인 SNS[6]	홍보용 팜플렛	간행물	전체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3.04	3.22	3.09	2.96	2.84	3.01	2.90	3.06	3.03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3.03	3.28	2.86	2.97	2.99	3.11	2.87	3.00	3.06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3.08	3.10	2.81	3.02	2.94	3.08	2.95	3.00	3.03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3.03	3.09	2.79	2.90	2.90	2.99	2.94	2.80	2.96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2.98	3.13	2.76	2.81	2.79	2.86	2.88	2.41	2.89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3.08	3.06	2.93	2.89	2.90	3.01	3.04	2.56	2.97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3.07	3.03	2.83	2.93	2.69	3.01	2.92	2.69	2.95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3.02	3.10	2.90	2.89	2.95	2.94	3.09	3.00	2.97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3.04	3.04	2.89	2.84	2.88	2.93	3.12	2.78	2.95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3.02	3.09	2.93	2.81	2.96	2.90	2.81	2.86	2.92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3.01	3.05	2.86	2.95	2.88	2.92	2.89	2.80	2.96

주 1: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2: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
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4: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5: 네이버·다음 같은 일반 포털
6: 개인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응답자들의 주요 정보수집처별로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을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만족하는 비율(91.8%)이 가장 높았다(〈표 7-28〉 참조). 반면에 공익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간행물에서 얻고 있는 응답자들은 기존 온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62.5%)이 가장 낮았다.

〈표 7-28〉 정보수집처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 품질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10	(1.3)	129	(16.5	525	(67.3)	116	(14.9)	780	(100.0)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	4	(0.6)	47	(7.6)	437	(70.3)	134	(21.5)	622	(100.0)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6	(1.9)	59	(18.4)	225	(70.3)	30	(9.4)	320	(100.0)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	14	(1.2)	235	(20.9)	759	(67.3)	119	(10.6)	1,127	(100.0)
네이버·다음 같은 일반 포털	6	(1.3)	99	(21.9)	291	(64.4)	56	(12.4)	452	(100.0)
개인 SNS(페이스북, 블로그,유튜브 등)	2	(0.5)	75	(18.8)	255	(63.8)	68	(17.0)	400	(100.0)
홍보용 팜플렛(리플렛)	1	(1.4)	12	(17.4)	50	(72.5)	6	(8.7)	69	(100.0)
간행물	0	0.0	12	(37.5)	18	(56.3)	2	(6.3)	32	(100.0)
기타	2	(2.2)	26	(29.2)	54	(60.7)	7	(7.9)	89	(100.0)
전체	45	(1.2)	694	(17.8)	2,614	(67.2)	538	(13.8)	3,891	(100.0)

〈표 7-29〉은 공익활동과 관련된 온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관하여 활동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로, 활동영역별로 유의미한 차이(χ^2= 223.618, p=.000)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 혹은 신뢰성에 대하여 마을공동체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78.1%만이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 이상)고 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영역의 응답자들 중에는 71.3%,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 중에는 89.2%가 콘텐츠의 품질에 만족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영역의 응답자들은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대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연령계층별로 기존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콘텐츠의 품질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 가장 낮은 연령층은 40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χ^2=112.914, p=.000).

콘텐츠 품질 만족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의 공익활동 지속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χ^2=96.214, 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활동기간이 길수록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10년 이상~15년 미만의 공익활동기간을 가진 응답자들의 콘텐츠 품질 만족도(72.4%)가 가장 낮았고, 1년 미만 공익활동자의 만족도(88.7%)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참여 형태별로 살펴보면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 그룹이 콘텐츠 품질의 만족도(70.0%)는 가장 낮았고, 무급의 비정기적인 활동 참여자의 콘텐츠 품질 만족도(87.7%)는 가장 높았다(χ^2=191.346, p=.000).

〈표 7-29〉 활동영역별·연령별·활동지속기간별·참여형태별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채널이 제공하는 콘텐츠 품질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합계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7	(1.0)	144	(20.9)	475	(68.9)	63	(9.1)	689	(100.0)
	비영리민간단체	23	(1.7)	364	(27.0)	847	(62.8)	114	(8.5)	1348	(100.0)
	자원봉사	15	(0.8)	186	(10.0)	1292	(69.7)	361	(19.5	1854	(100.0)
연령	10대	1	(1.4)	4	(5.6)	54	(76.1)	12	(16.9)	71	(100.0)
	20대	4	(0.5)	73	(9.6)	577	(75.8)	107	(14.1)	761	(100.0)
	30대	15	(1.5)	146	(14.9)	665	(67.7)	157	(16.0)	983	(100.0)
	40대	20	(2.1)	221	(22.9)	602	(62.4)	121	(12.6)	964	(100.0)
	50대	1	(0.1)	196	(24.3)	513	(63.7)	95	(11.8)	805	(100.0)
	60대 이상	4	(1.3)	54	(17.6)	203	(66.1)	46	(15.0)	307	(100.0)
활동 지속기간	1년 미만	3	(0.5)	74	(11.8)	435	(69.6)	113	(18.1)	625	(100.0)
	1년 이상~3년 미만	10	(1.1)	115	(12.3)	657	(70.2)	154	(16.5)	936	(100.0)
	3년 이상~5년 미만	7	(1.3)	108	(19.3)	384	(68.7)	60	(10.7)	559	(100.0)
	5년 이상~10년 미만	11	(1.4)	144	(18.4)	528	(67.5)	99	(12.7)	782	(100.0)
	10년 이상~15년 미만	7	(1.4)	132	(26.2)	313	(62.2)	51	(10.1)	503	(100.0)
	15년 이상	7	(1.4)	121	(24.9)	297	(61.1)	61	(12.6)	486	(100.0)
활동 참여형태	무급 정기적 활동참여자	17	(2.0)	141	(16.2)	577	(66.3)	135	(15.5)	870	(100.0)
	무급 비정기적 활동참여자	13	(0.7)	212	(11.6)	1,282	(70.2)	318	(17.4)	1,825	(100.0)
	유급 상근활동가	14	(1.3)	312	(28.7)	690	(63.4)	72	(6.6)	1,088	(100.0)
	기타	1	(0.9)	29	(26.9)	65	(60.2)	13	(12.0)	108	(100.0)
	전체	45	(1.2)	694	(17.8)	2,614	(67.2)	538	(13.8)	3,891	(100.0)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4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조사하여 활동영역별 점수를 분석한 결과, 마을공동체영역의 응답자들은 각 기능별 중요도 평균점수보다 상회하는 정도의 중요도를 보였는가 하면, 자원봉사영역의 응답자들은 각 기능들이 중요하다고는 응답하였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표 7-30〉 참조). 마을공동체영역과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제시한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14가지 기능 중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들었고, 비영리민간단체영역 응답자들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공익활동 참여자간의 소통 경로'를 꼽았다. 특히,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능을 마을공동체 영역의 응답자들은 타 활동영역에 있는 응답자들보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결과와 함께 고려해본다면, 기존의 공익활동 과정에서 (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을 제외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더 많이 활용해왔던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보다는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참여자들이다. 이들은 특히 공익포털만이 아니라 현장의 활동기관 홈페이지나 특히 SNS 기능을 자원봉사자들보다 더 많이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들은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능수행 정도에 대해 자원봉사자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할 기능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표 7-30〉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	전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57	3.42	3.37	3.42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58	3.46	3.31	3.41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71	3.51	3.42	3.50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68	3.50	3.35	3.46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3.58	3.48	3.28	3.41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3.59	3.50	3.35	3.44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3.63	3.49	3.34	3.45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3.62	3.51	3.40	3.48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3.58	3.51	3.34	3.44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3.64	3.51	3.35	3.46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3.64	3.50	3.33	3.45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3.56	3.38	3.29	3.37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3.58	3.44	3.36	3.42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	3.49	3.30	3.26	3.31

주: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

[그림 7-7]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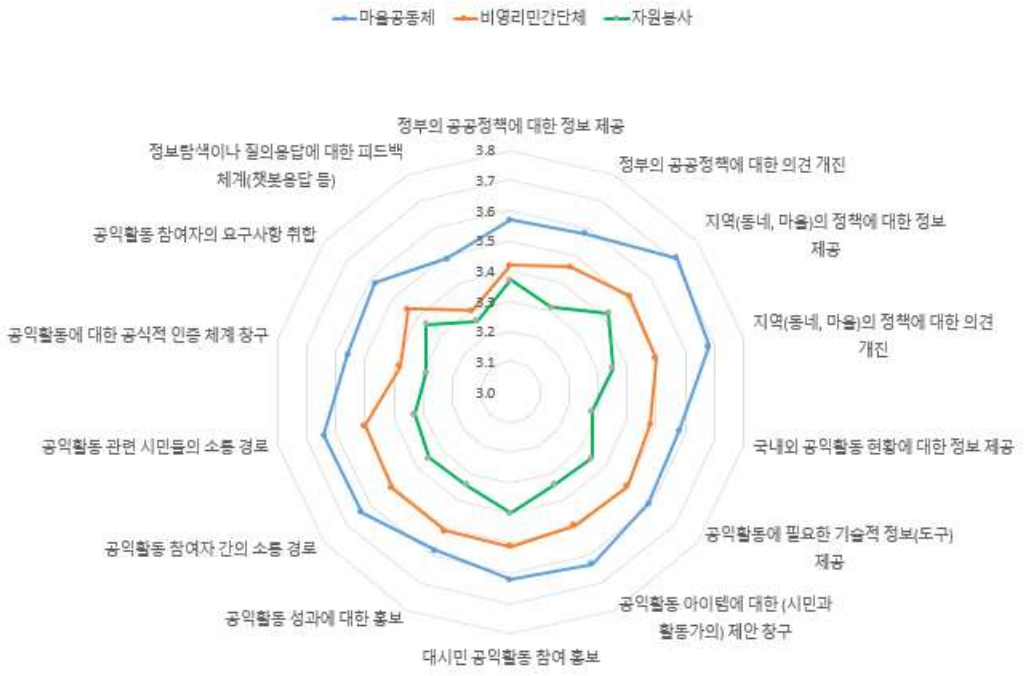

주: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

연령계층별로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층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고, 30대는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기능에서 중요도 점수가 가장 높았다(〈표 7-31〉 참조). 결국 공익활동가들은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31〉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구분	연령계층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31	3.33	3.34	3.53	3.50	3.36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21	3.26	3.36	3.55	3.50	3.34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34	3.36	3.42	3.63	3.61	3.45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30	3.29	3.36	3.60	3.56	3.44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3.23	3.28	3.36	3.52	3.41	3.26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3.34	3.32	3.41	3.54	3.54	3.31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3.23	3.26	3.37	3.59	3.58	3.40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3.21	3.32	3.42	3.61	3.58	3.42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3.27	3.29	3.40	3.58	3.53	3.36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3.18	3.32	3.40	3.56	3.58	3.41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3.23	3.28	3.38	3.57	3.57	3.38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3.17	3.27	3.32	3.45	3.49	3.29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3.23	3.33	3.39	3.51	3.51	3.35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 (챗봇응답 등)	3.23	3.20	3.26	3.38	3.43	3.28

주: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

공익활동단체 소속여부에 따라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는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봤더니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14개 기능 모두에서 중요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표 7-32〉 참조). 특히 공익활동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능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기능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과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기능이었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응답자들의 경우는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7-32〉 활동단체 소속여부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구분	활동단체 소속여부	
	소속	무소속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48	3.34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50	3.31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57	3.41

구분	활동단체 소속여부	
	소속	무소속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55	3.34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3.50	3.29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3.52	3.34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3.54	3.32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3.55	3.38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3.53	3.33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3.57	3.31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3.55	3.31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3.45	3.27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3.49	3.34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	3.37	3.24

주: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

응답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14개 기능 모두를 다른 지역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33〉 참조). 특히,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기능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7-33〉 지역별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구분	지역			유의확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42	3.39	3.53	0.002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40	3.40	3.55	0.000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3.48	3.52	3.63	0.000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43	3.49	3.63	0.000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3.39	3.42	3.52	0.001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3.43	3.46	3.54	0.004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3.42	3.46	3.58	0.000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3.47	3.47	3.56	0.051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3.44	3.44	3.52	0.103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3.44	3.46	3.58	0.001

구분	지역			유의확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3.43	3.45	3.55	0.004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3.35	3.39	3.50	0.000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3.40	3.44	3.55	0.000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	3.29	3.34	3.44	0.001

주: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 별로 중요하지 않다 2점, 약간 중요하다 3점, 매우 중요하다 4점

공익활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4점 척도로 활동영역별 분석을 해보았는데 활동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항목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영역 응답자들은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표 7-34〉 참조). 한편,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 수준이 3.09점으로 분석됨에 따라 활동영역과 상관없이 새로운 공익활동 플랫폼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동의정도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신규 플랫폼 구축에 대해 마을공동체의 점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NPO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두 집단이 점수에서 비슷한 수준이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점수가 두드러지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새로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 지역별로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와 자원봉사자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인다.

활동이력의 인증체계를 기존 자원봉사 인증체계와 별도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실제의 정책에서도 기존 자원봉사 인증체계와 신규의 공익활동 인증체계는 어떤 관계를 가지도록 할 것인지, 혹은 통합과 분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모색이 중요함을 함의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이 제3섹터와 같은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의 동의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자원봉사자의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지역별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동의가 나타나는데 NPO 활동가의 동의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제3섹터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동의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표 7-34〉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구분	활동영역			
	마을공동체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	전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3.56	3.37	3.33	3.38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3.37	3.21	3.14	3.20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 필요	3.39	3.31	3.32	3.33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이력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44	3.17	3.24	3.25
공익활동 인정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구별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43	3.27	3.13	3.23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3.25	2.95	3.11	3.08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 좋다	3.38	3.17	3.22	3.23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25	3.10	3.03	3.09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30	3.15	3.11	3.16
공익활동 플랫폼은 정부의 관여 없이 제3섹터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3.42	3.37	3.07	3.24

주: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동의한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

[그림 7-8] 활동영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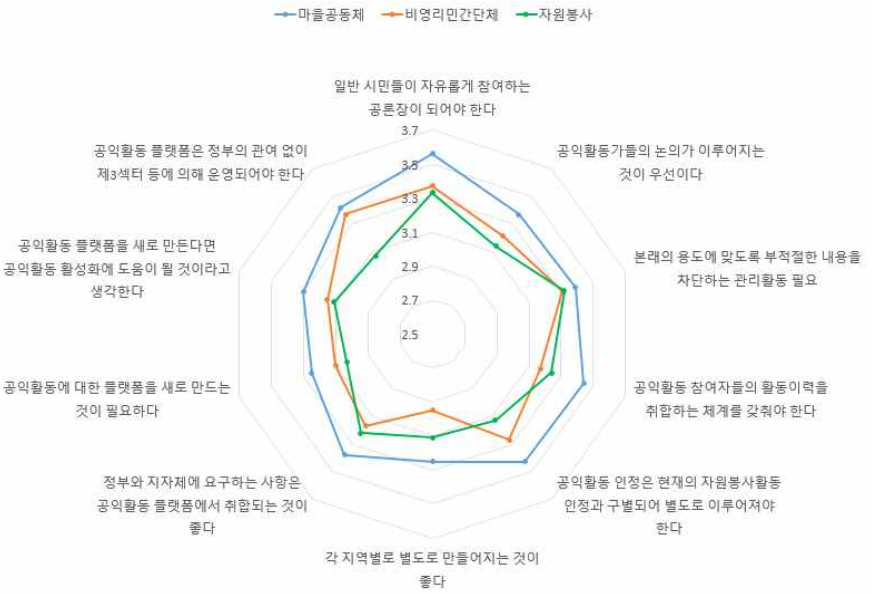

주: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동의한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

연령계층별로 공익활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 10가지 항목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10대 및 30대 이상 연령계층은 10가지 항목 모두 동의하는(약간 동의한다 이상) 수준으로 나온 반면에, 20대는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다소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 다른 항목과 비교해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는 항목의 동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7-35〉 참조).

〈표 7-35〉 연령계층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구분	중요 정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3.28	3.29	3.27	3.48	3.50	3.39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3.06	3.06	3.13	3.27	3.31	3.33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 필요	3.37	3.23	3.33	3.34	3.39	3.34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이력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35	3.04	3.21	3.28	3.34	3.28
공익활동 인정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구별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07	3.09	3.23	3.29	3.32	3.18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3.11	2.97	3.04	3.10	3.16	3.18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 좋다	3.20	3.11	3.21	3.29	3.30	3.26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10	2.98	3.08	3.14	3.16	3.08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13	3.06	3.13	3.20	3.23	3.18
공익활동 플랫폼은 정부의 관여 없이 제3섹터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3.10	3.02	3.20	3.36	3.37	3.20

주: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점,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2점, 약간 동의한다 3점, 매우 동의한다 4점

지역별로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분석했더니 읍면 지역의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및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을 포함한 10가지 방향 모두 대도시나 중소도시 지역보다 동의수준이 높게 나타났다(〈표 7-36〉 참조). 특히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도 타 지역보다 읍면 지역 응답자에게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7-36〉 지역별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

(단위: 점)

구분	지역			유의확률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3.38	3.37	3.50	0.006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3.18	3.22	3.36	0.000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 필요	3.31	3.33	3.45	0.004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활동이력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3.23	3.27	3.37	0.001
공익활동 인정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구별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3.21	3.26	3.28	0.119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3.05	3.10	3.21	0.002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 좋다	3.22	3.24	3.34	0.010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07	3.09	3.24	0.002
공익활동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3.14	3.15	3.33	0.000
공익활동 플랫폼은 정부의 관여 없이 제3섹터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3.23	3.21	3.38	0.002

본 조사는 기존 공익활동가의 활동을 유지시키고 확장시켜 공익활동이 활성화되려면 공익활동가들의 인식 및 욕구를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여 이들의 욕구를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조사대상을 공익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로 제한하였다.

제4절 시사점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연령은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30대, 40대, 50대가 전체 응답자의 70.8%였고, 그 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부터는 공익활동 시작연령과 현재 연령 간에 간격이 조금씩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1〉 참조). 공익활동에 투입된 연간 소요시간을 환산해보면 40대가 가장 많은 시간을 공익활동에 쏟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30대에 공익활동을 시작해서 40대에 가장 활발히 공익활동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7-2〉 참조). 10대가 공익활동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14.5세이고, 20대가 공익활동을 시작한 연령은 평균 20.4세, 30대 평균 27.4세, 40대 평균 33.5세, 50대 평균 39.2세, 60대 이상 50.3세에 공익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984.224, p=.000). 나이가 들수록 공익활동을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되며, 또한 공익활동 시작연령은 연령이 많을수록 현재 나이보다 점차 젊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공익활동은 어린 나이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청소년이 공익활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자원봉사 관련 교육제도의 변화로 청소년 자원봉사 등 공익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공익활동 참여를 원하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더불어 공익활동에 관한 정보를 쉽게 수집하고 공익활동에 관한 관심사를 서로 논의·토론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만을 위한 자원봉사포털 DOVOL의 이용은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6-16〉 참조).

공익활동 활동분야 중 봉사·기부 및 보건·의료·건강분야는 1인 활동가 혹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활동가 비율이 높고 기후·환경·생태, 교육·학술·연구·언론, 여성·가족, 인권·민중·소수자·다문화, 평화·통일·민족,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 경제·소비자·과학·기술·IT, 국제협력·국제연대, 권력감시·사회정의 등의 활동분야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10대, 20대의 주된 공익활동분야로는 봉사·기부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청소년세대에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봉사활동 외에는 많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교육 부족을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원봉사영역은 공식적인 자원봉사 인증 포털이 있어 20대 이하 청소년에게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공익활동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하는 곳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폭 넓은 공익활동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계층별 공익활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10대는 공익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생각과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는 비율이 20대, 30대보다 높은 것을 보면 공익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어려서 경험토록 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7-4〉 참조). 결국 청소년에게 적합한 인정 방안과 청소년이 봉사 외에도 다양한 공익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당한 수집처가 있거나 기존 포털에 공익활동단체 관련 콘텐츠를 보완해서든 청소년의 공익활동분야 선택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하고 있는 공익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높게 조사되었다(〈표 7-4〉 참조). 이런 결과는 연령이 높은 잠재적 공익활동가에게 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일조한다는 생각과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은 공익활동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원봉사 영역에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낮은 반면에, 비영리민간단체영역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가를 독립된 직업군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표 7-6〉 참조). 활동가로서 전문성 역시 자원봉사영역의 응답자들은 공익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졌다는 생각이 낮은 반면에 마을공동체영역의 응답자들은 나름대로 공익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다르게 말하면, 자원봉사영역은 다소 지식과 기술이 없더라도, 혹은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가능한 공익활동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영역은 지식과 기술, 전문성 없이도 공익활동 활성화와 공익활동가 저변을 확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영역이 지식과 기술, 전문성이 있어야만 활동 가능한 영역으로 봐서도 안 된다.

응답자의 95.4%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보다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을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활동의 인정은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필요할 수 있는데, 공익활동 지속기간이 짧을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고,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는 활동지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동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8〉 참조). 한편, 모든 연령층에서도 공익활동에 따른 인정은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표 7-7〉 참조). 따라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시키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작동되기를 바라는 공익활동가들의 생각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응답자 대다수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지만 필요치 않다고 했던 응답자 180명의 이유를 보면 연령계층에 따라, 공익활동단체소속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단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이 필요치 않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

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 무소속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을 반대하였다. 30대 이하는 경쟁과 갈등 유발을 걱정하였고, 40대이상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인데 여기에 경쟁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인정을 공인하려면 공신력 있는 기관(또는 정부)의 개입이 따라야 하는데 시민사회 활동에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

응답자들 중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욕구가 강할수록 본 조사에서 사회적 인정방안으로 제시했던 10가지 인정방안(사회적 인정,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 기업 인센티브, 단체 조세감면제도 확대 등) 모두 필요하다는 욕구가 다른 합리적 보상 방식을 선호하는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12〉 참조). 특히, 공익활동가를 직업면으로 그리고 경력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하였다. 그러나 공익활동을 경제적 보상보다 사회적으로 존중하고 인식하는 태도로 충분하다고 선택한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익활동 지속기간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의 선택에도 차이를 보였다(〈표 7-13〉 참조). 활동기간이 3년 미만 응답자들은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3년 이상 활동 기간을 가지는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 활동 영역별로도 가장 합리적 인정방식에 차이를 두었는데, 자원봉사영역은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고, 나머지 영역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60대 이상은 '사회적 존중'이 가장 합리적인 인정방식이라고 하였고, 10대, 20대, 30대는 '공공서비스 방식'을 가장 선호, 40대, 50대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보상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합리적인 사회적 인정은 연령과 활동영역, 활동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기 보다는 활동가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익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채널을 평균적으로 최소 4종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10대에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채널은 '활동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로 분기 1회 이상 사용, 20대와 30대, 40대는 '활동기관 공식 SNS'로 월 1회 이상 사용, 50대와 60대 이상은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를 월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7-19〉 참조). 특히 30대 이상 연령층은 이용하는 채널의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채널마다 방문하는 빈도 역시 20대 이하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다. 이것은 〈표 7-2〉의 공익활동에 투입하는 시간과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만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횟수와 시간이 많을수록 온라인 채널 이용 빈도

역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봉사와 관련된 채널 중 1365자원봉사포털에 대하여 활동영역별로 도움정도를 보면,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에게는 1365자원봉사포털이 공익활동에 도움을 주지만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영역 활동가에게는 도움정도가 낮았다. 이처럼 활동영역별 활동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공익활동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면 자칫 공익활동가들에게 외면당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익활동가들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온라인 채널에 있어서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0대 및 20대는 기존 포털, 예컨대 1365자원봉사포털 같은 공익관련 포털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고, 30대 이상은 공익활동 참여단체의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공익활동 지속기간, 활동영역, 활동참여 형태와 정보수집처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없었다. 다시 말해서 정보수집처는 활동영역이나 활동기간, 활동참여 형태와 무관하게 본인의 공익활동가들이 이용하는 정보수집처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평균 약 5.7개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으며, 10대는 평균 4.6개, 5대는 평균 6.3개의 기능을 사용하였다.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기능이었다. 연령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본 바에 의하면 2순위에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0대와 20대는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기능이, 30대, 40대, 50대는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기능, 60대 이상은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기능이었다. 따라서 연령대가 낮은 공익활동가에게는 공익활동 시간 혹은 노력에 대한 인증 기능이 중요하고 연령이 높아지면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기능과 활동가 간 소통 기능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활동가들이 이용하는 정보수집처의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정도는 비영리민간단체영역의 응답자들의 경우 모든 면에서 충분치 않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에 마을공동체영역 응답자들은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기능',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공익활동 성과 홍보 알림 기능', '활동자(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지역 공익활동단체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충분하다는 의견이었다.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은 그들이 사용하는 정보수집처의 기능 중 '활동자(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결국 마을공동체나 자원봉사영역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분야는 스펙트럼이 훨씬 넓기 때문에 모든 활동분야를 아우르는 비영리민간단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정보수집처의 콘텐츠 품질에 있어서 응답자들은 기존 공익활동 관련 포털의 신뢰도를 높이 평가하였고, 간행물에서 얻는 콘텐츠의 품질은 낮게 평가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영역 응답자들은 온라인 채널의 콘텐츠 품질을 타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특히 활동 지속기간이

길수록 콘텐츠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활동참여 형태별로는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그룹이 콘텐츠 품질을 낮게 평가하였으나 무급의 비정기적인 활동가의 콘텐츠 품질 만족도는 가장 높았다. 이것은 유급의 상근활동가는 공익활동 전문가로서 프로그램 기획 등 전문적인 콘텐츠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공익활동 플랫폼은 CMS(Contens Management System) 같은 콘텐츠 관리시스템 및 콘텐츠의 품질을 보증하는 일련의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기능은 연령에 따라 중요도가 조금씩 다른데, 30대를 제외한 연령계층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30대는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과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기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공익활동가들은 거주 지역과 관련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아주 중요하다.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과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기능에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공익활동 플랫폼의 구축방향에 있어서는 활동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항목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영역 응답자들은 타 영역보다 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다.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에 대한 항목은 활동영역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익활동 플랫폼이 필요하긴 하였지만 새로운 공익활동 플랫폼 필요성에 대한 자원봉사영역 응답자들의 동의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원봉사영역은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1365자원봉사포털,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시스템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항목에 대해 20대는 다소 낮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30대, 40대, 50대의 경우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는 항목의 동의 정도는 다른 항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읍면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은 본 조사에서 제시했던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등을 포함한 10가지 구축 방향 모두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다. 결국, 공익활동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은 공익활동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능, 즉 ① 한 곳에서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그리고 공익활동가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②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활동기관 참여자들 간의 SNS가 공익활동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듯이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가 요구하는

기능이면서 자원봉사영역에 부족한 기능인 ③공익활동 참여자 간 소통 기능 등은 최소한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은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인정방안의 요구와 하나 이상의 인정방식 마련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익활동에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의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활동가들의 기존 온라인 채널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연령과 활동영역, 지역, 활동기간 등 공익활동가의 특성에 따른 욕구 파악 및 공익활동 플랫폼이 가져야 할 기능적 측면을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향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과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 포인트를 제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Ⅳ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08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과 정책과제

제1절 사회적 인정 방안 관련 주요 쟁점

본 연구에서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에서 응답자의 95.4%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응답 결과에서 알 수 있듯 공감대가 높은 편이다. 이는 시민사회에서 펼쳐지는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를 띤 노동이 온전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음이다.

한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둘러싸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정책 쟁점에 관한 사회적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서 핵심적 이슈는 '누가,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인정 대상과 인정 주체),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인정 내용과 범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인정 방법과 수단)에 관련한 것이다. 그에 앞서 '공익활동을 정의할 수 있는가', '공익활동은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가',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활동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필요한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에 대해 사회적 인정이 마땅한가', '자원적 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이 정당한가'와 같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의 필요성과 목적에 도전하는 근본적 물음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그 밖에 '공익활동 생태계는 매우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의 복잡한 정책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가', '시민사회 정책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등 정책 설계 차원에서 의구심을 담은 질문도 제기된다. 이들 질문이 모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숙의와 공론을 거쳐야 할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45]에서도 보상과 인정의 개념 정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및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인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주요 이슈를 둘러싼 입장의 차이도 드러났다. 활동가들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 무임금 봉사나 헌신이라는 인식을 탈피하여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대한 공적 지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견해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요구는 정부에 대한 종속, 시민사회의 자립과 활동가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인정은 '운동적 성과'라는 입장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에 관한

45) 대표적으로 서울시NPO지원센터와 시민이 주최한 강한시민사회포럼(2019)을 들 수 있다. 강한시민사회4차포럼과 6차포럼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관련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요구가 동일시되면서 시민의 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참여라는 시민적 덕목, 시민참여의 자원성 등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강조했던 가치와 상충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책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공익활동 경력 인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른바 자격증으로 연상되는 인정 행위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과 시민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의 주체가 행정이라는 점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주도의 호혜적 인정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익활동 현장에서 제안되는 현 시민사회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사회참여형 기본소득, 참여소득제 등과 같은 전환적 대안도 향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체계화할 때 대두될 쟁점이다.

현재까지 백가쟁명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절차를 거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간 인증, 실비 보상 등 이미 다양한 인정 제도를 시행한 자원봉사계의 경험을 냉철히 평가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1.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첫 번째 쟁점은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즉 사회적 인정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공익활동의 정의와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제기되는 쟁점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 개념인 공익활동에 관한 정의가 명료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다면, 이는 정책 설계 시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장에서 서술한 것처럼 공익활동을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공동체적 가치와 도덕적 자원을 공공의(집합적) 힘으로 변형시키는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공공의 이익과 그것을 추구하는 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을 둘러싼 이론적·실천적 쟁점들이 공익활동의 개념적 내포와 외연의 명료한 해석을 어렵게 한다. 또한, 법령에서 공익활동을 정의한 사례가 있지만[46], 시민사회 관련 정책을 제도화할 때 공익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46)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의 권리 보호와 증진,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3조 2.),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2조 4.), "강원도민의 권리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다만,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강원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구리시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구리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조 2.), 이 외에 공익신탁법(2조)에서도 공익사업을 학문 · 과학기술 · 문화 · 예술 증진 목적 사업, 사회경제적 약자의 복지 증진 목적 사업, 아동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목적 사업,근로자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목적 사업, 사고 · 재해 또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목적 사업, 수용자 교육과 교화 목적 사업, 교육 · 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발달 및 인성 함양 목적 사업,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 증진 목적 사업, 사상 · 양심 · 종교 ·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 목적 사업,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 목적 사업, 환경 보호와 정비 및 공중 위생 또는 안전 증진 목적 사업,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목적 사업 등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매우 포괄적이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서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 장학금 또는 연구비

정의가 분명하지 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그로 인해 제도화가 지체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익활동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앞 장에서 언급한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거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은 사회마다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이론적 탐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성되고 또 변화하는 것이므로,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하는 개념에 이르지 못했다고 새로운 문화와 제도에 대한 설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현재 법령 체계에서도 공익과 공익활동, 공익조직(단체, 법인)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지 않다.

따라서 현재 제도적 수준에서 규정한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현황을 비롯한 공익 생태계에 대한 이해, 공익활동가들의 정책 욕구, 공익에 관한 시민의식,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정책 수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심하고 정교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을 통해 당대의 공익과 공익활동에 관한 정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 주체와 환경의 변화, 시민들의 공익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에 조응하는 공익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우선적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지, 공익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법령을 바탕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사회적 인정의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익법인법과 공익신탁법,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 여러 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공익활동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정책 과제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큰 정책 목표에서 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칭) 시민사회 발전기본법과 같은 시민사회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47]되었지만,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다. 또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있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공익법인을 정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익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현재 발의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2조 1.)에서 공익활동이란 "사회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을 위하여 시민, 법인 또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의 목적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47) 현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은 세 건 발의되어 있다.

규정(대통령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되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을 비롯한 정부의 공익활동 촉진정책이 지체되고 있어,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상하고 있다.

2.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

두 번째 쟁점은 사회적 인정의 대상에 관한 것으로, 누구를, 누구에 대해 인정할 것인가이다. 이는 첫 번째 쟁점인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와 직접 연관된 의제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를 제도화할 경우 누구를, 혹은 어떤 단체를 인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즉 누구를 공익활동가, 공익활동단체로 규정할 것인가에 관한 쟁점이다.

시민사회 영역의 공익활동가와 흔히 비교되는 직업군인 사회복지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주체에 관한 정의가 법 제도에 명문화되어 있어 인정 체계를 설계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전반에서 펼쳐지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을 가늠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현행 조례의 규정을 따르면, 공익활동 주체는 개인과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대상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공익활동 주체를 크게 개인 차원의 공익활동가와 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법인, 비영리 사단법인 등 조직적 차원으로 구분하더라도, 주체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공익활동에 결합하는 양상이 달라 사회적 인정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공익활동가에 관한 정의만 하더라도 사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에서부터 공익활동을 소득 활동으로 삼는 사람, 직업으로서 조직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 활동가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등 관점과 분류의 목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이형진 외, 2020 : 8). 공익을 실현하는 조직에 대한 정의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법령상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하여 임의적 적용이 가능하며, 공익성보다는 형식적 조건을 우선하고 있어 공익활동 주체의 다양한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시민 공익활동 지형의 변화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을 분명히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 간 경계가 흐릿해지고, 상호 교차 및 융합적 활동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공익활동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영리와 비영리의 확고한 구분을 대체하는 '새로운 이익(new profit)'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사회적기업, 소셜 벤처, 벤처 자선조직 등 전통적인 부문을 교차하는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고 있다(이영숙, 박영선, 박소은 외, 2022 : 12-14).

다른 한편, 정부의 시민사회 정책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등 시민사회 제 분야마다 독자적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는 실상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을 규정하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을 쓰는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는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지, 단체 설립의 목적과 유형은 어떠한지, 공익활동을 할 때 법·행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지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의 조건과 양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에 관한 이슈는 매우 복잡하고도 예민한 쟁점이다.

첫 번째 쟁점과 마찬가지로 공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도적 수준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시민사회의 다양성이다. 공익활동의 인정 대상을 규정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형식적 조건을 앞세우다 보면 시민사회 공익활동 생태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 공익활동 주체 간 위계질서를 발생시켜 시민사회의 연대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인정의 대상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익활동 주체 간에 불필요한 긴장과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익활동 생태계에 새로 진입하여 공익활동 경험이 부재하거나, 조직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사회적 인정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이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어 비영리스타트업, 1인 독립활동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공익활동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김현아, 2019 : 33-3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시민사회 생태계에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전보다 시민사회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성은 건강한 시민사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자,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변화·혁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에도 기여한다. 시민사회 생태계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원칙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에서 형식적인 요건보다는 공익성을 핵심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익활동 주체의 공익성에 대한 정체성과 자기 승인 여부를 우선한다면, 사회적 인정을 통해 더욱 많은 공익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성장하여 생태계가 풍요로워질 것이다. 정부도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활동 주체의 다양성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정책의 중요한 방향과 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누가 인정할 것인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서 누가 공익활동을 인정할 것인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한 쟁점도 매우 중요하다. 공익활동 주체가 매우 다양한 것처럼, 공익활동을 인정하는 주체 역시 다양할 수 있다. 공익활동을 하는 당사자 간 상호 인정, 시민사회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정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존중 방안을 호혜적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FGI에서도 시민사회 내부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가치와 활동가에 대한 존중의 문화를 중요한 사회적 인정 방안으로 꼽았다.

그러나 공익활동 현장에서 한국표준직업 분류상 공익활동가 직업군 인정, 공익활동 경력 인정, 시민참여소득, 시민 공익의 날 제정 등과 같은 사회적 방안이 주로 제안되고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누가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공익활동의 인정 주체로 정당한가'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서도 누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 성립할 수 있지만, 현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둘러싼 논의의 장에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정부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누가 인정할 것인가란 쟁점은 시민사회 내부의 상호 인정을 넘어 법 제도적 근거하에 공적인 권위를 갖는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원적이고 자율적인 공익활동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성격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 질문에서는 공익활동은 사회가 의뢰한 노동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과 자율의지에 의한 활동이란 특성이 도드라진다. 따라서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적 가치 추구 활동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시혜적 조치가 될 수밖에 없어 결국 정부에 종속되고, 시민사회의 자립과 시민운동가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본다(염형철, 2019).

FGI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인정을 하는 주체가 되었을 때 시민 공익활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사회운동의 특성이 강하거나, 정부와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는 권력감시운동형 조직의 경우 특히 이에 관한 우려가 큰 편이다. 본 연구의 욕구조사에서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절반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며,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여기에 공익활동 인정 주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16.1%)까지 더하면, 사회적 인정 주체에 관한 이슈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에서 매우 예민한 이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긴장 관계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 정도가 낮은 현재 상황도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에서 현실적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 간 의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던 시민공익위원회를 둘러싼 논쟁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주체와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익법인법 정부개정안의 핵심 이슈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시민사회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 별도 행정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시민사회에서 시민공익위원회의 독립적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 행정당국이 자의적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한 폐단 때문이었다. 공익단체들은 공익성 심사에서부터 공익법인 설립 허가에 이르기까지 총괄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공익위원회가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정부의 관리와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와 시민사회 관계라는 경험적 차원의 문제와 더불어 공익활동에 관련한 사안이 행정의 체계에서 작동될 때 발생할 문제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현재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술활동증명 사례도 중요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술활동증명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문화예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는 시행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원분야, 자료 심사 등을 둘러싸고 문화예술인들의 공정성 다툼이 제기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성을 인정하여 사회적 인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이슈에서 중요하게 삼아야 할 원칙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주요 수요층인 시민사회에서 정부 역할에 정당성을 제기할 경우 정책 효능감은 낮아지고, 결국 정책의 원래 목적과 취지는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특히 공익활동이 창출한 가치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고, 그동안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가 대체로 회계 투명성에 치중하거나 양적 지표에 의존하는 등 한계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때로 집권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사회가 도구화되거나 정치의 희생양이 된 예도 있었기에 정부가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는 태도는 특히 중요하다.

향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설계할 때 정부가 직접 관장하거나 개입하는 방안보다는 독립적 위상을 갖춘 기구에서 인정 기능을 담당하여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국과 호주는 독립된 행정위원회에서 공익성 심사 및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즉 구체적인 인정 방안을 둘러싼 쟁점도 향후 정책 설계와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쟁점이다. 사회적 인정 사례 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정 방안은 크게 공익활동을 가치있다고 받아들이는 인정(recognition)과 공익활동에 대해 무엇인가를 주는 구체적 표현인 보상(reward)으로 구성된다.[48] 인정은 목적적 개념으로 이해되며, 보상은 수단적 의미가 강조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남기철, 2022 : 260). 인정과 보상 방안은 형태와 가시성 여부, 내용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세부 방안마다 고유한 취지와 맥락을 지니고 있다. 다른 한편 강조하는 바에 따라 유형 구분이 엇갈리기도 하며, 하나의 유형으로 국한하기 어려운 예도 있다. 자원봉사 분야의 인정 사례를 살펴보면, 인정은 결과나 성과를 기반에 두는 반면, 감사는 그 업적보다는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일리지제도는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따라 지급한다는 점에서 활동에 대한 인정이지만, 동기부여라는 목적을 위한 전략적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정책 쟁점은 몇 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다양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가운데 물질적 인정, 경제적 보상에 관한 것이다. 단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은 자원성, 무대가성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보상에 대한 활동가 인식도 일률적이지 않다.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탐구하는 한 연구에서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하나로 경제적 보상과 시민사회의 자립과 활동가의 자존감 훼손을 대립시키는 설문[49]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중립적 견해를 밝혔다. 부정적인 응답률은 40%, 긍정적인 응답률은 34%로, 강한 부정과 긍정의 극단 값을 제외하면 부정과 긍정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높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지향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형진 외, 2020 : 27). 앞에서 소개된 사회적 인정 사례연구 결과에서도

48)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인정보상의 개념인 실비보상 혹은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사례 분석에서 서술한 것처럼, 실비는 보상이 아니라 활동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인센티브는 가치에 대한 인정의 의미보다 동기부여라는 구체적 목적을 위한 전략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정진경 외, 2008 ; 정진석, 조미정, 채현탁, 2009).

49)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한 방법으로 경제적 보상과 관련된 정책,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것이 시혜적인 조치, 정부에 대한 종속, 나아가 시민사회의 자립과 활동가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견해와 함께 활동가와 단체들이 책임질 몫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귀하는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마을공동체 영역에서는 참여자 공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직접적인 자조 활동이라는 점에서 금전적 보상 방식의 인정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린 바 있으며,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경제적 혜택 위주의 인정에 관한 문제점과 한계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상이한 연구 결과도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인정 방식 중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을 묻는 욕구 조사에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원(31.8%), 자발적인 선택이므로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로 충분(18.3%), 비경제적 보상 지원(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를 공익활동 참여 분야로 구분해보았을 때 자원봉사 분야 응답률이 13.2%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비경제적 혜택 위주로 운영된 자원봉사 분야 인정 제도에 대한 경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 전체적으로 열악한 공익활동 환경과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여러 사회적 방안 중 가장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하는 방안에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사회적 인정과 보상 방식을 설계할 때 공익활동 현장의 정책 효능감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되, 경제적 보상이 공익활동에 재투자되는 방안 등의 대안적 구상도 필요하다. 앞 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마을공동체에 국·공유 재산 활용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자원 투입량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정책 대안은 사회적 인정에 따른 보상이 공익활동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대안이다. 공익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사적 이익 추구 경로 대신 공익활동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적 보상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에 더 많은 공적 지원이 제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인정 방안을 모색할 때 경제와 비경제로 구분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의욱, 2019).

둘째, 인정 방안에 관한 또 다른 세부 쟁점은 공익활동을 인정할 때 행위 중심으로 볼 것인지, 결과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이다. 자원봉사와 마을공동체 사례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의 산출물보다 역량과 자원의 투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공익활동 확산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익활동은 대체로 짧은 시간에 직접적 변화를 창출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무엇보다 산출이나 성과 중심의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을 협소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은 국가의 능력만으로 풀기 힘든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시민사회는 참여하고

협력한다.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시민사회는 국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참여, 협력, 비판을 활성화하는 것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목적이 되려면 투입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고 효과적이다.

셋째, 어떻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추진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로 구체적인 인정·보상 기준과 정책 효과성의 관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인정 대상의 자격만큼 인정 및 보상 방식의 설계가 중요하다.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이 둘 다 개념과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사회적 인정 논의는 해당 대상이 인정과 보상을 제공할 자격과 가치가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면 자격 기준은 엄격해지고 보상은 약해져서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 단적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정의했을 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동의 수준은 높을 것이나, 공익활동가 및 단체에서 체감하는 정책 효능감은 낮아질 것이다.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익활동의 기준과 범위가 유연한 경우, 사회적 인정 기준의 강도는 낮게 설계되어 정책적 실효성 측면에서 볼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마을공동체 분야의 정책 경험은 낮은 자격에는 낮은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부족한 요건과 역량은 인정과 보상을 제공하는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공익활동을 둘러싼 현재 조건과 환경을 추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에 관한 사회적 동의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과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가 널리 퍼지고, 공익활동의 저변이 확대되는 방향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는 자원봉사 인정 제도를 고려하여 보상과 인정 방식을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원봉사활동'과 '공익활동'을 구분 지으려고 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에서는 참여 주체인 시민 역시 자기 활동의 정체성을 스스로 개념 짓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 자체의 개념 정의와 함께 기존의 자원봉사 개념과 공익활동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는 현실이다. 중복적으로 인정제도가 생겨 시민사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사회의 여러 활동 영역과 분야 간 경쟁이 발생하고, 분절성이 심화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최근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이타성에 바탕을 둔 참여 활동과 사회적 문제인식에 기초한 봉사활동을 '의무적 시민성'과 '실현적 시민성'으로 정의하며(이선미, 2016), 자원봉사의 범주에 시민사회운동까지 포괄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익활동 현장이 다양해졌을 뿐,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의 정체성이 공익활동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편 사회적 인정 여부에 따라 공익활동가 생태계가 위계화될 가능성을 예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기존의 정책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체의 규모, 사회적 영향력이나 공신력에 따라 사회적 인정 제도가 운영되어 시민사회가 양극화하거나 혹은 배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영향력과 공신력 있는 공익활동단체는 활동가 개인적 차원이든, 조직적 차원이든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낮을 것이고, 신생단체나 사회적 영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나 정책 수요가 많지만 정작 인정은 받기 어렵다는 딜레마를 지적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은 시민사회 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정 방안에 또 하나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익활동 생태계에서 자리잡은 사회적 인정 방안을 공익활동 주체의 관점에서, 공익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민사회의 연대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기반 조성과 정책 과제

1.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그동안 공익단체들은 사회문제 해결과 대안적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며 의미있는 사회적 변화를 이루었다. 비영리 공익활동 영역의 경제적 규모와 가치 역시 점점 성장하고 있어 사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인정을 받지 못해 왔다. 단적으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는 그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영역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시민권을 옹호하고, 공동체의 이익에 관련하여 주창하는 역할은 서비스 제공자 역할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음에도(Salamon, 2003), 정치적인 잣대로만 평가된 것이다. 반면 자원봉사에 기반을 둔 시민들의 다양한 공익활동은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만 협소하게 이해되어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익활동의 역할과 의미,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경제적 가치와 정치적으로 기여한 변화에 관한 인식이 미진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자원봉사, 기부자,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긍심과 만족감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추진하는 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0%(매우 필요하다 56.0% + 약간 필요하다 38.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정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매우 필요하다 50.4% + 약간 필요하다 39.8%). 자원봉사 영역에서도 그간의 자원봉사 인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이 시작하는 자원봉사진흥 4차 국가기본계획에서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과 경제적 보상의 문화를 사회적 인정의 문화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익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정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시민교육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시민교육의 목적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실천을 안내하는 것에 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사회의 역할 및 공익활동의 필요성,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있는 변화사례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는 캠페인도 유효한 방안이다. 다만 권위주의 정부 때 정부 주도로 의식개혁이나 생활문화 캠페인과 같은 방식은 지양하고,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추되 시민사회 주도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예우는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에 대한 존중이자, 공익활동가들이 지향한 가치와 경험,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며, 공익활동에 투여한 시간과 재능, 역량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표창이나 포상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미 정부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정한 절차를 통해 공익활동의 전 영역에서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방안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예우 방안 외에 공익활동 참여자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대해 사회적으로 존경과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 역시 더욱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사회변화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 여정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것은 당자들에게 큰 영예가 된다. 자원봉사 분야의 쟁점에서 보았듯이 자원봉사자들은 단순히 적은 금액의 물질적 혜택보다는 자신이 참여한 봉사활동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했다(이혁규 외, 2020). 이는 봉사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관해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것을 더욱 의미 있게 느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의 사회적 기여가 가깝게는 가족과 지인,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후대를 통해 기억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그 경험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사회 도서관, 자원봉사센터나 공익활동센터 등 시민참여의 거점 공간에 전시하고, 나아가 시민교육으로 연결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 참여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사회적 유산(legacy)으로 계승하는 일이 될 것이다.

감사와 존중의 메시지도 중요하다. 감사란 단순한 말치레가 아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의지와 가치, 노력이 더 나은 공동체를 이루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예우 행위이다.

공익활동가에게 감사와 존중이 공식적으로 표현된다면, 공익활동가들은 자신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고 느낄 것이며, 이는 공익활동가의 자존감과 책임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향후 활동을 지속할 동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National Volunteer Week처럼 공익활동의 날, 공익활동주간 등을 정해 다양한 비영리 공익활동가들이 모여 공익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공익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적 성과를 나누는 것도 세부 방안 중 하나이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는 공익활동 분야 종사자 및 유·무급 활동가, 자원봉사자, 기부자들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지속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 사회적 대화

보편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정책적 공감대는 높은 편이지만, 공익활동 주체의 특성에 따라 정책 욕구는 상이하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공익활동가의 세대와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도 발견된다.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묻는 조사에서 경력이 많고 상급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활동가는 사회적 인정이라고 답했지만, 저연차 청년세대 활동가들은 사회적 인정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의사소통을 꼽았다(여진, 2019).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사회적 인정 방안은 달라질 것이다. 즉 공익활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확산하기 위한 목적인지, 공익활동 참여인구를 증가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지, 공익활동 참여에 대해 감사와 예우를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목적인지, 공익활동 영역의 위상과 공익활동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사회적 인정의 주요 방안이 달리 구성될 것이며, 더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인식, 그동안의 정책 경험에 관한 평가에 따라서도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 동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공익활동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적 보상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등 포괄적으로 인정체계가 제도화되었다. 그러나 한국 시민사회는 보상·인정에 대한 욕구보다 신념과 가치 등 내재적 동인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시민사회운동이 주도하며 성장한 한편, 무보수성을 강조하는 자원봉사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시민들은 경제적 보상과 같은 사회적 인정 방안에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사회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식에 관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둘러싼 시민 인식, 공익활동 생태계의 다양성에서 확인되는 정책 욕구의 상이함, 기존 인정 제도에 대한 상충 가능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공론의 과정은 필수적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필요성에 관한 시민 인식을 높이는 것도 사회적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목표이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첫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한 핵심 쟁점에 관한 검토에서부터 구체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둘째, 공익활동 현장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며, 셋째, 공익활동 참여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시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방안을 설계하는 장이 될 것이다.

2. 사회적 인정 방안 다양화

가. 사회적 인정 정책 방향 정립

다양한 사회적 인정 방안 개발을 위한 정책 과제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정책 방향 정립, 공익활동 시민자원에 대한 다양한 보상 방식 개발, 공익활동 촉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 연계, 공익활동을 제공하는 개인 및 그룹의 이해관계와 관심에 따라 세분화되고 맞춤화된 보상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어떤 가치와 원칙에서 추진할 것인가, 즉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정책 방향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변화에 조응해야 한다. 새로운 공익주체의 등장으로 생태계는 더욱 넓고 깊어졌으며, 그 결과 공익활동도 한층 다양하고, 다채로워졌다. 시민사회 전반의 정책 수립에서 공익활동 생태계의 변화를 담아야 하는 것처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서도 그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인정 제도와 정책에 관한 진단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특히 법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인정제도를 갖춘 자원봉사 분야의 경험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사례연구에서 그동안의 자원봉사 인정 제도는 정부 주도의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치중하고, 경제적 혜택 위주로 개인 대상의 인정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결과와 양적 성취 중심으로 운용되었다고 진단하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시민성과 활동의 경험을 통해 이룬 변화를 간과하는 한계와 자원봉사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자원봉사계의 이런 정책 경험은 향후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존의 사회적 인정 제도와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패러다임은

첫째, 행정 주도의 관리·감독 중심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고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정을 명분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보상 방식과 절차를 설계하거나 인정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양적 성과 지표 중심에서 공익활동 주체에 대한 성장 지원과 경험을 존중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계에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시간 중심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적인 활동 성과와 가치 중심의 인증을 지향하고,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을 위한 경험 관리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대안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증빙과 인증에 치중한 도구적 수단에서 감사와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사회문화적·정서적 인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나은 공동체를 위해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이 생략된 인정은 공익활동 본연의 가치를 왜곡하는 형식적 활동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사전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사후에 가치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접근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기존의 보조금 제도나 공익활동 촉진 사업에서 법인이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등 특정한 자격을 갖춘 대상만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참신한 발상으로 공익활동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주체들에게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을 추진하는 본래의 목적이 공익활동 확산에 있다고 할 때, 마을공동체 분야에서 3인 이상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동참하는 사회적 성과를 거둔 사례처럼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사전 단계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 공익활동을 성장·지원하며, 그 경험과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나. 다양한 보상 자원 및 제공방식 개발

공익활동 시민자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 방식 개발을 통해 사회적 방안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적 인정에 따른 보상을 공익활동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했던 마을공동체의 경험은 매우 유용하다.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활동에 투입된 수고와 헌신을 직접 보상하기보다는 활동에 긴요한 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제공하는 방향에서 인정 체계를 모색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주민자원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해 활동 성과와 자부담으로 인정하거나, 활동에 재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지역 화폐로 환급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공익활동 전반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공익활동에 요긴한 자원을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인정과 공익활동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갖추고자 한 것이다.

공익활동 시민자원에 대한 새로운 보상 방식은 사회적 인정·보상 방안을 둘러싼 주요 이슈, 즉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은 무대가성과 상충하고, 사적 이익 추구를 부추긴다는 쟁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공익활동에 합당하다면 경제적인 보상을 제공하되, 공익활동에 재투입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사회적 인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더 많은 공적 자원이 제공되므로 공익활동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더욱 효과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보상물을 기존의 사례에서 벗어나 국가가 보유한 고유한 자원과 권한을 일부분 공유하거나 이양하는 상상도 가능하게 한다.

다.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과 연계

공익활동 촉진 및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의 맥락에서도 기존과 다른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50]은 하나의 참고사례가 될 수 있다. 광주시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가 요청되며, 이를 위해 공익활동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공익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진단하고, 공익활동 분야에서 개인의 희생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보상체계를 통해 공익활동 분야에 시민참여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투입한 자원과 시간에 대한 보상을 통해 시민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참여수당은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시민수당과 앤서니 앳킨스(Anthony Atkinson)의 참여소득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핵심 취지는 자발적인 주도성을 갖고 공동체에 유용한 활동,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보상체계를 갖추는 것만이 공익활동의 유인 기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회적 인정 방안으로 꼽을 수 있다.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의 장과 그 역량을 바탕으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공익활동가에게 유용한 인정 방안이며,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기업에서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일종의 공가(公暇)제도처럼 시민참여·공익활동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민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의 맥락에서 시도할 수 있는 비물질적 인정방안 중 하나이다.

---

50) 2023년 상반기에 광주형 시민참여수당 제도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참여소득 전문가, 시의원, 분야별 공익활동 단체·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공익활동 기준, 참여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등을 논의 중이다. 광주광역시 보도자료 “광주시, 시민참여수당 도입 위한 논의 ‘본격’”(2022.10.21.)
https://media.gwangju.go.kr/view/ca59d3e9ee4b048c16c0849e883cc7d1.htm (2022.10.21.)

라. 공익활동 참여자별 맞춤형 보상 방안

공익활동가와 공익활동 그룹, 조직의 이해관계와 관심, 욕구에 따라 사회적 인정 방안을 세분화·맞춤화하여 인정 방안의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공익활동 주체는 단일하지 않다. 공익활동 방식, 소속,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정체성과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사회적 인정에 대한 정책적 욕구와 필요성이 상이하다. 하나의 조직에서도 유급 상근활동가, 무급 자원활동가, 상근활동을 하지만 열악한 재정 상황 때문에 무급으로 일하는 활동가 등 공익활동에 결합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에 마을공동체 분야에서는 주민 리더, 비상근 지원자, 상근 지원자 등의 활동가를 일의 강도와 구체성, 투입되는 시간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활동, 일거리, 일자리로 구분하기도 한다(우성희, 서진, 2021).

이처럼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주체 유형에 따라 다른 활동 내용과 지위, 역할을 분석하고, 고유한 인정 내용을 구성하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유급활동가들은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한 활동가의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괜찮은 직업으로서 활동가 직업 인정, 타 부문과 동등한 경력 인정을 우선시할 것이지만, 임금노동자를 지향하지 않는 무급 자원활동가는 사회적 노동에 대한 보호, 개인적 참여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예우, 경력 관리에 대한 욕구가 강할 것이다. 한편, 공익활동 단체는 사회적 지원을 통해 공익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단체의 자산취득 시 세제 혜택이나 목적사업을 위한 재원 조성 시 금융권 보증제도, 국·공유자산에 대한 접근권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경제적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시민사회조직의 자산화 지원을 위한 정책의 부진은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이다.

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확대

가. 공익활동가 공식 직업군 인정

공익활동가들은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존중감과 사회적 신뢰를 받기 원하고 이를 통해 활동에 대한 보람과 만족감, 자존감을 느끼므로 공익활동가에게 있어 사회적 인정은 매우 중요하다(류홍번, 2021).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크게 공식적인 직업군으로서 공익활동가를 인정하는 것과 경력 인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공익활동가 공식 직업군 인정은 모든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직업으로써 공익활동가를 선택한 주체들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익활동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를 재생산하는 '사회적 노동자'(박경주, 2019)라고 할 수 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업

(occupation)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통계청, 2017). 그러나 직업으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사회에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직업으로서 인식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조건 역시 만족할 수준으로 갖춰져야 한다(김종진, 2020). 공익활동단체는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현장인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는 일터이기 때문에 가치추구를 통해 만족과 보람을 얻는 것 못지않게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최종숙, 2021 : 194). 이런 관점에서 직업적 요건을 충족한 활동가에게 필요한 사회적 인정 방안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공익활동가를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이를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KSCO)에서 대분류 직업군에 공익활동가가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대분류 등재에 필요한 사회적 준비가 미비하다면, 공식 직업군 인정이라는 제도적 의미가 희박한 현재의 세분류 위상에서 최소한 소분류 이상에 배치하여 공익활동가가 공식적인 직업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정부의 공식적인 체계적 직업분류 체계로서 직업 영역에 대한 통계작성 및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공익활동가가 국가의 직업군 분류계정에 포함되면, 공익활동의 종사자 수, 급여 수준, 비영리·공익활동 부문의 경제 규모 등 통계가 작성되어, 체계적으로 공익활동과 비영리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적 직업훈련 등 공익활동가 직업 정책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28.3%에 달했는데, 한국표준직업분류로 공식적으로 등재된다면 공익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기회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난대책에서 비영리 영역은 제외되어 공익활동조직들은 코로나 위기에 더해 경제적 위기가 더 가중되었는데, 고용지원 대책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했을 때 차등적 대우를 받거나, 아예 정책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다.

이때 공익활동을 하나의 직업으로 이해시키고, 좋은 일자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민교육도 중요하다. 한 예로 청소년 진로교육 등 다양한 사회교육의 장에서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관심이 있는 미래 세대에게 직업적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가의 역량이 강화되고, 비영리 공익 생태계가 확장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이 사회적 인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익활동과 노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을 노동의 범주에 포함할 경우 고령자나 전업주부 등 자원봉사자들에게 매력적인 사회적 활동 또는 경제적 활동의 장(한권탁, 2020 : 320)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공익활동 일자리 정책이 시민참여와 공익활동 확산의 기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와 같은 차원에서의 자격증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공익활동을 노동과 직업의 영역에서 조망할 필요성과 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FGI 참가자들은 사회에서 공익활동가의 제 자리 찾기라는 맥락에서 공식 직업군으로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청년세대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공익활동을 선택했지만, 자신들의 활동이 이른바 '좋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헌신과 무료 노동을 강요받으며, 자원봉사나 공짜로 여겨지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정혜인, 2021). 공익활동의 지속성과 확산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세대가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하며, 일을 잘하고 싶어 하면서, 독립적이며, 인정욕구가 크고, 가시적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변동현, 장승권, 2020)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업적으로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기타'로 취급되고, 사회복지사와 무급자원봉사자의 경계에서 제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운동권과 정치인이라는 정체성을 선택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이 공식적인 인정체계에서 독립적인 직업군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경력 인정

경력 인정도 공익활동가 사회적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이다. 그동안 직업적 공익활동가들은 시민사회 외의 다른 부문으로 이직할 때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공직에 지원하는 경우, 단체의 대표가 아닌 경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또한, 공공기관의 발표수당, 회비 참석 수당, 원고료 등의 지급기준에서 공익활동가의 경력은 과소평가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들 사례는 공익활동가의 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되지 못하거나, 타 직업과 비교했을 때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타 부문과 형평에 맞고, 공익활동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공익활동가의 경력 인정이 필요하다.

공익활동단체의 저열한 재정 여건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활동가들의 경력 산정이 안되는 문제 역시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통해 경력 증명을 요청하지만,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2대 보험 가입 여부로 경력 인정을 하거나, 재정 형편상 정식으로 고용하지 못한 경우 활동시간을 바탕으로 상근활동 경력으로 대체하는 예도 있다. 시민사회 스스로 최소한의 활동 조건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공익활동 현장의 어려움과 특수한 조건을 반영한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가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미국 국내봉사단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중, 연방 차원의 고용 과정에서 비경쟁

적으로 우위를 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2019)에서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제안의 하나로 협치 기반 위원회의 경우 네트워크 정보, 전문지식, 민간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공익활동가를 개방형 전문직으로 고용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비슷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경력 인정은 직업활동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시민단체 자원활동 등 공익활동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이 일반적인 '일자리'가 아니기에 대부분 전문적인 경력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은혜, 2020), 공익활동조직에 고용된 임금노동자는 아니지만, 개인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한 시민, 조직적 기반을 갖추지 않고 임의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하는 참여시민에 대한 경력 관리 및 인정 역시 중요하다. 공익활동 플랫폼을 통해 공익활동 경험과 이력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바탕으로 취업 시 공익활동 경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공공영역에서 공익활동 지원을 받을 때 그 경험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 방향에서 언급했듯이 공익활동 생태계는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주체의 특성은 공익활동 인정의 자격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공익활동 현장에서는 조직되지 않은 자율적 시민들과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 새로운 주체들로 인해 창의적인 공익활동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들이 시민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상황이다.

4. 제도적 기반 마련

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법제도 근거 마련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추진하는 데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을 설계할 때 마주하는 '무엇을', '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와 같은 핵심 질문이다. 이들 질문은 단지 행정 기술적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규범적 차원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사회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낮아, 때때로 시민사회와 관련한 정책은 때때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법·제도적 근거를 통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공익, 공익활동, 공익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공익주체에 관한 정의가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등에 담겨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명료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추진

하기 위한 핵심 개념과 근거를 담은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인 공익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청된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진선미 의원 대표 발의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법안 총 3건이다. (가칭) 시민사회발전기본법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지만 실현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정부와 국회 모두 입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지 않아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나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2-2024)' 차원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과제가 추진되고 있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정책 추진의 동력과 향후 정책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기본법 제정이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추진할 때 정책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으로 예상되는 것은 누가 인정을 할 것이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인정이 반드시 공적 권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관련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본 연구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을 제도적 영역에서 추진하는 것이라 할 때, 그 역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정책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관건이다. 정부에서 직접 담당할지,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위원회를 둘 것인지, 시민사회 자율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인지 등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기구의 설치와 역할, 위상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적 근거를 갖추어야 정책적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경우 특히 법령에서 위상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명시되어야 정치적 논란과 정책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나. 불합리한 공익활동 지원제도의 개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법·제도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그동안 공익활동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청되고 있지만, 이 단락에서는 공익활동 정책 지원 대상 확대,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정한 수준의 보상 체계 마련, 조세감면제도 확대 및 단체의 법·행정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조세감면 혜택 조정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공익활동 주체는 매우 다양해졌지만,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비롯한 보조금 사업에서 자격 조건 등을 통한 진입장벽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선이 시급하다. 주요 개선 지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의 내용을 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인정 요건을 완화, 비영리민간 공익활동 수행 주체를 다변화하고,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생조직, 소규모조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서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으로 인증되기 위한 조건으로 1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12조 4). 그 밖에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행정적 지위가 미비한 다양한 주민 소모임, 온라인커뮤니티, 독립활동가 등을 공익활동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사회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많은 공익활동 수행 주체와 수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정책 과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정한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더불어 공익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익활동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영리를 좇지 않는다는 원리가 공익활동이 경제적 보상체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익활동은 자발성과 헌신, 무대가성이라는 미명으로 보상 자체를 금지하거나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해서 공익활동가의 노동의 대가는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공익활동단체는 자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류홍번, 2021 : 16). 이런 양상은 마을활동가들이 마을공동체에 투여하는 노동이 돌봄 노동처럼 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불노동(unpaid work) 또는 그림자노동(shadow work)과 비슷하다(우성희, 서진, 2021). 따라서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시 활동가의 인건비를 사업비 항목으로 분류,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정한 수준의 보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보조금 사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도 위탁관리비 규정과 지침을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위탁관리 운영의 책임을 맡는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위탁관리비 편성 등 적합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 번째는 조세감면제도 확대 및 단체의 법·행정적 지위에 따른 차별적 조세감면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다.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세 혜택은 꾸준히 강조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기부문화는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요한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나눔과 기부 행위를 위축하는 규제 정책 개선과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공익활동에 대한 조세 혜택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필요 정도를 묻는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6.2%(매우 필요하다 48.4% + 약간

필요하다 37.8%)가 공익활동 단체에 조세감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FGI에서도 조세감면제도처럼 간접적인 지원 정책과 같은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가 컸다. 조세감면제도는 공익활동 단체의 법·행정적 지위에 따른 차이를 해소하는 방향을 통해서도 확대할 수 있다. 공익활동 인정과 마찬가지로 공적 지원 대상의 적격 여부를 다툴 때 공익활동 주체의 형식적 요건보다는 공익성에 주목해야 한다.

5.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인프라 구축

가.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의 하나로 공익 마일리지를 제공, 공익활동 이력제를 도입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모든 과정을 기록·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환성 외, 2021)을 제안하고자 한다. 공익활동 이력제의 핵심 취지는 서울마을센터의 마을공동체 경력관리시스템과 유사하다. 마을공동체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마을센터는 2022년 마을공동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과 교육 이수 내역을 관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서울마을센터에서 발급한 활동 증명서는 마을공동체 분야의 다른 일거리나 일자리로 이·취직을 할 때 경력증빙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공익활동 이력제 역시 시민들의 다종다양한 공익활동 경험, 기부, 교육 이수와 같은 중요한 공익활동 경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경력 증명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공익활동에 투여한 시간과 현물·현금 등의 자원, 재능을 공익 마일리지 형태로 축적, 호혜 교환할 수 있는 보상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 다양한 공익활동과 사회 참여 활동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블록체인 기반의 공익 마일리지로 표준화하고, 공익 마일리지를 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품앗이형 지역 단위 다자간 교환시스템, 가칭 시티즈파워뱅크(Citizen Power Bank)라는 정책 제안도 이루어진 바 있는데(이환성 외, 2021 : 280), 이런 호혜적 보상 시스템은 지역 화폐, 타임뱅크 등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호혜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인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익 마일리지에 기초한 공익활동 이력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공익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관련 데이터를 집계,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다른 한 축인 공익활동 플랫폼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익활동의 가치와 성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량적 측정을 경계하기도 한다. 충분히 타당한 우려지만, 최근에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에서 오히려 본질적인 가치와 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정량적 측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Boyle et al., 2010 : 12-13). 공익활동의 가치와 특성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항목을 국가가 아닌 시민

사회 주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 분야가 주민자원의 범위를 시간과 현금에서 재능과 현물까지 확대한 논리적 과정과 결과는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논란에 대해서는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인정 방안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른바 '근거 기반 정책 설계'(evidence-based policy design) 방식이다. 마을공동체 분야는 주민자원의 인정과 가치환산을 통해 주민모임의 보조금 의존도와 자립성 논란을 정리하는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근거 기반 설계 방식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공론과 합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러한 합의를 효과적이고 합당한 인정 방안으로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은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과 공익활동 전반의 정보가 집적된 통합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 플랫폼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수행한 공익활동의 경로가 파악되고, 투입과 산출이 공개됨으로써 플랫폼은 공익활동에 대한 시민의식을 모으는 거점 공간이 될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활동조직 및 공익활동가들이 자신의 공익활동 이력과 경력을 등록하고, 이용자와 수혜자가 상호 평가 시스템을 갖춘 타임뱅크 데이터베이스와 비영리 부문에 대한 보조금 및 기부금에 대한 통합 아카이브를 구축한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방안 개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인프라 구축 방안 중 하나는 공익활동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쟁점을 해소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유효하다. 결국,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의 목적이 시민 공익활동의 가치 확산에 있다고 할 때, 공익활동이 이룬 변화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익활동의 가치 역시 증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 영역의 활동에 대한 평가 압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민사회조직도 스스로 증거기반평가 등 자체적으로 평가를 시도해왔다((Bach-Mortensen & Montgomery, 2018). 사회적 투자 수익률(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평가, 빅데이터를 통한 측정을 통한 임팩트 측정도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 중 하나이다. 국내외 사례연구는 공익활동에 투입된 자원과 산출된 결과물이 사회적 가치 측정으로 연계될 수 있고, 객관적인 지표로 구현될 때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공감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민사회조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공익활동은 얼마만큼의 가치를 생산했는지 그

결과를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정혜인, 2021 : 89).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는 단기간에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익활동이 창출한 가치와 의미있는 변화를 사회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계속 지체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더뎌지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공익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한 정책적 동의 수준을 높이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수준을 정하기 위해서라도 공익활동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와 그 기여에 관한 측정·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공익활동 현장에서도 활동유형과 성과를 유형화하고, 그에 맞는 성과 측정방법을 통해 공익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실제로 수행하며 시민사회조직의 성과 관리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서울NPO지원센터, 2021). 이런 기초적인 시도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측정을 비롯한 공익성 평가지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공익활동 생산자와 수혜자가 모두 참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 8-1〉과 같다.

〈표 8-1〉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과 정책과제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세부 인정 방안 및 사례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 시민교육 콘텐츠 개선 및 대시민 정보 제공 • 시민사회 주도 공익광고 및 캠페인 활성화 지원 • 시민공익의 날 제정
	공익활동 참여자의 사회적 예우 강화	• 표창, 포상을 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 • 전시관, 아카이브 등 사회적 유산 축적 강화 • 감사와 존중 문화 활성화(Nat. Volunteer Week)
	사회적 인정 공론화 및 합의 형성	•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익활동의 가치 및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 확산
사회적 인정 방안 다양화	사회적 인정 정책 방향 정립	• 관리감독이 아닌 신뢰 기반의 인정 방식·절차 도입 • 양적 성과가 아닌 공익활동 성장 지원 지향 • 도구적 수단이 아닌 사회문화정서적 인정 강화 • 사전 자격 제한이 아닌 사후 가치 기반 평가
	다양한 보상 자원 및 제공 방식 개발	• 공익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보상 자원 발굴 및 개발 • 인정 자원이 공익활동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과 연계	• 시민참여수당(광주광역시/광산시) • 공익활동 참여자 교육 및 훈련 강화 • 공익활동 공가(公暇), 유급휴가제 도입

추진 전략	추진 과제	세부 인정 방안 및 사례
	공익활동 참여자별 맞춤형 보상	• 유급활동가: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축, 직업 인정 • 무급자원활동가: 사회적 노동 보호, 인정과 예우 • 공익활동단체: 세제 혜택, 금융권보증, 국유재산 활용권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기여 확대	공익활동가의 공식 직업군 인정	• 전업 활동가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 • 각종 사회교육에 공익활동가 좋은 일자리로 소개
	공익활동 경력 인정	• 전업 활동가의 경력 인정 요건 완화 • 활동 경력 기반 정부 및 공공부문 진입 기회 부여 • 비전업 활동가의 활동 경력 인정 체계 구축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인정 관련 법제도 근거 마련	•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 독립적인 사회적 인정 기구 설치
	불합리한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	• 공익활동지원대상확대(비영리민간단체요건완화) • 부불노동에도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보조금 집행기준, 민간위탁법 개정) •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 확대
사회적 인정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 공익활동 이력제(서울마을센터 경력관리 시스템) • 다자간 공익마일리지 교환시스템(시티즈파워뱅크) •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방안 개발	• 증거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SROI, 임팩트 측정) • 시민사회조직 성과 관리 체계화 • 공익성 평가지표 구축

자료: 저자작성

제3절 사회적 인정 대상별 과제

마지막으로 다층적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별로 중점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대상은 섹터, 조직,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섹터는 시민 참여자를 포함한 공익활동 생태계 전반을 의미한다. 조직은 공익활동의 실행 단위인 공익활동단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마을공동체 주민 모임이 포함된다. 개인은 일선에서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가를 말하고, 여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 자원봉사 관리자,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주민리더가 포함된다. 이러한 인정 대상별로 사회적 인정방안과 정책과제의 주안점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 추진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섹터: 공익활동 생태계

공익활동 섹터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 그 자체와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 예우와 존중을 전달하는 문화적, 상징적 인정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 상징적 인정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이러한 인정은 주로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성화되었고, 비영리민간단체나 마을공동체 등 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러한 인정은 시민사회 내부의 호혜적인 방식이 권장되었지만, 전시관이나 아카이브 등 국가적 노력과 자원 투입이 필요한 인정방안도 적극 모색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적 노력과 자원 투입은 과거 정부 주도의 의식개혁 방식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민관협력 방식이 바람직하다.

공익활동 섹터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의 다양화에 발맞춰 문화적, 상징적 차원을 넘어 실물적인 인정과 보상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 시간 단위로 개인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 대한 비판과 대안 모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럴 때 공익활동은 무대가성을 원칙으로 하고, 시민 개개인의 참여는 보상이 필요할 정도로 전문성이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통념이 인정방안 도입의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공익활동 섹터에 대한 실물적인 인정은 공익활동의 성장·지원을 목표로, 공익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리·감독이 아닌 신뢰 기반의 인정 방식과 절차를 도입하는 원칙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강화, 공익활동 공가 및 유급휴가제도, 시민참여수당 도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 섹터에서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이 인정의 기반인 동시에 인정 수단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새롭고 다양한 사회적 인정방안은 공익활동의 가치와 인정 필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론과 합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공론장은 공익활동 섹터가 출발점이자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러한 사회적 공론은 공익활동을 재조명하고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가치와 의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공익활동 참여자들에게 그 자체로 사회적 인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공론장은 공익활동 섹터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공론화 과정으로 공익활동 섹터가 얻게 되는 인정 효과를 염두에 두고 기획될 필요가 있다.

2. 조직: 공익활동단체

공익활동 조직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인정 요건 개선과 다양한 인정 자원 발굴이 중점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인정 요건 개선은 공익활동 생태계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 조직을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적 지원 대상 요건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모임 자격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때에도 법인격, 정관, 회계, 책임자 등 공적 지원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주체를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수 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인정 요건을 낮추면서 지원 규모를 함께 낮추거나, 보완적인 절차와 지원방안을 도입한 것은 제도설계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의 자격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정하는 것에서 공익활동이 창출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사후에 측정하고 인정방안과 연계하는 다양한 평가 방안 개발과 활용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공익활동의 실천 단위인 조직에게는 공익활동에 유용한 자원을 발굴해 인정 및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적 인정이 공익활동에 따른 노고와 헌신에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므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공적 자금, 조세감면, 공공계획 수립 및 국공유재산 활용 권한 등 공익활동의 각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자원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자원들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이라도 공익활동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면, 사회적 인정이 공익활동의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또한, 인정 자원의 다양화는 공익활동 및 단체의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인정과 지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3. 개인: 공익활동가

공익활동가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 등 모든 분야의 공통 쟁점으로 공익활동 경력 인정과 공식 직업군으로 인정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는 공익활동 경력 인정은 전업 활동가이지만 상근직 노동과 동일한 경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의 인정 요건 완화, 비전업 활동가의 활동 경력 인정체계 구축, 공익활동 경력을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부문 진출 기회 제공 등을 제시했다. 경력 인정이 곧바로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고 공익활동 및 유관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게 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경력 인정 과제는 공익활동 내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활동 외부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식 직업군 인정은 전업 공익활동가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해 국가통계, 각종 보험 등에서 정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또한 공식 직업군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사회 제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사회안전망을 제공받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각종 사회교육, 특히 청소년 및 청년 대상의 직업 전망 교육에 공익활동가를 정식 직업으로 포함하는 것은 제도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차원의 직업군 인정으로 볼 수 있다. 미래 세대가 비전을 갖고 진출할 만한 직업으로 우리 사회가 인정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인정이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직업 전망 교육에 포함되는 것을 계기로 공익활동가의 처우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09

공익활동의 플랫폼 구축 방안과 정책과제

제1절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향

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맥락적 검토

공익활동 플랫폼의 구축에는 몇 가지 검토를 필요로 한다.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공익활동 이력의 취합과 인증, 또 민간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식도구의 보급과 공유가 필요하다. 반면, 기존에 정부에 의한 전국 단위의 플랫폼이 복수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공익활동에 대해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정치적 성향의 논란에 따라 공공의 지원축소 상황과 같은 논란이 플랫폼 구축에 부정적 환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익활동의 한 축인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시간 인증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 (자원봉사활동 부분을 제외한다면) 국내외의 공익활동 관련된 플랫폼이 주로 활동 수요와 공급의 기능에 치우쳐 있고, 인증체계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익활동 플랫폼의 사례들이나 활용경험에 대한 활동가 설문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 공익활동 이력에 대한 인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응답이 다른 진술문들에서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긍정적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와 별도로 공익활동 인증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인증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이미 갖추어져 있는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이 갖추지 못한 대표적 기능부분이 공익활동에 대한 이력 취합과 인증기능이라는 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활동시간 인증과 누적 이력관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이 수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맥락을 검토해보면 대략 〈표 9-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SWOT 분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엄격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강점이나 기획의 요소와 취약점과 위험의 요소를 나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익활동 플랫폼과 직접 관련되는 내적인 강점으로서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경험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공식적 인증과 이에 수반되는 보상과 인정 체계를 플랫폼을 통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 자원봉사 분야 이외에도 다양한 주체와 형태의 플랫폼이 시도되어 왔고, 이를 경험해왔던 활동 참여자들도 대체로

높은 신뢰성과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외부적인 환경 요소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되는 부분이 공익활동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국가 수준에서의 계획에서 의제가 되어 있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시민들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체계들에 대한 적응도나 관심이 높다는 점도 환경적인 기회요소라 할 수 있다.

〈표 9-1〉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맥락

S : 다양한 시도와 경험 보유	W : 분야별 차이와 연계성 결여
● 공익활동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확장되는 추세 ●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에 대한 인증 체계의 운영 경험과 플랫폼 접근성이 높게 나타남 ● 활동 참여와 정보검색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의 욕구와 활용성이 높게 나타남 ● 기존 공익활동 플랫폼 활용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성과 만족도를 나타냄	●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과 온라인 체계의 개별적 혼재와 연계성 취약 ●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참여의 과정요소에서 플랫폼 유용성이 제한적이라는 인식 ● 정보검색 욕구에 비해 기존 플랫폼 정보의 충분성과 만족도는 제약됨 ● 기존 공익활동 플랫폼에 대한 10대와 20대의 활용성 및 욕구 취약성
O : 의제로서의 채택	T : 공공정책 방향의 일관성 취약
●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의 축적 : 공익활동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 ● 국가계획에서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제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관련하여 플랫폼 체계 구성의 욕구 ● 온라인 체계와 플랫폼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높은 적응성	● 공익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태도에서 일관성 결여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증과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 자원봉사 분야의 인증 결과에 대해 교육체계에서의 활용 축소 경향 ● 자원봉사와 공동체 및 NPO 활동에서의 경험 수준과 욕구 차이

자료: 저자작성

반면, 내적 측면에서의 취약점으로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이 상호 간 연계성이 취약하고 특히,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활동 인증체계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반면, 마을공동체나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편차가 지적될 수 있다. 인증체계가 작동하는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의 활용성은 떨어지는 편이다. 앞선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보 검색에 대한 욕구에 비해서는 플랫폼 정보의 충분성이나 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취약한 경우들이 있고,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의 경우가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활용성이 오히려 취약하다.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의 현장 순서로 온라인 플랫폼

기능에 대한 요구도가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영역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자는 인증체계 이외의 활동과정 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외적 측면에서의 위험요소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활동의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선언적 표방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그 실질적 지원의 방향이 일관성 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 경우가 지원 확대와 축소의 가장 극적인 극단을 오가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운영되고 있던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의 운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침이 반복된다면 이는 공공과 공익활동 시민사회의 상호 신뢰성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자원봉사를 비롯한 플랫폼에서의 활동인증의 결과가 교육이나 사회적 인정으로 환류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지 못한 외부환경적 요소라 하겠다.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에 대한 맥락적 검토에서 강점(S)과 기회(O) 요인이 (과거보다 향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원론적이고 추상적인데 반해 약점(W)과 위험(T) 요인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요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공익활동 각 분야에서 플랫폼의 기능, 특히 인증체계의 활성화 정도에서 편차가 있는 현실에 대한 감안, 젊은 층이 공익활동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담보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구체적 방안은 이와 같은 약점위협전략(WT전략)의 현실적 수준과 조응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일 수 있다. WT전략은 방어적 전략으로 기존 플랫폼 보완 또는 고도화전략이다.

2.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기본방향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의제는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한다는 것 이상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공익활동 플랫폼을 구축과 관련한 이슈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신규로 구축'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부분이다. 현재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와 사회적 인정을 고도화하기 위해 충분할만큼의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적절한 진단일 것이지만 반대로 유사한 플랫폼이 양적으로 많아서 혼란스럽다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다.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공익활동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새로운 플랫폼의 창출과 같은 의미로 당연시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기존에 시민통통, 온국민소통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은 공익활동에 대해 본 연구에서의 지향과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정부의 공신력을 보유한 체계이다. 서울NPO지원센터의 온라인 시스템은 공공의

공신력에 기반하지만 동시에 관련 민간조직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결합하여 중간지원조직 기반의 플랫폼으로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서울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교육과 활동 이력이 인증되기도 했다.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공신력 하에 전면적인 활동시간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칫 이들의 경험과 체계를 제쳐 두고 새로운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는 것으로의 결정은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본 연구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점은 국가계획에 따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인증체계를 통해 공익활동의 이력을 온라인으로 집적하여 공식화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인정을 위해 플랫폼으로서 인증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력에 대한 인증은 공익활동 사례의 소개나 홍보와 다르다. 우수사례와 같은 내용은 공익활동 전체적으로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표적 소개에 해당하고, 활동 이력의 인증은 공익활동의 개별적 주체들이 실제로 공익적 활동에 기여한 유무와 수량적 측면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축적하고 공신력 있게 보증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그리고 인증은 그 인증결과에 상응하는 다양한 형태의 인정 혹은 보상과 연결되는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인정이나 보상과 관련되는 지원체계가 작동이 가능하려면 일단 여러 개별적인 활동들이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활동인지의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증이 (온라인)플랫폼 체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원봉사 인증관리체계를 제외한다면 공익활동에 대한 인증체계의 기능이 현재 플랫폼에서는 작동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공익활동 인증체계를 구축한다면, 기존의 대표적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혹은 새로운 '인증기능 중심의' 플랫폼을 신규로 구성하는 것이 다 대안이 될 수 있다. 만약 공익활동의 인증체계를 도입하거나 이 기능을 탑재하는 것이 곧장 도모할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 플랫폼들의 보완이나 상호 연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앞의 현재 사례 검토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요구되는 (이력정보관리와 인증, 사회적 인정 연계) 기능을 포함하는 '대표적 공익활동 지원 플랫폼'이 필요한 것이지 (1/N의 속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공익활동 플랫폼이 추가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활동 인증 기능을 곧장 탑재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라면, 온라인 플랫폼을 신규로 만들거나 기존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새롭게 구성한다면 이 경우 기존 자원봉사 활동의 인증체계와 플랫폼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신규 플랫폼 편성 없이 공익활동에 대한 인증체계를 구성하려면, 자원봉사 인증체계를 확장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포함한 체계 재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9-1]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활동 인증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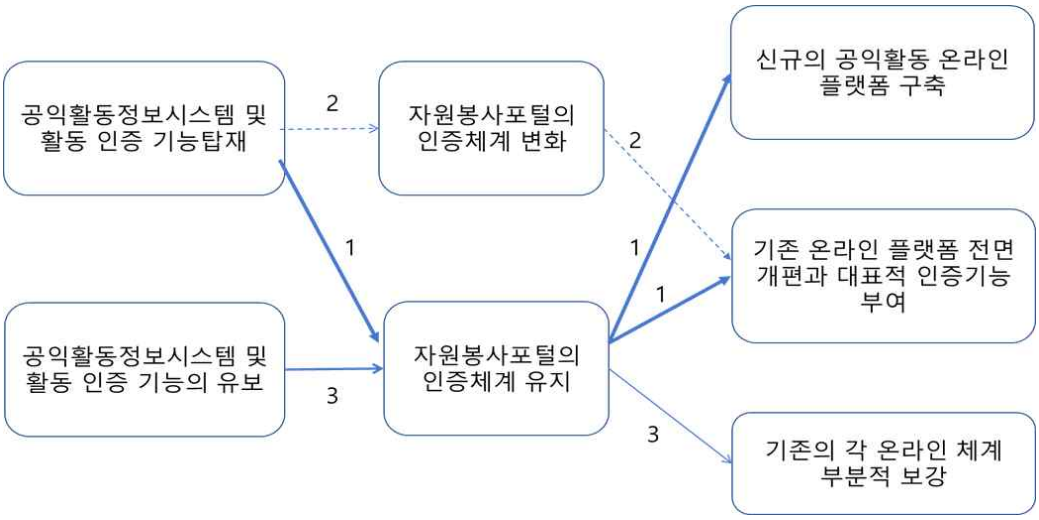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그림 9-1]에서 두꺼운 실선으로 표시된 1의 경우가 공익활동에 대한 이력 등 정보시스템와 인증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면서 기존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있는 자원봉사포털의 인증체계는 유지하는 경로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제외한 공익활동의 인증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 (시민통통 등과 같은) 기존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선택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다. 1의 경우에 자원봉사 인증체계와 포털은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점선으로 표시된 2의 경우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를 통합화하여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자원봉사포털의 인증체계에도 변화가 수반된다.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은 기존 자원봉사영역의 포털이나 시민통통과 같은 공익활동 플랫폼 중 어느 하나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포괄적인 인증을 구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와 여타 영역의 공익활동 인증 실제화에 큰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2의 경우에서는 자원봉사 플랫폼에서 다른 공익활동의 활동내용까지를 인증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얇은 실선으로 표시된 3의 경우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 구축을 플랫폼의 기준에서 당장은 유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미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자원봉사포털의 인증체계까지 후퇴시킬 이유는 없다. 이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을 당장 구현한다기보다는 기존의 관련된 각 온라인 체계에 대해 인증체계 이외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적인 플랫폼 개선에 초점을 둔다. 활동의 인증 기능을 유보한다면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다른 기능 예컨대 활동에 대한 신청이나 정보검색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구조를 포함한 재편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체계나 구조는 그대로 두고 부분적인 보완을 모색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후자의 모색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원봉사포털의 인증체계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는 없다.

만약,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탑재된다면, 해당 온라인 체계는 플랫폼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기능 수행과 활동 참여자들의 많은 이용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공익활동 활성화에 비추어본다면 이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문제 이전에 공익활동에 대한 인증을 도모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는 공공의 방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플랫폼의 구축방향은 기본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인증체계를 곧장 도입할 것인가의 결정 여부에 따라 기본적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제2절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1.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으로서 필수 기능 탑재

기존 플랫폼 사례분석의 시사점과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등에서 현재 공익활동 플랫폼이 활동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단순 추가가 아니라 '대표적 플랫폼'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표적 플랫폼은 공익활동의 영역과 현장에 대한 포괄성과 우선적인 공신력을 가져야 하고 핵심적 요소로 활동이력에 대한 인증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서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대표적 공익활동 플랫폼이 반드시 구현해야 할 필수적 기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9-2]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의 필수 기능

자료: 저자작성

공익활동 플랫폼은 이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지속적 환류와 최신화, 개인정보 보호와 제공정보 충분성의 조화, 사회적 책임성의 견지 등 플랫폼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속성들을 견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공익활동 플랫폼에는 [그림 9-2]와 같은 몇 가지 기능이 필수적으로 탑재 혹은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첫째는 공익활동을 연계하고 검색하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반적 정보 제공의 기능이다. 이는 기존의 여러 플랫폼이나 포털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실용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게시판 등록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표적인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결국 활동 현장의 정보 제공자가 등록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자체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 혹은 연계하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나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의 제공 기능이다.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욕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이는 공익 활동가들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여 해당 플랫폼이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활동가들의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공간이다. 이는 특정 공익플랫폼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존에 SNS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일적으로 정리하거나 일원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내에서 이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구성해서 제시하거나 용이하게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번째는 공익활동의 이력 취합과 인증기능의 탑재이다. 이는 플랫폼의 신규 구축 필요성 자체와 관련된 핵심 기능이 된다. 여기에는 궁극적으로는 타임뱅크나 자원봉사 인증체계에서와 같이 실질적으로 활동이력의 인증이 '인정이나 보상'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교환이나 보상체계는 인증에 기초하여 중기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전국 어디에서 활동하는 경우이건 활동가나 조직이 자신의 공익 활동을 등록하면 이에 대한 상호적 평가에 따라 활동 이력과 활동 시간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식적 기록의 인증이 구축된다면 이에 따른 상징적인 인정의 부여나 피드백과 같은 최소한의 인정은 인증과 동시에 구현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대한 정책 제언과 요구를 취합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기능이다. 이는 최근 몇 년 간 구축된 중앙정부의 관련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 기능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포털이나 플랫폼에서도 관련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오히려 자원봉사 관련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의제기반 논의공간을 의식적으로 창출하는 것이 취약하다.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 정보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공공의 피드백이 플랫폼 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공익활동과 관련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 성격의 홍보와 뉴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대개의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기능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에서 이를 적시에 현행화하고 관련 정책이나 뉴스를 효과적으로 게시 및 질의응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적어도 이상의 기능이 공익활동 플랫폼 내에서 구현되거나 직접 연계되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능은 몇몇의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파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표성을 가진 수준에서 전체를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 예를 들어 공공 정책 제언이나 피드백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력 인증이나 직접적인 소통공간의 제공 등에서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사용자가 여러 다른 온라인 시스템을 옮겨다녀야 한다면 이는 '플랫폼'이라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2. 민간 공익활동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 구축과 운영주체 설정

공익활동 플랫폼은 '구축'과 '예산'의 주체는 공공이 되어야 한다. 이는 공신력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인 전제이다. 활동에 대한 인증 기능에 기초가 되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이 의미를 가지려면 공공 책임 하에 플랫폼이 구축되는 공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반대로 공공의 민간에 대한 '정보를 매개로 한 통제'와 같은 부작용이나 우려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플랫폼의 내용적 측면이 공익활동 현장의 욕구에 친화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인적 주체는 민간, 특히 공익활동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민간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에서 설립은 공공, 운영과 관리는 민간이 가지는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일견 연상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공설립·민간위탁운영의 방식으로 고안되어서는 공익활동 플랫폼의 실효적 구현에 충분하지 않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공익활동의 공식적 인증과 지원체계로서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공공과 시민사회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운영 실무과정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적 자산인 운영요원에 대해 적극적 활용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담당 직원의 편성을 넘어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큐레이터와 같은 방식을 정규화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을 지역적으로 어느 단위에 기반하여 구축하느냐 하는 점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공간적 제약이나 경계에서 자유롭다고 하지만 어느 단위에서 운영되느냐 하는 점은 소규모 지역단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은 공익활동 조직이나 활동가들에게는 중요한 점이 될 수가 있다.

플랫폼을 전국 단위로 구축하는 경우에는 공익활동이 가지는 지역적 소통과 문제해결 노력을 증진하는 것에서는 취약해진다. 반면, 전체적인 공신력과 인증 기능을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플랫폼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단위의 플랫폼을 전국 단위에서 연결을 모색하는 방법이지만, 공공과 민간, 활동영역과 분야별로 다양하게 산재하는 공익활동 관련의 온라인 체계들을 전국 단위에서 취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기본적으로는 대표적 플랫폼은 전국 단위에서 기능하도록 하고 활동 인증 기능의 활성화와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전국 단위 대표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구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 중앙에서 설치되는 플랫폼의 지역별 버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 혹은 신규 구축을 위한 공공-시민사회 간 논의 구조를 필요로 한다.

3.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의 구축

공익활동 이력을 인증하는 경우에 일단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개인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 혹은 집단이나 조직의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투입이나 과정의 노력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 결과와 성과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의 측면이다.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 '개인단위'로 '활동시간'이라는 투입 노력에 대해 인증하는 방식을 오랫동안 취해 왔다. 공익활동에서 비영리조직이나 마을공동체의 분야에서 특히 공공분야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필요한 지원자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는 조직단위의 공신력이나 인증을 요구하는 욕구도 높다. 이 경우에는 조직이나 단체 단위의 이력 인증이 필요해진다. 인증의 기초로서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중앙의 플랫폼에서는 개인과 조직 단위 양자의 정보가 구분되어 모두 취합될 필요가 있다.

활동가 개인 단위의 정보취합과 인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시간 이력인증의 논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 개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사회복지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을 예로 든다면, 수 만명에 해당하는 '인증요원'이 각기 속한 기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에 해당하는지,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 실제의 활동시간을 원칙적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 판단은 VMS, DOVOL, 1365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별 이력으로 인증되어 누적처리된다. 실제에서는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이나 학생들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학교계획이나 개인계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의 이력 등은 조금 다른 방식의 이력취합 인증방식을 따르기도 한다. 개인 단위 자원봉사활동 인증도 시간인증과 구별하여 활동인증으로 인증서 출력까지 가능하게

하는 체계도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원봉사 이외의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활동이력 인증에 대한 기제가 거의 없다. 개인단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참여활동 시간에 대한 정보취합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주민 혹은 참여자로서의 활동시간과 조직의 상근 혹은 비상근 종사자로서의 활동이력은 내용을 다소 달리하여 정보가 취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과 달리 활동조직 단위로의 정보취합은 단체의 성격과 공익성에 대한 정보와 활동이력의 정보가 함께 취합되어야 한다. 조직의 활동이력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나 사업과 그 지속기간의 측면에서 이력을 정보화하되, 그 투입의 정도나 성과의 양적 측면을 정보화 혹은 인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중기적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이는 자원봉사활동과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원봉사활동에서는 개인이 아닌 집단이나 조직 단위의 활동도 주체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활동 수요처나 현장의 속성에 기반한 인증이 주도적인 양상이다. 반면 자원봉사활동 이외의 공익활동에서는 활동 주체의 성격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따라서 플랫폼을 통한 공익활동정보시스템에서는 기존의 활동수요처를 기반으로 개인단위 활동시간 이력을 취합하는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와는 다른 정보취합 체계가 필요하게 된다. 공익활동 주체인 조직이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도적으로 자신의 활동이력과 내용을 탑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같은 공식적 체계가 구축되어 여기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공익활동 여부와 필요할 경우에는 활동량, 이력이 등록·집계되는 것을 통해 이 자료를 기초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을 통해 등록 혹은 취합된 자료 모두가 자동적으로 공익활동으로 인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것은 활동이력 인증의 결과이고 그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에 의해서 인증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공익활동 인증의 주체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되는 것은 민간주도성과 자발성을 특성으로 하는 공익활동 주체들에게서도 선호되지 않는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자칫 공익활동의 인증이 관변단체 속성의 양상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공공통제의 기전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 인증요원과 마찬가지의 인증 주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익활동 주체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공익활동을 둘러싼 최근의 정치적 논란들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익활동에 해당하는 관련 활동의 조직체에 대해 정보를 취합한 포털들이 있다. 영국 자선위원회의 자선단체 포털, 싱가폴의 자선포털, 호주의 ACNC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일정한 최소규모(예, 5인) 이상의 공익활동 수행단체들에 대해 설립과 기관의 일반 정보, 직원 수, 사업목적, 성과, 수입과 재원, 자원봉사자 수, 기부금 면세단체 여부 등의 정보를 등록받고 게시하고

있다(정진경, 2023).

[그림 9-3] 호주의 ACNC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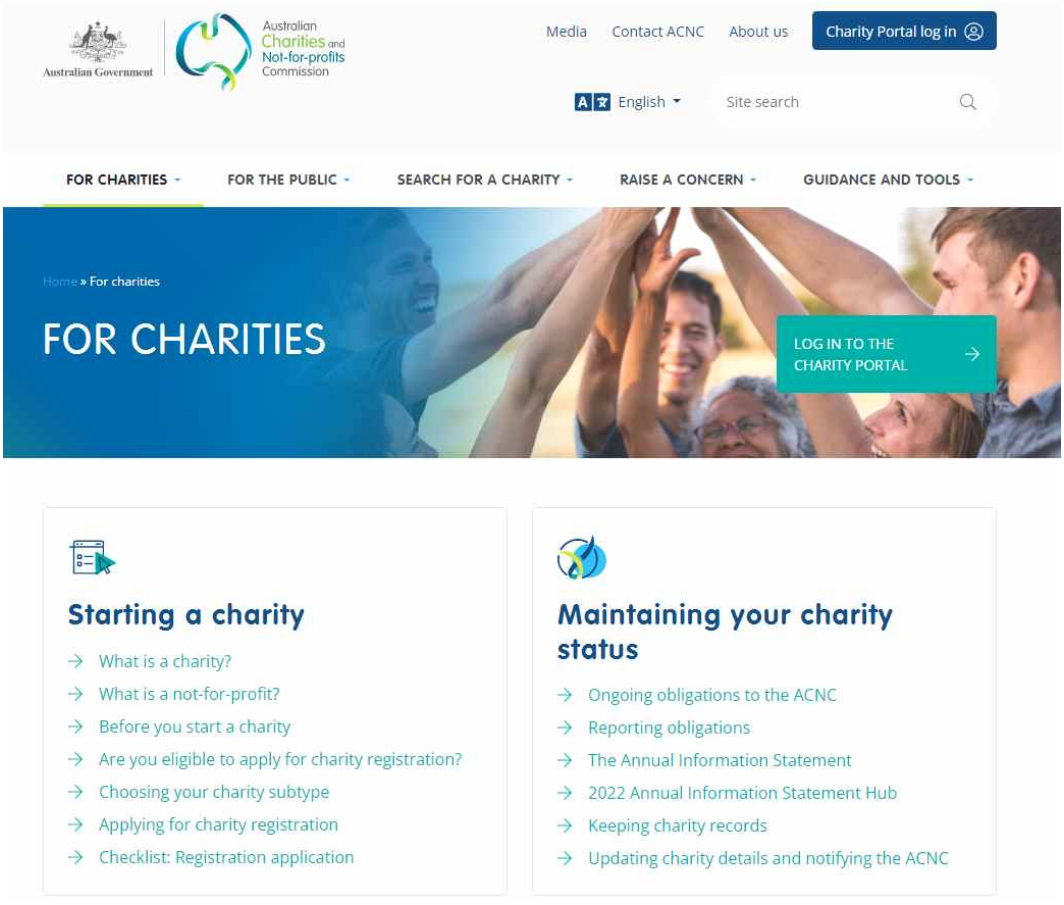

자료: 호주의 ACNC(http://www.acnc.gov.au) : 2022.12.1. 인출

그런데 이 해외 사례들의 포털은 자선과 관련된 조직에 대한 정보만이 취합될 뿐, 해당 조직이나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정보가 취합되거나 인증하는 기능은 가지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의 차이이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영역을 포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은 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를 플랫폼에 구축하고자 할 때, 유사한 기능이 국내에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자원봉사포털과 관리시스템들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는 현재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력 인증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활동 이력 인증체계가 마을공동체나 NPO 등의 활동 전반에 대한 확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검토가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이력인증을 위한 플랫폼과 별도로 마을공동체 분야와 비영리민간단체 분야의 공익활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51]

[그림 9-4] 플랫폼에서의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인증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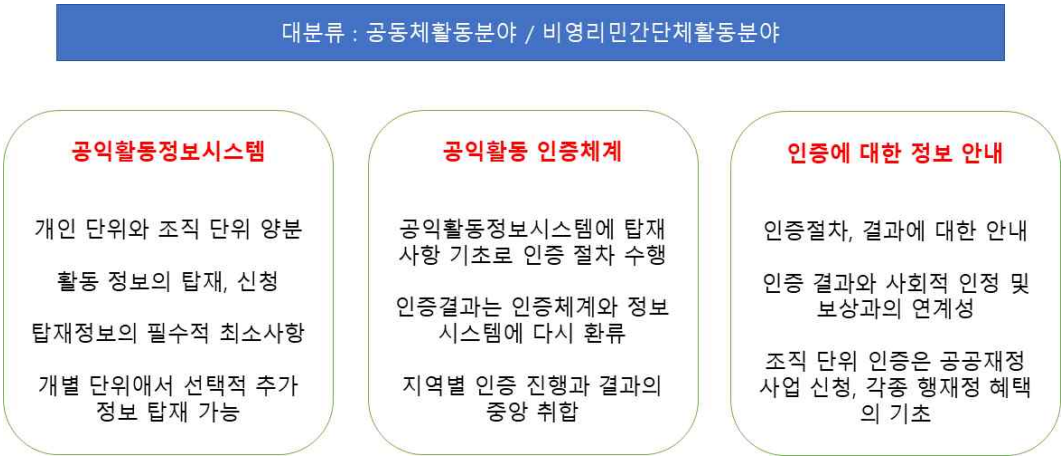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공익활동 인증체계 혹은 플랫폼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와의 통합이나 역할분담의 체계적 개편을 당장은 큰 비중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실제 한 시민이 특정 NPO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다면 당장은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활동이력과 시간으로 중복인증될 수 있다. 자원봉사와 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의 활동은 기존의 자원봉사 인증체계와 새로 만들어지는 공익활동 인증체계에서 각각 별도로 인증이 된다는 의미이다.

또 하나 검토되어야 하는 점은 전국 단위에서의 통일적 인증이냐 혹은 지역 단위로의 인증이냐와 관련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것은 통일된 기준을 형성하여 적용한다는 것과 친화성을 가진다. 지역 단위로의 인증절차를 모색한다 하더라도 인증 결과와 과정은 전국 단위로 정보가 취합되는 것이 실질적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실제 공익활동의 지역성에 주목한다면 인증은 각 지역 단위별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그 기준과 방식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이 플랫폼에 의해

51) 물론 자원봉사활동 인증체계를 확장하여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인증체계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 인증을 마을공동체나 NPO 활동에까지 확장하여 인증요원을 위촉 혹은 배치하고 같은 시스템 내에서 시간이력을 탑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자원이나 추가적 노력이 적게 필요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실의 활동 생태계가 자원봉사활동과 다른 공익활동의 경우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활동 인증에 다른 공익활동 형태를 포함하여 인증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관리 플랫폼을 확장하는 방안은 배제하였다.

제시 및 공유되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량화된 데이터를 누적하고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는 기술적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넘어 마을공동체와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참여자의 활동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익적 조직의 공익성과 활동 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주체를 설정할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이 '인증의 주체'에 대한 전국적 혹은 지역적 합의가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마련되어야 온라인 플랫폼의 인증 체계는 실효를 가질 수 있다. 물론 민간의 부분적인 플랫폼의 경우라면 '신청에 기반하여 플랫폼 측에서의 자체적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수동적 방법도 가능하지만 이는 특정 플랫폼 자체를 위한 방법이지 공익활동의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

인증의 결과를 사회적 보상체계와 관련짓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활동에 대한 공신력 있는 인증 그 자체가 인정(recognition)이 될 수 있고 보상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인증 체계의 구축이 기본적인 보상의 방법인 것이라 할 수 있고 반드시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방안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인정을 위해서는 후속적 방법이 추가로 연계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앞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타임뱅크와 같은 사회적 가치의 교환 방법을 플랫폼에 탑재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개인이 아닌 공익활동 조직의 단위에서는 그 공익성에 기초하여 세제혜택이나 (비영리의) 공공위탁사업 참여시에 행정적 편의나 유리한 자격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정과 보상의 방법을 플랫폼에 통합하는 것은 중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공익활동의 인정과 보상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구축에서의 기술적 문제는 큰 장애요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단 공익활동의 정보와 이력을 수집하는 '공익활동정보시스템', 그리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공익활동인증체계'를 대표적 공익활동 플랫폼에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에 따라 작동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이다.

4. 정보 검색과 소통 지원기능의 보강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공익활동 플랫폼에 일차적으로 기대하는 바는 공익활동에 대한 정보의 검색 기능인 경우가 많다. 특히 활동에 초기 진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의 내용이나 방법의 정보 검색, 활동참여 신청 경로 등으로 플랫폼의 지원 역할을 기대하지만 실제의 플랫폼에서는 이 기능이 충분하지는 못하다. 몇 가지 유형의 활동 경로나 참여자 모집의 홍보 등이 정보의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기는 하나, 그 정보의 포괄성 정도도 취약하고 최신화(update)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참여자들의 정보 검색과정에서 해시태그나 관련 검색,

혹은 챗봇 등의 적용 기능도 충분하지 않다. 대표적인 공익활동 플랫폼이 되려면 공익활동 참여 신청 혹은 정보 검색에서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충분한 포괄성과 지속적 데이터 클리닝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최근에는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종래 홈페이지에서의 게시판이나 자료실과 같은 방식으로는 불충분하다. 정보에 대해서는 공익활동 참여기관이나 활동의 유형별 현황, 신규참여와 관련된 정보, 지역적 상황,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도구와 정보, 관련 법령,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등이 각각 구분되어 제시되고 확장검색과 정보의 현재 기준 유효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플랫폼 운영주체에 의해 플랫폼에서 주되게 보여주는 항목이 선택되거나 내용이 편중적으로 구성되어서는 곤란하다. 정보의 제공은 다루는 공익활동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인 포괄성을 담보하는 것이 소수 정보에 대한 깊이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정보 포괄성 측면에서 대표적 플랫폼이 식별되지 못하는 양상이다.

플랫폼에서의 정보검색 및 제공 기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 있다. 먼저 플랫폼의 주된 이용자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일반 대중에 초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익활동의 핵심적 활동가나 공익 조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다면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의 수단을 활용하여 사업 혹은 기능별로 이원화된 참여구조를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일반적 소통이나 정보제공 기능은 지역별, 활동단위별로 일반 참여자가 사용하도록 설계하고, 기술적 도구와 교육, 활동인증과정과 관련된 과정적 내용은 조직이나 직업적 활동가가 주로 접근하도록 편재할 수도 있다. 또한 플랫폼의 내부 구성 자체를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을 단일한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경유하는 것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공익활동에 대해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에서부터 전문적인 정보 각각을 항목별로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모든 정보를 생산 혹은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보의 연계가 중요한데, 플랫폼에서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유형이나 내용을 구분하고, 이 각각이 어떤 다른 정보원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연결(link)을 제시하고 있어야 한다. 역시 정보의 포괄성과 매핑(mapping)이 중요하다.

검색 혹은 정보수집과 아울러 공익활동 과정에서의 소통을 지원하는 기능 역시 플랫폼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물론 전국단위 대표 플랫폼에서 각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대화통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기본적으로 플랫폼 혹은 공공정책에 대한 질의나 참여과정은 현재 시민통통이나 온국민소통에서와 같이 공공의 공신력 있는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 활동 참여자 간 소통통로는 안내와 실태에 대한 정보 제공, 그리고 (일반적인 SNS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과 폐쇄형의 온라인 소통공간의 제공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과 소통 공간의 제공이라는 기능은 기존의 플랫폼에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 왔으나 막상 일반 공익활동 참여자들이 기존 플랫폼을 정보 검색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이를 참여자들의 활용이 부진하다고 여기곤 하지만, 사실 플랫폼의 정보제공과 소통관련 지원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곧이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플랫폼의 구성과 내용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경주되는 것이 필요하다.

플랫폼 구축에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법들이 경주될 수 있다. 소셜챌린지와 같은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대해 기금 혹은 상금과 함께 제안하면 다른 플랫폼 사용자가 혁신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제안 단체가 선택하는 해경방법 내용에 대해 멘토링 등 프로토타입 개발까지 지원을 받는다. 최종 선정되는 방법을 제안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며 사업모델을 만드는 것이다(안영삼, 2023). 이처럼 공익활동과 관련되어 문제해결의 수요자와 활동의 주체가 플랫폼에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10대와 20대의 젊은 층이 선호하는 방식의 내용과 형식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오랜 시간동안 참여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특정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플랫폼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업적 교환용으로 활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근마켓과 같은 플랫폼을 젊은층이 특히 많이 활용하곤 한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발적 간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의 콘텐츠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활동 플랫폼의 사용자라는 것이 긍정적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 되도록 하는 홍보도 중요하다. 플랫폼에서의 소통이나 참여가 실제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효능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환류기능이 최대한 실시간으로 발휘되도록 하는 인적 투자가 필요하다.

5. 정보의 취합과 동시에 보장되는 정보보호의 신뢰성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를 플랫폼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활동참여 주체에 대한 정보의 취합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는 늘 개인정보보호의 측면과 마찰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더구나 권위적인 정부에서는 공익활동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공공에 대한 비판적 기능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 적대성의 측면으로 해석하여 공익활동이나 참여자에 대해 통제한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때문에 공익활동 참여자나 조직에 대해 정보시스템과 인증을 위해 정보를 요구하거나 취합할 때,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폐쇄형 소통경로를 주된 서비스 내용으로 하는 대표적인 SNS 채널의 경우에, 한때 특정 채널은 정부의 수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많은 인원이 해당 SNS를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다른 SNS 채널에서는 정부의 수사와 관련된 협조 요청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오히려 이용자가 급증했던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온라인 체계에 제공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한 보안상태에 있는가 하는 관심의 고조를 반영한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서 공익활동은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는 정부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있다는 경계심리 역시 작지 않다.

정보의 취합과 제공은 최소한으로 그 범위를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보시스템과 인증을 위해 필요한 개인식별과 공익활동의 (인증에 필요한 식별)사항으로 제한하여야 하고, 정보취합 이후 인증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더라도 초기에 자동으로 요구되는 정보취합사항은 최소한으로 국한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운영 초기에는 제공하는 정보가 공익활동 인증 이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철저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보장을 천명하여야 한다. 중앙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의 관련된 공익활동플랫폼의 운영주체는 공공이 아니라 공익활동과 관련된 신망을 가진 민간주체로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활동인증에 대한 권한이 민간 혹은 민관의 위원회로 설정되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된다.

6.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와 절차

새로운 플랫폼의 신설 혹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공익활동정보시스템)을 보완하여 탑재하고자 할 때, 기존의 관련된 포털이나 플랫폼, 혹은 그 운영체계와의 관계 설정에서의 갈등 우려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익활동의 한 형태로서 기존 자원봉사 영역의 인증 플랫폼과의 관계 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인증체계와 병행하여 공익활동 인증체계와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서술하였으나 이는 실제에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공익활동의 인증이나 사회적 인정에 대한 사회적 모색이 불충분하여 시도되고 있는 개별 민간의 선행체계들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이슈가 될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플랫폼 구축 방식은 중앙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홈페이지의 개편, 그 운영방식과 주체를 민간 시민사회계로 전환, 개인과 조직에 대한 공익활동 인증체계(공익활동정보시스템)의 구축·탑재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색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관련체계와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 플랫폼이 가지는 정보의 수준 고양과 이용자의 검색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구체적 검토가 중요하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추후의 사회적 보상 및 인정과 연계될 수 있는) 인증체계를 포함하여 공익활동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필수기능을 포괄적으로 탑재하는 대표적 플랫폼의 구성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플랫폼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 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대표적 합의기구를 통해 기존의 유력한 홈페이지나 포털을 전면적으로 플랫폼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합의기구에는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주체와

중간지원조직, 기존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적 주체(공공과 민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를 탑재할 플랫폼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실효성이 제약된 포털이나 홈페이지의 개편에 그칠 우려가 크다.

10

결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사회공익 활동은 단순 노력 봉사에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 전문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활동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키는 크게 기여 하고 있다. 공익활동의 분야는 자원봉사, 환경보호, 사회복지, 문화체육활동, 마을공동체사업 등 넓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공익활동의 주체는 정부, 기업, 비영리민간단체(NPO), 개인 등을 포괄하되, 공익활동의 범위는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최근 세 분야가 공익활동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체계를 도입하고, 다양성, 접근성, 소통성을 갖춘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 방향과 내용을, 사회활동가(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중심의 욕구조사(4,000명 목표)를 통해 활동가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개선할 사회적 보상과 지원, 그리고 활성화 할 '소통형 플랫폼'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1.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현황과 방안

가. 공익활동의 개념

학문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정의하는 접근방법은 서로 다르다. 철학에서는 공익의 본질에 대한 관념을 발전시켰고, 법학은 도덕적 규범이나 법·제도를 준거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와 공익이 아닌 것들에 대한 규정을 넓혔다. 정치학은 국가권력이 추구해야 하는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행정학은 제도적 규제 장치의 적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사회학은 공공성에 기여하는 공동체, 사회자본, 신뢰, 시민참여 등의 조건과 맥락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공익의 외연을 확장해왔다.

제도적 측면에서 공익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행위로 정의 할 수 있다.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다. 이론적으로 구성되는 공익활동의 담론과 제도적·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공익활동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존재한다. 공익활동의 이론적 개념화가 공익의 의미를 정의하는 반면, 제도적 측면은 행위자의 동기와 결과 측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개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이어온 것은 마을공동체 영역이다. 2012년 마을공동체 정책 초기부터 마을활동가의 경력 인정, 역량, 보상체계 등 사회적 인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전략의 하나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괜찮은 직업군으로서 공익활동가의 자리매김 등에 관한 주제로 공론화 자리가 마련되었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경제적 실태조사와 참여소득, 타임뱅크, 자격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인정과 보상에 관한 제도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에 일정한 가치와 인정을 부여하는 사회적 반응이다. 사회적 인정에는 제도화 차원과 보상차원이 있다. 먼저 제도화 차원은 도덕적 인정(moral recognition)에서 제도적 인정(institutional recognition)에 이르는 스펙트럼이다. 도덕적 인정은 공익활동 참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한 노력에 대한 문화적 차원의 규범적 이해와 정서적 동조이며, 제도적 인정은 도덕적 인정의 토대 위에서 공익활동 참가들의 노력에 대한 공식적 피드백이다.

다음 보상차원은 공익활동에 투입한 시간과 자원을 어떤 가치로 환산해 보상할 것인가, 탈물질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에게 보람과 만족감을 주며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기여 한다.

다. 공익활동의 인정사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는 본 연구의 범위에 따라 자원봉사,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마을공동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정내용을 보면 법·제도, 실비보상, 사회적 예우, 마을활동 이력 등이 인정되고 있다(표 10-1, 표 10-2, 표 10-3 참조).

〈표 10-1〉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자원봉사

인정 주체 / 인정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활용조직
법·제도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기준(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자원봉사 시간인증 시스템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 등) 자원봉사 상해보험 제도	지자체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기관 내 자원봉사 관리 방침
인센티브		우수봉사자 카드 발급 마일리지 및 할인가맹점	
실비 보상		활동 실비(식비 및 교통비 등) 활동 수당 봉사활동 재료비	봉사활동 재료비, 준비비
사회적 예우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공익광고, 언론 홍보 자원봉사시간,학점 인정 자원봉사관리자 전문직업 등재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증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자원봉사 축제/박람회 지역 언론 홍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 감사 축제, 행사 모범 자원봉사자 상 홈페이지/소식지 소개 감사패 추천서 (취업, 진학 등)
간접경제 예우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할인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	식사, 간식 제공 기념품 회비, 프로그램 참가비 할인 또는 면제
기회의 제공		교육 및 워크숍 참여 기회 공연 관람 기회 자원봉사 기본교육 무료 법률·세무 상담	자원봉사 기본교육 매력적인 자원봉사 일감 교육, 문화공연 관람 기회 운영위원 위촉
상징적 예우		유니폼, 배지 등	봉사자 명찰, 명함, 유니폼, 자원봉사자 휴게실 마련
정서적 예우			감사 문자나 감사의 말 연하장, 생일 축하 봉사자 간담회, 다과회 봉사활동 성과 공유

자료: 저자 작성

〈표 10-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비영리민간단체

인정 주체 / 인정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정부·자원봉사센터
법·제도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 조세감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 •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일반 우편의 25% 감면(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	•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표준 조례
사회적 인정	•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타임뱅크 활용(구미시의 '사랑고리') • 공익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시민참여수당' 지급(광주광역시)

자료: 저자 작성

〈표 10-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사례 : 마을공동체

구분	대상	인정방식
마을활동이력	• 비상근 정책지원 활동가(7종) • 주민리더(7개 사업)	• 활동증명서 발급 • (인적정보, 활동 내용 및 기간)
교육이수내역	• 230개 교육과정(2015~2020)	• 교육수료증 발급

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유형

사회적 인정유형은 x축이 제도화 수준을, y축이 보상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인정유형은 네 가지로 제시한다. 사회공익활동의 대표유형인 '사회적 존중'은 제도화 수준이 낮은 도덕적 인정 차원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보상하는 유형이다. 반면에 '직업적 인정' 유형은 제도화 수준이 높고 물질적 가치로 보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림 10-1] 공익활동 참여의 사회적 인정체계 유형

자료: 저자 작성

마.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요구 분석

본 연구에서 공익활동가(비영리민간단체,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공익활동가별 사회적 인정 요구 분석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욕구에 차이가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은 공공서비스 할인이나 공공시설 우선 사용권 등의 '경제적 예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적 존중' 순이었다. 비영리단체나 마을공동체는 공익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보상 또는 인정하는 '직업적 인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순이었다.

〈표 10-4〉 공익활동가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명, %)

구분	사회적 존중	경제적 예우	제도적 인정	직업적 인정	기타	합계
자원봉사	424 (24.5)	789 (45.6)	276 (15.9)	229 (13.2)	13 (0.8)	1,731 (100.0)
비영리단체	170 (13.1)	247 (19.0)	170 (13.1)	695 (53.5)	18 (1.4)	1,330 (100.0)
마을공동체	86 (12.6)	144 (21.2)	74 (10.9)	371 (54.6)	5 (0.7)	680 (100.0)
전체	680 (18.3)	1,180 (31.8)	520 (14.0)	1,295 (34.9)	36 (1.0)	3,711 (100.0)

[그림 10-2] 공익활동가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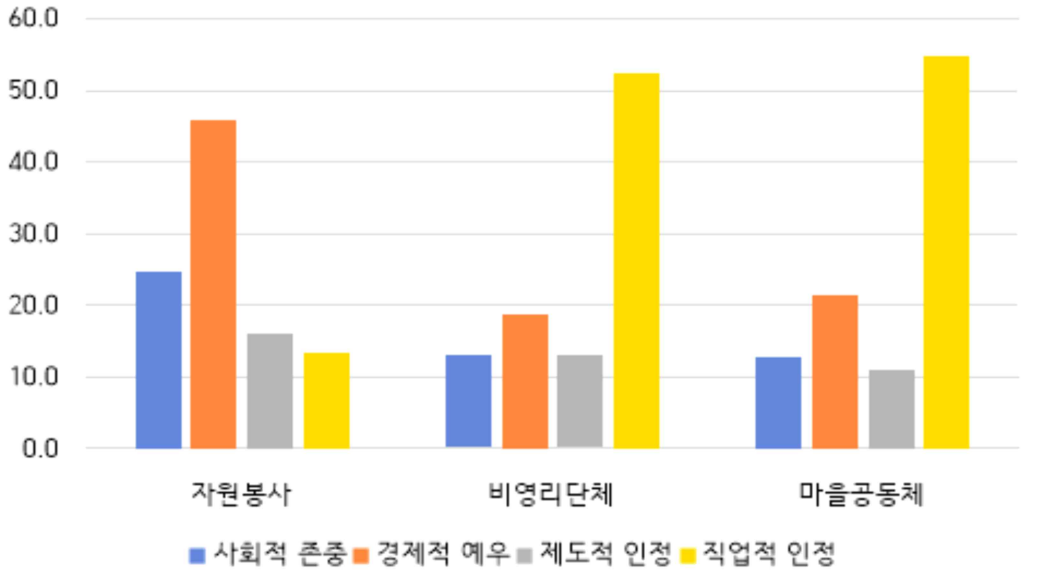

2)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요구 분석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욕구에도 차이가 있었다. 10~30대는 '경제적 예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직업적 인정' 순이었다. 40~50대는 '직업적 인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순이었다. 10~30대와 1, 2순위가 바뀐 것이다. 60대이상은 '사회적 존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직업적 인정' 순이었다. 청년층은 공익활동에 직업탐색을, 중장년층은 전문가로서 경제적 안정을, 노년층은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0-5〉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명, %)

	사회적 존중		경제적 예우		제도적 인정		직업적 인정		기타		합계	
10대~30대	302	(18.2)	636	(38.2)	293	(17.6)	423	(25.4)	10	(0.6)	1,664	(100.0)
40대~50대	274	(15.7)	459	(26.4)	200	(11.5)	788	(45.2)	21	(1.2)	1,742	(100.0)
60대 이상	104	(34.1)	85	(27.9)	27	(8.9)	84	(27.5)	5	(1.6)	305	(100.0)
전체	680	(18.3)	1,180	(31.8)	520	(14.0)	1,295	(34.9)	36	(1.0)	3,711	(100.0)

[그림 10-3] 연령계층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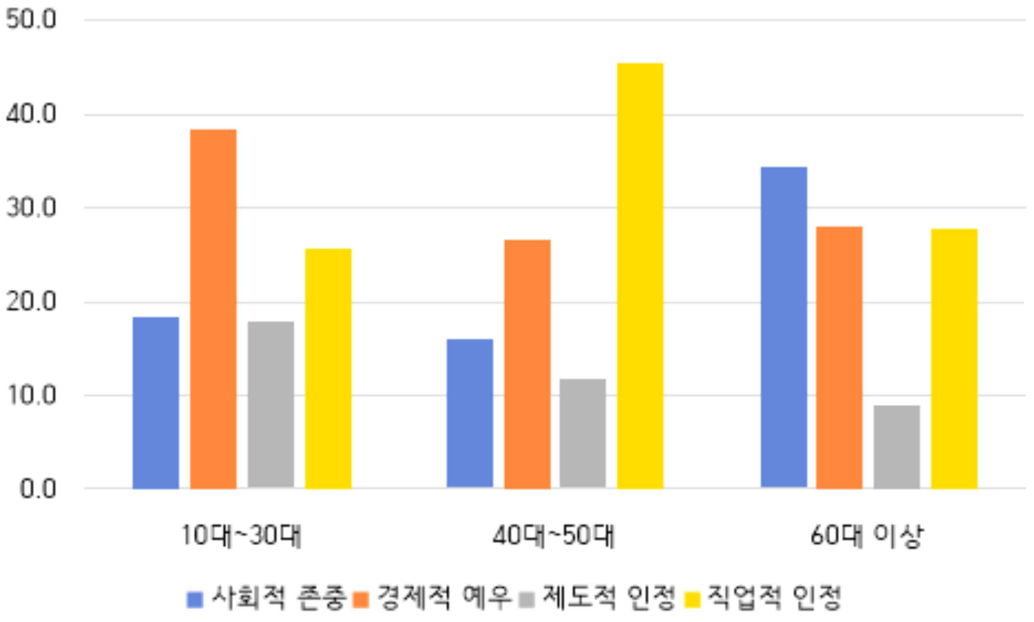

3) 활동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 요구 분석

활동지속기간별 연령대별 사회적 인정욕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3년미만은 10~30대와, 3년 이상 10년미만은 40~50대와 욕구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년이상은 '직업적 인정'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제적 예우', '사회적 존중'의 순이었다. 경력이 높을수록 전문가로서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예우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표 10-6〉 활동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명, %)

구분	사회적 존중	경제적 예우	제도적 인정	직업적 인정	기타	합계
3년 미만	274 (19.1)	560 (39.1)	254 (17.7)	337 (23.5)	8 (0.6)	1,433 (100.0)
3년 이상~10년 미만	214 (16.5)	397 (30.6)	161 (12.4)	513 (39.6)	12 (0.9)	1,297 (100.0)
10년 이상	192 (19.6)	223 (22.7)	105 (10.7)	445 (45.4)	16 (1.6)	981 (100.0)
전체	680 (18.3)	1,180 (31.8)	520 (14.0)	1,295 (34.9)	36 (1.0)	3,711 (100.0)

[그림 10-4] 활동지속기간별 사회적 인정 욕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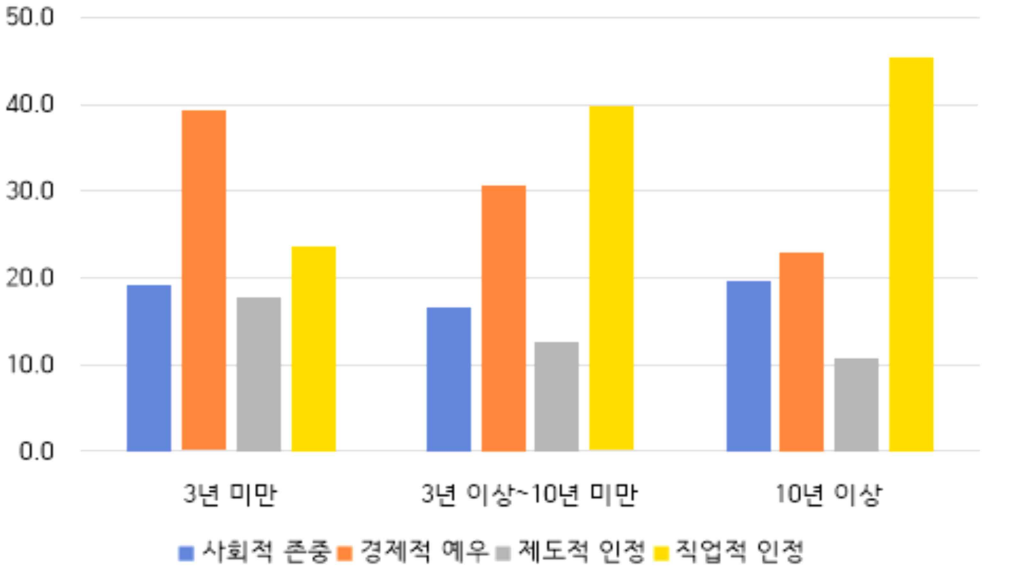

바. 공익활동의 인정방향

자원봉사활동과 마을공동체·NPO는 기본특성과 배경이 다른 만큼 분리하여 인정방향을 제안한다.

[그림 10-5] 자원봉사활동의 인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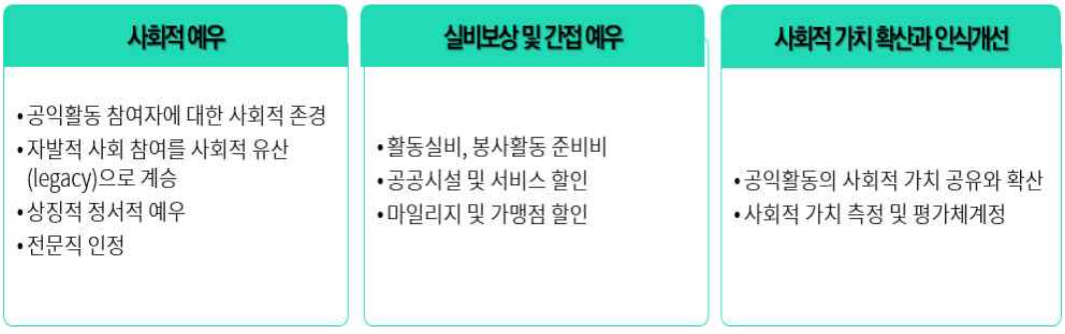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0-6] 마을공동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인정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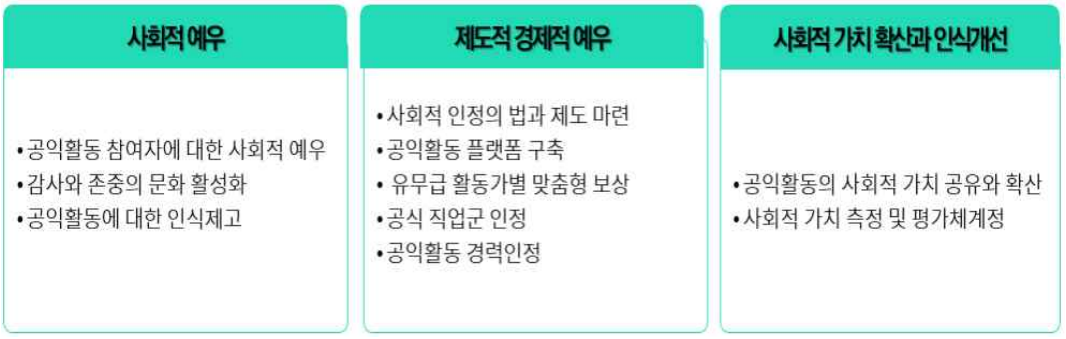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5대 추진전략과 13개 추진과제 그리고 35개 개별과제로 제시한다. 또한 개별과제에 대해 자원봉사활동과 마을공동체·NPO는 분리하여 살펴보고, 기존제도와 신규제안으로 표시하였다. 마을공동체·NPO는 대부분 신규제안임을 알 수 있다.

〈표 10-7〉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추진 전략과 과제

추진전략	추진과제	개별과제	자원봉사	마을공동체/NPO
공익활동의 사회적가치 확산 (사회적존중)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시민교육 콘텐츠 개선 및 대 시민 정보 제공	O	O
		시민사회 주도 공익광고 및 캠페인 활성화 지원	O	O
		시민공익의 날 제정	O	●
	공익활동 참여자의 사회적예우강화	표창, 포상을 공익활동 전반으로 확대	O	O
		전시관, 아카이브 등 사회적 유산 축적 강화	O	O
		감사와 존중 문화 활성화(Nat. Volunteer Week)	O	O
	사회적 인정 공론화 및 합의형성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익활동 가치 및 사회적 인정의 필요성 확산	O	●
사회적 인정방안 다양화 (경제적예우)	사회적 인정 정책 방향 정립	관리감독이 아닌 신뢰 기반의 인정 방식·절차 도입	●	●
		양적 성과가 아닌 공익활동 성장 지원 지향	●	●
		도구적 수단이 아닌 사회문화정서적 인정 강화	O	●
		사전 자격 제한이 아닌 사후 가치 기반 평가	●	●

추진전략	추진과제	개별과제	자원봉사	마을공동체/NPO
	다양한 보상 자원 및 제공방식개발	공익활동에 유용한 다양한 보상 자원 발굴 및 개발		●
		인정 자원이 공익활동에 재투입되는 선순환 구조 마련		●
	시민참여 활성화 정책과 연계	시민참여수당(광주광역시/광산시)		●
		공익활동 참여자 교육 및 훈련 강화		O
		공익활동 공가(公暇), 유급휴가제 도입		●
	공익활동 참여자별 맞춤형보상	유급활동가: 사회경제적 안전망 구축, 직업 인정		●
		무급자원활동가: 사회적 노동 보호, 인정과 예우		●
		공익활동단체: 세제 혜택, 금융권 보증, 국유재산 활용권		●
공익활동가의 사회적인정 확대 (직업군인정)	공익활동가의 공식직업군인정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공익활동가(전업 포함)		O
		각종 사회교육에 공익활동가 좋은 일자리로 소개	O	●
	공익활동 경력 인정	전업 활동가의 경력 인정 요건 완화		●
		활동 경력 기반 정부 및 공공부문 진입 기회 부여	O	O
		비 전업 활동가의 활동 경력 인정 체계 구축	O	●
제도적 기반 마련 (제도적인정)	사회적 인정 관련 법제도근거마련	(가)공익활동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
		독립적인 사회적 인정 기구 설치		●
	공익활동 제도 개선	공익활동 지원대상 확대(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완화)		●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보조금 집행기준, 민간위탁법 개정)		●
		실효성 있는 조세감면 혜택 확대		●
사회적 인정 인프라구축 (제도적인정)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공익활동 이력제(서울마을센터 경력관리 시스템)		O
		다자간 공익 마일리지 교환시스템(시티즈 파워뱅크)		O
		공익활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O	●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체계개발	증거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SROI, 임팩트 측정)	●	●
		시민사회조직 성과 관리 체계화	●	●
		공익성 평가지표 구축	●	●

주: O표는 기존제도, ●표는 신규제안
자료: 저자작성

2. 공익활동 플랫폼 현황과 구축방안

가. 국내 공익활동 플랫폼 현황

공익활동 플랫폼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5장에서 11가지의 형태로 살펴보았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정부의 정책 참여 공공 플랫폼

중앙정부의 시민통통(국무총리실 시민사회위원회), 온국민소통(행정안전부), 그리고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익활동 플랫폼들이 각기 독자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자원봉사 포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체계

자원봉사 관련 플랫폼으로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협의회의 VMS, DOVOL 등의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촛불재단이나 VolunteerMatch 등 플랫폼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활동 욕구와 수요처의 연결, 자원봉사활동 관련의 정보와 지식제공,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증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넓은 의미로 보아 미국의 AmeriCorps나 영국의 NCVO도 이와 관련된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내의 가이드스타, 외국의 사례로서 Candid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마을공동체 관련 온라인 플랫폼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등이 대표적이며 각 지역별로 마을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지역별 온라인 체계가 구성되고 있다.

4) 서울시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광역 단위 지역사회 수준에서 NPO활동을 지원하는 대표적 중간지원조직의 온라인 플랫폼 체계가 서울시 NPO지원센터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여기서는 활동지원플랫폼으로서 공공공공(공익활동가들이 공공재를 만드는 공간)과 NPO도구상점, 정보지식플랫폼으로서 정보 아카이브와 변화사례 아카이브, 자원연계플랫폼으로서 NPO파트너페어 아카이브, 센터 블로그 등을 종합적

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5) 기타의 온라인 플랫폼 자원

공익활동에 대한 기술적 정보와 도구지원체계로서 NGO-IDEAs, PNGK, Collaboration Superpowers, 타임뱅크와 공익적 활동 교환지원체계로서 국내의 타임뱅크코리아와 미국의 타임뱅크 및 community weaver3.0, 아카이브와 기록체계, 기타의 법률 등 일부 분야에서 제공하는 공익활동 연계 플랫폼 등이 있다.

나. 공익활동 플랫폼의 시사점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이를 지원하는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나 확장에 비해 내실성이 떨어져 이용 시민의 입장에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빈 플랫폼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몇 가지 두드러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공공 플랫폼의 부각과 성격

최근 중앙정부의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제시하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공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수렴 등 논의를 핵심으로 하여, 민간 자체적인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정보나 공간(물리적 혹은 가상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성이 증가하였으나 공공정책과 관련된 의제에 국한되고 있어 실제 다양한 공익활동가들의 소통 채널로는 SNS 형태의 작은 플랫폼이 더 많이 활용되는 상황이다. 운영관리인력이 소수이기 때문에 유연하고 즉각적인 환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구성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

2) 자원봉사와 다른 공익활동 영역과의 분절성과 편차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활동시간 인증이라는 나름대로의 표준화와 기술적인 과제가 구현되어 온라인 플랫폼 체계와 연동되고 있다. 1365, VMS, DOVOL 등이 이와 관련된다. 반면, 다른 공익활동 플랫폼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나 기술적인 체계성이 충분하지 않아 공식적 인증체계가 취약하다. 서울시의 일부 플랫폼에서 활동경력이나 교육경력의 일부를 인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나 자원봉사 플랫폼에 비해서 다른 공익활동 영역 플랫폼의 활동기록 데이터베이스와

인증은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와 다른 영역(마을공동체, NPO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가지는 형태와 주요기능에서 큰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3) 소통에서의 취약성 극복 과제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조회와 같은 기존 홈페이지나 포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본질적 활성화와 기여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활발한 소통과 쌍방향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비등하나 (공공플랫폼들이 지행하고 있는 개방성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익활동가들의 소통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는 불충분하다. SNS와 같은 소규모의 대화채널과의 연계, 담당인력 확충을 통한 실시간 피드백 기능 등의 보강이 필요하다.

4) 민간의 개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시도되는 인정과 보상체계

공익활동 인증이나 이에 대한 인정보상 등이 공공 플랫폼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타임뱅크와 같은 방식의 상호적 활동 인증과 사회적 교환체계도 별도의 플랫폼에서 모색되고 있다. 이후 개별 온라인 플랫폼들의 인증과 보상체계가 따로 완성될 경우, 오히려 이는 전체적인 공익활동 온라인 플랫폼과의 체계화에서 난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공공 플랫폼을 통한 사회적 인정, 활용이력 인증 등의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여타의 인정보상 체계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포괄성과 공신력을 갖춘 대표 플랫폼의 구성 필요성

기존의 플랫폼은 일부의 활동범위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거나 필요한 기능 중 일부만을 구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익활동의 전체적 범위를 포괄하는 정보와 도구의 제공, 활동 이력 취합과 인증 기능 등을 모두 수행하는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공신력을 가진 운영체계로서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 포괄성과 공신력을 갖춘 대표적 성격의 플랫폼이 구현되어야 공익활동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하나의 접근경로를 통해 필요한 지원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 공익활동 플랫폼의 환경분석

공익활동 플랫폼의 내부적 및 외부적 환경맥락을 SWOT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플랫폼의 강점

이나 기회의 요소, 취약점과 위협의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SWOT분석 결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강점위협전략(ST)과 약점위협전략(WT)이 있다. 강점위협전략(ST)은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다각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확충하는 전략을 들 수 있다. 약점위협전략(WT)은 방어적 전략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플랫폼 보완 및 고도화 전략 또는 현상유지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플랫폼이 가진 약점(공익활동 플랫폼 별 차이와 연계성 결여)을 보완하고 활용성과 유용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그림 10-7]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의 맥락

자료: 저자작성

라. 공익활동 플랫폼의 개선방향

공익활동 플랫폼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한 방안으로 모색되는 것으로 특히 국가계획에 따른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공익활동 현황과 욕구에 비추어 가장 부각되는 부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인증체계를 통해 공익활동의 이력을 온라인으로 집적하여 공식화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구도가 크게 달라진다.

[그림 10-8] 공익활동정보시스템 및 활동 인증과 관련된 플랫폼 구축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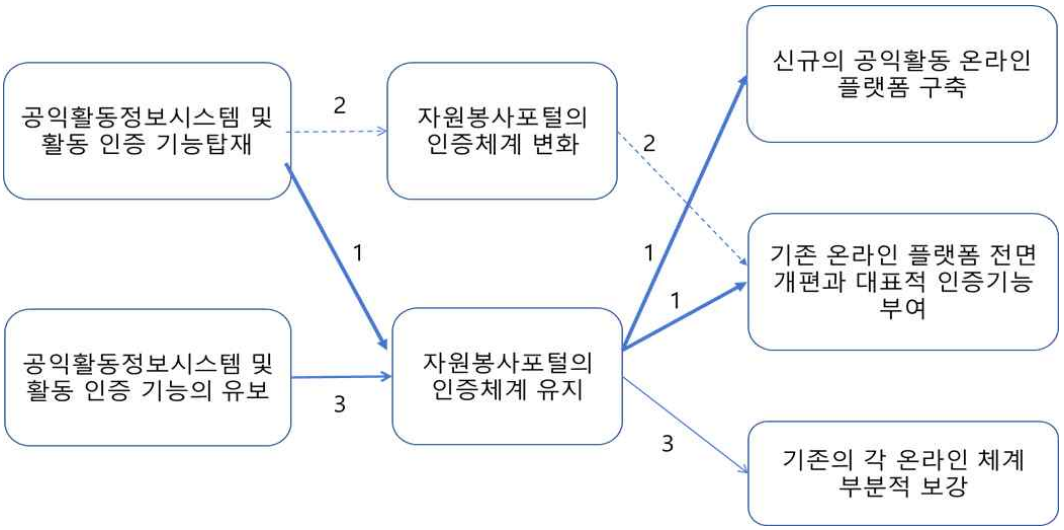

자료: 저자작성

단기에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맞추어 굵은 실선의 1의 경로에 맞추어 강점위협전략에 기반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해당 온라인 체계는 플랫폼으로서의 명실상부한 기능 수행과 활동 참여자들의 많은 이용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문제 이전에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 인증을 도모하겠다는 조속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는 공공의 방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반면, 현실적인 사회적 합의의 부족이나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 등을 감안한다면 약점위협전략에 기반한 온라인 체계들의 세부적 개선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플랫폼의 구축방향은 기본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인증체계를 곧장 도입할 것인가의 결정 여부에 따라 기본적 방향이 달라진다.

제2절 정책제언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가. (가칭)공익활동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환경조성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칭)기본법에 담아야 할 주요내용은 먼저 사회기여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는 만큼 가장 기본은 시민교육과 홍보의 강화이다. 다음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감정보를 제공·발굴하는 참여 편의성의 제고이다. 아울러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관리 등 사회적 예우와 혜택도 연계되어야 한다. 끝으로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존활동 플랫폼과 연계한 통합(또는 대표) 플랫폼의 구축을 담아내야 한다.

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교육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공익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시민 홍보와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94.0%(매우 필요하다 56.0% + 약간 필요하다 3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교육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실천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교육내용으로는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익활동의 필요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변화사례, 국가 차원의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은 물론 일반인을 위한 언론과 SNS를 활용한 교육 병행을 제안 한다.

다.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공익활동의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예우는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에 기여한 시간과 재능, 역량에 대한 존중이자, 공익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사회

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제4차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에서도 사회적 인정 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활동 시간의 인증과 경제적 보상의 문화를 사회적 인정의 문화로 전환하기로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예우 외에 공익활동에 참여한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고 그 경험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여 시민사회 도서관, 자원봉사센터나 공익활동센터 등 시민참여의 거점 공간에 전시하고 공유되어야 한다.

공익활동 전업가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경력인정 체계의 확보가 중요하다. 기존의 경력 증빙이 어려운 경우는 입증할 수 있는 인정 방법이나 요건을 완화하고,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비전업 활동가의 경력 인정 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공식 직업군은 전업 공익활동가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포함해 국가통계, 각종 보험 등에서 정규 일자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각종 사회 제도에서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이를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사회안전망을 제공받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각종 사회교육, 특히 청소년 및 청년 대상의 미래직업교육에 공익활동가를 정식 직업으로 포함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진출할 만한 직업으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기존 분류체계의 세분류에서 소분류로의 위치 이동의 제안이다.[52)]

사회적 예우 강화는 공익활동 분야 종사자 및 유·무급 활동가, 자원봉사자, 기부자들에게 공익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여 지속적 활동에 기여할 것이다.

라. 공적활동단체의 지원 대상 요건 완화와 유용자원 지원

공적활동단체의 지원 대상 요건의 완화를 제안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주민모임 자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 단체는 법인격, 정관, 회계, 책임자 등 공적 지원을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운용된다. 다만 일부 역량이 미흡한 단체를 인정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우려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인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지원 규모를 함께 낮추는 등 보완적인 절차와 지원방안 등의 제도설계를 통해 해결 경험을 하였다.

52) 통계청 직업분류표의 '시민단체활동가' 분류 위치(고시 제2017-191호).

대분류(9)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4.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2471. 사회복지사 2472. 보육교사 2476. 시민 단체 활동가
3. 사무종사자			

또한 공익활동에 유용한 자원을 공익활동단체에게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의 가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사회적 예우처럼 자원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즉 보조금 이외의 다양한 공적 자금,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활용 권한 등 공익활동에 선순환 구조로의 투입을 제안한다.

2.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제

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와 절차

공익활동 플랫폼을 개선할 때 단기적으로 활동이력의 취합과 인증, 그리고 이에 연계된 보상을 모색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 여부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의 신설 혹은 기존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공익활동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아니면 인증기능은 유보하고 기존 플랫폼들의 다른 기능들만 보완할 것인지 결정된다. 이러한 결정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야 한다. 합의기구에는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주체와 중간지원조직, 기존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표적 주체(공공과 민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를 준비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탑재할 플랫폼이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할 때, 기존의 관련된 포털이나 플랫폼, 혹은 그 운영체계와의 관계 설정에서의 갈등 우려(기존 자원봉사 영역의 인증 플랫폼과의 관계 설정)도 있으며, 개별 민간의 선행체계들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 공익활동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의 탑재 구성

공익활동 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필수 기능들을 살펴본다.

첫째는 공익활동을 연계하고 검색하여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일반적 정보 제공의 기능이다. 기존의 여러 플랫폼이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것은 정보의 실용성이나 충분성에서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게시판 등록 수준에 머무르지 않도록 대표적인 포괄성을 가져야 한다. 정보 제공자가 등록하는 내용을 수동적으로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플랫폼 자체에서 정보를 검색하고 게시 혹은 연계하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공익활동가나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도구의 제공 기능이다. 공익 활동가들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여 해당 플랫폼이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본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활동가들의 소통과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의 공간이다. 특정 공익플랫폼이 대표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기 보다는 기존에 SNS를 비롯한 많은 온라인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통일적으로 정리하거나 일원화할 수는 없지만 플랫폼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구성해서 제시하거나 용이하게 연결하는 것은 중요하다.

네 번째는 공익활동의 이력 취합과 인증기능의 탑재이다. 이는 플랫폼의 신규 구축 필요성 자체와 관련된 핵심 기능이 된다. 적어도 전국 어디에서 활동하는 경우이건 활동가나 조직이 자신의 공익 활동을 등록하면 이에 대한 상호적 평가에 따라 활동 이력과 활동 시간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식적 기록의 인증이 구축된다면 이에 따른 상징적인 인정의 부여나 피드백과 같은 최소한의 인정은 인증과 동시에 구현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대한 정책 제언과 요구를 취합하고 결과를 피드백하는 기능이다. 최근 몇 년 간 구축된 중앙정부의 관련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구현하고 있는 기능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포털이나 플랫폼에서도 관련 기능이 나타나기도 한다. 공익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공적 정보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그에 대한 공공의 피드백이 플랫폼 내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공익활동과 관련 정책에 대한 홈페이지 성격의 홍보와 뉴스 제공에 대한 부분이다. 이는 대개의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제공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기능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에서 이를 적시에 현행화하고 관련 정책이나 뉴스를 효과적으로 게시 및 질의응답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 민간 중심의 공익활동 특성을 반영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플랫폼이 공익활동 현장의 욕구에 친화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운영의 인적 주체는 민간, 특히 공익활동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민간이 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자원의 동원에서 설립은 공공, 운영과 관리는 민간이 가지는 장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의 과정에서부터 공공과 시민사회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랫폼의 운영 실무과정에서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적 자산인 운영요원에 대해 적극적 활용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소수 담당 직원의 편성을 넘어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큐레이터나 아키비스트를 정규인력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대표적 플랫폼은 전국 단위에서 기능하도록 하고 활동 인증 기능의 활성화와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각 지역의 다양한 공익활동 주체들이 전국 단위 대표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구도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도 전국 단위에서 설치

되는 플랫폼의 지역별 버전으로 대표될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정 혹은 신규 구축을 위한 공공-시민사회 간 논의 구조를 필요로 한다.

라. 정보검색과 소통 지원기능의 보강

일반적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넘어서는 포괄성과 최신화를 갖춘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정보검색과 신청 경로 구현이 필요하다. 공익활동 참여 신청 혹은 정보 검색에서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충분한 포괄성과 지속적 데이터 클리닝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공익활동 참여기관이나 활동의 유형별 현황, 신규참여와 관련된 정보, 지역적 상황,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도구와 정보, 관련 법령, 관련 공공정책에 대한 참여 등이 각각 구분되어 제시되고 확장검색과 정보의 현재 기준 유효성 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정보검색에서 해시태그나 챗봇 등의 검색지원 기능의 첨가, 정보의 깊이보다도 넓은 포괄성에 기초한 매핑과 아카이빙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 대중 대상의 정보와 공익활동 핵심 활동가 및 조직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와 도구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플랫폼에서는 활동 참여자들의 소통을 지원하지 위한 개방형과 폐쇄형의 소통지원 기능을 직접 첨가하거나 혹은 연계와 안내 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마. 정보취합과 동시에 정보보호의 신뢰성 강화

플랫폼이 인증기능과 도구제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혹은 신청자의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정보(특히 식별정보)의 취합은 활동 인증에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공 정보의 철저한 비밀보장과 인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 혹은 민관합동의 공익활동 인증위원회나 공익활동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동시에 부과하여야 한다.

바.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의 구축

‘공익활동정보시스템(안)’과 같은 공식적 체계가 구축되어 개인이나 조직의 공익활동 여부와 활동량, 이력이 등록·집계되면, 이를 기초로 ‘인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을 통해 등록 혹은 취합된 자료가 자동적으로 공익활동으로 인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관계자들에 의해서 인증의 공신력과 객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칫 공익활동의 인증이 관변단체

속성의 양상이나 공익활동에 대한 공공통제의 기전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인증 주체가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익활동 주체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와 같은 구조를 필요로 한다. 공익활동정보시스템과 인증체계는 현재로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이력 인증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활동 이력을 인증하는 경우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는 개인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 혹은 조직의 단위로 인증할 것인가 이고, 둘째는 투입이나 과정의 노력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 결과와 성과에 대해 인증할 것인가의 측면이다. 활동가 개인 단위의 정보취합과 인증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활동시간 이력인증의 논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개인과 달리 활동조직 단위로의 정보취합은 단체의 성격과 공익성에 대한 정보와 활동이력의 정보가 함께 취합되어야 한다. 조직의 활동이력은 개별적인 프로젝트와 지속기간의 측면에서 이력을 정보화하되, 그 투입의 내용이나 성과의 양적 측면을 정보화 혹은 인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중기적 과제로 남겨야 할 것이다.

3.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를 추진하면서 보완하거나 한계를 차기 연구과제로 제시하여 본다.

가. 한국형 공익활동의 개념과 범주 및 분류
  - 학문별 제도별 공익활동의 개념
  - 사회적 일자리 형태별 검토와 분류

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인식문화 정착

다. 공익활동의 평가지표 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측정

라. 국가 공익활동 통계체계 구축과 기본 통계 생산

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자원봉사, 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차별화 전략

바. 사회적 기여 마일리지의 관리 및 서비스 교환, 변환 연구

참고문헌

[국내 문헌]

강준만. 2022. 정치적 올바름: 한국의 문화 전쟁, 인물과사상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1, “2021-2025 경기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결과”

고경환 외. 2018. “사회복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용노동부. 2022. “플랫폼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고용형태 증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정근. 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 서울시NPO지원센터·동행.

관계부처 합동. 2021.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광주광역시. 2022.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결과보고서”.

국무총리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제3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백서”.

국회입법조사처. 2015.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개선 방안.

김경동. 2012. “자발적 복지사회”. 도서출판 아르케

김대건, 김동철. 2015. “자원봉사활동 동기가 만족도와 지속도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제17권 제2호. pp.289-319.

김병국, 이상묵, 전용태. 2020. “자원봉사 실적인증제도 개편 방안”.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상민, 김현호, 조정찬. 2017.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연구과제.

김상호, 박지순, 이근열, 변섭. 2016.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의욱, 2019.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두는 사회적 보상이란? ”, 2019 강한시민사회4차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시민.

김재영. 2021. “초연결성은 어떻게 지역성과 만나나?: ‘당근마켓’ 사례를 통한 탐색적 시론”.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08호, 한국언론정보학회. pp.7-29.

김정욱, 진성만, 여관현. 2019.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정책적

함의".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1(2). pp.55-79.
김정훈, 이다겸. 2018. "타임뱅크를 활용한 복지서비스의 혁신". 이슈&진단, 제310호, pp.1-25.
김종진. 2019. "'공익활동가'의 사회활동과 노동자 문제 검토". 2019 강한시민사회 6차 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시민.
김종진. 2020. "마을활동가 직업화, 스스로 나서야", 마을활동가 인정체계 세미나 자료집,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태영. 2002, "정부-NGO간 파트너십의 정치경제학",시민정신과 민주행정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김학실, 최용환. 2017. "자원봉사자 만족도 및 참여 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3호, pp. 269-289.
김현아, 2019, "공익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어떤 보상이 필요한가? ", 2019 강한시민사회4차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시민.
남기철. 2021. "자원봉사론", 학지사.
남기철. 2022. "자원봉사론", 학지사.
내 손안에 서울. 2022.6.20. "시간을 저축하고 도움을 인출해요…요즘 품앗이 '서울시간은행'".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849
대전세종연구원. 2021.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시.
대한뉴스. 2016.4.13., "인천시, 찾아쓰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간병 지원사업 운영". http://www.d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09
도시재생지원사업단. 2009. "한국의 도시·마을만들기 사례",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1, 국토연구원.
동아일보. 2002.8.19., "'자원봉사은행'을 아시나요".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20819/7854014/1
동행. 2018. "공익활동가들의 삶과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 수요조사", 서울시NPO지원센터.
듣는연구소. 2021. "서울의 마을일자리 특징과 일자리 사업 추진방안 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류연미. 2014. "지속가능한 삶으로서의 활동 : 서울시청년일자리허브와 청년 활동가의 실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류홍번. 2021. "공익활동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제 제안",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정책간담회.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3.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전망",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40, 국토연구원.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6. “제9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in 정읍 결과보고서”.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2017.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in 진안 결과보고서”.
무등일보. 2017.2.21.자), “해남군, 관련 조례 시행규칙 마련...4월부터 본격 시행”.
http://www.mdilbo.com/detail/GQFJv6/504753
미디어생활, 2006.5.9., “'자원봉사 마일리지은행' 구축”
https://www.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
민현정. 2004.“NGO에 대한 지방정부 재정지원의 실태와 문제점 :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NGO 활동가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pp.111-132.
박경주. 2019.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인권운동”, 인권연구, 2(1), pp. 71-108.
박상필. 2006.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박세경 외. 2010. “민간복지자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영선, 정병순. 2019.“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박원순. 2004. “비영리단체의 재정 투명성:아름다운 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영리연구, 3(1), pp. 173-193.
박준 외.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준, 김성근. 2019.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박천일, 김선엽. 2011. “비영리민간단체 재정지원의 특성에 관한 연구-행정안전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153-178.
박철훈, 김행열. 2013. “한국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지속의지의 영향 요인”. 한국동북아논총, 제18권 제1호, pp.305-329.
박치성, 하혜영, 한승준. 2011. “정부의 공익사업 재정지원에 따른 정부-비영리단체간 관계 분석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목적 및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0(1), 한국행정연구원, pp. 67-91.
변동현, 장승권. 2020. “사회적경제조직의 멘토링:밀레니얼세대 직원활동가의 조직적응에 대한 내러티브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제13권 제2호, pp. 33-62.
보건복지부. 2019.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보도자료, 2019.7.25.
복문수. 2005. “거버넌스시대의 파트너십과 NGO의 성찰 : 전라남도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민간

단체(NGO)에 대한 '시민적 정당성'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2(1), pp.25-51.
볼런티어21. 2001. "자원봉사활동의 인정", 자원봉사센터 운영 매뉴얼,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일자 2021.11.22.)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https://www.vms.or.kr/openspace/paperView.do?board_seq=1200127
서문진희, 권용신. 2015. "노인 사회활동(노인일자리) 지원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4), pp.277-296.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2017년 1차, 2차 회의록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촉진위원회. 2020년 1차 회의록.
서울시. 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매뉴얼 II. 마을".
서울시. 2017. "서울시 2기(2018~2022)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과 자치, 모두를 위한 서울" .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20. "데이터로 보는 인포그래픽스 :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2016-2018년".
선다영, 손서락, 양혜란, 유원상. 2021. "DJango 기반 한국형 타임뱅크 웹 플랫폼", ACK 2021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8권 2호, 977-980.
손영주. 2020. "공공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KISTI Issue Brief, 제27호.
송민경, 김선희, 조철민, 최권호, 최유미, 최창욱. 2022.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행정안전부·한국자원봉사학회.
송정인, 이혜영. 2017. "영국의 자원봉사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협약'과 '큰 사회'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4권 2호, 217-242.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19.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 촛불 이후, 정부-시민사회 관계 달라졌나".
시민사회현장연구자모임. 2019.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20. "2020년 시민사회의 주요 정책변화는".
신진욱. 2022. "한국 시민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질적 면접 연구", 아름다운재단 기획연구.
신진욱, 정보영. 2022. "한국 시민사회의 확장, 위기, 혁신의 삼중과정-전략적 행위장 이론에 기초한 구조변동 분석". 시민과세계 통권40호.
안영삼. 2023. "사회공익활동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방안 토론문".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포럼(5차) 자료집.
안현찬, 위성남, 유창복. 2016. "서울을 바꾸는 정책, 새로운 도시 01 : 마을공동체", 서울연구원.
안현찬, 구아영. 2017a,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안현찬, 조윤정. 2017b, “서울시 공동체공간 지원사업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안현찬, 조윤정. 2019,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자원 활용 촉진방안”, 서울연구원.

여진. 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조건”, 2019 강한시민사회 6차 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 시민.

염형철, 2019, “공익활동가들이 인정받는다는 것”, 2019 강한시민사회4차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시민.

오영수. 2021. “봉사활동 시간인증, 관리보다 신뢰를 위하여”. 웹진 자원봉사문화. 113호. 한국자원봉사문화.

오은주, 안현찬, 오승훈, 최명식, 박하연. 2019.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자산 활용 방안”, 서울연구원.

우성희, 서진. 2021. “서울의 마을일자리 특징과 일자리 사업 추진방안 연구”,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우정자. 2012.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이 청소년의 지역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 만족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2호, pp. 335-363.

유길준. 2012. “자원봉사활동 인정·보상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유길준. 2015. “인정·보상 효과에 대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관리자의 인식 비교 연구. 인문사회21”, 제6권 제3호, pp. 323-342.

유창복. 2014.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휴머니스트.

윤병국. 2005.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보상의 현실과 과제”. 2005 전국자원봉사센터 관계관 워크숍 자료집, 행정자치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이강현, 정진경. 2006. “자원봉사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 보상 시행 경험에관한 연구”. 한국비영리연구, 5(1), pp.101-135

이강현. 2013. “자원봉사의 길”, 도서출판 아르케.

이금룡, 박상욱, 유은경. 2013. “인정과 보상이 노인자원봉사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학술 대회,pp. 98-100.

이상연. 2018.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안 연구 : 캐나다의 지역공동체 운영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이선미. 2016. “시민성 관점에서 본 자원활동: 새로운 유형과 관점,” NGO연구, 제11권 제1호, pp. 57-83.

이선미. 2020. “개인화 시대의 하이브리드 자원봉사 조직화와 적극적 시민성: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소모임 활성화 사업의 시민교육적 효과”. NGO연구, 제15권 제2호, pp. 31-67.

이연희. 2021. “자원봉사 플랫폼의 변화와 과제.” 〈복지타임즈〉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49

이영숙, 박영선, 박소은 외. 2022. “지방정부의 시민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조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규, 정희선, 서종희, 최은희. 2020. “2020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 행정안전부, (사)한국자원봉사문화.

이은해, 2020, “마을활동가가 바라보는 마을일자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REPORT (2020.11).

이정민, 이만형. 2017. “대안적 공동체론과 관련 조례의 공동체 개념화”, 서울도시연구 제18권2호, 서울연구원, pp.177-192.

이종일. 2016. “정치적 올바름의 개념과 논쟁 범위 고찰”, 사회과교육연구, 23(2), pp.1-18.

이형진 외. 2020.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지표 개발 연구”, 서울시NPO지원센터.

이홍균. 2006. “한국인의 사회적 과시와 인정의 사회적 형식”, 담론 201, 제9권 제2호, pp. 207-244.

이환성 외. 2021.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연구원.

이희랑, 이은미. 2018. “마을지원활동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전대욱. 202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의 쟁점과 의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제127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최인수, 김건위. 2016. “지역공동체 소유권과 자산화 전략”,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pp.104-121.

전용호, 이금룡. 2013. “노인 자원봉사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제62호, pp. 173-202.

정란아. 2019a. “단체와 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지원 및 제도·정책방향” , 2019 강한시민사회 4차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시민.

정란아. 2019b. “기업은 ‘사적 이익’을 생산하지만, 비영리 단체는 ‘공익’을 생산한다.”, 2019 강한시민사회6차포럼 자료집, 서울시NPO지원센터, 시민.

정란아. 2022. “서울NPO지원센터 이용실태와 과제”. 2차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포럼 자료집.

정진경. 2006. “자원봉사조직 및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 인정·보상 시행 경험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센터관리자 워크숍 발표자료.

정진경, 남기철, 권은선. 2008. “자원봉사 인정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모형개발 연구”. 행정안전부, 한국자원봉사포럼.

정진경. 2012. “자원봉사 개념의 재해석과 통합적 적용의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4권 제3호,

pp. 31-52.
정진경. 202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문”,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포럼 (4차) 자료집.
정진석, 조미정, 채현탁. 2009. “자원봉사활동의 적극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정보상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8권, pp. 95-112.
제임스 C. 스콧,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에코리브르.
조선일보, 2017.8.29.,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8/2017082802131.html
조세일보, 2003.3.13., “자원봉사활동비 세 혜택 추진”.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3/03/2003031310706.html
조아신. 2021.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낯선 지역들과의 느슨한 연대”, 복지동향 (2021.1.).
조철민 외. 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조철민. 2015. “시민사회 공익활동 지원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의 지형”, NGO연구, 10(2), pp.1-34.
조철민, 정혁. 2020.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방안 연구”, 구로구청.
진성만, 권경선. 2017.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의 과제”, 지방자치법 연구, 17(4), pp.129-165.
최상미, 신경희, 이혜림. 2017. “서울시 자원봉사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최영준, 이수현, 남기철, 이민영, 손동유, 유재윤, 오서은, 조은지. 2022. “사랑의열매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계획수립 연구”. 사랑의열매 나눔연구소.
최은숙. 2005. “인정보상 요인이 자원봉사 행동의 지속도와 강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최종숙, 2021, “청년활동가에게 활동하기 좋은 일터는 가능한가: 참여연대 청년활동가 분석”, 시민과 세계, 제38호, pp.193-232.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2020년 1차, 2차 회의록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2021년 1차 회의록
태윤재, 박소현. 2010. “마을만들기 조례에 나타난 마을만들기의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7호, pp.175~182.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 통계”.

한국사회가치평가. 2021. “NPO를 위한 사회성과 측정 가이드북”, 서울시NPO지원센터.

한국자원봉사문화, 2015, “자원봉사 시간관리는 필수인가?”. e-Lan. Vol.81. Issue2. 시민참여문화 II.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1197

한국자원봉사문화, 2015.6, “시민참여문화II. 자원봉사 시간관리와 도구주의”. 웹진 자원봉사문화 e-Lan. 자원봉사 시간관리는 필수인가?, Vol.84. Issue2.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1197

한국자원봉사문화, 2016.3, “시민참여문화IV. 자원봉사 인정보상 실태와 시민의식”. 웹진 자원봉사문화 e-Lan. 자원봉사 인정보상과 시민의식. Vol.84. Issue2. http://volunteeringculture.or.kr/archives/12527

한국행정연구원. 200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한권탁. 2020. “NPO 활성화를 위한 노동법적 방안 검토”, 경희법학, 55(3), pp.299-328.

행정안전부. 2012. “2013-2017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2차 국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17. “2018-202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2.06.09. “2022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2022a.“ 2021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보고서”.

행정안전부. 2022b. “2022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2007. “2008-2012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제1차 국가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시간인정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lORCZAeZZM8X3ra1Aa8YzgXv4ybZb8a9rOER46qvfLYXczWn910KiwFc11yE1LpQ.mopwas53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59&nttId=31389

홍다영, 권혁창. 2022. “공동체의식, 인정보상과 자원봉사활동 지속성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시군 비교. NGO연구”. 제17권 제1호, pp. 41-76.

KBS뉴스, 2003.09.21., “태풍 복구 자원 봉사, 소득 공제”,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85802

Shumpeter, J. 1942/2011.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변상진 옮김), 한길사

Young, I. 2020. “포용과 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옮김), 박영사.

[국외 문헌]

Alstyne, M. W. V., Parker, G. G., and Choudary, S. P. 2016, “Pipelines, platform and the new rules of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America's Service Commissions (n.d.), "History of National Service, America's Service Commissions". https://www.statecommissions.org/history

Bezemek, Christoph and Tomas Dumbrovsky. 2020.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Graz Law Working Paper, No. 01-2020. http://dx.doi.org/10.2139/ssrn.3701204

Blitz, Mark. 2015. "Public Interest". in James D. Wright(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 Behavioral Sciences. 2nd edition. Volume 19: 552-554.

Boris Elizabeth and Eugene Steuerle. eds. 1999. "Nonprofits & Government: Collaboration and Conflict". Washington D.C.:The Urban Institute Press.

Boyle et al., 2009, "The challenge of co-production", NESTA

Bozeman, Barry. 2007. "Public Values and Public Interest: Counterbalancing Economic Individualism".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Cahn & Gray. 2015. "The Time Bank Solution". Stanford Innovation Review, summer 2015, pp.1-11.

Cnaan, R. A., Handy, F., & Wadsworth, M. 1996. "Defining who is a volunteer: Conceptu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5(3), pp. 364-383.

Defourny, J. & Pestoff, V. (Eds.) 2008. "Images and Concepts of the Third Sector in Europe", EMES Working Papers, no. 08-02, EMES European Research Network.

Downs, Anthony. 1962. "The Public Interest: Its Meaning in a Democracy". Social Research 29(1): 1-36.

Ecology Action Centre. 2016. "The Halifax Food Policy Alliance : A Social Return On Investment(SROI) Study".

Economides, N., Katsamakas, E. 2006. "Two-sided competition of proprietary vs. open source technology platforms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software industry", Management Science, Vol. 52, No.7, pp.1117-1071.

Etienne Denis. Claude Pecheux and Luk Warlop. 2020. "When Public Recognition Inhibits Prosocial Behavior: The Case of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9(5), pp.951-968.

Etzioni, Amitao. 2000. "The Third Way to a Good Society". London: Demos.

EU. 2010, "Study on Volunteering in the European Union, Annex 4". Country Report United Kingdom

European Commiss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and World Bank. 2009.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EC, IMF, OECD, UN, and WB.

Evans, P. B. 1989. "Predatory, Developmental, and Other Apparatuses: A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erspective on the Third World State". Sociological Forum, 4(4), 561-587.

Evers, A. &Laville, J.-L. (eds) 2004. "The Third Sector in Europe", Cheltenham: Edward Elgar.

Evers, A. 1993. "The welfare mix approach: Understanding the pluralism of welfare systems". Paper presented at the CIES Conference, Barcelona, Spain.

Evers, A. 1995. "Part of the welfare mix: The third sector as an intermediate area", Voluntas, 6(2), pp. 119-139.

Fairclouch, Norman. 2003. "'Political Correctness': the Politics of Culture and Language." Discourse & Society, 14(1), pp. 17-28.

Feintuck, Mike. 2004. "'The Public Interest' in Regul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 "National Charitable Nonprofits Urge Prioritization of Pandemic and Workforce Shortage Relief". Cision PR Newswire. 15 February 2022

Goodwill Industries International(2022.2.15.) National Charitable Nonprofits Urge Prioritization of Pandemic and Workforce Shortage Relief, Cision PR Newswire.

Han., W. and L. Longzhu, 2019, "Analysis on the Incentive Mechanism of Volunteers in China".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369, pp. 474-477.

Hansmann, H.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Yale Law Journal, 89(5), pp. 835-901.

Healey, Patsy, 1998,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hrough Collaborative Approaches to Urban Planning", EPA, 30, pp. 1531-1546.

Independent Sector, UNV, 2001, "Measuring Volunteering: A Practical Toolkit"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p.11~17.

John Carroll. Patrick Shih. Kyungsk Han and Jess Kropczynski. 2017, "Coordinating Community Cooperation : Integrating Timebanks and Nonprofit Volunteering by Design", Internationa; Journal of Design. 11(1). pp.51-63.

Johnston, Jane. 2017. "The Public Interest: A New Way of Thinking for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Inquiry 6(1): 5-22.

King, Stephen M., Bradley S. Chilton, and Gary E. Roberts. 2010. "Reflections on Defining the

Public Interest". Administration & Society, 41(8), pp. 954-978.

Kyrwood, D. L. & Meneghetti, M.M. 2010. "Chapter 6: Volunteer Staffing and Development, Volunteer Administration Professional Practice". Coun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teer Administration, LexisNexis.

Laville, J.- L. 1992. "Les services de proximite en Europe". Paris: Syros Alternative.

Laville, J.- L. 1994. "L'economie solidare: Une perspective international". Paris: Desclee de Bauwer.

Long, Norton E. 1991. "Politics, Political Science and the Public Interest.", Political Science & Politics, 24(4), pp. 670-675.

Mason D. & Kim M, 2021, "Federal support has shored up nonprofit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but many groups are still struggling",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federal-support-has-shored-up-nonprofits-during-the-coronavirus-pandemic-but-many-groups-are-still-struggling-156359

Michael O'Neill. 1989. "Third America". San Francisco: Jossey-Bass.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Analysis of Key Provisions Affecting Nonprofits and the People They Serve"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trends-policy-issues/the-american-rescue-plan-act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2019, "Nonprofit Impact Matters:How America's Charitable Nonprofits Strengthen Communities and Improve Lives". p.11

Newman, S. 2009. "National Service Act Continues U.S. Tradition". National Public Radio.

Paul Light. 2000. "Making Nonprofits Work". Washington DC:Brookings Institution Press.

Pestoff, V. 1992. "Third sector and cooperative social services—An alternative to privatiz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15(1), 27-45.

Pestoff, V. 1998 & 2005. "Beyond the Market and State. Civil Democracy and Social Enterprises in a Welfare Society", Aldershot, UK and Brookfield, NJ: Ashgate.

Pestoff, V. 2008. "A democratic architecture for the welfare state". London: Routledge.

Pestoff, V. 2014. "Hybridity, coproduction, and third sector social services in Europ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8(11), 1412-1424.

Pestoff, V. 1991. "Between markets and politics: Cooperatives in Sweden". Frankfurt, Germany: Campus Verlag & Westview Press.

Peter Frumkin and Mark Kim. 2002. “The Effect of Government Funding on Nonprofit Administrative Efficiency:An Empirical Test”. Harvard Kennedy School. October 2002.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4(13): 35-42.

Rachel Fyall. 2016. “The Power of Nonprofits:Mechanisms for Nonprofit Policy Influe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6(6).

Reed, P. B., & Selbee, L. K, 2001, “Volunteering and Giving: A Regional Perspective”, Canadian Social Trends.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o. 11-008. https://www150.statcan.gc.ca/n1/pub/11-008-x/2001003/article/6006-eng.pdf

Robbins, M. 2019, November 12. “Why Employees Need Both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Retrieved November 7, 2022 from https://hbr.org/2019/11/why-employees-need-both-recognition-and-appreciation

Roger Lohman. 1992. “The Commons”. San Francisco: Jossey-Bass.

Salamon, L. M. 2012. “The resilient sector: the future of nonprofit America”. In L. M. Salamon (Ed.), The state of nonprofit America (2nd ed.).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Skocpol, Theda. 2010[2003]. “민주주의의 쇠퇴: 미국 시민생활의 변모”. 강승훈 옮김. 한울.

Smiths, J.D. 2000, “Volunteering and social development”,Voluntary Action-London-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3(1), pp.9-24

Steven Smith. 2008, “The Challenge of Strengthening Nonprofits and Civil Societ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December 2008.

Streeck, W., & Schmitter, P. 1995. “Community, market, state—and associations?”. In W. Streeck & P. Schmitter (Eds.), Private interest government—Beyond market and state. Beverly Hills, CA: Sage.

Susan Carter. 2011. “Public policy and the nonprofit sector”. The Philanthropist, 23(4).

U.S. Congress. 1969. H.R. 11235 (91st) “An Act to amend the Older Americans Act of 1965, and for other purposes”. https://www.govtrack.us/congress/bills/91/hr11235/text

U.S. Congress. 1973. H.R.7066 (93rd) “Domestic Volunteer Service Act”. (1973, April 16). https://www.congress.gov/bill/93rd-congress/house-bill/7066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21.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Overview of Programs and Funding", CRS Report.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U.S. Department of Labor. 2015. "Fact Sheet #14A,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U.S. Department of Labor – Wage and Hour Division.

UNV, 2021, "2022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Building Equal and Inclusive Societies, p.16

Van Der Meer, T., Te Grotenhuis, M., & Scheelers, P. 2009. "Three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in comparative perspective: The importance of studying associational involvement through a typology of associations in 2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Civil Society, 5(3), pp. 227-242.

Volunteering Australia, 2015, "Volunteering Australia Project: The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Volunteering Australia. 2014. "Volunteering Australia's Nation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Issue Paper

Volunteering Protection Act of 1997. "Public law 105-19-June 18,1997". 105th Congress. Sec.6.(6)(A),(B)

Wang, L., Mook, L., & Handy, F. 2016. "An Empirical Examination of Formal and Informal Volunteering in Canada."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28(1), pp. 139-161

[국내 홈페이지]

1365 자원봉사포털 자원봉사통계 (https://www.1365.go.kr)

1365자원봉사포털(https://www.1365.go.kr/vols/main.do)

e-나라지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56)

e-나라지표. 자원봉사참여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8)

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https://youth.gyeongnam.go.kr/youth)

고려대학교 공익법센터(https://www.amlaw.cente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국가법령센터(https://www.law.go.kr)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https://www.naju.go.kr/gongik)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https://www.facebook.com/maeulnetwork)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https://www.vms.or.kr/main.do)
서울NPO지원센터(https://www.snpo.kr)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공익활동 매칭플랫폼(http://probono.snu.ac.kr/prj/main)
서울시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http://www.seoulmaeul.org/)
시민통통 (htpp://civil.opm.go.kr/)
온국민소통(https://www.onsotong.go.kr/)
자원봉사 아카이브(https://archives.v1365.or.kr/)
전라남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https://jnsocial.modoo.at/)
지역문제해결플랫폼(https://www.facebook.com/socialchange0)
타임뱅크코리아(http://www.timebanks.or.kr/)
한국가이드스타(https://guidestar.or.kr/web/eval-result/list)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http://www.v1365.or.kr)

[국외 홈페이지]
ACNC(https://www.acnc.gov.au/)
AmeriCorps(https://americorps.gov/about/what-we-do)
CallHub. Sharma, Shiksha, 2022, "How to create donor recognition levels for your nonprofit today.", May 2022. https://callhub.io/donor-recognition-levels/
Candid(https://candid.org/)
Code of Federal Regulations (https://www.ecfr.gov/)
Collaboration Superpowers(https://www.collaborationsuperpowers.com/)
Council for Certification in Volunteer Administration (https://cvacert.org/)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Analysis of Key Provisions Affecting Nonprofits and the People They Serve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trends-policy-issues/the-american-rescue-plan-act)
NCVO(https://www.ncvo.org.uk/)
NGO-Ideas(www.ngo-ideas.net/tiny_tools)
PNGK(https://www.pngk.org/resource-hub/)

Points of Light Foundation(https://www.pointsoflight.org/about-us/)

Timebank(https://actionhub.timebanks.org/home)

U.S. AmeriCorps (https://www.americorps.gov/about)

U.S. AmeriCorps NCCC (https://americorps.gov/serve/americorps/americorps-nccc)

U.S. AmeriCorps Seniors (n.d.). AmeriCorps Seniors Benefits.
(https://americorps.gov/serve/americorps-seniors)

U.S. AmeriCorps Seniors (https://americorps.gov/serve/americorps-seniors)

U.S. AmeriCorps VISTA (https://americorps.gov/serve/americorps/americorps-vista)

U.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n.d.). Our history and legislation,
(http://nationalservice.gov/about/role_impact/history.asp)

U.S. Department of Labor – Wage and Hour Division
(https://www.dol.gov/agencies/whd/minimum-wage)

U.S. State Service Commissions (n.d.). America's Service Commissions,
(https://www.statecommissions.org/state-service-commissions)

U.S. State Service Commissions (https://www.statecommissions.org/)

University of SanDiego (https://www.sandiego.edu/news/soles/detail.php?_focus=83092)

Volunteermatch(https://www.volunteermatch.org/virtual-volunteering)

부록

1.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분석

가. FGI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사회적 논의를 소개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이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한 시민사회 현장의 정책 욕구와 의견은 정부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2-2024)'에 담겨있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배경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진행하여 시민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FGI는 총 5개의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했다. 1차 FGI 참여 대상은 상근 전업 활동가로서 시민사회 영역의 전통적인 시민사회단체, 비영리스타트업 등의 공식(formal) 조직에서 상근 형태로 활동하고, 급여를 받는 활동가이다. 2차 FGI에는 별도의 직업, 혹은 양육 등 주된 일을 하면서 시민사회조직에서 자원활동을 하거나, 독립적으로 공익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활동가들이 참여했다. 이른바 시민활동가라고 호명할 수 있는 그룹이다. 3차 FGI는 비상근 전업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속 단체의 재정 상황이나 활동가 개인의 활동방식 등의 이유로 상근활동가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전업으로 시민사회조직에서 다양한 차원에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활동가 그룹이다. 4차, 5차 FGI는 개별 단체가 아닌 네트워크와 연대조직의 활동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관련 정책 연구와 활동을 진행했던 정책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참가 대상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과 관련한 선행 연구와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정책 활동을 조사하여 선정했다. 1~3차 FGI에서는 활동가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4차~5차 FGI에서는 해당 주제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책 쟁점과 향후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여 진행하였다.

〈부표 1〉 FGI 진행

구분	FGI 참석자	인용명
1차 (2022.09.14.)	전○○ (니트생활자)	1-가
	정○○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1-나
	주○○ (서울YMCA 이웃분재조정센터)	1-다
2차 (2022.09.15.)	오○○ (정치하는엄마들)	2-가
	윤○○ (강서시민네트워크)	2-나
	전○○ (청년참여연대)	2-다
3차 (2022.09.16.)	공○○ (커뮤니티허브공감)	3-가
	전○○ (자원봉사이음)	3-나
	오○○ (공적인사적모임)	3-다
4차 (2022.09.26.)	박○○ (충남연대회의)	4-가
	여○○ (동행)	4-나
	오○○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4-다
	이○○ (시민사회연대회의)	4-라
5차1) (2022.11.15.)	김○○ (세상아이)	'제3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자원봉사'에서 다룸
	백○○ (자원봉사센터)	
	우○○ (자원봉사센터)	
	이○○ (자원봉사이음)	
6차 (2022.11.22.)	정○○(인권재단)	5-가
	김○○(서울시NPO지원센터)	5-나

주1 : 5차 FGI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관리자, 자원봉사 전문가를 초청, 자원봉사 인정과 보상 제도의 주요 쟁점과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자원봉사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방안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함. 따라서 5차 FGI 결과는 '제3장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사례: 자원봉사'에 반영함

자료: 저자작성

나. FGI 주제

FGI에서는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에 대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개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의 사회적 인정과 공익활동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확인한 뒤 관련한 정책 요구를 개인의 목소리를 듣고자 관련한 질문을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다. 각 FGI 차수별로 대상자들의 특성에 맞게 섹터, 조직, 개인의 수준에서 구분된 질문을 설계하여 차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부표 2〉 FGI 주요 주제

구분	핵심 질문
주요 개념	•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 •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이해
정책 요구	• 공익활동 수행의 의미 및 기대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정책의 필요성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경험 사례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정책 욕구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관한 견해	• 정부의 시민사회 공익활동의 의미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정,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강화 • 공익활동 조세제도 확대 등 제도적 인프라 • 참여 시민에 대한 예우, 공익활동단체 및 공익활동가 표창 • 시민사회의 날, 공익활동가의 날 제정 • 적정임금 보장, 4대 보험 지원 • 활동가 전문성 및 직업군 인정 • 시민사회단체 활동경력 인정 • 공익활동 참여 시민의 시간 인증 및 경력 인정 • 공익활동마일리지, 타임뱅크, 참여소득제, 자격증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쟁점에 관한 견해	• 사회적 인정의 주체와 인정 범위 • 공익활동의 자발적/자율적 속성과 사회적 인정 체계 간의 긴장 • 경제적 보상 방안에 대한 우려

자료: 저자작성

다. FGI 결과 분석

1) 주요 개념에 관한 이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관한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전에 핵심적인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체로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이라는 용어, 개념이 함의하는 바가 매우 모호하고,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참여자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의 장, 공익활동 참여방식, 공익활동 경험과 정도에 따라 공익활동과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인식에서 차이도 확인되었다. 시민사회단체의 상근활동가에서부터 조직적 기반 없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공익활동 생태계에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 범위 역시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공익활동의 개념 규정이 모호한 것 같아요. 공익활동 주체가 다양하잖아요. 상근, 전업하는 분들도 있고, 자원봉사 수준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있구요. 주체에 따라 사회적 기여도 다를 것 같구요.. 공익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매우 어려운 논의에요. (4-가)

>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 대한 개념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모호한 데다 오해도 많고 그런데, 공익활동은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또 사회적 인정을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다)

> 시민단체에서 공익활동을 한다고 하면 정치, 노조 이런 데랑 다 그냥 붙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출마할 거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세요. 정치랑 굉장히 굉장히 연결을 많이해요. (1-나)

> 애드보커시를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활동가지만,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는 명확히 다르다고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나는 공익활동가야.' '나는 시민 활동가야.' 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어요. (···)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나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항상 생각해요.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회사원밖에 없다든지. 카테고리 안에서 항상 모호한 채로 사회생활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런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가)

공익활동 개념에서 두드러진 견해는 전통적인 시민사회활동(운동)과 공익활동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시민사회활동(운동)과 공익활동의 구분은 정치적으로 색깔을 입히는 등 왜곡된 시선 때문이며, 시민운동의 본연의 역할 중 하나인 권력감시와 비판 활동때문에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되었다.

> 시민단체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시민사회 활동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공익활동이라고 하면 내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내가 포함되나?'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 시민사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활동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익활동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1-가)

> 시민사회는 보통 운동권이랑 연결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사회 변혁 계열 분들은 공익활동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일운동, 사회 변혁 이쪽을 공익활동에 넣지 않는 이유는 그쪽이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고요. (1-나)

> 시민운동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을 설계하는 측에게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일정한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다는 편견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시민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시민운동에 대한 불편한 감정, 혹은 적대로 연결되고, 이 부분으로 인하여 각종 인정 및 지원의 제도화에서 멀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는 전통적 섹터 간 경계가 흐려지고, 교차하는 현실은 공익활동 주체의 다양화와 더불어 공익활동의 범위를 확장했다. FGI에서는 구체적으로

공익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활동영역과 분야로 특정하는 견해도 제출되었지만, 공익활동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다.

> 지금은 개인 활동가, 비영리 영역 활동가, 비상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그냥 영리만 아니라면 공익의 경계 안에 포함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라)

> 사실 영리와 비영리를 가르는 것 자체가 공익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보고, 하고 있는 활동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 사회 공익을 위한 가치 실현을 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결국 결과는 사회적 공익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4-나)

>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공익 활동이라는 범주가 소셜 섹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불리는 것,. 그다음에 SNS나 유튜브, 뉴스타파 혹은 닷페이스처럼 더 넓은 범위에서 생활 시민들이 활동하는 것까지 포괄해서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1-다)

공익활동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공익활동에 대한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신념과 가치를 담보한 공익활동에 대한 자기 승인(self permission)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 내가 하고 있는 활동으로 공익을 실현하고 있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공익활동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4-나)

> 나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 영역, 그 운동을 공익활동이라고 보고 그걸 하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활동가라고 할 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고 있어라고 인식하면서, 그게 내가 활동가라고 인지하면 그 사람이 다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1-나)

> 제가 활동하는 조직 내부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있지만, 페미니즘을 적대시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공익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는 '공익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해나감으로써 나를 포함한 청년들의 성장과 공익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들을 확인해나가는 과정 자체를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해요.(2-다)

공익활동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며, 공익활동을 둘러싼 왜곡된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현실에서도 FGI 참여자들은 공익활동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초하고 있었다.

> 스스로 본인의 활동이 공익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공익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자신의

> 활동을 공익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안에서 하는 활동이 공익활동 같아요. (4-라)

>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 그동안 육아와 아이 돌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사회에 되게 뿌리 깊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더 나은 사회에 조금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공익활동이라고 생각해요. (2-가)

사회적 인정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질문했을 때, 참여자들은 공익활동과 마찬가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뚜렷한 견해와 명료한 주장보다는 누구를 혹은 무엇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원초적인 질문에서부터 사회적 인정 체계를 정책이나 제도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 사회적 인정을 얘기할 때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사회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이 한편에서는 시민들의 활동 경력 인정 문제와 관련한 제도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도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4-나)

>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이 추상성이 굉장이 높고, 범주가 매우 다양하잖아요.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을 가치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가 안전망과 같은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여건 마련을 위한 것이진 헷갈리네요. 가치로 접근하려고 하면 너무 커져버리고 정책화시키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의 깊이를 낮춰서 현실의 언어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인정이라는 말을 조금 더 활동가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활동가 안전망으로 표현해야 하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5-나)

이와 더불어 불편하다는 정서적 반응도 표출되었는데, 이는 다소 의외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공익활동 현장이나 시민사회 정책 이슈를 다루는 공론장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2022-2024)'에 세부정책과제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체계 마련' 과제를 포함하는 등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맥락에서 특히 그렇다.

>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정의가 제 머리속에서는 잘 정리가 되지는 않네요. 제가 이해하는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좋은 일이 아닌 필요한 일임을 시민들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3-다)

전에 우리 사회에 혐오 표현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네이버 뉴스의 댓글들을 모두 조사한 적이 있어요. 혐오 표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정리해서 올렸는데 저희와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경험하니까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활동이 인정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인정에 대한 개념이 와닿지 않아요. (2-다)

저 스스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지 사회적 인정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미를 찾지 못하는데 갑자기, 웬 인정,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상할 거 같아요. 저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야 누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배가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요즘에 많이 못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5-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인식과 필요성에 관한 답변도 공익활동의 참여 유형과 경험의 차이 등에 따라 달랐다. 전업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활동가의 경우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필요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저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활동을 시작한게 아니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저와 저의 활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더라도 내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2-가)

제 입장에서 사회적 인정은 활동한 내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줬는가, 아닌가 하는 정도인거에요.. 그런 점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직업활동가가 아니고, 효능감을 위주로 활동을 해온 나에게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동료 시민들의 지지·동의 수준의 차원에서 사회적 인정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2-다)

제가 젊었을 땐, 시민활동을 대가에 대한 아무런 기대 없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 공익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요. 낯설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공익활동의 비전을 보여주고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나)

그러나 FGI 참가자들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함의가 매우 모호하고 복잡하더라도, 시민사회의 다양한 공익활동 경험을 통해 그 필요성을 느끼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동료나 시민들의 응원이 있다면 스스로 하는 활동이 정말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느끼면서 자존감과 존재감

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2-나)

제가 일하고 있는 영역은 사회적 인정의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노동의 지속성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의 주체들도 엄청 다양하고요. 그런데 시간과 노력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NGO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일자리를 마련했는데, 정작 시민사회 NGO들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다)

비영리 영역으로 오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유인을 포기하고 오니까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한 2, 3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예전에는 사회적 인정을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정 받고 싶어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래서 뭔가 복잡해졌죠.. (4-라)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인정이라는 부분도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시민사회 영역이 가지는 특수성과 경직성 때문에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은데, 이번 계기를 통해 시민사회 운동 영역 내부의 고민을 나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4-라)

사실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깥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을 설명할 때는 적합한 언어가 없어요. 또, 경력을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인정 체계가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동안 관심과 시간을 쏟아서 해 온 노력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에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 무엇보다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거 같아요. 호칭이 무엇이든 공익활동 영역에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되고, 공익활동을 경험하고, 여기서 배웠던 정보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활동이 전달될텐데요. 이런 활동에 대한 경력이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공익활동에 대한 유인동기가 될 거 같아요. (5-가)

2)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FGI에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익활동가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활동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해도 시민들이 잘 모르잖아요. 활동가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일을 하는지,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활동가들끼리만 공익활동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지지와 격려, 인정이 있으면 훨씬 힘이 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 그런데 정부나, 언론에서는 공익활동가의 활동은 당연하게 여기고. 조금만 안좋은 사건이 있으면 침소봉대하는 기사를 남발하여 이미지를 흐리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이 많지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며, 정부 기능을 보완해 주는 공익활동과 공익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인정, 파트너십이 중요하고 이를 시민들과 나누고 홍보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3-나)

제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하기에는 그 용어들 자체가 사회에 별로 안착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치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언어가 많이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1-나)

요즘 20대 친구들이나 그보다 어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아예 시민사회 활동가를 직업군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봉사활동하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NGO 단체 활동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단체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민사회 공익활동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 참 많아요. (4-다)

사회적 인정 논의에는 활동가들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어요. (···) 사실 사회적 인정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활동을 하다가 결혼하려고 배우자 될 사람의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그냥 자원봉사 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4-가)

나아가 공익활동이 직업으로 인정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도 직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직업분류 체계에 포함되었을 때 비영리일자리 정책을 비롯하여 활동가 교육 등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익활동가의 직업적 인정 논의 과정에서 공익활동의 가치가 간과되었을 때의 위험성도 함께 짚어졌다.

주변에서 공익활동을 자원봉사,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하니, 사회적으로 직업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산업군, 직업 선택의 카테고리에서 적합한 단어를 선택할 수 없을 때 직업으로써의 사회적 인정이 부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1-가)

우리의 활동을 직업분류에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때,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4-가)

활동가로서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직업 분류표에 기타가 아닌 활동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언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제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 혜택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4-나)

공식적인 직업분류에서 사회복지사가 공익활동 영역과 가장 가까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직업으로 인정 받고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그것을 꿈꾸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공익활동가도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타나지만, 사회복지사처럼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소위 공익 활동이라는게 독립운동 같은 것은 아니니까 직업으로서 비용을 창출하는 활동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헌신이나 봉사적인 정신이 없는 직업군화 되면 시민사회 활동의 공익활동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 같아요. (1-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다. FGI에서는 공익활동 주체에 따라 사회적 방안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사회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활동가 정체성 인정, 시민사회운동에 관한 사회적 기록,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마련, 공익활동 경력 시스템 구축 및 직업적 인정, 공익활동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적 인정방안은 크게 사회문화적·비물질적 인정 방안과 경제적·물질적 인정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사회문화적·비물질적 인정 방안을 소개하겠다.

>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 대부분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을 시민사회 밖으로 보여주고, 정부와 사회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인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나)

> 2, 30대 활동가들은 요즘 자신을 청년활동가로 호명하지만 청년 공익활동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 호명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 하냐고 물었을 때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주변적인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소속감이나 문화적 부분 등에서 사회적 인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4-나)

> 사회적인 가치나 문화 부분에서 사회적 인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공익활동과 관련해 이해하는 방식과 참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이런 점이 오히려 문화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

> 저는 활동가를 위한 쉼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사업, 마음 돌봄 사업 그리고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의 노력을 당신이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거요. '네가 애쓰고 있는 걸 안다. 그러니 마음 돌봄이 필요하지 않니? 우리가 지원해 줄게'라는 마음이 전달되는거요. (···) 활동가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 인지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 활동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요. (5-가)

> 저는 2011년 당시 시민사회 풍토에서는 변두리에 위치한 ○○○관련 파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이 저에게는 매우 소중한 소명 같은 것이 됐거든요.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하는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게 사회적 인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선배 중의 한 분이 최근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자기가 한 2, 30년 했던 운동의 궤적과 자기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오랜 기간 자기 운동을 유지해 오면서 이야기로 그것을 정리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사회적 인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다)

경제적 보상의 필요성과 보상 방안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경제적 보상 방안에는 경력인정과 같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가치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된다. 특히 재정적 여력이 없는 단체에서 4대보험은 커녕 2대보험조차 가입을 못하는 현실이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적 경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악순환 구조가 개선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경력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요즘에는 4대 보험 여부로 경력을 인정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NGO는 그런 것을 지원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3-나)

> 시민사회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4대 보험은 커녕 2대 보험도 가입되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술인이나 프리랜서같이 정부가 4대 보험을 지원해준다면 그것 자체로 환영할만한 것 같아요. (2-가)

> 보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영리 영역에 속한 단체들의 크기에 따라 복지와 임금 수준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4대 보험이 기본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안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 관련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단체들은 그 지원을 받아도 부담인 곳이 있어요. 추후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4대 보험 정도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나)

> 2년 동안 정말 저를 갈아놓고 했을 때 한 달 활동비 90만 원 받고 온전히 24시간 활동에 집중하고 2대 보험도 가입이 안 돼서 경력 인정을 못 받았었거든요.. (···) 또,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니까 제 활동이 가정 불화의 요인이 되더라고요. 활동에 대한 보상이 너무 적다보니까 활동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그만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다행스럽게도 상근 활동가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열정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런 어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어서 지금 뭔가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도 한편 마련은 되어야 이런 것들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2-나)

> 활동가들 사이에서부터 임금 격차가 너무 큽니다. 젊은 활동가들은 관련 NGO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데 2, 3년 정도 밖에 버티지 못하고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량은 엄청나지만 경력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3-다)

한편,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으로 경제적 보상이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 시민운동은 사회변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고 활동가들도 그 목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공익적인 것이라고 경제적 보상, 노동 안정성 등의 댓가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원하여 동참하고 노력을 하였기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먼저 인정과 보상활동을 하였던 자원봉사계에서는 최근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간인증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했지만, 요즘에는 시민적 의무에 기반한, 사회구성원으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나)

사회적으로 체계를 갖추거나 제도화를 통해 사회적 방안을 추진하는 의견도 많이 개진되었다.

개개인의 포상과 공익활동에 대한 계량화보다는 주거, 건강, 노후 등 사회 안정 보장 제도가 생긴다면 사회적 인식과 인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가)

봉사활동 시간 인정과 관련된 1365, VMS 사이트 등의 사례처럼 공익활동 측면에서도 활동마일리지를 적용해본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 활동경력 인정, 전문성 인정, 4대보험 지원처럼 직업 활동가들이 활동을 이어나가는 환경 또는 여건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최저선을 보장해주는 수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 해외의 경우 시민단체가 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례처럼 명확한 최저선 내지는 기준을 마련하여 단체들의 도태를 막는 방식의 지원방안 또한 좋다고 생각함니다. (2-다)

공익활동단체 운영의 힘든 부분이 인건비, 사무실 임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인데 직접지원은 힘들기 때문에 시민자산화, 공간대여, 사무실 공유 등이 활성화되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시민공익활동, 참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를 갖추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시민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민사회관계법을 갖추는 것도 넓은 의미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나)

시민들이 개방적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다수가 공익활동 공유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품앗이형 다자간 교환시스템 구축, 기초 공익마일리지 발행, 개인과 기업 소유 포인트(마일리지)를 공익마일리지 교환 등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회, 민간 주도 사회적 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공익활동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창조하는 프로슈머 방식의 참여가 가능하기대문에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4-다)

국가기본계획 과제에도 비영리 일자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행안부나 지역 자체적으로 청년 활동가 양성 과정이나 청년 활동가 유입 과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도들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인정 사례라고 생각해요. 정부가 지원을 할 정도로 비영리 단체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해주는 신호죠.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차원에서 그들에게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과 필요한 단체한테 연결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역시 사회적 인정 체계라고 생각해요. 비영리 일자리를 사회적 인정 사례로 계속 정부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너무 단기여서 한계도 있지만, 이런 사업이라도 계속 유지하는 신호를 좀 더 정부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5-나)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방안 중, 정부의 역할에서는 공익활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공익활동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자각하여 더 많은 시민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공익활동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교육, 기부 활성화제도, 시민사회 변화사례 홍보 등이 제시되었다.

저는 제가 단체 소속이고 단체 운영이나 이런 거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활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정치자금법 기부금 제도처럼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 단체에도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독립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기부를 통해서 활동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기부자를 위한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도를 잘 만들어 놔야 시민들의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시민사회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1-나)

정부가 시민사회를 우리 사회의 유의미한 자원으로 인정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공익 광고 캠페인 같은 것은 익숙한데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어도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4-가)

정부가 공익활동의 성과를 널리 홍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익활동가들이 이룬 사회 변화가 상당히 많은데요. 변화된 것들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들이 더 잘 알게 되면서 제도와 정책의 변화도 함께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나)

저는 시민운동이나 공익활동 성과, 의미, 역할들을 홍보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 학생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모르고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또, 시민사회 활동을 일찍 알지 못해서 아쉬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4-다)

제가 ○○○ 협회에서 일할 때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어떤 명예와 아너십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어요. 지역사회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추천을 하면 문체부에서 장관상 등을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우리 활동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고 좋은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포상 행위가 보상이 됐어요. (…) 10년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포상은 동료들이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3-가)

공익활동이 그동안 성취한 그리고 만들어 가고 있는 역할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 '공익활동의 날' 과 같은 것을 제정하여 참여시민, 공익활동가, 단체/기관을 조명해 주고 표창도 하면 좋을 듯해요. 지자체에서 미담사례라 하여 지역의 작은 미담을 소개하곤 하는데 공익활동 참여시민도 찾아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3-나)

공식적인 기념식, 민관이 함께 하는 시민사회의 날 제정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의 하나일 것 같아요. (4-다)

저는 우리가 하는 일을 자신감 있게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받을 수 있는 칭찬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익적 시민의 책무라는 것을 하니까 그 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의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헌혈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표창장을 주잖아요. 그런 것이랑 같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공을 치하하는 문화와 시스템을 만들어내도록 국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 활동을 단순히 개인이나 단체가 좋아서 하는 활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1-나)

활동 현장은 시의성과 시급성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 버리고 활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네가 하는 활동은 굉장히 가치 있는 활동이야.'라는 신호를 주면 활동가들이 더 재미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5-가)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제도라고 하더라도 정책적 효과가 취지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추진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때도 있다. 참여자들은 사회적 방안이 제도화되었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 마일리지가 제도가 좋기는 하지만 순수한 목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욕심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일리지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실제 활동시간 보다 마일리지를 더 얻으려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활동가들 사이에서 갈등도 있고요. (3-나)

> 섹터 영역에서는 인정 사례를 볼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좋은 사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 활동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어요.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누군가는 추천과 표창을 받는데 과연 이게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으로 적절한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됩니다. (2-나)

이 때문에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에 관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예전에 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안 논의할 때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주게 되어 비슷한 노력을 해 온 또 다른 그룹이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걸 봤어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도 사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활동가들도 그걸 알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치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선택한 일인데 거기에 무슨 보상과 인정 까지 바라느냐라는 공격의 목소리에 대한 우려들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회적 인정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오해의 지점들이 있는데, 사회적 도입이 공론화되거나 구체적인 대안들이 실현에 옮겨졌을 때 불거지는 쟁점들로 인해 활동가들이 이를 불편해하고 어려워할 것 같아요. 욕심을 드러내지 않고 욕구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상황에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알 수 없는 태도가 명쾌해지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5-가)

정부에 대한 불신, 행정의 통제와 개입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적 인정방안을 추진할 때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정책을 고안하거나,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대체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사유와 실천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개념, 범위, 사회적 인정 등을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적' 인정이라는 용어에서처럼 국가가 아닌, 동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국가의 인정이 필요한 분야도 있겠지만, 국가, 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반만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다)

저는 제도로써 사회적 인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해달라는 요구를 아무렇게나 나열해서 제도화한다면 역작용할거라는 생각을 해요. (1-다)

제도는 믿지만, 기본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 행정의 주체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체감한 사례가 서울시 경우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활성화되었던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활동들이 지금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결정권자의 사적인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제도에는 반대합니다. 공익활동가 표창, 예우 등 인정을 하는 주체, 기준, 접근성 등 여러 변수와 애매모호한 기준들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 있는 영역의 방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활동의 본질을 흐리게 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와 지역 행정 주체에 따라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다)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공익활동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 협력도 하지만 견제도 하니까요. 물론 정부의 용역, 공모사업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비율의 현실적인 반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나)

다만, 참여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공익활동 정책 경험에서 시민사회조직의 공익활동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보조금 사업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 주체 중 주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회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등이 발생할 때 공익활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적·제도적 인정 부분은 비영리 이외의 다른 영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을 해도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못 받잖아요. 기업에서 일하는 것처럼 돈을 받아야 한다는건 아니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구요. 비영리를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다른 기준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의 방식으로 비영리를 평가하니 늘 다양한 지원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법과 제도의 설계자들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한 비판이 필요합니다. (4-다)

중소기업 청년 채용 지원금, 저금리 대출 등 비영리조직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지원제도에서 배제된 경우도 있어요. (1-가)

이 밖에도 공익활동가의 전문성 인정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활동가들은 시민사회의 고유한 성과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사회운동과 공익활동의 전문성을 어떻게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곤란함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활동의 전문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활동가의 전문성 문제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일정 분야에서 일을 했다는 것으로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의문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획일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고민이 돼요. NGO 안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4-라)

저희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센터가 시민사회 의 공익활동 영역에 있는 단체이고 저도 활동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를 담고 있는 이 큰 그릇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때 어려워지는거죠. (1-나)

우리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고민이 돼요. 무엇에 전문성이 있는지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요. 성과를 바라보는 체계를 달리 한다면 전문성을 스스로 규정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적당히 조금씩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다 잘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긴 해요. 그래서 전문가 같긴 해요. 이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1-나)

3)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 정책 추진 시 고려할 점

FGI에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의 필요성과 요구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활동의 사회적 방안이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획일적으로 제도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사회적 인정 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비물질적, 도덕적, 문화적 인정과 물질적, 제도적 인정 방안을 양자택일이 아닌 시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4-다)

순수하게 가치 중심적일 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이걸 제도화하려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냥 마일리지 그 자체가 중요한 사람이 있을거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일률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방안을 이야기할 때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거죠. (3-나)

사회적 인정방안이 제도화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낮은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장치들을 잘 마련하여 설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2-다)

전체적으로 대상별 혹은 제도권과 비제도권, 재정과 비재정, 보상과 기회비용 등 이런 식으로 유형화해서 프레임워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편협한 접근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고민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사회적 인정 대상에 관해서는 개인과 조직 또는 단체 중, 개인이 체감하는 효능감이나 사회적 인정 체계의 명료성이 더 높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체나 조직의 경우, 일자리 같은 것으로 연결되겠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경우 느끼는 효능감을 위해서는 개인에게 주는 사회적 인정의 메시지가 더 필요해보입니다. (5-나)

하는 일과 사회적 기여에 대한 혜택과 보상, 인정의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또, 제도,

정책으로 추진될 부분과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부분이 구분되어야 할 것 같구요.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주체에 직접 보상하는 방식보다는 관련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4-가)

사회적 인정의 제도화가 통제의 수단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는 부분을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도화에서 요구하는 통제와 무관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에게도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는 것은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즉 제도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강제해서는 안되며,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4-라)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할 때 시민사회 내적인 차원의 노력이 모든 그룹에서 매우 강조되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요구하기 전, 시민사회 내부에서 과연 공익활동의 가치와 활동가에 대한 존중이 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다.

인정과 보상에 대한 제도, 체계를 이야기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문화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3-가)

사회적 인정은 중요하죠. 또, 정작 인정을 요구해야 할 곳은 시민들이 아니라 시민사회 조직 내부라고 생각해요. 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할 때, 상근 활동가와 비상근 활동가, 자원봉사자 간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도 사람을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실망했죠. (2-가)

어느 순간부터는 2대 보험이라도 가입한 경력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더라구요. 저는 피해자가 된 거죠. 아무리 조직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활동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요. 시민사회 자체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 시민사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길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접근을 더 우선시해야 하고요. 내부적으로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인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2-나)

활동가들의 일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또 내부적으로 가치를 홀대하면서 대우한다면 문화적 인정 체계가 잘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4-라)

저는 시민사회가 먼저 내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가 사회의 정의를 외치지만 과연 내부적으로는 그럴 말을 할만큼 당당한지 의문이에요. 젠더문제부터 다양한 문제들을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회적 인정을 바라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정 체계 즉, 제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만큼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충분히 밖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 의제를 확장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의 모습을요. 제도의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3-가)

FGI에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차원의 정책적 쟁점과 접근법이 제시되었다. 공익활동에 대한 명료한 정의의 부재에서부터 공익활동 주체별로 사회적 인정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원칙론에서부터 정책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 -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익활동의 자율성과 제도와의 긴장 관계, 공익활동의 가치와 성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진한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혹은 도덕적 인정을 넘어 경제적 보상에 대한 정책적 공감 정도 등 - 에 관한 치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부터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인정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는 한목소리였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에 관한 논의의 출발과 종결 지점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있다는 점도 일치된 의견이었다. 또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정, 특히 정부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높았다.

> 시민들의 생활 자체가 우리가 하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활동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사회적 인정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3-다)

> 공익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개인들이 좋은 삶을 꿈 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활동가 개인으로서는 공익활동의 결과로 사회적 인정을 통해 개인적 효능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자아실현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그런 개인들이 공익활동에 더욱 더 기여하면 그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사회도 긍정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4-다)

> 시민사회를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걸 전제해서 사회적 인정에 대해서 접근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지금은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의 집단처럼 여겨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인정을 말하는 것이 활동가들한테는 잘 전달되지 않을 거 같아요. 시민단체를 적대시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무시하고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5-가)

2.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동행(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공익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익활동가를 중심으로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욕구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별도로 수집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정부의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자료(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언제라도 조사 참여의 철회나 중단을 하셔도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본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께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이 발송됩니다.**
(발송시점 : 본 조사 종료 후, 11.30 예정)

*** 공익활동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의 자발적 시민참여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가, 자원봉사활동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관기관	연구기관		조사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익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MEGA R&C Research & Consulting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동행	㈜메가알앤씨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동행(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공익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정체계 도입, 그리고 다양성, 접근성, 소통성을 갖춘 공익활동포털 플랫폼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가,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귀하께 공익활동의 참여와 지속요인,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 방안,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문을 하며 약 30분정도 소요됩니다.

조사의 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언제라도 조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셔도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과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및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안정성 확보가 되어 있으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연구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즉각 폐기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응답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 후 익명처리(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식별정보를 모두 삭제 또는 비식별화 처리)된 파일의 형태로 보관합니다. 응답내용과 관련된 개인적인 신상이나 의견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자료 수집 및 관리 과정에서도 응답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연구진의 정보 보안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최종결과물(연구보고서, 마이크로데이터 등)은 정보 비식별화 절차를 거친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의 최종결과물 작성 시에도 개인식별이 가능하지 않도록 자료를 처리합니다.

연구와 연구대상자등의 권익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거나 연구와 관련이 있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인 고경환 선임연구위원(khgho@kihasa.re.kr), 박영선 연구위원(baramhanul@gmail.com) 또는 천미경 연구원(sunmkmoon@kihasa.re.kr)에게 연락바랍니다.

본인은 위 사항에 따라 조사 사실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으며, 조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위의 사항에 따라 조사 참여에 스스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서명 : _____(인)

PART 1. 공익활동의 참여와 가치관

문 1. 귀하께서는 공익활동가로서 다음 중 어디에 해당 합니까?

① 공익활동단체 소속 ② 공익활동단체 무소속(1인 활동가 포함)

문 2. 귀하께서는 공익활동 참여자로서 다음 중 어느 분야에서 참여하는지 하나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마을공동체 ② 비영리민간단체
③ 자원봉사

문 3.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분야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습니까?(하나만 응답)

① 복지 ② 문화·체육·예술·관광
③ 기후·환경·생태 ④ 교육·학술·연구·언론
⑤ 봉사·기부 ⑥ 아동·청소년
⑦ 주택·교통·안전 ⑧ 국민운동
⑨ 여성·가족 ⑩ 보훈·기념·추모
⑪ 인권·민중·소수자·다문화 ⑫ 평화·통일·민족
⑬ 풀뿌리·공동체·자치·지역발전 ⑭ 경제·소비자·과학·기술·IT
⑮ 보건·의료·건강 ⑯ 국제협력·국제연대
⑰ 권력감시·사회정의 ⑱ 농수축산업
⑲ 청년

문 4. 귀하의 활동참여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정기적인 활동참여자
②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비정기적인 활동참여자
③ 활동조직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활동가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 5. 귀하께서는 공익활동이 귀하의 삶에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까?

① 전혀 가치 없다
② 별로 가치 없다
③ 약간 가치 있다
④ 매우 가치 있다

문 6. 귀하께서는 공익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 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1) 나는 취약자를 돕거나 사회적 가치를 도모하기 위해 활동한다	
2) 나는 지역사회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3) 나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활동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5) 나는 공익활동 관련 직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6) 내가 하는 활동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	
7) 공익활동가는 독립된 직업군이라고 생각한다.	
8) 나의 활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9) 나는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	

문 7. 귀하께서는 공익활동을 통해 경험한 주된 사회성과는 무엇입니까?

① 없었다
② 공익적 가치확산(국민들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 제도 변화 등)
③ 시민사회 역량강화(활동력 강화, 지속성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④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⑤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PART 2. 공익활동의 사회적인정 방안

사회적 인정이란 공익활동의 긍정적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체계

문 8. 귀하께서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 **문8-1로 이동** ② 필요없다 → **문9로 이동**

문 8-1. **(문8에서 '① 필요하다' 응답자만)** 귀하께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익활동가의 자존감 고취를 위해
② 공익활동가로 성장을 위해
③ 공익활동의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해
④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문 8-2. (문8에서 '① 필요하다'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인정 방안	⓪ 잘 모르겠다 ① 전혀 필요없다 ② 별로 필요없다 ③ 약간 필요하다 ④ 매우 필요하다
1)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인정(공익활동의 날 제정, 공익활동가 포상 등)	
2)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대시민 홍보,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공익광고 활성화 등)	
3)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지역사회공헌인정제 등)	
4)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확대	
5) 재정적으로 어려운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지원	
6) 정부의 공익활동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사업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 인정	
7)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표준직업 인정)	
8)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에 대한 국가지정 직업훈련 제공	
9) 공익활동 참여 시 공공서비스 할인	
10)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문 8-3. (문8에서 '① 필요하다'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공익활동에 대해 보상하거나 인정하는 방식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공익활동은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경제적 보상보다는 사회적으로 존중하는 인식과 태도로 충분하다. 예)공익활동가 예우, 포상 등
②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으로 지원한다. 예) 공공서비스 할인, 공공시설 우선 사용권, 공익마일리지 등
③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인정하는 비경제적 보상을 지원한다. 예)공익활동경력제 등
④ 공익활동에 참여한 시간과 노력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보상한다. 예) 보조금 사업 참여 시 인건비 인정, 투입 자원에 대한 자부담 인정 등
⑤ 기타(구체적으로 :)

→ 응답 후, 문10으로 이동

문 9. (문8에서 '② 필요없다' 응답자만) 귀하께서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공익활동은 자발적 선택이므로 사회적 인정은 불필요하다.
② 공익활동에 관한 사회적 인정은 자칫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
③ 공익활동 참여자 간에 경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④ 공익활동 인정 주체(기관)를 신뢰하기 어렵다.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PART 3. 공익활동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

문10. 다음 항목 중 귀하께서 공익활동과 관련하여 이용 경험이 있는 것에 모두 응답 부탁드립니다. 이용 경험이 있다면 이용빈도(**문10-1**)와 귀하의 공익활동에 도움이 된 정도(**문10-2**)의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항목	이용경험	이용빈도	도움 된 정도
	문10	문 10-1	문 10-2
	① 있다→ 문10-1, 문10-2로 이동 ② 없다↓ 다음항목으로 이동	① 거의 매일 ② 주 1회 이상 ③ 월 1회 이상 ④ 분기 1회 이상 ⑤ 연 1회 이상 ⑥ 연 1회 미만	①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 되지 않는다 ③ 약간 도움 된다 ④ 매우 도움 된다
1) 1365자원봉사포털			
2) VMS자원봉사관리시스템			
3) DOVOL			
4)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홈페이지(포털)			
5)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공식적 SNS			
6) 활동하고 있는 기관 참여자들간의 SNS			
7)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것은 아니지만 공익활동 관련(중간지원조직 등)의 홈페이지나 포털			
8)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국한되지 않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SNS			
9) 해피빈, 가치가치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문 11. 귀하께서는 주로 공익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하고 있습니까?

①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②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포털(1365 등)
③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④ 공익활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⑤ 네이버·다음 같은 일반포털
⑥ 개인 SNS(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⑦ 홍보용 팜플렛(리플렛)
⑧ 간행물
⑨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12. 귀하는 문11에서 응답한 정보수집처를 이용할 때 제공받은 정보가 귀하의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문12-1)**

항목	사용 여부	공익활동 지속을 위한 제공 정보의 충분 정도
	문 12.	문 12-1.
	① 사용한다→ 문12-1로 이동 ②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동	①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② 별로 충분하지 않다 ③ 약간 충분하다 ④ 매우 충분하다
1) 공익활동 참여를 위한 활동 검색·신청 기능		
2)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기능		
3) 공익활동 성과 홍보·알림 기능		
4) 공익활동 프로그램 제안 기능		
5) 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국내외 학술자료 등 정보 아카이브		
6) 공익활동 관련 활동가 컨설팅		
7) 활동가(봉사자)간 활동정보 논의·소통 공간		
8) 활동가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		
9)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도구 신청 기능		
10) 공익활동가의 요구사항 수렴 기능		
11) 지역 공익활동단체 간 공익활동정보 공유마당		

문 13. 귀하께서는 기존의 공익활동 관련 온라인 포털이나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이나 신뢰성에 만족하십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 14. 귀하께서는 공익활동 (온라인)플랫폼이 가져야 하는 다음 각 항목의 기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 등이 참여해 얻고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 상생의 생태계

항목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약간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
1)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2)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3)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4) 지역(동네, 마을)의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5) 국내외 공익활동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	
6) 공익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정보(도구) 제공	
7) 공익활동 아이템에 대한 (시민과 활동가의) 제안 창구	
8) 대시민 공익활동 참여 홍보	
9) 공익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10) 공익활동 참여자 간의 소통 경로	
11) 공익활동 관련 시민들의 소통 경로	
12) 공익활동에 대한 공식적 인증 체계 창구	
13) 공익활동 참여자의 요구사항 취합	
14) 정보탐색이나 질의응답에 대한 피드백 체계(챗봇응답 등)	

문 15. 귀하께서는 공익활동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항목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약간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1) 공익활동 플랫폼은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2) 공익활동 플랫폼은 공익활동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이다	
3) 공익활동 플랫폼은 본래의 용도에 맞도록 부적절한 내용을 차단하는 관리활동이 필요하다	
4) 공익활동 플랫폼은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공익활동 이력을 취합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플랫폼에서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정은 현재의 자원봉사활동 인정과 구별되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공익활동 플랫폼은 각 지역별로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좋다	
7)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하는 사항은 공익활동 플랫폼에서 취합되는 것이 좋다	
8)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9) 공익활동에 대한 플랫폼을 새로 만든다면 공익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0) 공익활동 플랫폼은 정부의 관여 없이 제3섹터 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PART 4. 응답자 특성

문 1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문 1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주민등록기준)

만 _____ 세

문 18.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문 19.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대도시(특/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

문 20.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이하
③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④ 대학 재학 이상

문 21. 귀하께서 처음 공익활동을 시작한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_____ 세

문 22. 귀하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주된 공익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습니까?

약 _____ 년 _____ 개월

문 23. 현재 귀하 가구의 한 달 평균 총 수입은 얼마 정도 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월 평균 총 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100만 원 미만
② 100 ~ 199만 원
③ 200 ~ 299만 원
④ 300 ~ 399만 원
⑤ 400 ~ 499만 원
⑥ 500 ~ 599만 원
⑦ 600 ~ 699만 원
⑧ 700 ~ 799만 원
⑨ 800만 원 이상

문 24. 현재 귀하께서 공익활동에 참여하여 받는 한 달 평균 총 수입(상근활동가의 급여, 참여수당 등)은 얼마 정도 입니까?

① 수입 없음
② 10만 원 미만
③ 10 ~ 29만 원
④ 30 ~ 49만 원
⑤ 50 ~ 99만 원
⑥ 100 ~ 199만 원
⑦ 200 ~ 299만 원
⑧ 300 ~ 399만 원
⑨ 400만 원 이상

문 25. 귀하께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와 1회 공익활동에 소요하는 평균시간은 어느 정도 입니까?

① 매일(주중): 평균 (시간)
② 주 2-3회: 평균 (시간)
③ 주 1회: 평균 (시간)
④ 월 2-3회: 평균 (시간)
⑤ 월 1회: 평균 (시간)
⑥ 월 1회 미만: 평균 (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활용 동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

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조사 참여 답례품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근거
조사 응답 사례 발송	휴대전화번호	경품* 지급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응답 DATA 확인			

* 경품 : 모바일 쿠폰 1매(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 참여자 수에 따라 경품은 변경될 수 있음)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선물 제공기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핸드폰 번호	( ) - ( ) - ( )

오랜 시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서 23-15-01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발 행 2023년 04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622-6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